

지급결제 A to Z



지금결제 A to Z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지급결제 A to Z」 개정판을 발간하며

분주한 아침, 지갑을 두고 온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이제는 지갑 없이도 일상의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현금이나 카드 대신 스마트폰 하나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지문이나 안면인식 결제로 커피 한 잔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갑 없는 일상이 가능해진 것은 금융시장인프라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급결제시스템 덕분입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급결제시스템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은 분명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지급결제는 우리 일상의 소소한 거래부터 글로벌 경제의 거시적인 자금흐름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커피 한 잔을 구매하거나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것부터 주택구매 등 큰돈이 오가는 거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은 지급결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지급결제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우리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 전담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의 혈액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모든 은행이 참가하는 금융공동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지급결제의 디지털화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이래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스템은 편리성, 효율성, 혁신성, 안전성, 저비용 구조 등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많은 개발도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급결제 관련 개념을 정립하고 지급결제 산업의 미래 트렌드를 살피기 위해 2021년 「지급결제 A to Z」를 발간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급결제의 양상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비대면 거래의 성장은 기존의 금융회사 외의 신규 지급서비스 제공자들의 등장을 촉진하였고, 이들이 제공하는 간편결제, 간편송금 같은 새로운 지급서비스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소비자는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를 넘어선 다양하고 혁신적인 지급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급결제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새롭게 편성한 「지급결제 A to Z」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에는 지급결제제도, 정책 동향,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 업무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담고 있으며, 지급결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지급결제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계신 모든 분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1편 지급결제제도의 이해

1장	지급결제	10
	1절 지급결제 프로세스	11
	2절 지급결제 구성요소	18
	3절 금융시장인프라	22
	4절 지급결제의 중요성	34
2장	지급수단	41
	1절 현금	43
	2절 어음·수표	46
	3절 계좌이체	50
	4절 지급카드	52
	5절 기타 전자지급수단	60
3장	지급결제시스템	67
	1절 거액결제시스템	68
	2절 소액결제시스템	72
	3절 증권결제시스템	77
	4절 외환결제시스템	80
4장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기관	87
	1절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88
	2절 청산기관	97
	3절 결제기관	97
5장	지급결제리스크	99
	1절 지급결제리스크의 종류	100
	2절 지급결제리스크의 관리	104
6장	지급결제 주요 법·규정	113
	1절 지급단계의 법·규정	114
	2절 청산단계의 법·규정	124
	3절 결제단계의 법·규정	126
부록1	유럽 「PSD2」 주요 내용	133
부록2	금융서비스 표준화 현황 및 전망	139

2편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스템

1장	금융공동망	146
	1절 전자금융공동망	147
	2절 타행환공동망	154
	3절 CD공동망	157
	4절 지방은행공동망	162
	5절 국가간공동망	164
2장	어음교환시스템	171
	1절 어음교환	172
	2절 전자어음	177
	3절 B2B 결제시스템	182
	4절 부도관리	189
3장	지로시스템	193
	1절 전자지로	194
	2절 인터넷지로	199
	3절 장표지로	204
4장	기타 지급결제시스템	208
	1절 오픈뱅킹시스템	208
	2절 B2C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중계시스템	217
	3절 CMS공동망	220

3편 지급결제 트렌드와 미래

1장	지급서비스의 경쟁가속	226
	1절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자의 등장	227
	2절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자 관련 국내외 현황	235
	3절 지급결제 인프라 측면의 움직임	254
2장	간편결제/송금서비스의 활성화	263
	1절 간편결제서비스	264
	2절 간편송금서비스	274
	3절 기타 결제서비스	280
3장	국가간 지급거래 확산	293
	1절 국가간 지급거래의 확산 배경	296
	2절 국가간 지급결제 현황	305
	3절 향후 전망	314
4장	전자지급서비스의 접근성 이슈 대응	315
	1절 금융환경의 변화	316
	2절 전자지급서비스의 접근성 변화	321
	3절 현금 접근성 변화	330
5장	전자지급서비스의 안전성 이슈 대응	337
	1절 사이버 복원력 확보	338
	2절 착오송금 대응	341
	3절 보이스피싱 및 신원도용 등의 금융사기 대응	343
	4절 자금세탁방지 강화 노력	352

편별 Box 목차

1편	지급결제제도의 이해	
	〈Box1-1〉결제은행	16
	〈Box1-2〉한국의 금융시장인프라 감시지침서	33
	〈Box1-3〉글로벌 지급카드시스템 주요 참여자들	55
	〈Box1-4〉신용카드서비스 시장의 특성	59
	〈Box1-5〉국내 거액결제시스템 : 한국은행 한은금융망	71
	〈Box1-6〉소액결제시스템의 경제적 특성	75
	〈Box1-7〉주요국 민간결제시스템 운영기관	76
	〈Box1-8〉지급결제시스템의 유형	82
	〈Box1-9〉국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91
	〈Box1-10〉지급결제제도에서 중앙은행(한국은행)의 역할	98
	〈Box1-11〉우리나라 결제완결성 보장 제도	111
	〈Box1-12〉디지털금융 관련 입법 동향	131
	〈Box1-13〉「PSD3」와 「PSR」의 제안	137
2편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스템	
	〈Box2-1〉대출이동서비스	151
	〈Box2-2〉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	152
	〈Box2-3〉금융맵(FIN MAP)서비스	159
	〈Box2-4〉모바일현금카드 공동QR코드 ATM 입·출금서비스	161
	〈Box2-5〉오픈뱅킹 이용자격 및 이용승인 절차	216
3편	지급결제 트렌드와 미래	
	〈Box3-1〉국내외 오픈뱅킹	252
	〈Box3-2〉종합지급결제사업자 관련 논의	253
	〈Box3-3〉BIS의 국가간 실시간 이체 프로젝트 Nexus	261
	〈Box3-4〉토큰 기술이 포함된 결제 과정	268
	〈Box3-5〉간편송금 파생서비스 사례	277
	〈Box3-6〉사용자 경험 요소	287
	〈Box3-7〉(해외 사례) 계좌기반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324
	〈Box3-8〉은행공동점포 및 은행대리업 논의	335
	〈Box3-9〉개방·혁신의 허점을 파고드는 신원도용과 금융사기	351
	〈Box3-10〉국내 트래블룰	359
	〈Box3-11〉일본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환거래분석업 도입	360
	〈Box3-12〉가상자산 관련 규율체계 정비 동향	361

1

지급결제 제도의 이해

1장. 지급결제	10
2장. 지급수단	41
3장. 지급결제시스템	67
4장.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기관	87
5장. 지급결제리스크	99
6장. 지급결제 주요 법·규정	113
부록1 유럽 「PSD2」 주요 내용	133
부록2 금융서비스 표준화 현황 및 전망	139



지급결제



지급결제란 개인, 기업, 정부와 같은 경제주체들이 상거래나 금융거래 등 경제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지급인(채무자)과 수취인(채권자) 간의 다양한 채권·채무 관계를 현금, 카드 등의 지급수단을 통해 화폐가치를 이전하여 해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컨대, 물건을 구매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 친구에게 송금하거나 매달 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는 것 등이 모두 지급결제에 해당되며 우리는 이러한 지급결제 활동을 매일 일상생활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지급결제서비스는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의 기본 서비스 성격이 강하였으나, 최근에는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 등에 의해 ‘OO페이’ 등의 서비스로 브랜딩되어 보다 활성화되고 있다.

사실 지급결제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해도 위에서 언급한 각종 송금이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수반되는 화폐가치의 이전 즉, 자금의 이전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메커니즘이 지급결제제도이다. 지급결제제도는 지급결제가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급수단, 참가기관,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법·규정 등의 제반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한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라고 정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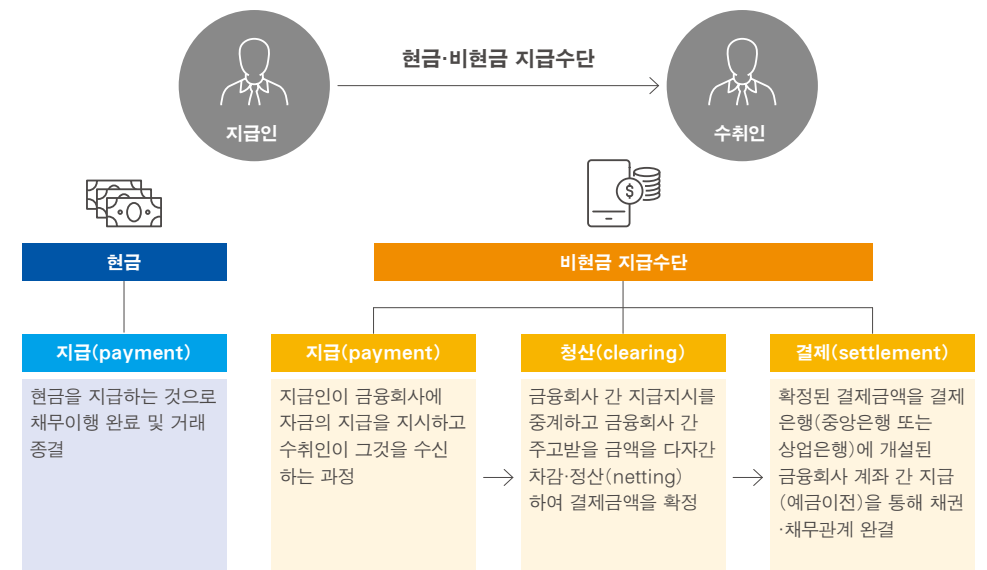
이와 같이 지급결제제도는 경제주체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존재나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이는 마치 우리가 필수 공공재인 통신망, 도로망의 중요성에 대해 평소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만약 지급결제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거나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모바일뱅킹은 물론 간편결제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고 결국에는 현금을 통한 거래만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과 기업의 금융 활동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급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지급인과 수취인 간 가치교환을 중개하는 지급수단, 지급수단을 발행하거나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결제 참여기관, 지급결제시스템 및 법·규정 등 지급결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모두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이로써 지급결제는 한 국가의 금융·경제활동 전반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1절 지급결제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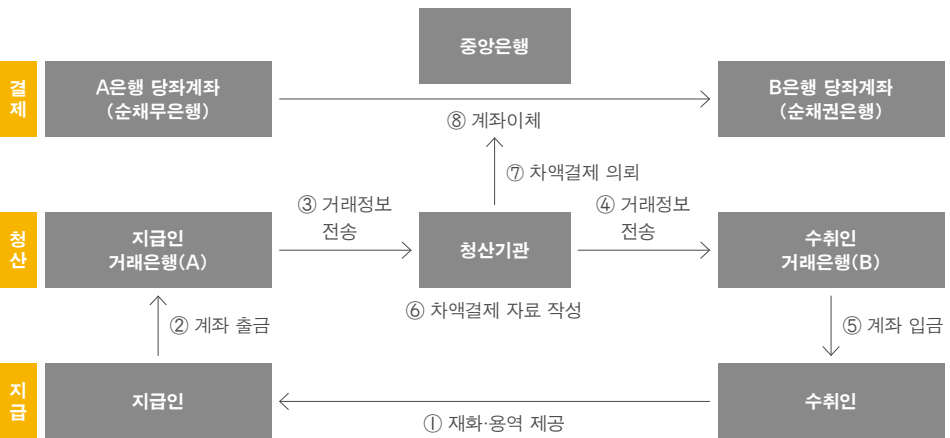
상거래나 금융거래에서 그 거래의 주체인 개인 또는 기업, 정부 간 화폐가치를 이전하여 서로의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뜻하는 지급결제는 지급수단의 제시(지급, payment)에서 시작하여 금융회사 간의 청산(clearing), 그리고 결제(settlement) 과정을 통해 마무리된다.

〈그림1-1〉 지급결제 프로세스



현금은 별도의 추가적인 청산 및 결제과정이 불필요한 지급수단이기 때문에 지급과 결제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 이를테면 장표 지급수단인 어음·수표나 전자지급수단인 전자자금이체 등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오늘날의 복잡한 금융서비스 환경에서는 개인마다 거래은행이 서로 다르고 다양한 지급수단이 존재하는 만큼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하는 은행 간의 청산과 결제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지급결제가 완료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계좌 기반의 소액결제시스템에서 비현금 지급수단의 이용에 따른 지급 → 청산 → 결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2〉 계좌이체의 지급결제 프로세스



1. 지급

지급(payment)은 지급인(채무자)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수취인(채권자)에게 지급수단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¹ 일상에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일어날 때, 채권·채무 관계도 동시에 발생한다. 이때, 지급인은 현금, 어음, 수표 등을 직접 수취인에게 제공하여 채권과 채무를 해소하거나, 금융회사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도 있으며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이처럼 지급은 지급결제 단계에서 지급수단을 제시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지급인이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수단으로 제시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간의 채권과 채무는 현금의 지급과 동시에 바로 해소되어 그 외의 별도 절차가 불필요

1. 국제결제은행(BIS)는 지급을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현금, 금융회사나 중앙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통해 자금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payment : the payer's transfer of a monetary claim on a party acceptable to the payee. Typically, claims take the form of cash or deposit balances held at a financial institution or at a central bank. BIS CPMI(2016), Glossary

하다. 다시 말해, 법화인 현금은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교환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현금으로 물건값을 계산하면 그 자체로 결제단계가 완료된다. 반면,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현금 대신 비현금 지급수단을 제공할 때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예컨대, 상품 구매의 대가를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실시간 이체방식으로 자금의 이동이 즉시 이루어지며 수취인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완료된 순간 두 당사자 간 채권·채무는 종결된다.² 하지만 거래에 관여한 지급인과 수취인의 금융회사 간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려면 청산과 결제라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지급 행위가 가능하도록 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오래전부터 예금을 기반으로 한 은행이 대표적이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IT 기업, 핀테크 기업, 플랫폼사업자, 이동통신사 등 다양한 비금융회사도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 청산

우리는 보통 청산(清算, clearing)이라는 용어를 과거 청산(end), 법인청산(liquidation)처럼 무엇인가를 정리한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하지만 지급결제에서 청산은 서로의 채권·채무 관계를 셈하여 깨끗이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급결제에서도 금융회사 간에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여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절차 즉, 청산 과정이 필요하다. 청산은 상거래 등에서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이 사용되었을 때 청산기관(clearing house)이 개입하여 지급인과 수취인이 주고받은 비현금 지급수단을 발행 또는 제공한 금융회사 간에 지급지시를 전달(transmitting) 중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청산 대상 거래의 대사(reconciling)와 확인(confirming)을 거쳐 다수의 채권·채무를 차감(netting)한 후 최종 결제금액을 확정(establishing final position)하여 결제기관으로 결제를 지시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³ 청산은 지급결제의 시작점인 지급지시가 금융회사 간에 실제 자금을 주고받는 결제로 마무리되기까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급결제에서 청산 과정은 지급인과 수취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실제 화폐가치를 이전시키는 금융회사 간 채권·채무를 확정하여 결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처럼 비현금 지급수단의 이용이 주를 이루는 지급결제 환경에서 이러한 청산 과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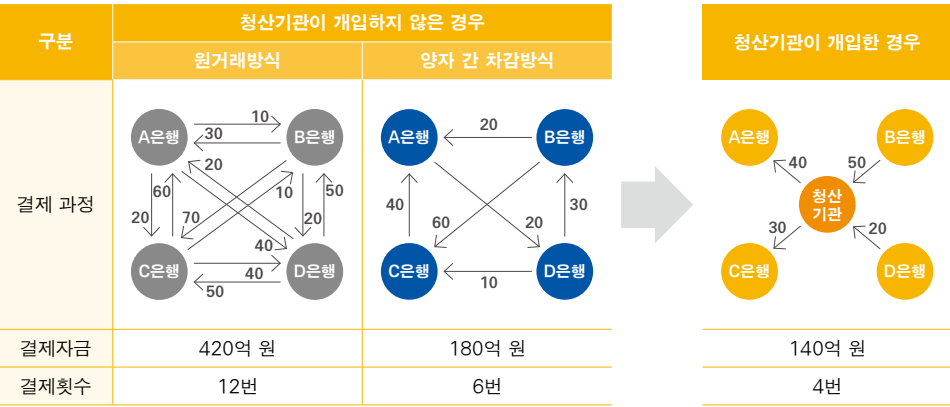
2.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지급의 효력 발생 시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및 336조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징)

3. clearing : the process of transmitting, reconciling and, in some cases, confirming transactions prior to settlement, potentially including the netting of transac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final positions for settlement. Sometimes this term is also used(imprecisely) to cover settlement. BIS CPMI(2016), Glossary

역사적으로 청산의 개념은 은행이 등장한 13세기 이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 은행들은 예금을 기반으로 자행 내에서만 예금자 간 자금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다 상거래가 활발해지고 자신이 발행한 수표나 은행권이 널리 사용됨에 따라 상대 은행과 양자 간 차액결제 계약을 통해 자금결제를 처리하면서부터 청산업무가 시작되었다. 이후 점차 은행 수도 많아지고 은행 간 자금이동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은행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지급결제를 처리하기 위해 다수의 은행 간 청산과 결제를 담당하는 청산기관⁴을 설립하여 다자간 차액결제방식을 도입·운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설립 이후에는 청산기관의 차액결제를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당좌계좌를 통해 최종 결제 처리하는 등 지급결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지급결제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청산기관은 다수 금융회사 간 결제에 필요한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유동성리스크를 축소함으로써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청산기관이 개입하는 경우 참가은행으로서는 결제를 위해 많은 자금(결제유동성)을 보유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예컨대, 아래 <그림1-3>과 같이 청산기관이 없는 원거래방식은 4개 은행 모두가 결제자금을 서로 주고받는 방식이다. 결제자금은 420억 원이 필요하며 총 12번의 결제가 일어나게 된다. 한편, 양자 간 차감방식은 각각 양자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정산하여 차액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때 결제자금은 180억 원으로 줄어들고 은행 간 결제는 6번 발생한다. 더 나아가 신뢰할 수 있는 청산기관이 개입한 경우에는 참가은행 모두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 처리하여 차액만 결제하므로 결제자금은 18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결제 빈도도 은행당 1번씩(전체 4번)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림1-3> 청산기관을 이용한 청산의 효과



4. 청산은 다수의 금융회사 간 차액 정산자료를 산출하여 결제지시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과 차액 자료 산출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로서 채권·채무를 직접 인수하여 결제이행을 보증해 주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예가 전자는 소액결제시스템 청산, 후자는 증권결제시스템 중앙거래당사자 청산이다. 소액결제시스템의 청산은 1편 4장에서, 중앙거래당사자의 청산은 1편 3장에서 살펴본다.

3. 결제

지급결제 과정에서 결제(settlement)는 청산기관에서 확정된 금융회사 간 주고받을 금액을 결제기관에 개설한 당좌계좌 간 자금 이체를 통하여 지급은행(순채무은행)에서 수취은행(순채권은행)으로 실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인과 수취인에서 시작된 지급거래가 최종적으로 각 금융회사로 자금이 이전되어 채권·채무가 완전히 해소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⁵

결제단계에서 금융회사 간 결제는 통상 각 금융회사가 중앙은행에 개설한 당좌계좌와 그 계좌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중앙은행에 예치된 지급준비금이 가장 안전한 결제자산이기도 하고, 결제자금이 부족한 경우 최종 대부자로서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중앙은행의 기능을 고려한 선택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금융결제망(BOK-Wire+, 이하 한은금융망)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 간 최종 결제를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

5. 대부분 지급인과 수취인 간 자금이체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두 당사자의 각 금융회사 간 자금의 이동은 최종 결제시점에 따라 일정 수준의 시차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결제시스템은 거래 익영업일 오전 11시에 은행 간 결제가 완료된다.

〈Box1-1〉 결제은행

금융회사 간 자금결제를 처리하는 결제은행(settlement bank)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지만 민간은행이 결제은행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국내의 파생상품 결제와 비자·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카드 네트워크 운영사의 카드 결제를 담당하는 결제은행은 민간은행인 시중은행이다.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면서 청산·결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회원사 간 결제는 중앙은행에 개설한 금융회사의 당좌계좌 간 이체방식이 아니라 한국거래소가 결제은행에 개설한 거래소 계좌와 해당 계좌에 연결되도록 미리 지정해 놓은 회원사 계좌 간 이체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결제은행은 일정 재무요건 등을 충족하는 시중은행 중에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며, 현재 원화는 7개 은행^{주1)}, 외화는 6개 은행^{주2)}이 지정되어 있다.

국내 파생상품의 청산결제업무 흐름도



주1)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농협, 부산, 중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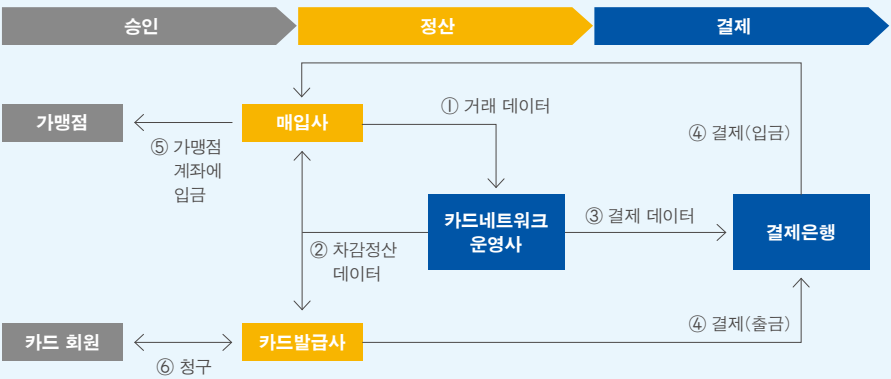
주2)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부산, 중국은행

주3) CCP : 중앙거래당사자(Central Counterparty)

자료 : 한국거래소(2019), KRX 청산결제의 이해(재구성)

또한 카드 발급사(issuer)와 매입사(acquirer)가 회원제 형태로 참가하는 글로벌 카드 결제시장에서는 비자나 마스터카드사가 참가 회원사 간 승인중계 및 정산을 수행하고 결제은행을 통해 회원사 간 카드거래 대금을 이체하며, 이때의 결제은행은 일반 시중은행을 의미한다.

글로벌 카드 네트워크 운영사의 결제 흐름도



2절 지급결제 구성요소

지급결제제도는 경제주체들의 지급결제 행위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된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이다. 화폐가치의 이전을 매개하는 지급수단, 지급수단을 발행하거나 이를 이용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결제 참여기관, 지급결제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급결제시스템, 지급결제제도와 관련된 법·규정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집합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림 1-4〉 지급결제제도 주요 구성요소

지급수단	지급결제시스템
거래 시 화폐가치 이전 수단 - 현금 - 비현금 지급수단	지급결제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 거액결제시스템 - 소액결제시스템 - 증권결제시스템 - 외환결제시스템
참여기관	법·규정
지급결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 청산기관(중계기관) - 결제기관	지급결제에 참여하는 각 주체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정·절차 등

1. 지급수단

지급수단⁶은 경제주체 간 지급거래 과정에서 이용되는 매개체 즉, 상거래나 금융거래에서 상대방에게 화폐가치를 이전할 수 있는 지급 능력을 갖춘 수단으로 크게 실물형 지급수단(token-based)과 비현금 지급수단(account-based)으로 구분된다. 실물형 지급수단은 실물 자체에 자산가치가 내재되거나 법정화폐로 발행된 실물이 지급인·수취인 간 직접 이동하는 형태의 지급수단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현금이 이에 해당한다. 현금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화를 말하는데 그 강제통용력과 청구권을 중앙은행이 보장하므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본원적인 지급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어떤 거래에서든지 현금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더 이상의 별도 청산과 결제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즉시 결제가 완결되는 지급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6. payment instrument : any instrument enabling the holder/user to transfer funds.BIS CPSS(2003), Glossary. 한편 지급수단을 그 소지인 또는 사용자가 자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외의 모든 장표 또는 전자적 방식의 수단이라고도 정의한다.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반면에 비현금 지급수단은 계좌(계정) 발행자가 해당 계좌(계정) 소유자에게 지급을 보장(약속)하는 형태⁷의 지급수단으로 은행 등이 계좌(계정) 발행자가 되어 지급인과 수취인 간 중개인(intermediary)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당 중개인을 통해 처리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여기에는 계좌이체, 카드, 어음이나 수표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비현금 지급수단을 이용한다면 금융회사 간 청산과 결제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지급결제 과정에서 장표(종이)가 실제로 이동하는지에 따라 장표방식과 전자방식으로 구분된다. 장표방식에는 어음, 수표 등이 있고, 전자방식으로는 계좌이체와 지급카드 등이 있다. 또한 결제시점에 따라 선불형, 직불형 및 후불형 지급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1〉 유형별 비현금 지급수단

구분		내용
특성별	어음·수표	어음, 수표
	계좌이체	입·출금이체
	지급카드	신용·선불·직불카드
장표유무별	장표기반형	어음, 수표
	전자기반형	계좌이체(입·출금이체), 신용·직불·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결제시점별	선불형	전자화폐,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직불형	계좌이체,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후불형	신용카드

2. 참여기관

지급인과 수취인 간에 현금이 아닌 비현금 지급수단을 이용한 지급거래가 발생하면 제3자의 개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급결제 참여기관에는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지급결제 과정에서 청산, 결제업무를 담당하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도 포함된다. 은행이 등장한 이후 지급인과 수취인 간 지급거래 중개자로서 제3자는 당연히 은행이었으며, 은행 제도가 발달하고 은행 간 결제 규모도 커지면서 지급결제를 보다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또 다른 제3자로서 청산기관과 중앙은행이 관여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지급결제 과정에 관련된 참여기관은 크게 지급서비스 제공기관과 청산과 결제업무를 처리하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⁸으로 구분할 수 있다.

7. The money in such accounts is not a token; rather, it is a promise on the part of the account provider that it owes the account holder that amount of money. Glenbrook(2020), Global Payments
8. 지급결제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지급수단의 교환 또는 이체지시의 송수신을 중계하고 이에 따른 거래의 청산 또는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은 고객에게 지급수단을 발행하거나 그 지급수단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당초 지급서비스 제공은 예금 수취를 기반으로 하는 은행이 전담해 왔다. 그러나 지급카드라는 새로운 지급수단이 등장하고 예금 수취 기관이 확대되면서 신용카드사, 금융투자회사 등 비예금 수취 금융회사도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산업 간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지급수단의 디지털화가 촉진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이동통신사, 모바일기기 제조업체는 물론 유통업체, 플랫폼사업자까지 다양한 산업군에서 대고객 지급서비스 제공에 가세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비금융회사가 상호 협조 또는 경쟁 관계를 형성하면서 병존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으로는 거래중계 및 청산업무를 수행하는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과 결제기관으로서 중앙은행이 있다. 우선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금융회사 간 거래를 중계하고 상호 주고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청산업무와 그 결과를 결제기관인 중앙은행에 통지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참가자 간 규약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청산업무를 수행하는 청산기관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중앙은행 또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으로부터 청산절차를 통해 확정된 차액결제 금액을 전송받아 각 금융회사가 중앙은행에 개설한 당좌계좌 간 이체를 통해 지급결제 과정을 최종 마무리하는 운영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각 국가의 중앙은행은 이와 같은 금융회사 간 최종결제를 처리하기 위해 거액결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통해 최종결제를 진행하고 있다.

3. 지급결제시스템

지급 → 청산 → 결제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적으로 지원하는 지급결제시스템⁹도 지급결제제도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다. 지급결제시스템은 모든 금융회사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금융 산업의 하부 핵심 인프라이다. 이 지급결제시스템이 마비되는 경우 우리의 일상 거래가 멈출 수도 있다. 또한 세계 금융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만큼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크

9. 자금의 이체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하며 지급수단, 참여기관, 운영조직, 업무처리 규정 및 절차, 전산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기¹⁰ 때문에 모든 국가는 자국 지급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으로는 각국 중앙은행이 주로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인 Fedwire(미국), CHAPS(영국), TARGET2(유럽연합) 그리고 소액결제시스템인 ACH(미국), Bacs(영국), STEP1·2(유럽연합) 등이 있다. 대부분 국가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다수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역시 한국은행에서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비롯하여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어음·지로 등의 소액결제시스템이 있다.

4. 지급결제 관련 법·규정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급결제 구성 요소별로 준수해야 할 법률이나 규약, 표준절차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에는 지급수단의 발급조건, 지급결제제도 참여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사항, 참여기관들의 준수사항 등이 있다. 법·규정, 절차뿐만 아니라 업무 규약, 각종 원칙이나 권고사항 등도 포함된다.

〈표1-2〉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관련 법률

구분		내용
거래	일반 상거래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송금거래	외국환거래법
지급수단	어음, 수표	어음법, 수표법
	전자자금이체, 전자지급수단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어음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신용·직불·선불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지급결제 시스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관리 및 감시	한국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결제완결성 보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급결제 세부업무 관련	한국은행 규정,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각 업무 규약 등
기타	정보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지급결제시스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01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 당시 미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핀의 회고록에도 언급되어 있다. “미 연준은 일평균 4조 달러가 넘는 돈과 증권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은행들에 이전시키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 경제를 마비시키기를 원한다면 이 지급결제시스템을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9·11테러가 일어나자 그린스핀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아내 다음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이었다고 한다. 안예홍(2021), 지급결제의 주역들

한편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이하 BIS) 산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이하 CPMI)가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이하 IOSCO)와 함께 마련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이하 PFMI)¹¹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국에서 지급결제제도 운영 시 참조하는 주요 기준이다. 또한 EU는 역내 지급결제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여 소비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부터 「PSD2¹²」, 「GDPR¹³」을 시행 중이며, 2023년 6월 EU 집행위원회(EC)는 「PSD2」를 「PSD3」 및 「PSR¹⁴」로 개정할 것을 새롭게 제안·발표하며 개정을 위한 첫 관문을 열었다.

3절 금융시장인프라

금융시장인프라(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FMI)는 금융시장에서 행해지는 금융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행하는 일상적인 지급결제 거래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이 시스템은 금융상품 및 지급결제 거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러 금융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는 금융시장인프라의 운영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 및 감독기관은 이러한 장치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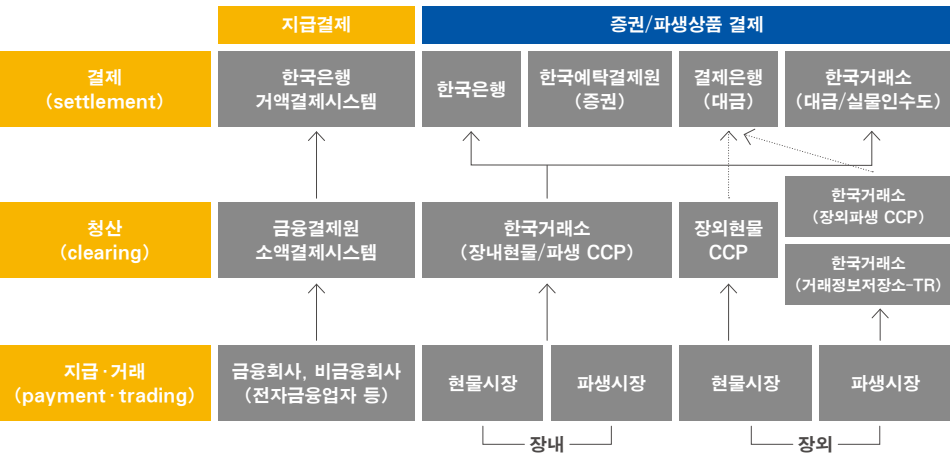
CPMI와 IOSCO에 따르면, 금융시장인프라는 지급결제(payments), 증권(securities), 파생상품(derivatives) 등 금융거래의 청산 및 결제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회사들의 다자간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금융시장에서 청산, 결제, 정보저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프라를 통칭하며 지급결제시스템(Payment System, PS), 중앙예탁기관(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CSD), 증권결제시스템(Securities Settlement System, SSS), 중앙거래당사자(Central Counterparty, CCP) 및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 TR) 등이 금융시장인프라에 해당한다.

11.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 원칙(Core Principles for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 CPSS, 2001),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s for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CPSS/IOSCO, 2001), 금융시장인프라(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등 기존 지급결제 관련 3대 국제기준을 통합·강화하여 2012년 제정되었다.
12. EU 내 지급결제 관련 서비스 및 서비스 업체에 대한 공동규범을 다루고 있는 「지급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을 개정한 버전으로 2018년도에 시행되었다.
13.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14. 「지급서비스규정」(Payment Services Regulation)으로서 지침이 아닌 규정 형식이다.

〈표1-3〉 금융시장인프라 유형

구분		내용
Payment System(PS)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를 가능하게 하는 업무 처리절차, 전산시스템 등으로 구성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CSD)	중앙예탁기관	고객으로부터 증권을 집중 예탁받아 증권의 이전을 실물증권의 이전이 아닌 계좌대체 방식으로 처리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SS)	증권결제시스템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사고 팔 때 그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
Central Counterparty(CCP)	중앙거래당사자	증권거래 계약의 매도자에 대해 매수자 역할을,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 역할을 수행
Trade Repository(TR)	거래정보저장소	장외 파생상품 거래의 세부 정보를 중앙집중화하여 수집, 보관 및 관리

〈그림1-5〉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인프라 현황



자료 : 한국거래소(2019), KRX 청산결제의 이해(재구성)

1. 금융시장인프라의 구성

가. 지급결제시스템(PS)

일반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은 크게 ① 거액결제시스템, ② 소액결제시스템, ③ 증권결제시스템, ④ 외환결제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액결제시스템은 지급서비스 시장 수요자의 일상적인 거래를 충족시키고자 발전된 시스템으로, 국내의 경우 어음교환시스템을 시작으로 지로시스템 및 전자금융공동망 등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다양한 예금화폐의 거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증권결제시스템은 금융자산(주식·채권 등)을 거래할 때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결제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이며, 외환결제시스템은 외환 매매 거래당사자들의 매입·매도 통화를 교환하고 지급함으로써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시키는 지급결제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들은 한국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 연결되며, 거액결제시스템은 금융회사 간의 자금, 증권, 외환거래 등에 따른 대금을 최종적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국내의 대다수 금융회사가 거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시장인프라의 정의에서 설명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은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만을 포함한 협의의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자금결제시스템이라고도 한다. 이에 본서에서는 <그림1-6>의 소액거래 시장에서의 지급결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1-6> 지급결제시스템 개요

	지급서비스 시장		지급결제시스템
	수요자	공급자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소액거래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은행,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전자금융업자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
증권거래	개인 가맹점 기업 등	〈증권거래 관련기관〉 국내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기타 금융회사 등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시스템 → 〈한국은행〉 거액결제시스템 ^{주)}
외환거래		〈외환결제 관련기관〉 국내은행(결제회원, 제3자기관), 외국은행 국내지점	〈CLS 은행〉 외환결제시스템
금융시장인프라의 지급결제시스템			

주) 증권/파생상품 및 외환거래에서는 일부 상업은행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나. 중앙예탁기관(CSD)

중앙예탁기관¹⁵은 증권예탁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주요 업무는 증권집중예탁, 계좌 간 대체업무, 장내 및 장외시장 증권결제업무 등이 있다. 특히 예탁자가 증권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증권을 집중 보관, 관리하고 결제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이나 증권 소유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권리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시장의 증권결제는 대부분 계좌대체 방식¹⁶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앙예탁기관은 통상 증권결제시스템 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각국에서는 단일이나 소수의 중앙예탁기관이 증권의 예탁 및 결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19년에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법으로만 증권의 발행, 양도, 담보, 권리행사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전자증권제도¹⁷가 도입되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전자증권의 법적장부를 작성관리 및 권리행사 대행 등 전자증권 관련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동 제도는 실물 증권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시켜 주며 실물증권의 분실, 도난, 위조를 방지한다. 또한 자금 조달 및 주식 사무 처리 기간을 단축시켜 주고 증권거래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조세회피 등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다. 증권결제시스템(SSS)

증권결제시스템¹⁸은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팔면서 증권이 거래되면 증권을 인수하고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거래 쌍방이 채권과 채무를 이행하고 거래를 완결시키는 금융시장인프라이다. 증권결제시스템은 대금뿐만 아니라 증권도 이전되므로 특정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결제 실패의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증권거래와 대금결제 간 시차로 인해 리스크가 존재하고 결제불이행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여타 리스크도 추가로 발생

15.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CSD) : An entity that provides securities accounts, central safekeeping services and asset services, which may include the administration of corporate actions and redemptions,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helping to ensure the integrity of securities issues(that is, ensure that securities are not accidentally or fraudulently created or destroyed or their details changed), BIS CPSS(2016), Glossary

16. 증권을 직접 주고받지 않고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계좌 간 장부에 기록, 대체하는 방식

17. 기존 예탁제도가 실물이 병존하는 한계를 개선하고자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을 발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면 전자화하여 실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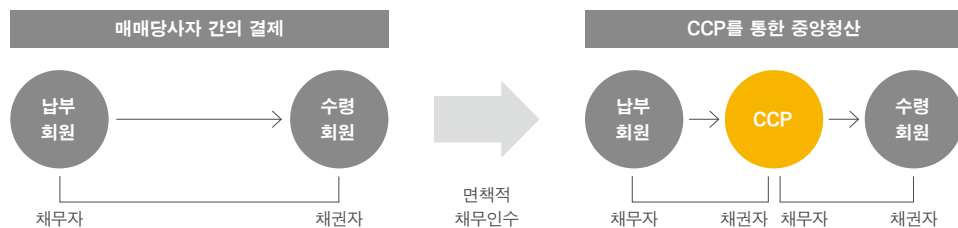
18.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SS) : An entity that enables securities to be transferred and settled by book entry according to a set of predetermined multilateral rules. Such systems allow transfers of securities either free of payment or against payment, BIS CPSS(2016), Glossary

할 수 있기 때문이다. PFMI에서도 증권결제시스템이 원금리스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증권대금동시결제(Delivery Versus Payment, DVP) 방식으로 중앙예탁기관의 증권결제시스템을 대금 결제은행의 자금 결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증권거래 시 증권의 실물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한다. 증권 인도시기와 대금 결제시기가 서로 달라 거래당사자 중 한 쪽이 계약을 불이행하면 발생하는 원금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결제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청산기관과 파생상품시장의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시장의 결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라. 중앙거래당사자(CCP)

증권시장에서는 증권거래일(T)로부터 이틀 후(T+2)에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매매체결 시점과 결제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상호 간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존재한다. 중앙거래당사자¹⁹는 증권결제시스템에서 단일 또는 복수의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계약의 거래당사자 간에 개입하여 모든 매도인에게는 매수인이 되고 모든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이 됨으로써 미결제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금융시장인프라이다. 중앙거래당사자는 청산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매매 체결된 거래의 안정적인 결제이행을 보증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면책적 채무인수(assumption of liability) 방식을 통하여 매매당사자 쌍방의 채권·채무를 행사하고 이행하는 상대방(counterparty)이 되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납부 회원에게서 채무를 인수해 수령 회원에게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중앙청산(centralized clearing)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 1-7〉 중앙거래당사자를 통한 결제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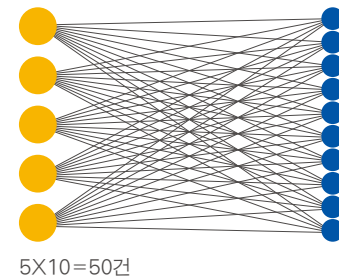
자료 : 한국거래소(2019), KRX 청산결제의 이해(재구성)

19. An entity that interposes itself between counterparties to contracts traded in one or more financial markets, becoming the buyer to every seller and the seller to every buyer and thereby ensuring the performance of open contracts, BIS CPSS(2016), Gloss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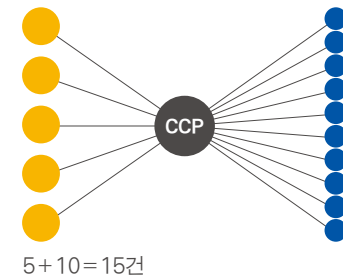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중앙거래당사자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참가자 간 개별적인 결제방식보다 중앙거래당사자로 결제가 집중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중앙청산소를 통해(다자간 차감방식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결제 규모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결제불이행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청산기관이 매도당사자에게는 매수자, 매수당사자에게는 매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해소되며 이는 금융회사의 연쇄적인 도산을 일으키는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거래당사자는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에 참가하기 때문에 증권의 신속한 매매가 가능하며, 거래당사자에 대한 정보 없이 거래할 수 있어 익명성이 보장된다.

〈그림 1-8〉 중앙거래당사자를 통한 결제의 효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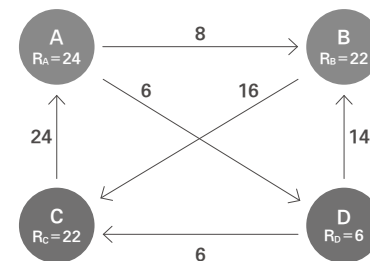
시장참가자 간의 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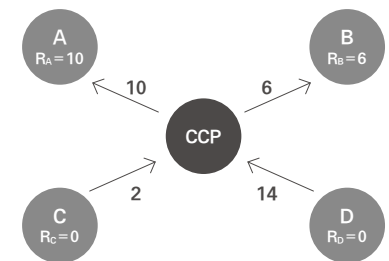
CCP를 통한 청산결제



CCP가 개입되지 않는 경우(양자 간 차감)



CCP가 개입되는 경우(다자간 차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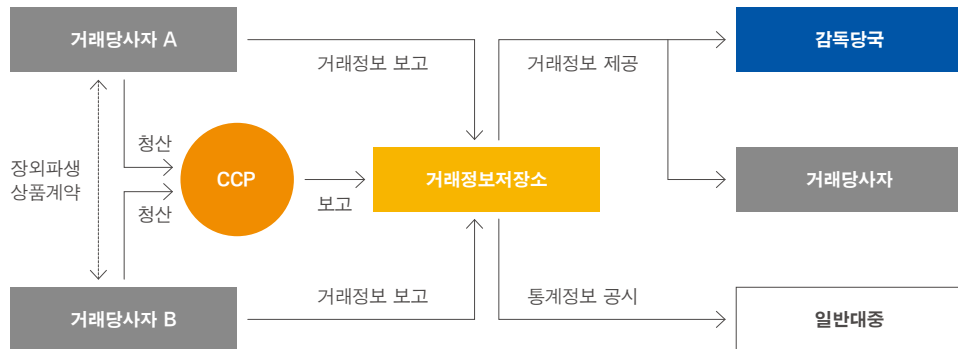


자료 : 한국거래소(2019), KRX 청산결제의 이해(재구성)

마. 거래정보저장소(TR)

거래정보저장소²⁰는 금융회사가 체결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정보를 중앙집중화하여 수집, 보관 및 관리하며 감독당국에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 대중에게 통계정보를 공시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그림 1-9〉 거래정보저장소의 주요 기능



거래정보저장소는 2009년에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의 투명성 제고 및 시스템리스크 완화를 위하여 거래정보의 거래정보저장소 보고 의무화를 합의하면서 신설되었다. Lehman Brothers 파산 시 미국의 증권예탁기관인 DTCC의 TIW(Trade Information Warehouse)는 거래정보저장소로서 거래정산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원활히 작동시켜 금융시장의 불안 확산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²¹ 국내에서도 국제적인 기준을 준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거래정보저장소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2015년 8월 한국거래소를 거래정보저장소로 최종 선정하였다. 이후 한국거래소가 2021년 4월부터 거래정보저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20. Trade Repository(TR) : An entity that maintains a centralised electronic record(database) of transaction data, BIS CPSS(2016), Glossary

21. 2006년 11월 미국 증권예탁기관인 DTCC의 자회사인 DerivSERV는 최초의 거래정보저장소인 Trade Information Warehouse(TIW)를 구축하고 신용파생상품에 대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한국은행(2011), 주요국의 장외파생상품시장 인프라 구축 동향과 시사점

〈표 1-4〉 장외파생상품시장 관련 2009년 G20 합의사항

구분	내용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 (all standardized OTC derivatives)	1. 가급적(where appropriate) 거래소 또는 전자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
	2. 중앙거래당사자를 통한 청산
모든 장외파생상품	3. 반드시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
청산기관에서 청산되지 않는 상품 (non-centrally cleared contracts)	4. 높은 수준의 자본요건(higher capital requirement) 적용

2.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BIS의 CPMI와 IOSCO는 금융시장인프라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인프라가 지켜야 할 원칙으로 PFMI를 공동으로 제정하여 공표(2012년 4월)하였다. 이 원칙은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이며 국제사회가 금융 안전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PFMI는 금융시장인프라가 준수해야 할 24개 원칙(principles)과 금융시장인프라를 감시하는 규제·감독·감시당국의 5대 책무(responsibilities)로 구성되어 있다.

가. 금융시장인프라가 준수해야 하는 24개 원칙

PFMI는 금융시장인프라가 준수해야 하는 24개 원칙을 ① 일반 조직, ② 신용·유동성리스크 관리, ③ 결제, ④ 중앙예탁기관 및 가치교환형 결제시스템, ⑤ 채무불이행 관리, ⑥ 일반사업·운영리스크 관리, ⑦ 접근, ⑧ 효율성, ⑨ 투명성의 9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① 일반 조직

원칙 1. 법적기반	금융시장인프라와 관련된 법역(法域) 내에서 금융시장인프라의 모든 업무 활동이 명확하고 투명한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
원칙 2. 지배구조	금융시장인프라는 공익을 추구하며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갖춰야 하며 이는 명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
원칙 3. 종합적 리스크관리 체계	법률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전한 리스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

② 신용·유동성리스크 관리

원칙 4. 신용리스크	금융시장인프라가 참가기관의 신용리스크 노출규모를 효과적으로 측정·감시·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신용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충분한 재무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
원칙 5. 담보	금융시장인프라는 신용리스크 노출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시장위험이 낮은 담보를 보유해야 한다는 원칙
원칙 6. 증거금	금융시장인프라가 신용리스크 노출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증거금 제도를 갖추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원칙
원칙 7. 유동성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노출규모를 효과적으로 측정·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충분한 유동자원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원칙

③ 결제

원칙 8. 결제완결성	금융시장인프라가 최종결제시점까지 명확하게 결제를 완료시킴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결제완결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원칙
원칙 9. 자금결제	자금의 최종결제는 중앙은행 통화로 결제되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을 철저히 관리하여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원칙
원칙 10. 실물 인도	금융시장인프라는 실물 금융자산 혹은 상품의 인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식별·모니터링·관리하여야 한다는 원칙

④ 중앙예탁기관 및 가치교환형 결제시스템

원칙 11. 중앙예탁기관	중앙예탁기관은 증권 발행에 있어서 신뢰성을 갖춰야 하며 증권의 보관 및 이전과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및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
원칙 12. 가치교환형 결제시스템	금융시장인프라는 2가지의 상호 연결된 채무의 결제를 수반하는 거래(예 : 증권, 외환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상호 간의 결제가 완결되는 것을 전제로 원금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는 원칙

⑤ 채무불이행 관리

원칙 13. 참가기관 채무불이행 관련 규정 및 절차	참가기관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금융시장인프라는 명확하게 정의된 규정과 투명한 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
원칙 14. 분리보관 및 계정이관	중앙거래당사자는 참가기관의 포지션 및 그 담보의 분리보관을 철저히 하며 계정이관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원칙

⑥ 일반사업·운영리스크 관리

원칙 15. 일반사업리스크	금융시장인프라는 일반사업리스크를 식별·모니터링·관리하여야 하며, 일반사업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동적인 순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는 원칙
원칙 16. 보관 및 투자리스크	금융시장인프라는 고유한 자산과 참가기관의 자산을 모두 보호해야 하며 그 자산에 접근하는 데 발생하는 리스크나 지연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
원칙 17. 운영리스크	운영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대내외 원인을 식별하고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며 절차 및 통제수단을 이용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

⑦ 접근

원칙 18. 접근 및 참가요건	금융시장인프라는 참가기관의 참가 허용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개방적인 참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
원칙 19. 계층적 참가제도	계층적 참가제도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를 식별·모니터링·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
원칙 20. 금융시장인프라 간 연계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금융시장인프라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모니터링·관리하여야 한다는 원칙

⑧ 효율성

원칙 21. 효율성 및 실효성	금융시장인프라는 참가기관과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효율성과 실효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
원칙 22. 통신 절차 및 표준	시스템 간 지급·청산·결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수용되거나 이에 준하는 통신 절차와 표준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원칙

⑨ 투명성

원칙 23. 규정·핵심 절차 및 시장 데이터의 공표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참가기관이 금융시장인프라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와 주요 절차는 공표되어야 한다는 원칙
원칙 24. 거래정보저장소의 시장 데이터 공개	거래정보저장소는 정확한 데이터를 관계기관 및 일반에게 시의적절하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합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원칙

나. 규제·감독·감시당국의 5대 책무

PFMI에 의하면 중앙은행, 시장규제기관 및 기타 관계 당국은 금융시장인프라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규제·감독·감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주요 책무는 5가지가 있으며, ①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규제, ② 규제·감독 및 감시 권한과 자원, ③ 금융시장인프라와 관련된 정책의 공개, ④ PFMI의 적용, ⑤ 다른 당국과의 협력으로 구분된다.

〈표1-5〉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중앙은행·시장규제기관 및 기타 관계 당국의 책무

책무 ①	금융시장인프라는 중앙은행·시장규제기관 및 기타 관계 당국에 의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규제·감독 및 감시를 받아야 한다.
책무 ②	중앙은행, 시장규제기관 및 기타 관계 당국은 규제·감독 및 감시에 관한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권한과 자원을 가져야 한다.
책무 ③	중앙은행, 시장규제기관 및 기타 관계 당국은 금융시장인프라와 관련된 규제·감독·감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책무 ④	중앙은행, 시장규제기관 및 기타 관계 당국은 PFMI를 채택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책무 ⑤	중앙은행, 시장규제기관 및 기타 관계 당국은 FMI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촉진함에 있어서 국내 및 국제적으로 적절히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다. PFMI 이행점검

BIS의 CPMI와 IOSCO는 PFMI를 제정하면서 BIS 회원국들에게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감시, 감독의 기준으로 동 원칙을 준용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중앙은행 및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이 동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며 인프라시스템이 개선되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전 세계 회원국들이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원칙을 동시에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여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를 위해 CPMI와 IOSCO는 회원국 등 28개 사법 권역을 대상으로 PFMI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표1-6〉 PFMI 이행점검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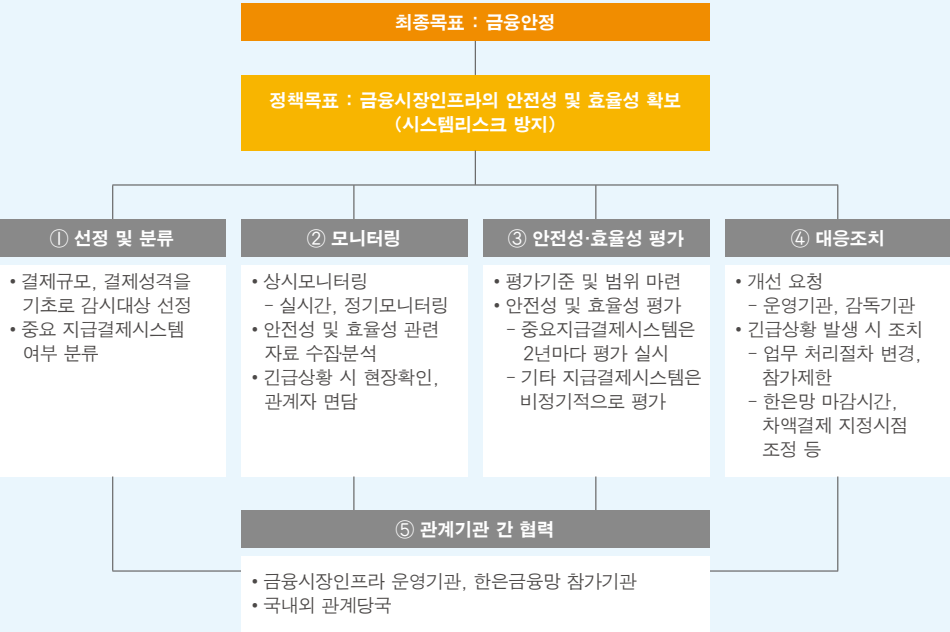
Level 1
각국이 법규 제·개정 또는 정책 변경 등을 통해 금융시장인프라의 24개 원칙 및 5대 책무를 법규체계에 반영했는지의 여부(BIS의 상설 실무그룹이 검토하는 방식)
▼
Level 2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규제체계의 내용이 PFMI의 내용에 맞게 완전히 수립되었는지의 여부(국가별 평가팀의 동료평가(peer review) 방식)
▼
Level 3
각 회원국이 수립한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원칙이 이행되어 모든 평가대상국에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는지의 여부

〈Box1-2〉 한국의 금융시장인프라 감시지침서

한국은행은 2017년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감시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인프라 감시지침서를 발간했다. 이는 BIS가 제정한 국제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상황에 맞게 만든 것으로 감시업무 수행 시 적용할 상세한 평가 기준이다. 이 감시지침서는 유동성리스크, 신용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준거로 삼아야 하는 24개 원칙과 동 원칙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115개 핵심 고려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감시지침서를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에 배포하여 자체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아래와 그림과 같이 ① 감시 대상 금융시장인프라의 선정 및 분류, ② 모니터링, ③ 안전성·효율성 평가, ④ 개선요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⑤ 국내외 관계 당국 등 기관 간 협력 등 5가지 형태의 감시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인프라 감시업무수행



자료 : 한국은행(2017), 금융시장인프라 감시지침서 제도의 이해

4절 지급결제의 중요성

1. 경제성장의 원동력

경제활동이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며, 소비(지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경제주체가 생산활동의 대가로 소득을 얻으며 그 소득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소비하고, 다시 생산활동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지급결제는 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지급인과 수취인 간의 수많은 채권·채무 관계를 원활하게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자금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전은 소비를 촉진하고 상거래 등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²²

예를 들면, 소비자는 온라인이나 매장에서 쇼핑을 할 때 다양한 지급수단을 활용해 편리하고 빠르게 결제함으로써 구매 활동의 편의성을 높여 소비를 촉진할 수 있고, 기업과 정부는 판매대금 회수와 세금 징수 등의 과정에서 결제에 소요되던 기간을 단축시켜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다.

오늘날 디지털 혁신의 영향으로 정보통신기술이 금융과 융합되어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지급수단인 어음·수표, 카드 등에서 전자지갑 등 모바일 기반 지급수단으로 발전하면서 기존 지급수단의 발행, 유통,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감축하고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융 네트워크산업, 정보통신산업, 그리고 POS단말기 및 CD/ATM 기기산업 등 다양한 지급결제 연관 산업들도 상호 발전함으로써 시장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시켰다. 게다가 최근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자본시장이나 외환시장에서도 국내외 금융거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의 연계가 활발히 진행²³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간 대외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2. 정주봉(2013), 소액결제시스템의 금융경제적 효과, 금융결제원

23. 2020년 2월 G20 중앙은행 총재·재무장관 회의는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개선을 최우선 협력 과제로 선정하고 국제기구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주문하였으며, BIS, FSB 등은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개선방안(2020. 7.)과 종합 추진 로드맵(2020. 10.)을 발표하였다. 한국은행(2021), G20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이와 같이 지급결제는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 인프라로서 지급수단, 지급결제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관련기관들이 상호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원하며 지급결제 서비스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이는 결국 경제활동의 활성화로 이어져 국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도 기여하는 선순환의 효과를 일으킨다.²⁴

2. 금융혁신 주도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을 통해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혁신이란 오래된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이란 금융거래와 관련된 제도적 틀과 수행방식 및 거래수단 등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혁신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및 금융 제도상의 혁신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최근 금융혁신이 촉발된 요인 중 하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의 이용률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갖춘 핀테크 기업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핀테크 기업이 금융 산업에 진출하면서 은행의 예금, 대출, 자산관리, 결제 및 송금 등 전통적인 영업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글, 애플,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ICT 기업들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였고, 이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금융생태계가 확장되어 지급결제서비스 경쟁도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소비의 주체로 떠오른 MZ세대²⁶들이 SNS로 송금하거나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에서 자금을 미리 충전해 결제하는 것에 익숙한 점, 이들의 약 90%가 금융거래 시 온라인 채널을 활용²⁷한다는 사실 등이 디지털 금융혁신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4. Key innovations in money and payments have unleashed latent demand for new types of economic activity that have led to dramatic spurts of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BIS(2023), Annual Economic Report

25. 이종건(2018), 금융혁신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26.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틀어 지칭하는 대한민국의 신조어다. 일반적으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출생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27. 우리은행(2022), 모티즌(Motizen)인 MZ세대의 금융플랫폼 이용행태 분석

물론 핀테크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 은행 역시 혁신의 일환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의 전자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현금자동인출기의 도입부터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으로 채널이 확대되며 이미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되고 있었다. 그러나 핀테크 기반 금융혁신과 차별화되는 이유는 기존에는 금융이 정보통신기술을 도구로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온라인화하거나 업무를 자동화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의 금융혁신은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방식이나 절차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의 출현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⁸

핀테크 사업 분야는 크게 지급결제, 자금중개 및 자산거래, 자산관리, 인터넷전문은행 등 4개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표1-7〉참고). 이 중에서도 일반 소비자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핀테크서비스가 바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에서 제공하는 지급결제 분야의 서비스이다.

〈표1-7〉 핀테크서비스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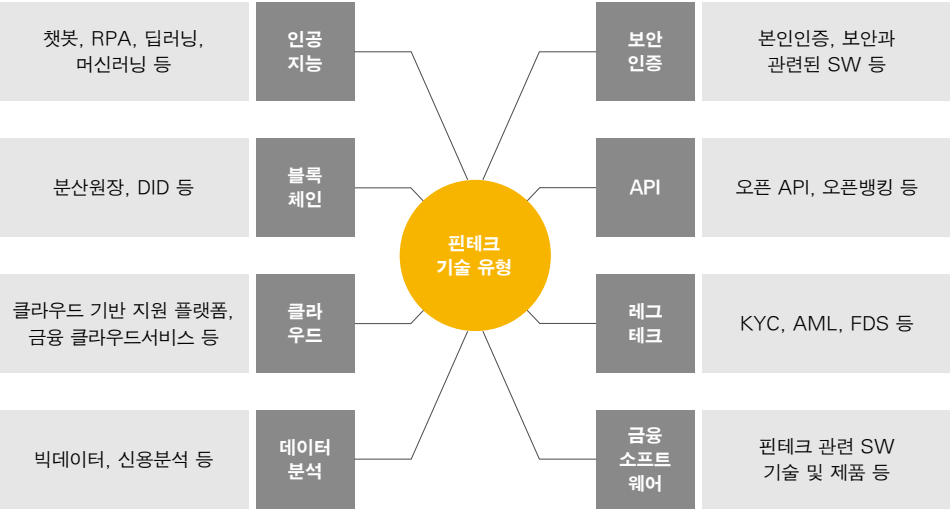
구분		내용
지급결제	간편결제, 간편송금	간편인증을 통해 온·오프라인 대금결제 및 온라인 송금서비스
	해외송금	국외 송금, 교역 대금 지급에 따른 자금 이체 등
자금중개 및 자산거래	P2P 대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공하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등 서비스
	크라우드펀딩	초기 창업자 등 자금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서비스
	자산거래 플랫폼	주식, 부동산(유동화증권 포함),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자산관리	개인금융관리	개인의 소득, 소비 등을 바탕으로 지출과 저축 등 금융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산을 배분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자산관리서비스
	금융상품 추천·중개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 신용정보 등을 바탕으로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 또는 중개해 주는 서비스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온라인 기반의 은행서비스

자료 : KISA, 한국핀테크지원센터(2020), 2019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편람

28.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기존 금융시스템과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금융산업 혁신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서비스로 무장한 핀테크 기업에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도 지금의 핀테크가 주목받게 된 배경 중 하나이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2020), 헬로 핀테크

기술의 발전은 기기·애플리케이션 등을 개선하여 금융서비스를 더욱 개인화하고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ML), 블록체인 등과 같은 4차 산업 관련 기술은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더욱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핀테크는 이러한 정보통신 및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은행의 전통업무에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빠르고 편의성이 극대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객 중심의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고객 여정(customer journey)을 원활히 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차별화된 경험도 제공한다.

〈그림1-10〉 핀테크 기술 유형



자료 : KISA, 한국핀테크지원센터(2020), 2019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편람 ; 한국핀테크지원센터(2023), 헬로 핀테크(재구성)

이와 같은 생태계 변화는 은행에게 또 다른 혁신 유인 동기로 작용하여 금융산업 내 새로운 차원의 경쟁 환경을 만들었으며 금융권뿐만 아니라 비금융회사도 포함하여 업권을 넘어서는 경쟁을 촉발하였다. 2024년 5대 금융지주의 경영 핵심 전략 또한 ‘디지털 금융 강화’인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은행으로 하여금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역량 제고 등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핀테크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서 각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다. 우리나라도 핀테크 육성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²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핀테크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규제 특례를 부여받고 시장에 출시하여 시범운영도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은 2022년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소통 확대 및 실무 협력 강화를 위한 ‘오픈핀테크 얼라이언스’를 출범하였으며, 신기술 및 서비스 공유 등 신사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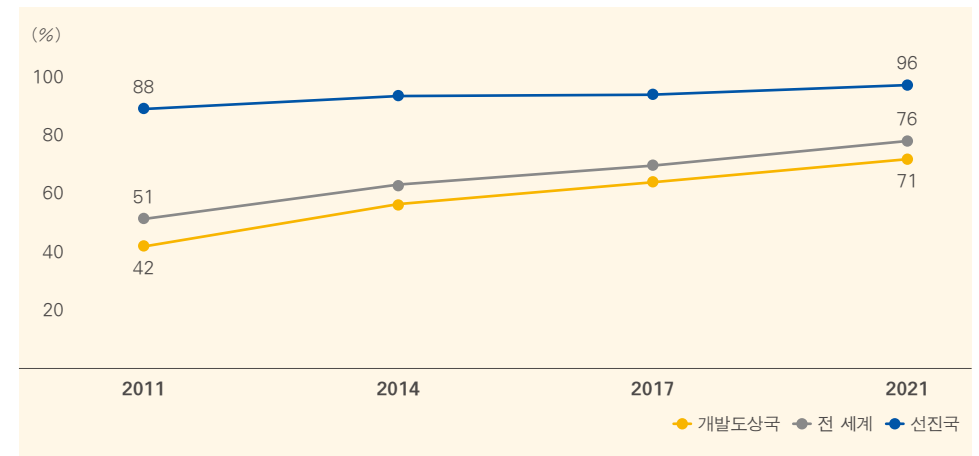
3. 금융포용성 확대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이란 모든 경제주체가 저축, 지급결제, 신용,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정당한 비용으로 접근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포용은 특히 저소득층, 고령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합당한 품질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후생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엔(UN)은 2015년에 전 세계 빈곤을 종식시키고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17가지 목표’를 발표하였으며, 이 중 빈곤 퇴치, 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한 실질적 방안 중 하나로 금융포용을 제시하였다.³⁰⁾ 금융포용을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 방법으로서 핀테크의 역할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 왔다. G20의 GPMI³¹⁾는 ‘금융포용 액션플랜(financial inclusion action plan)’을 마련하여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는데,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금융접근성 확대가 그중 하나이다.³²⁾

29.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규제로 인한 사업화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9년 4월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시행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규제신속확인제도로 나뉜다.
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trengthen the capacity of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to encourage and expand access to banking, in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 for all. UN(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Target 8.10)
31. GPMI(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G20 및 비 G20 국가, 국제기구 등을 유기적으로 엮는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해 발족되었다.
32. The action areas – which will form the basis for deciding each year’s deliverables – for the period 2024/2026 are to : Encourage responsible, scalable and affordable technology and innovations for advancing the financial inclusion of individuals and MSMEs. GPMI(2023), 2023 Financial Inclusion Action Plan

세계은행(World Bank)은 금융접근성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 계좌 보유율을 활용한다. 은행 계좌를 보유한다는 것은 금융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첫 관문으로서 저축, 송금, 대출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등 다양한 경제활동까지 이어지므로 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2021년 기준으로 계좌를 보유한 세계 인구의 비중은 76%이고, 이는 10년 전 51% 대비 약 50% 상승한 수치이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계좌 보유율 또한 2011년 42%에서 2021년 71%로 확대되었으며,³³⁾ 이러한 계좌 보유율의 상승에는 모바일 금융 확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수는 약 44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 대비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이 되면 64%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³⁴⁾ 이와 같이 모바일 인프라의 빠른 확산이 모바일 기반의 핀테크 서비스 성장을 견인하였고,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다.³⁵⁾

〈그림1-11〉 전 세계 계좌 보유율 추이



자료 : World Bank Group(2021), The global index database

핀테크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지리적, 경제적 장벽을 허물어 금융포용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간 지리적 제약, 높은 서비스 비용 등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던 은행서비스 소외자(unbanked)가 다양한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 접근성이 매우 낮고 현금 소지 시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성이 큰 아프리카에서는 모바일 금융서비스의 혁신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모바일 송금서비스인 엠페사(M-Pesa)는 은행 지점이 수백 개에 불과

33. World Economic Forum(2022. 1. 28.), 4 things to know about financial inclusion around the world right now

34. GSMA(2023. 2.), The Mobile Economy 2023

35. World Bank Group(2021), COVID-19 Drives Global Surge in use of Digital Payments

할 정도로 금융인프라가 부족한 케냐에서 2007년 탄생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케냐 인구의 80%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Send Money home’이라는 슬로건에 담긴 뜻대로 초기에는 도시 근로자가 농촌지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한 개인 간 송금서비스에 중점을 두었다. 동네 잡화점이나 소매점 등 엠페사 로고가 붙어있는 에이전트 어디에서나 돈을 송금하고 인출할 수 있었다. 이후 엠페사는 사업 영역을 넓혀 2021년에는 계정 소유자의 약 74%가 개인 간 송금서비스 이외에도 결제, 소액대출 및 보험가입과 같은 광범위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³⁶ 엠페사의 대대적인 성공 이후 에어텔(Airtel), 티고페사(TigoPesa) 등 또 다른 모바일머니가 잇달아 출현하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중국은 지리적인 제약 등으로 인해 유선전화 보급이 늦어진 상황에서 2000년 후반에 이르러 무선전화가 대신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모바일 결제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에 은행 중심 지급결제인프라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알리페이 등의 빅테크 기업이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핀테크 금융혁신을 주도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성인 10명 중 8명이 간편결제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성인 10명 중 2명만이 간편결제를 이용³⁷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핀테크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고, 고객들의 변화된 요구에 맞춤형된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면서 금융포용을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36. World Bank(2021), The global index database

37. World Bank(2021), The global index database

지급수단



지급수단은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전하여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거래수단이다. 지급인과 수취인 간 관계나 거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다양한 지급수단이 이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현금과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금은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지급수단으로서 지폐와 주화로 구분된다. 상거래의 규모가 확대되고 거래 지역도 광범위해지면서 자금결제 활동이 빈번해지자 거래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를 현금으로만 처리하기에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아 현금의 대체수단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비현금 지급수단은 은행 등 지급수단 제공사업자¹가 제공하는 은행 계좌, 신용카드나 선불카드 계정, 모바일머니 제공자 계정 등에 기반(account-based)하여 자금 이체가 이루어진다. 계정 발행자가 계정 소유자에게 해당 계정 내 금전 가치에 대해 지급을 보장(promise)하는 지급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² 비현금 지급수단은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대면·비대면 거래 시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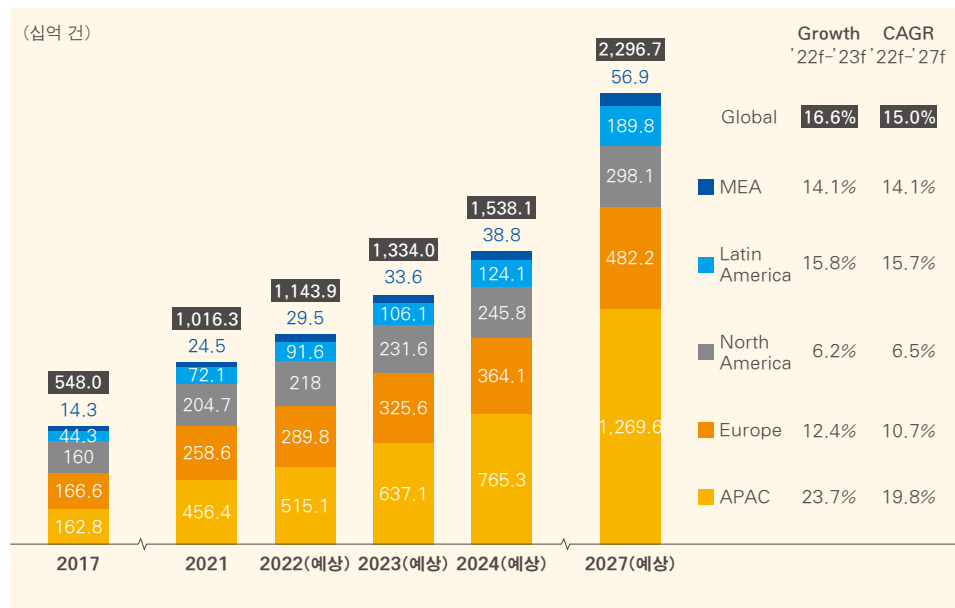
1. 은행, e-money 발급자, 여타 라이선스를 가진 기관 등으로 FSPs(Financial Service Providers)를 말하며, 이들이 제공하는 계정을 거래계정(거래계좌, transaction account)이라고도 한다. 즉, 은행이나 관련 라이선스를 갖춘 비은행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통화로 표시된 거래계정을 통해 지급거래에서 자금을 주고받는 데 이용할 수 있다. Glenbrook(2020), Global Payments

2. 어음·수표, 입·출금이체, 지급카드 등 비현금 지급수단은 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예금 등을 연결계좌로 사용한다.

또한 비현금 지급수단이 장표 기반뿐만 아니라 전자화된 비장표 기반 지급수단으로 확대되면서 은행 지점 창구 외에 CD/ATM, 컴퓨터, 전화,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접근채널(access channel)이나 접근매체(access device)³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현금 지급거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만큼 이용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그림2-1>과 같이 2021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비현금 지급거래 규모는 1조 160억 건에 달했고 2027년에는 2조 2,970억 건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현금 지급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연평균 성장률이 23.7%이고, 세계 비현금 결제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결제 관련 인프라가 미비했던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QR결제 및 개인 간 송금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국가간 연계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싱가포르 PayNow와 말레이시아 DuitNow 결제시스템 간 연계 사례가 그중 하나다.

<그림2-1> 글로벌 비현금 지급거래 규모



주1) MEA : Middle East and Africa(includes Saudi Arabia, UAE, Israel, South Africa, and other GCC as well as African countries)

주2) APAC : Asia Pacific(includes India, China, Japan, Singapore, South Korea, Hong Kong, Australia, and other South East Asian markets)

주3)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 성장률

자료 : Capgemini(2023), World Payments Report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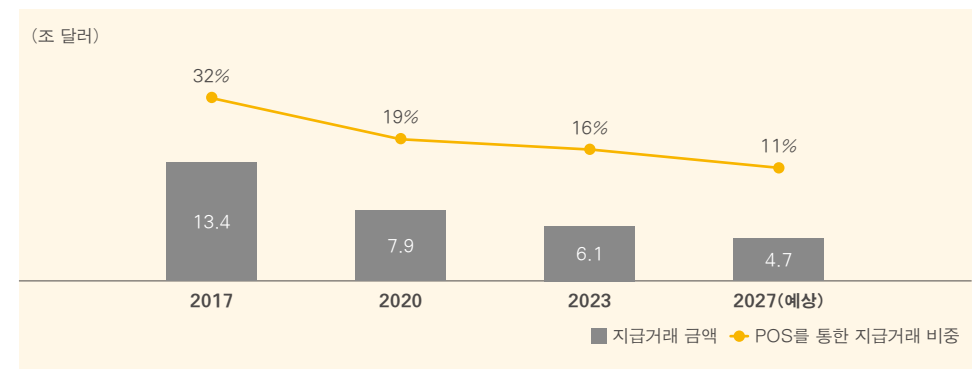
3. 접근채널은 지급의 개시나 수취를 위해 지급인·수취인을 지급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결하는 통로로, 지급인은 가장 전통적 접근채널인 은행 지점 외에 ATM, POS, 인터넷 채널을 통해 지급지시를 할 수 있다. 접근매체는 접근채널에 도달하기 위한 매개체로 유선전화, 모바일폰, 컴퓨터, 지급카드 등이 있다. BIS(2012), Innovations in retail payments

1절 현금

현금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해 온 전통적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오늘날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폐·주화를 일컫는 실물형 기반(token-based)⁴ 지급수단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화폐의 발행권을 가지고 있으며,⁵ 4종의 지폐(천, 오천, 만, 오만 원권)와 6종의 주화(일, 오, 십, 오십, 백, 오백 원화)가 유통되고 있다. 현금은 장표(종이) 기반이기 때문에 실물 유통에 따른 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도난 위험 등의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예금계좌나 스마트폰 등 별도의 접근채널 없이도 이용할 수 있고 거래의 익명성(anonymity)이 보장된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무엇보다 현금의 가장 큰 특성은 금융회사의 개입 없이 지급·수취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면 거래 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급인의 지급과 동시에 수취인이 직접 수령하고 즉시 사용도 가능한 최종 결제자산으로서 금융회사 간 청산이나 결제과정이 수반되지 않는 지급수단이다.⁶

이처럼 현금은 익명성, 결제 신속성 그리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포용성이 높은 지급수단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지급결제시장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되면서 그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현금거래 금액은 6조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는 전체 지급거래 중에서 약 16%를 차지한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접어들어 2027년에는 1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⁷

<그림2-2> 글로벌 현금 지급거래 규모



자료 : FIS, The Global Payments Report 2024

4. In token-based payments, value is held in discrete tokens. Cash is the prime example.

Glenbrook(2020), Global Pay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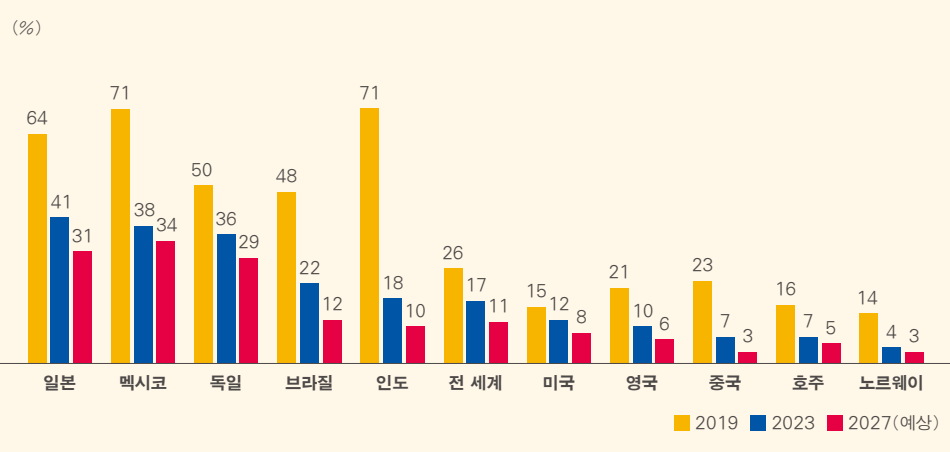
5. 「한국은행법」 제47조(화폐의 발행)에 따르면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6. Cash is a self-clearing and self-settling payment method. Glenbrook(2020), Global Payments

7. 한편 현금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와 소비활동 저하 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이들에 대한 현금접근성 유지 및 보장을 위한 정책적 고려도 최근 스웨덴, 영국 등에서 시작되고 있다. 한국은행(2020), 최근 현금 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또한, 2023년 영국, 중국, 호주, 노르웨이 등에서는 현금 결제가 이미 10% 이하 수준이며, 2027년까지 미국과 인도 등에서도 현금거래 비중이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⁸

〈그림2-3〉 주요국 현금 지급거래 규모



자료 : FIS(2024), The Global Payments Report

한편, 현금은 익명성으로 인해 은닉이나 탈세 등 불법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부 국가에서는 현금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표2-1〉과 같이 유럽 주요 국가들은 현금거래 한도를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24년 유럽 의회는 EU 회원국 공통으로 현금거래 한도를 최대 1만 유로로 제한하고, 국가별로 더 낮은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⁹

8. FIS, The global payment report 2024
9. European Parliament(2024. 4.), New EU rules to combat money-laundering adop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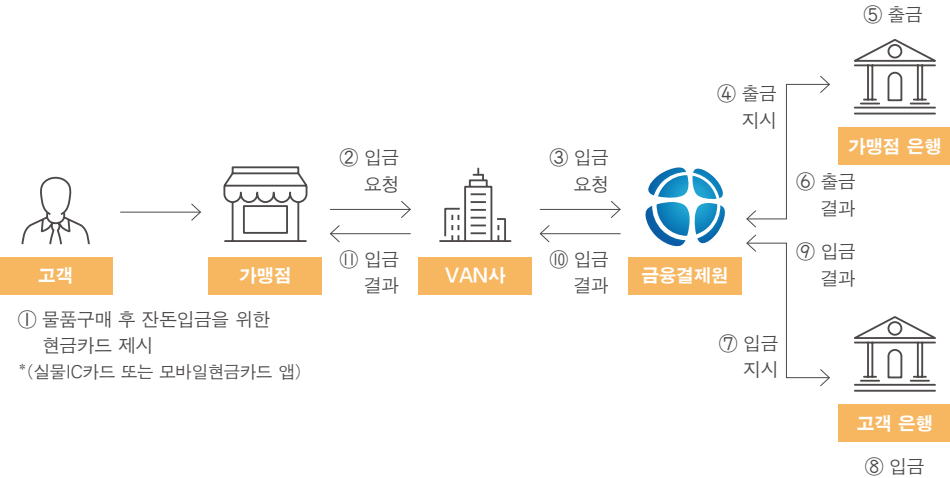
〈표2-1〉 유럽 주요 국가별 현금거래 한도

구분	내용
벨기에	- €3,000(물품·서비스 기준), 부동산 대금의 현금거래 금지 - 벌금 €250~€225,000 부과
핀란드	- 동전·고액권 거부 가능, 단, 판매자는 지급수단 제한내용 명시 필요
프랑스	- 거주자 €1,000·비거주자 €10,000 한도 - 부동산 목적으로는 €30,500, 세금 목적으로는 €300 한도 - 동전 수는 거래당 50개 초과 시 거부 가능
스웨덴	- 계약에 따라 제한 가능, 단, 판매자는 지급수단 제한내용 명시 필요 -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현금 사용 제한 - 2030년까지 현금 퇴출 목표 수립
영국	- 약 €10,000 이상 현금거래 시 사업자는 당국에 등록 필요

자료 : European Consumer Centre Germany(2024), Cash payment : Cash limits in Europe

우리나라도 비현금 지급수단 사용이 보편화되어 2021년 10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주요 도시에서 현금 없는 버스가 운영되고 있고, 현금 없는 매장이 확산되는 등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유럽 국가들처럼 현금거래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정책보다는 동전 없는 사회(coinless society)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거스름돈(잔돈)을 은행계좌 기반 현금카드를 통해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는 잔돈적립서비스가 그 대표적인 예다.

〈그림2-4〉 현금카드를 이용한 계좌 입금방식 잔돈적립서비스



반면, 미국,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의 현금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소매점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거나¹⁰ 은행의 현금 취급을 의무화¹¹ 하는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제생활을 보호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화폐유통시스템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¹²

2절 어음·수표

비현금 지급수단 중 장표 기반 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어음과 수표는 일정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발행된 유가증권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미리 증서로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받는다든 점에서 어음과 수표는 유사한 제도이긴 하나, 어음이 채무를 일정 기간 후에 변제한다는 신용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한 반면, 수표는 상거래에서 현금 수수의 불편함을 덜기 위한 지급수단으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여 어음에 비해 높은 유동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다양한 어음·수표가 있지만 가장 일반화된 것은 약속어음과 환어음, 자기앞수표와 당좌수표를 들 수 있다. 약속어음이란 발행인이 일정 금액을 일정시기·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한 어음이다. 따라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발행인은 채무자가 되고 수취인은 채권자가 된다. 어음소지인은 어음 만기일에 거래은행에 어음대금을 받아달라고 추심(推尋) 의뢰하거나 발행 은행에 가서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추심 의뢰를 받은 거래은행은 발행인의 거래은행으로 추심한다. 어음금액을 지급할 은행은 어음원본을 회수하고 발행인의 당좌예금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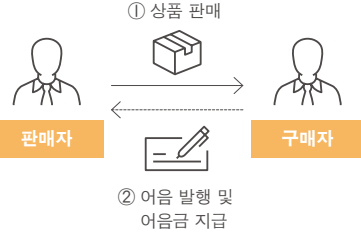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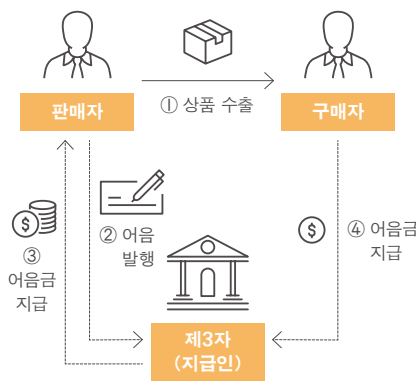
반면, 환어음이란 어음의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 지급해 줄 것을 위탁하는 증서이다. 대부분 국제 매매계약에서 현금으로 대금결제를 하기 힘든 수출업자들이 수출대금의 회수를 위해 환어음을 발행하고 있다.

10. 미국 뉴저지 법령 「New Jersey Statutes」에는 상점에서 재화 및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구매자에게 신용지급을 요구하거나 현금수취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구매자가 지급수단으로 법정통화를 제시하면 이를 수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Consumer Fraud Act」(Section 56:8-2.33)

11. 현금사용 강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덴마크 지급서비스법상 현금규칙(cash rule)이다. 무인점포 등 현금취급이 불가능한 경우나 범죄취약시간대를 제외하고 지급카드를 받는 점포는 반드시 현금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12. 화폐유통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공급자(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중개자(금융회사, 현금수송회사), 소비자(소매유통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유관기관, 소비자 유관기관) 등 23개 기관으로 구성된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가 2022년 8월 발족되어 운영 중에 있다.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 11. 7.), 2023년 하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

〈표2-2〉 어음 종류별 특징

구분	약속어음	환어음
설명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일정한 일자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발행	제3자(인수인)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증서로 채권자가 발행
흐름도		
발행인	채무자	채권자
지급인	채무자	제3자
사용처	국내 거래	수출입 거래

한편, 수표는 채무자(수표 발행자)가 지급인(금융회사)으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수표상의 권리자(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발행인이 지급인, 수령인, 지급액을 적은 수표를 발행해 수령인에게 주면, 수령인은 수표를 정산해주는 지급인을 통해 현금을 지급받는다. 수표에는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가계수표가 있다. 이 중 자기앞수표는 정액권 자기앞수표와 비정액권 자기앞수표로 구분되는데 정액 수표에는 10만 원권, 30만 원권¹³, 50만 원권, 100만 원권 4종이 있다.

〈표2-3〉 수표 종류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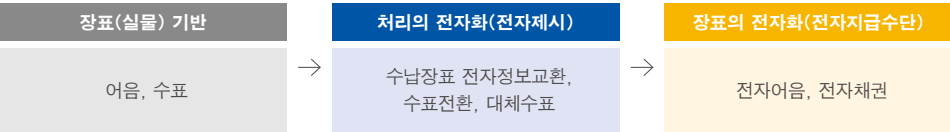
구분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가계수표
발행인	은행	법인, 단체, 개인 (사업자등록증 소지)	개인 및 자영업자
장당 발행한도	정액 : 10, 50, 100만 원 비정액 :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개인 : 100만 원 자영업자 : 500만 원

13. 전국은행연합회 수신헌문위원회는 2000년 12월 1일부터 30만 원권 자기앞수표의 발행을 중지하였으며, 동 수표가 소진될 때까지 자연 폐지를 유도하였다.

어음·수표와 같은 장표 기반 지급수단은 과거에 장표의 발행에서부터 교환과 결제 처리를 위한 실물의 이동, 보관까지 수(手)작업 위주의 처리과정이 필요하였다. 이에 처리방식이나 실물의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개선노력이 지속되었다. 그 시작은 1950년에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MICR¹⁴ 시스템 도입으로 수표의 기계인식 및 처리가 가능해지면서부터이다. 그러나 MICR 방식의 도입으로 어음·수표의 처리는 기계화되었지만 교환·결제 시까지 실물의 이동은 여전히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후에는 전산망을 이용한 전자정보의 형태로 교환·결제할 수 있는 전자적 제시 방법들이 도입되었다. 수납장표 전자정보교환(truncation), 미국의 대체수표(substitute check)¹⁵와 수표전환(check conversion)¹⁶ 방식이 대표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어음·수표는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자 청산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결제원에서 실물교환 방식이 아닌 이미지 교환 및 정보 교환 방식을 거쳐 은행 간 차액결제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장표 기반 지급수단은 실물의 존재를 전제로 전산화를 통한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며 발전하여 왔다. 1990년대 이후 신용카드, 계좌이체와 같은 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어음·수표도 발행 과정을 전자화하여 전자지급수단으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실물이 아닌 전자정보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장표의 전자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전자어음, 전자채권 등이 이에 해당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대만 등 주로 아시아 국가에서 이용되고 있다.

〈그림2-5〉 장표 기반 지급수단의 전자화



2000년대 이후에는 IT의 발달과 함께 지급수단의 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림2-6〉과 같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요 국가에서는 어음·수표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당시 수표처리시스템의 처리 속도가 중산층의 수표 사용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태가 빈번해지자 수표의 중요 정보에 자기잉크문자인식(MICR) 방식을 도입하여 수작업에만 의존하던 처리절차를 상당 수준 기계 처리화하였다.

15. 수표를 이미지로 정보화하여 교환·결제하는 방식이다.

16. 수표 수취 장소에서 바로 전자정보로 제시되는 방식으로 가령 소비자가 상점에서 물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 후 수표를 제시하면 상점에서 MICR 스캐너를 이용하여 수표정보를 전자정보로 변환하여 상점의 거래은행을 통해 전자자금이체망(ACH)으로 이체하는 방식이다.

〈그림2-6〉 주요국 수표 발행 규모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 BIS(2024), Statistics Explorer, payments and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3절 계좌이체

계좌이체¹⁷는 지급인과 수취인 간에 지급수단을 직접 실물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은행을 통하여 전자방식으로 지급인 계좌에서 수취인 계좌로 자금이전이 이루어지는 지급수단이다. 수취인 앞으로 자금이 이전되도록 요청하는 지급 거래 개시 즉, 지급지시¹⁸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입금이체(credit transfer)와 출금이체(debit transfer)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¹⁹

〈그림2-7〉 계좌이체 거래 기본 방식



입금이체는 지급지시와 그에 따른 자금의 이전이 모두 지급인 거래은행에서 시작하여 수취인 거래은행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일상적인 송금서비스가 입금이체 거래에 해당한다. 입금이체는 지급인의 지급지시가 일어나면 우선 지급인 거래은행이 지급인 계좌에 송금할 금액이 충분한지를 점검하며 만약 지급개시 시점에 자금이 부족하다면 거래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제리스크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출금이체는 지급지시가 돈을 받아야 하는 수취인에게서 역으로 시작되어 지급인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수취인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추심이체라고도 통칭된다. 통신 요금이나 카드 대금 수납을 위해 수납기관의 지급지시 요청으로 약정일에 지급인의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어 수납기관 계좌로 입금되는 자동이체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지급지시를 수취인이 하는 출금이체는 지급인 계좌의 자금확보 여부를 수취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취인이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²⁰ 또한 출금이체는 수취인이 반드시 지급인으로부터

17. 자금이체라고도 하며, 타행 간 이체는 물론 자행 내 이체도 포함한다.

18. 수취인 앞으로 자금(통화성 청구권 형태)이 이체되도록 요청하는 지시나 메시지를 말한다. BIS CPSS(2003), Glossary

19. 돈을 수취인(채권자)에게 보내고자 하는 지급인(채무자)이 지급거래를 개시하는 것을 push형 거래(입금이체), 채무자인 지급인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하기 위해 채권자인 수취인이 지급거래를 개시하는 것을 pull형 거래(출금이체)라고도 한다.

20. 수표, 카드도 출금이체 거래에 해당한다. 예컨대, 수취한 수표를 은행에 입금하면 수표 발행자로부터 자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출금에 대한 사전동의²¹를 얻어야만 출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입금이체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계좌이체는 CD/ATM,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접근채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되는 접근채널 유형에 따라 CD/ATM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및 텔레뱅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 기반으로 개인·기업 간 또는 기업 간 대량의 자금 지급 및 수납을 위한 지로(Giro)와 CMS(Cash Management Service)²² 서비스가 있다. 2023년 중 우리나라 계좌이체 연간 처리규모는 일평균 92조 7천억 원으로 전년(91조 8천억 원) 대비 1.0% 증가하였다.

〈표2-4〉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계좌이체서비스 일평균 이용 규모

(조 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주1)}
전자금융공동망 ^{주2)}	65.3	78.8	83.5	84.3	(1.0)
- 인터넷뱅킹 ^{주3)}	29.7	37.4	38.3	39.5	(3.2)
- 펌뱅킹 ^{주4)}	25.6	30.4	33.8	34.2	(1.1)
- 기타 뱅킹 ^{주5)}	10.0	11.0	11.4	10.6	(-6.9)
여타 공동망	7.5	8.4	8.3	8.4	(1.1)
- 지로시스템	1.0	1.1	1.2	1.2	(5.4)
- 타행환공동망	5.2	5.5	4.9	4.6	(-5.4)
- CD공동망 ^{주6)}	0.6	0.5	0.4	0.4	(-15.4)
- 오픈뱅킹공동망 ^{주7)}	0.3	0.9	1.4	1.7	(25.3)
- CMS시스템 등	0.4	0.4	0.5	0.5	(2.9)
합계	72.8	87.2	91.8	92.7	(1.0)

주1) ()는 전년 대비 증감률

주2) 타행이체 기준

주3) 모바일뱅킹 포함

주4) 급여지급, 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법인용 금융거래시스템

주5) 텔레뱅킹, PC뱅킹, TV뱅킹 등

주6) CD·ATM을 이용한 자금이체로 현금 입·출금서비스 제외

주7) 입·출금 각각 합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4. 3.), 2023년중 국내 지급결제동향

21. 수표나 카드도 거래 시 서명이나 PIN 입력을 하는 이유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출금이체에서 지급인으로부터 사전 출금 동의를 얻는 것은 부당출금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서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를 통해 추심이체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22. 지로와 CMS 모두 기업(이용기관)이 다수의 고객과 자금이체를 통해 대량의 자금을 출금하거나 입금하는 방식은 동일하나 이용 자격, 자금 이체기일 등에서 차이가 있다.

4절 지급카드

가장 대표적인 비현금 지급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지급카드는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급수단이다. 실제 자금의 지급은 그 카드와 연계된 은행 계좌에서 이루어지며 구매대금의 지급 시점에 따라 후불카드, 직불카드 그리고 선불카드로 구분된다.

또한, 카드 내 정보 기록방식에 따라 MS(Magnetic Stripe) 카드와 IC(Integrated Chip) 카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MS 카드는 취약한 보안성으로 인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카드 보안 관련 국제 표준인 EMV(Europay Mastercard Visa) 표준에 따라 제조된 칩이 부착된 IC 카드로 대체되고 있다. IC 카드는 내부구조와 사용 방법에 따라 접촉식과 비접촉식으로 나뉜다.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는 주로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해서 사용하는 접촉식이며, 교통카드는 대표적인 비접촉식에 해당한다.

지급카드 거래에는 어음·수표나 계좌이체와 다르게 많은 참여자가 관여하여 운영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카드 회원(카드소지자)과 가맹점 외에 카드 발급사, 매입사, 네트워크 운영사 등이 참여하게 된다. 다만, 국내의 경우 전업계 카드사를 중심으로 카드 발급사가 매입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거래구조인 반면, 해외는 카드 발급사와 매입사가 분리되어 있고 네트워크 운영사가 이들을 연결하여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거래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국가마다 표현하는 용어는 다르지만, 카드사와 가맹점 간에 카드거래 승인업무를 중계하고 매입업무 등을 대행 처리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VAN(Value Added Network) 사업자와 같은 업체들이 있다.

네트워크 운영사가 참여하는 카드거래는 일반적으로 승인 → 정산 → 결제과정을 거친다. 승인(authorization)은 대금결제를 위해 가맹점에 제시한 이용자 카드가 사용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²³ 승인이 완료된 거래내역은 네트워크 운영사의 자금정산 작업²⁴을 통해 매입사와 카드 발급사로 전송된다. 가맹점 앞 판매대금의 입금은 매입사를 통해 카드 회원의 이용대금 납부 전에 정산 주기별로 먼저 이루어진다. 그리고 카드 회원의 이용대금은 카드발급사가 보통 한 달 단위로 카드 회원에게 청구하여 회수한다. 지급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맹점 앞 카드거래 승인 후 카드 회원의 자금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후불·직불·선불카드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지급카드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에 디지털 정보로 저장되어 플라스틱 카드 없이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대면·비대면 거래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다.

23. 해당 카드의 도난·분실 여부 등 검사, 카드거래 한도액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4. 전업계 카드사 중심의 국내 카드거래에서는 카드발급사와 매입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정산과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표2-5〉지급카드 종류별 특징

구분	후불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주1)}
거래 승인 및 자금결제 시점	선 승인, 후 결제 ^{주2)}	승인 즉시 결제	기 결제금액에 대해 승인시점에 차감
종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IC카드	선불카드
발급기관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 은행	신용카드사
이용 한도	신용한도 이내	예금 잔액 이내 ^{주3)}	충전 잔액 이내
할부·현금서비스	가능	불가능	불가능
사용처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체크카드), 직불카드(현금IC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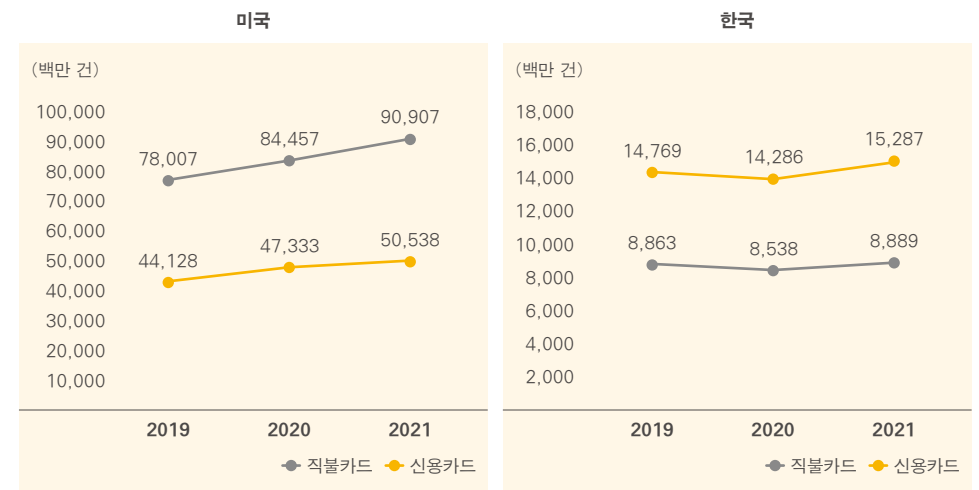
주1)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사가 발급하는 선불카드로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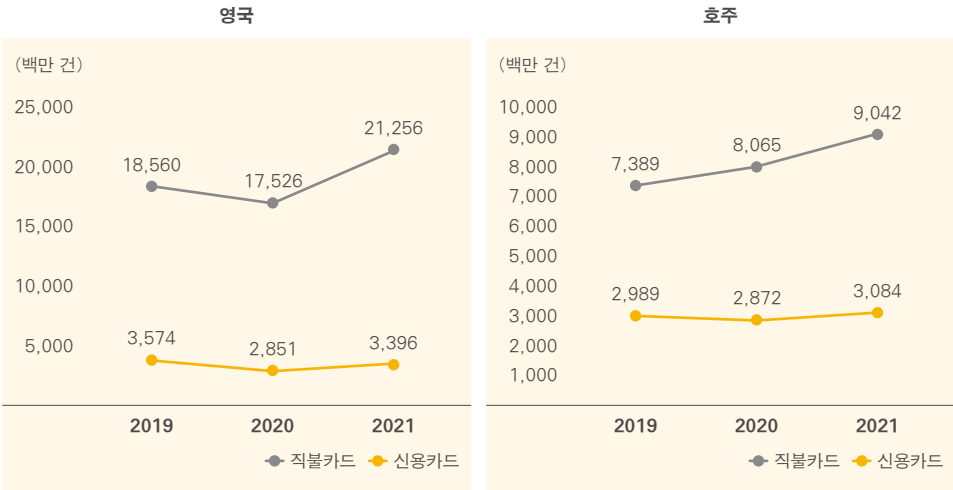
주2) 지정결제일

주3) 체크카드의 경우 필요시 소액(30만 원) 범위 내 신용한도 부여 가능

지급카드의 이용규모나 종류별 선호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이용률이 높은 반면,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경우는 신용카드 이용이 직불카드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전통적으로 현금이나 수표를 많이 사용해 온 미국과 영국의 경우 직불카드를 현금·수표의 대체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신용카드보다 이용이 많은 편이다.

〈그림2-8〉주요국 지급카드 이용 규모





자료 : BIS(2024), Statistics Explorer, payments and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우리나라는 2023년 중 지급카드 이용규모는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금액 기준으로 5.9% 증가했다. 지급카드 종류별로 보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경우 전년보다 각각 6.5%와 4.5% 증가하였으며, 선불카드는 33.3%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내 이뤄진 재난지원금 지급 종료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2-6〉지급카드서비스 일평균 이용 규모 (십억 원, %)

구분	2021	2022	2023	(증감률)
신용카드	2,312.9	2,611.2	2,779.9	(6.5)
- 물품 및 용역구매	2,160.7	2,452.8	2,621.0	(6.9)
- 현금서비스	152.2	158.4	158.9	(0.3)
체크카드	581.3	637.1	665.8	(4.5)
선불카드	12.6	14.5	9.7	(-33.3)
현금IC카드	2.8	3.3	4.5	(37.6)
합계	2,909.6	3,266.1	3,459.9	(5.9)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2024. 4. 15.), 2023년도 지급결제보고서

〈Box1-3〉글로벌 지급카드시스템 주요 참여자들



- ① 가맹점은 매입사로 결제정보 및 결제 승인요청 전송
- ② 네트워크사는 매입사의 승인요청을 발급사에 전달
- ③ 발급사는 승인여부를 실시간으로 통보. 청산 및 결제는 실시간 혹은 T+3일 이후 일괄처리
- ④ 매입사는 승인여부를 전달받고 거래 종료하고, 향후 매입은행에 청산/결제 정보 전송

1. 카드 회원(cardholder)

계약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고 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소비자이다(카드소지자라고도 한다). 발급받은 카드는 최종 결제를 위해 카드 회원의 예금 계좌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별도 수수료가 발생한다.

2. 가맹점(merchant)

식당, 편의점처럼 카드 회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카드 결제를 수락하는 판매자를 말한다. 가맹점은 보통 자신의 거래은행인 매입사에서 제공하는 POS 단말기를 갖추고 카드거래 내역을 매입사에 전송한다. 카드 이용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가 발생한다.

3. 매입사(acquirer)

카드 결제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에서 지급거래의 개시가 가능하도록 POS 단말기를 제공하고 발생한 거래내역을 승인 및 결제처리 하기 위해 카드발급사에 전송하는 역할 등을 한다. 또한 카드거래 처리 후 판매대금을 입금할 가맹점 계좌를 관리한다.

4. 네트워크 운영사

카드발급사와 매입사를 연결하여 거래 승인, 정산, 결제, 수수료 책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운영사로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AMEX), CUP(China UnionPay), JCB(Japan Credit Bureau), Discover 등이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운영사이다(카드 브랜드사 또는 카드협회라고도 한다). 국내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겸용 카드가 필요한데, 카드발급사가 글로벌 네트워크 운영사와 계약을 통해 카드를 발급된다.

5. 카드발급사(issuer)

카드 회원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회사로 카드 회원 관리, 거래 승인·한도 관리, 카드 분쟁 처리 등을 담당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회사(은행 또는 지정회사)만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1. 후불카드

후불카드인 신용카드는 현금, 수표에 이어 제3의 화폐라고 할 만큼 지급수단 중 소비자의 선호도나 이용률이 높다. 특히 신용카드가 등장한 이후 지급카드의 급격한 이용 증가는 지급수단이 장표 기반에서 전자 기반으로 진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대식 신용카드의 원조는 일반적으로 1950년 미국의 레스토랑에서 처음 사용된 다이너스카드로 알려져 있다. 다이너스 클럽의 창립자인 맥나마라가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에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아 곤욕을 치렀던 경험을 바탕으로 신용카드를 고안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신용카드의 등장은 1978년 舊외환은행이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비자카드를 발급하면서부터이며 정책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면서 신용카드 산업이 1990년대 말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신용카드는 카드발급사가 카드 회원에게 신용한도를 부여하고 카드 회원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구매 시 사용하며, 카드 사용에 따른 자금의 이전은 카드발급사의 청구에 따라 정해진 기일에 카드 회원의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된다. 신용카드의 지급결제 과정은 실시간 승인과정을 거친 후 청산·결제 프로세스는 승인거래 데이터를 모아서 일괄처리(batch)하는 선(先)승인, 후(後)결제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국가들에 비해 신용카드 발급매수나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22년 말 국내 신용카드 수는 1억 2,417만 장으로 전년 대비 648만 장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 1인당 4.4장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용판매 규모는 민간소비지출 대비 81%를 차지한다.²⁵ 이처럼 국내에서 신용카드가 주요 지급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세원 투명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²⁶과 소비자의 높은 후불결제 선호가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직불카드

직불카드는 고객이 물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과 동시에 고객의 은행계좌에서 대금이 즉시 출금되어 가맹점 계좌로 이체되는 지급수단이다. 카드 회원인 고객의 예금을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용카드처럼 신용공여에 따른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가맹점 수수료가 낮다는 점에서 가맹점에 유리한 지급

25. 여신금융협회(2022), 신용카드 업계 현황

26. 신용카드 의무수납제(1987),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1999), 신용카드 영수증복권제도(2000) 등이 있다.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직불카드 사용자에게도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고 신용위험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직불카드는 발급 주체에 따라 은행이 발급하는 현금IC카드와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체크카드로 구분된다. 현금IC카드는 원래 CD/ATM에서 현금 입출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던 은행의 MS 방식 현금카드를 IC칩 기반 현금카드로 전환하면서 IC칩 내에 결제기능을 추가하여 상거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 카드²⁷이다. 그동안 CD/ATM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현금카드를 가맹점에서 결제용 지급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금IC카드는 소비자에게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가맹점에는 낮은 수수료의 혜택과, 판매대금의 빠른 회수(사용 익영업일 입금)가 가능하여 카드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지급수단이라는 장점을 내세우면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다.²⁸ 또한 현금카드는 신용공여로 인한 자금 조달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고, 결제 과정상 신용카드사가 개입하지 않아 신용·체크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비용구조이다.

금융정보화추진위원회는 지급서비스의 모바일화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 공동의 모바일 현금카드서비스를 2020년 6월부터 실시하였다. 기존 플라스틱 카드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는 현금IC카드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확장한 것으로 모바일 현금카드 앱을 통해 CD/ATM 입출금,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의 직불결제, 거스름돈(잔돈) 계좌입금 및 현금인출 등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반면 체크카드는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직불형 지급수단으로 현금IC카드와 마찬가지로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지급거래 시 이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일부 체크카드는 신용공여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해당 체크카드 이용자는 예금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소액범위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발급 주체가 다르다 보니 처리 네트워크에서도 차이가 있다. 현금IC카드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은행 공동의 현금카드공동망을, 체크카드는 개별 신용카드사의 전산망을 이용하고 있다.²⁹

27. 카드 불법 복제 등 MS 기반 카드에서 심각한 보안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책 당국은 MS카드의 IC카드 전환정책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기존 MS 방식의 현금카드가 IC 방식 현금카드로 전환 발급되면서 보안성이 높은 현금IC카드 한 장으로 CD/ATM에서 현금 입출금은 물론 상거래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기능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 공동의 현금IC카드 결제서비스는 2012년 11월 실시되었다.

28. 은행이 발급하는 직불형 지급카드에는 직불카드(EFT/POS카드라고도 한다)도 있다. 직불카드 또한 예금을 기반으로 은행에서 발급하는 지급수단이나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현금IC카드와의 가장 큰 차이는 현금IC카드가 현금의 입출금과 결제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직불카드는 결제기능만 가진 지급수단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현금IC카드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반면, 직불카드는 이용 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에 제한이 있다는 점도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고객이 결제기능만 있는 직불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현재 일부 은행에서는 직불카드 발급을 중단하였다. 따라서 현재 은행의 직불카드라고 하면 현금IC카드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29. 후선(back-end) 처리에서 어떤 망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행 공동의 현금카드공동망을 이용하는 현금IC카드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는 1% 수준, 신용카드 전산망을 이용하는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는 최대 1.25% 수준이다.

〈표2-7〉 현금IC카드와 체크카드 비교

구분	현금IC카드(직불거래)	체크카드
사용처	현금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망	금융결제원 현금카드공동망	신용카드 전산망
사용 시간	24시간	24시간
결제방식 ^{주)}	비밀번호(PIN) 입력	서명
발급기관	은행	카드사
카드 유효기간	없음	있음
이용 한도	예금 잔액	예금 잔액
현금서비스	불가능	신용공여 있으면 가능
할부	불가능	불가능
소득공제율	30%	30%
가맹점 수수료	1%(일반가맹점 기준)	1.25%(최대)
결제 방법	구매 즉시 예금 차감	구매 즉시 예금 차감
지급방식	자금이체	자금이체
판매대금 입금	거래 익영업일	가맹점 계약일(거래 후 1~7영업일)

주) 5만 원 이하 거래는 미입력(무서명)

3. 선불카드

선불카드³⁰는 전자적 방법으로 일정 금액이 저장된 카드를 카드 발급사로 부터 구입하거나 사용자가 카드에 돈을 미리 충전하여 지급거래 시 사용하는 지급 수단이다. 선불카드는 은행계 또는 전업계 신용카드사³¹가 카드에 미리 화폐가치를 저장하여 발급하며 사용할 때마다 대금이 자동 차감 지급되는 방식이다. 또한 선불 카드는 일명 기프트카드로 불리는 무기명 선불카드와 재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 카드로 나뉜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범용성이 있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비해 이용은 적은 편이다.

30. 사용범위에 따라 단일목적과 범용 선불카드로 구분되며, 단일목적 카드는 발급자가 제공하는 특정 상품이나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범용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두루 사용할 수 있다.

31. 비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카드(예:교통카드)도 있는데, 여기서는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만 언급하고 비금융회사의 선불카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Box1-4〉 신용카드서비스 시장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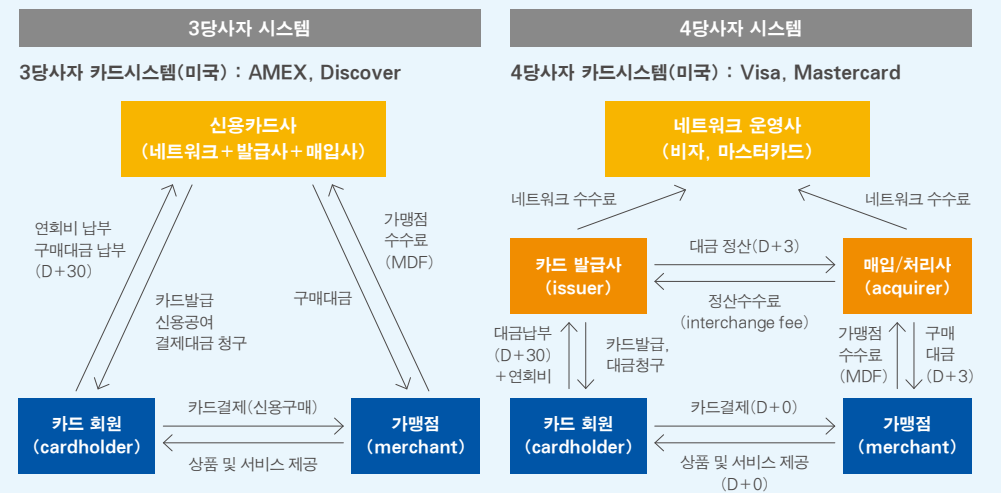
1. 양면 시장

신용카드서비스 시장은 양면 시장으로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이용자와 가맹점 두 종류의 서로 다른 고객을 동시에 상대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신용카드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며 비대칭적 가격설정이 이루어진다. 양면 시장은 하나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양 그룹 간의 거래상대방이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두 거래상대방 사이에는 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한다. 즉 한 그룹의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다른 그룹의 사용자가 이득을 보는 구조이다. 또한 신용카드사가 한 그룹에서 얻은 수익을 다른 그룹에 배분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이용자보다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2. 3당사자 또는 4당사자 체제

지급카드 시장에는 다양한 참가자가 참여하고 있다. 참가자에는 네트워크 운영사, 카드발급사, 매입사, 가맹점, 카드 회원 등이 있으며 이들은 하나의 신용카드 네트워크 위에서 신용카드 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신용카드 네트워크는 참여자 수에 따라 3당사자(three-party) 체제와 4당사자(four-party) 체제로 구분된다.

신용카드서비스 구조



3당사자 체제는 카드발급사, 가맹점, 카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조하에서 신용카드사 즉, 카드발급사는 신용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카드 발급업무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매출전표 매입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카드발급사와 매출전표 매입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들 간 정산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가맹점 수수료와 카드 회원이 납부하는 연회비가 카드 발급사의 주된 수입원이다. 이 체제는 폐쇄형(closed loop system)으로도 불리며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사, 해외 AMEX, Discover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4당사자 체제는 카드발급사, 매입사, 가맹점, 카드 회원으로 구성된다. 이 체제에서는 카드발급사와 매입사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카드발급사는 신용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카드 발급업무를, 매입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전표 매입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구조이다. 또한 4당사자 체제에서는 다수의 카드발급사와 매입사가 네트워크 운영사의 카드 결제 네트워크 인프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당사자 체제와 달리 카드발급사와 매입사 간 정산 수수료, 그리고 네트워크 운영사에 부담해야 하는 네트워크 수수료도 발생한다. 4당사자 체제는 개방형(open loop system)으로도 불리며 미국의 Visa, Mastercard 등의 카드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5절 기타 전자지급수단

비현금 지급수단 중 장표 기반 어음·수표를 제외한 예금계좌, 지급카드는 모두 이전 가능한 화폐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 발행되는 전자지급수단이다. 다만, 이들이 금융회사가 발행하여 제공하는 지급수단이라면 이하에서는 별도의 라이선스를 확보한 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수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³²은 고객이 은행계좌 등을 통해 화폐적 가치를 별도 계정에 미리 이전(충전)시켜 놓고 이를 지급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현재 충전 한도(이용 한도)는 무기명 50만 원, 기명식은 200만 원이며 신용카드, 예금계좌, 타사 포인트 등 다양한 충전 수단으로 충전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선불카드도 선불방식의 전자지급수단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선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³³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비금융회사의 참여가 매우

32.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전자금융거래법」(2024. 9. 15. 시행 예정)

33.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범용성과 환금성 측면에서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운영구조는 차이가 없다.

활발한 편이다. 한편 선불카드가 주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재화나 물품의 구매 대가 지급용으로 사용되는 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송금·결제 시 모두 이용할 수 있다.³⁴

〈표2-8〉 주요 선불형 지급수단 종류별 특징

구분	선불카드 ^{주)}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적용 법규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구매 가능 재화·용역 (범용성)	신용카드와 동일	현금 사용처와 유사한 정도로 제한 없음 (5개 업종 이상)	업종 기준 없음
충전 방법	현금(예금), 신용카드	현금(예금)	현금(예금), 신용카드
현금교환요건(환금성)	잔액이 20% 미만인 경우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100%	잔액이 20% 미만인 경우
발행 자격	신용카드사	금융위원회 허가	금융위원회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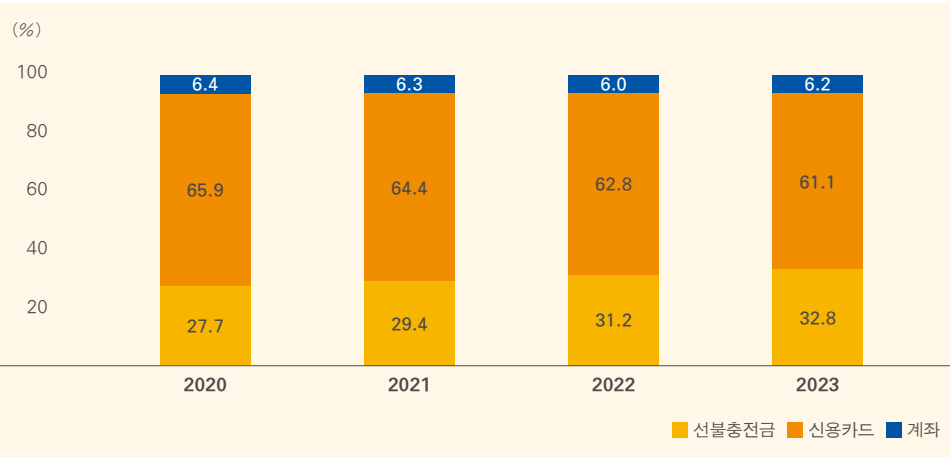
주) 신용카드사가 발행하는 선불카드로 한정

최근 중국의 알리페이, 위챗페이, 국내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국내외 ICT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간편송금·간편결제서비스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대표적인 서비스다. 예컨대, 우리가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카카오톡 친구에게 1만 원을 송금하면 친구의 카카오페이 계정으로 바로 송금된 것으로 체감하지만 그 이면에는 카카오페이가 연동된 은행 계좌에서 1만 원 출금 → 카카오페이 선불금 충전 → 선불충전금을 친구의 카카오페이 계정으로 양도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최근 국내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그림2-9〉참고), 비금융회사인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비중이 금융회사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지급수단으로는 신용카드 이용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선불충전금 기반의 간편결제 이용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2021년 29.4% → 2022년 31.2% → 2023년 32.8%)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을 영위하려는 전자금융업자 등록 수도 2024년 4월 기준 82개 사로 2017년도의 38개에 비해 약 두 배 이상 급성장하였다.

34.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구매대가 지급이 본래의 목적으로 자체적인 송금 기능을 갖는 것은 아니나 2015년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및 현금 절차를 결합하여 송금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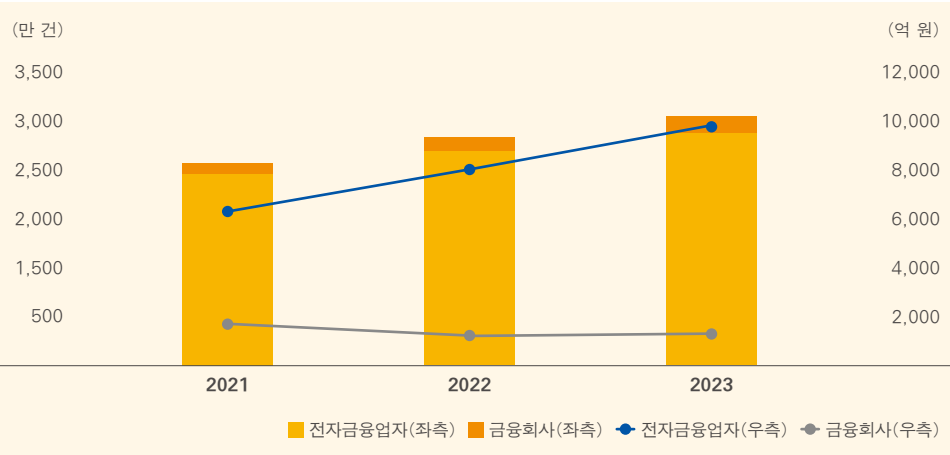
〈그림2-9〉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규모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4. 3. 18.), 2023년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2023년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이용규모(일평균)는 2,957만 건, 1조 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2%, 21.1% 증가하였으며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이용규모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한편, 금융회사의 이용금액은 전년 대비 1.6%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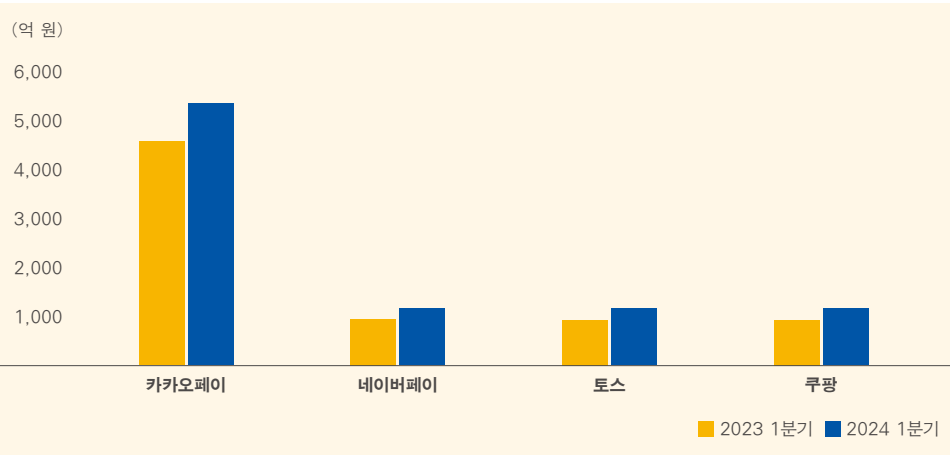
〈그림2-10〉선불전자지급서비스 일평균 이용 규모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4. 3. 18.), 2023년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재구성)

한편, 간편송금·간편결제서비스의 이용이 활성화된 만큼 그에 따른 고객의 선불충전금(예치금 또는 충전 잔액)의 규모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24년 1/4분기 기준 주요 기업의 선불충전금 잔액 규모는 〈그림2-11〉과 같이 카카오페이 5,351억 원, 네이버페이 1,191억 원, 토스 1,18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하는 고객의 자금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관리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비금융회사의 전자지급거래서비스가 점차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을 장악해 가는 과정에서 2020년 발생한 독일의 핀테크 기업 와이어카드의 파산³⁵이나 국내 머지포인트 사태³⁶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비금융회사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023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2024. 9. 15. 시행). 동 법에는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행위 규칙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편송금·간편결제서비스의 결제 방식, 적용 기술 및 이용 현황 등은 제3편 2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그림2-11〉주요 기업의 선불충전금 잔액 규모



자료 : 각 사 홈페이지, 2024. 3. 31. 기준

35. 유럽 핀테크계의 희망으로 불리던 독일의 와이어카드는 1999년 스타트업에서 시작하여 핀테크 붐으로 급성장한 지급결제사업자였으나 내부 회계장부 부정 의혹에 휘말리면서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36. 머지플러스는 전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머지포인트 상품권 ‘머지머니’를 2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해 이용자를 끌어모았으나 2021년 8월 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하자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자를 축소하며 환불도 중단하여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2. 직불전자지급수단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³⁷ 사전 충전과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수단과는 달리, 물품 용역 구매시점에 구매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구매대금이 이체된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 등에 미리 연계해 놓은 금융회사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출금되는 방식이다. 보통 스마트폰에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의 앱을 설치하고 해당 앱에서 일회용 바코드를 생성하여 가맹점의 바코드 리더기로 인식하면 결제가 이루어진다. 비금융회사가 직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2024년 4월 말 기준 등록기업 수는 24개 사로 선불전자지급수단(82개 사)의 3분의 1 수준이다.

3. BNPL

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는 상거래과정에서 소비자가 물품을 먼저 수취하고, 구매대금은 추후 지급하는 서비스의 일종이다. 후불결제서비스이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신용이 발생하지만, 전통적인 신용평가 대신 대안신용평가가 활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외에서 무이자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되어 신용이 취약한 Z세대³⁸를 중심으로 성장 중이며, 대표적인 서비스 제공업체로는 Afterpay(호주), Klarna(스웨덴), Affirm(미국)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최초로 2021년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³⁹받아 BNPL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 서비스는 선불 충전금 부족분에 한하여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정해진 일자에 대금을 일괄 납부하는 완납후불의 형태이다. 결제 한도는 최대 30만 원으로 해외보다는 낮은 수준이다.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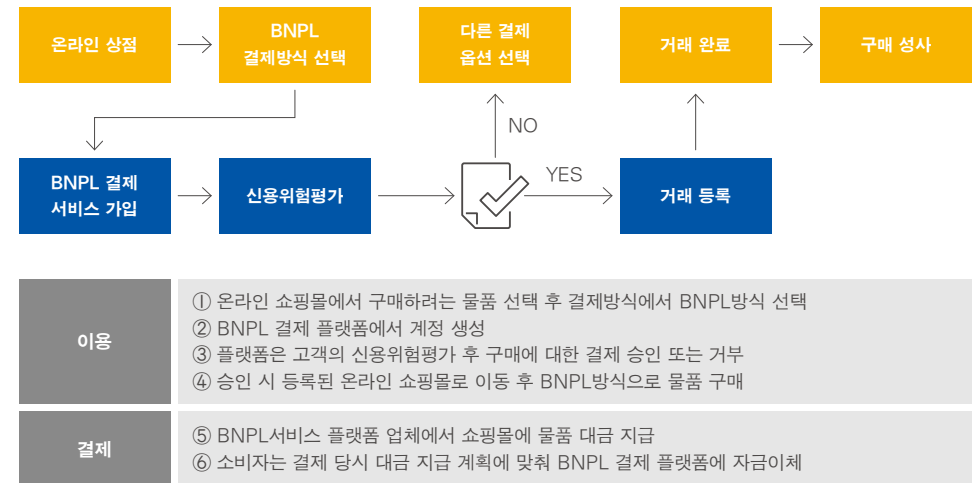
3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발행된 신용카드사의 직불카드도 포함된다.

38.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젊은 세대를 이르는 말로,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말한다.

39.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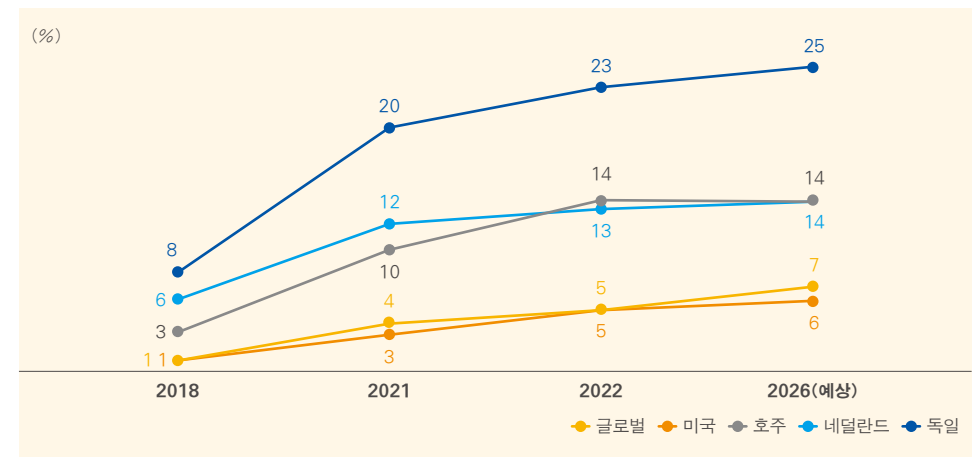
40. Afterpay, Klarna 외국 BNPL 제공사에서는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개인별 후불결제 한도가 산정하고 있으며, Affirm의 경우 \$30,000를 최대 이용 한도로 설정하였다.

〈그림2-12〉 BNPL의 이용 및 결제 프로세스



전 세계적으로 BNPL서비스 거래 금액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6%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기준 독일 전자상거래 중 23%가 BNPL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 네덜란드도 BNPL 비중이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2-13〉 전자상거래에서 BNPL서비스 비중 추이



자료 : FIS(2023), The Global Payments Report ; 최규선(2023. 12.), Cashless 지급결제 확산 및 과제, 금융결제원

BNPL은 신용카드서비스와 유사하지만, 복잡한 신용 및 재정 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 없어 신용 기록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와 같은 저신용자도 이용이 가능한 거래구조로 설계되었다. 때문에 신용정보가 부족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2030세대, MZ세대와 주부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용자가 확대되고 있는 한편, 주 이용자인 찐파일러⁴¹들의 과소비, 연체율 심화 문제 또한 내재하고 있다. BNPL 서비스 절차 및 사례, 규제 현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제3편 2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지급결제시스템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은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과 민간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외환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이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은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자금이체 거래의 규모에 따라 거액의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거액(large value)결제시스템과 상대적으로 소액의 금융거래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소액(low value)결제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¹ 거액결제시스템의 금융거래는 건당 금액이 크고 결제시점의 유동성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한은금융망을 운영하고 있다. 소액결제시스템은 주로 개인이나 기업의 소매(retail) 자금결제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은금융망은 증권결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증권대금동시결제(Delivery versus Payment, DVP)서비스를 제공하고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외환 매매대금의 외환 동시결제(Payment versus Payment, PVP)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41. 적은 금융거래 실적으로 인해 불리한 신용평가를 받는 금융이력부족자를 뜻한다. 최근 2년간 신용카드 실적과 3년 내 대출 경험에 없는 경우 신 파일러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대출과 같은 신용거래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된다.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1. large-value payments : A funds transfer system that typically handles large-value and high-priority payments. retail payments : A funds transfer system that typically handles a large volume of relatively low-value payments in such forms as cheques, credit transfers, direct debits and card payment transactions. BIS CPSS(2016), Glossary

〈그림3-1〉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 개요



자료 : 한국은행 홈페이지

1절 거액결제시스템

국가 내에서 금융회사 간 자금이체는 각 금융회사가 중앙은행에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예치한 지급준비금²을 결제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거액결제시스템은 실제로 결제되는 지급지시에 최소금액이 설정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진 금융회사 간 콜거래, 증권 또는 외환 매매 등 거액 거래에 따른 대금 결제를 다루기 때문에 건당 결제금액이 매우 크다.

또한 거액결제시스템은 금융회사 간의 자금결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결제시점 관리와 결제리스크의 감축 필요성이 매우 높아 실시간 총액결제방식(RTGS)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실시간 총액결제를 위해 금융회사는 자신이 수취할 금액과는 관계없이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을 보유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므로 신용리스크는 발생

2. 금융회사가 중앙은행에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예치한 자금을 말하며, 금융회사 간 결제에 주로 이용된다.

하지 않는 대신 결제자금을 충분히 보유해야 하는 결제유동성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에 따라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각국의 중앙은행은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회사에게 일중당좌대출³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은행 Fedwire, 영란은행 CHAPS, 유럽중앙은행 TARGET2, 호주 중앙은행 RITS, 일본은행 BOJ-NET1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이 금융회사 간 결제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거액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관이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도 일부 있다(〈표3-1〉 참고). 이 경우에도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과 연계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은 민간기관 거액결제시스템의 결제 완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3-1〉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 운영 현황

구분	국가명	운영기관	거액결제시스템
중앙은행	한국	한국은행 	BOK-Wire +
	영국	영란은행 	CHAPS ^{주)}
	일본	일본은행 	BOJ-Net
중앙은행, 민간기관	미국	연준 	Fed-Wire
		TCH 	CHIPS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TARGET2
		EBA Clearing 	EURO1
	호주	호주중앙은행 	RITS
		호주지급결제협회 	HVCS
민간기관	캐나다	캐나다지급결제협회 	Lynx

주) 초기에는 민간기관인 CHAPS Clearing Company Ltd.에서 운영하였으나 2017년 11월부터 영란은행이 직접 운영

3. 한국은행은 당일 영업시간 중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일시적인 지급결제 부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회사 간 자금거래 및 금융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업 간 자금거래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0년 9월 도입하였다.

한은금융망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우리나라 거액결제시스템이다. 소액결제시스템의 금융회사 간 자금이체를 최종 결제할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간에 거래되는 증권결제·외환결제, 한국은행 대출금 지원·상환, 국고금 수납 등 건당 결제금액이 큰 거액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 한은금융망에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2023년 12월 말 기준 133개 기관(은행 53개, 비은행 80개)이 참가하고 있다. 참가기관들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 간 자금이체를 통하여 한국은행은 물론 다른 금융회사와 주고받을 자금을 결제하고 있다.

〈그림3-2〉 국내 거액결제시스템 결제 흐름



2023년 중 한은금융망을 통한 원화자금 결제금액은 증권거래자금 결제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한 554조 원을 기록했다. 자금 종류별로 보면 콜거래자금과 증권거래자금은 결제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21.6%, 11.6% 증가한 반면, 참가기관 간 차액결제자금은 전년보다 1.9% 감소한 27조 원을 기록하였다.

〈표3-2〉 거액결제시스템 일평균 이용 규모 (조 원, %)

구분	2021	2022	2023	(증감률) ^{주1)}
원화 자금 합계	488.5	524.3	554.6	(5.8)
참가기관 간	465.4	497.3	533.3	(7.3)
- 콜거래자금	20.6	23.1	28.0	(21.6)
- 증권거래자금	257.4	269.9	301.2	(11.6)
- 외환거래자금	14.5	16.8	19.2	(13.9)
- 고객거래자금 ^{주2)}	73.6	79.5	79.2	(-0.4)
- 차액결제자금 ^{주3)}	25.9	27.5	27.0	(-1.9)
- 기타	73.4	80.6	78.8	(-2.2)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주4)}	23.1	27.1	21.3	(-21.3)
외화거래자금 합계(십억 달러) ^{주5)}	1.1	1.6	1.2	(-26.0)

- 주1) ()는 전년 대비 증감률
주2)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한은금융망을 이용해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거액의 자금, 연계 결제 포함
주3) 소액결제에 따른 참가기관 간 채권·채무의 차액결제
주4) 국공채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 대출 등
주5) 예치 및 인출 포함
자료 : 한국은행(2024. 4. 15.), 2023년도 지급결제보고서

〈Box1-5〉 국내 거액결제시스템 : 한국은행 한은금융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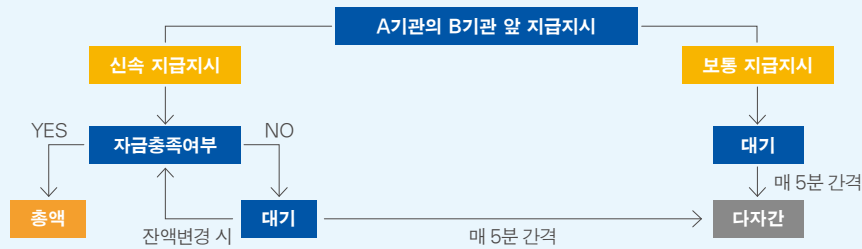
한은금융망^{주1)}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당좌계좌를 통해 금융회사 간 자금이체 거래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한국은행에서 1994년 12월부터 운영해온 거액결제시스템이다. 한은금융망은 소액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CLS시스템과 연계하여 각각 차액결제, 증권대금동시결제, 외환매매대금의 외환동시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은행과 금융회사 간 국공채거래, 한국은행 대출, 국고금 수납 등에서 발생하는 자금결제도 처리하고 있다.

결제방식 초기 한은금융망은 참가기관 간 건별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의 RTGS시스템이었으나, 2009년부터 순수 총액결제방식과 상계결제방식(다자간 동시처리)이 함께 적용되는 혼합형(hybrid) 결제방식^{주2)}을 추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가기관들이 혼합형결제방식시스템에 지급지시를 입력^{주3)} 할 때 신속 지급지시로 입력을 하고, 입력 시 결제전용당좌예금 잔액이 충분하면 건별 총액방식으로 즉시 결제되고, 참가기관이 보통 지급지시로 입력하면 결제전용당좌예금 잔액이 충분하더라도 건별 즉시 결제되지 않고 5분마다 다자간 동시처리방식으로 처리된다.

- 주1) 2009년에 신(新) 한은금융망으로 개선 운영하면서 영문명을 기존 BOK-Wire에서 BOK-Wire+로 변경
주2) 지급지시 시점에 양자 간 또는 다자간 지급지시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결제하는 방식. 한은금융망의 혼합형결제는 2020년부터 양자 간 동시 상계결제 처리는 폐지하고 현재는 다자간 동시처리만 실시
주3) 자금이체신청 전문 입력을 말하며,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

결제방식 예시



참가기관 한은금융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참가기관은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재무건전성, 한은금융망 담당 전문인력 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수료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일정 수준의 이용 수수료를 내야 하며, 월 정액 수수료와 건당 수수료로 구분된다. 건당 수수료는 이용 시간대별로 상이하다.

일중 유동성 제공 결제완결성을 보장하는 중앙은행 거액결제시스템의 특성상 한은금융망도 참가기관 중 하나가 일시적 자금 부족 등으로 타 참가기관에 결제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유동성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결제자금이 부족한 참가기관에게 당일 상환을 전제로 담보부 일중당좌대출을 제공한다. 또한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회사 등 비은행 참가기관에게는 일중 환매조건부 채권매매방식(RePurchase agreements, RP)으로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자료 : 한국은행(2022), 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2절 소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회사가 기업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으로 금융회사 간 자금이체 거래를 처리하는 거액결제시스템에 비해 거래 대상이 광범위하므로 상대적으로 거래 건수는 많으나, 건당 거래 금액은 크지 않은 소액의 대량거래 결제를 주로 처리한다. 또한 거액결제시스템이 국가별로 하나의 시스템만 운영되는 특징이 있는 반면, 소액결제시스템은 개인이나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다양한 지급수단을 처리하기 때문에 다수의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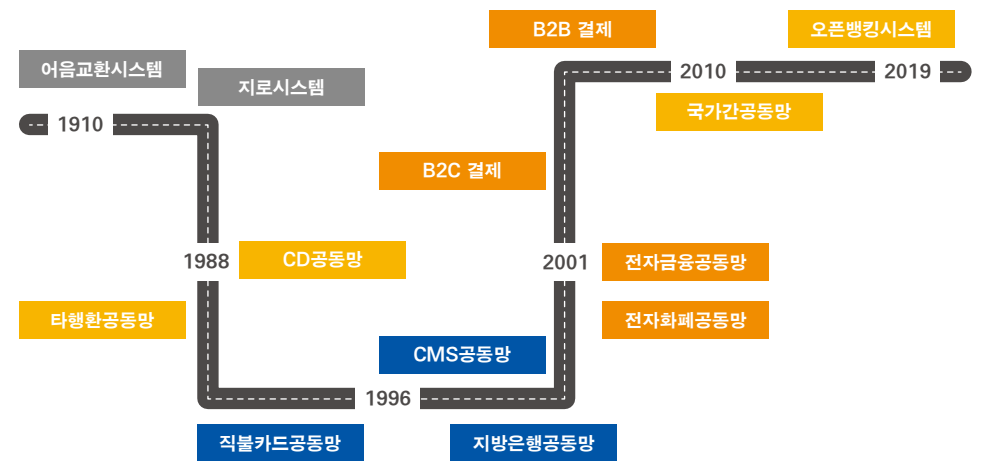
〈표3-3〉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 비교

구분	거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목적	금융회사 간 거액 자금이체	소비자 간 소액 자금이체
이용자	금융회사	개인, 기업 등
자금의 특성	거액/소량거래	소액/대량거래
지급수단	중앙은행 당좌계좌 간 이체	수표, 어음, 계좌이체, 카드 등
시스템 종류	단일 또는 복수	다수
시스템 운영 ^{주)}	중앙은행	민간기관

주) 일부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소액결제시스템을, 민간기관이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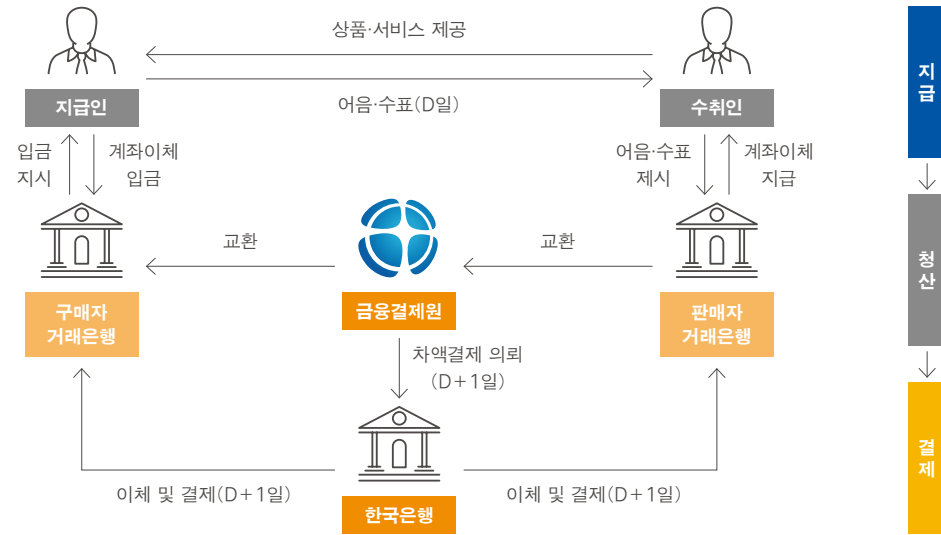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주요 소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금융공동망(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국가간 ATM공동망),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B2B결제시스템, B2C결제시스템)이 대표적이다.

〈그림3-3〉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 운영 현황



소액결제시스템은 건당 금액이 적고 건수 및 참가기관이 많으므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부분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자간 차액결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앙집중형 네트워크 구조로 참가기관 간 데이터를 송수신하며 청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 간 상계 처리한 차액을 정해진 주거나 특정 시점에 결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스템도 금융회사 간 최종 자금결제는 한은금융망에서 다자간 이연(지정시점) 차액 결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하루(D일 0시~24시) 동안 발생한 모든 수취액과 지급액에 대하여 다음날(D+1일) 금융회사별로 상계하여 차액을 산출한 후 한국은행으로 차액결제를 의뢰하고, 한국은행은 해당일(D+1일) 11시에 각 금융회사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최종 결제한다.

〈그림3-4〉 국내 소액결제시스템 결제 흐름(예시 : 어음·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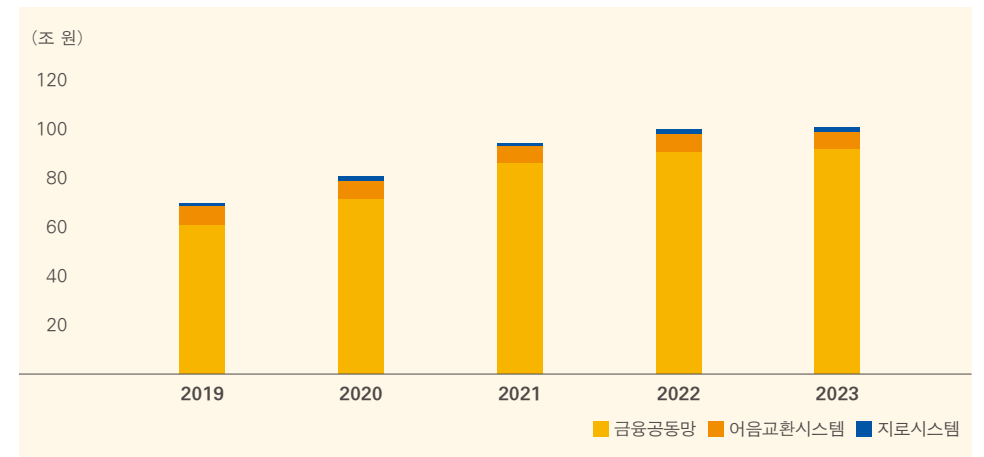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주요 소액결제시스템에는 신용카드사가 운영하는 신용카드결제시스템도 포함된다.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은 1편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3당사자시스템과 4당사자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은 전업계 신용카드사를 중심으로 한 3당사자시스템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BC카드망을 이용한 4당사자시스템도 혼재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BC카드를 제외한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은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업무와 매출전표 매입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자금결제는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매입한 매출전표 내역을 근거로 신용카드사 거래은행에 지급지시하고, 가맹점 거래은행으로 직접 대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⁴ 그리고 신용카드사가 약정일에 카드 회원에게 청구한 금액이 신용카드사 거래은행에 입금되면 결제가 완료된다. 반면 BC카드⁵는 신용카드 업무의 운영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자 일부 은행들이 연합하여 만든 카드사이다. 즉, BC카드에 참가한 회원은행들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 일종의 카드네트워크 운영사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중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 규모는 일평균 100조 원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4. 우리나라에서는 매출전표 매입업무(가맹점 모집, 거래중개 등 포함)를 카드VAN사업자가 대행한다.
5. 1982년에 당시 5개 시중은행이 모여 은행신용카드협회를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카드결제네트워크로 브랜드명은 '은행신용카드'였으나 이후 회원사들을 주주로 하는 독립법인 형태로 변경되면서 BC카드가 되었다. BC카드사의 핵심 업무는 카드발급사들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업무, 대금결제를 수행하는 매입업무이며, BC카드사가 직접 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3-5〉 주요 소액결제시스템 일평균 이용 규모



자료 : 한국은행(2024. 4. 15.), 2023년도 지급결제보고서

〈Box1-6〉 소액결제시스템의 경제적 특성

1.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발생

지급결제시스템은 구축 초기 거래의 고정비용이 소요되지만 구축된 이후에는 다수의 참가기관과 이용자를 확보하여 대량의 거래를 처리할수록 생산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 규모의 경제로 인해 기존 운영기관은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신규 운영기관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시) 대량의 전자자금이체를 처리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경우 처리 건수 증가 대비 처리비용 증가 폭은 미미

2.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 발생

단일기관이 복수의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각각의 지급결제시스템을 별도 기관이 운영할 때보다 평균 생산비용이 감소하는 범위의 경제 효과가 있다. 이는 단일기관이 서로 다른 복수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차액결제 처리 등 시스템 운영방식이 유사하고 네트워크 등 인프라의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낮은 비용으로 복수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3.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존재

지급결제시스템은 지급결제시스템 내 참가기관 수가 많을수록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의 접근성이 좋아지므로 이용 편익이 더 증대되는 네트워크 효과를 가진다.

(예시) CD/ATM공동망에 참가하는 은행이 많으면 이용자가 ATM 카드 사용 시 자신의 거래은행과 관계없이 모든 은행의 CD/ATM 이용 가능

4. 최소 필요시장 규모(critical mass) 달성 요구

최소 필요시장 규모는 산업이 존속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이용수준을 의미하며, 지급결제시스템에서는 참가기관 수,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급결제시스템의 특성 중 하나인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참가기관이나 여타 이용자의 이용이 저조한(최소 필요시장 규모 미달성) 시스템은 더욱 이용하지 않으려 하고, 이들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최소 필요시장 규모의 달성이 어려워지는 역설(chicken and egg problem)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초기에 최소 필요시장 규모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으며, 특정 시스템의 지배적 위치가 강화되는 쏠림현상(tipping)^{주)}이 발생할 수 있다.

주) 네트워크 시장에서 호환성이 없는 재화들이 경쟁하여 특정 재화가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표준으로 결정되는 현상
자료 : 금융결제원

〈Box1-7〉 주요국 민간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민간결제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국가마다 민간기관의 유형은 다르지만 통상 비영리기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하나의 민간기관이 복수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다수의 민간기관이 거래 유형별로 각각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한다. 민간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 결제시스템에 비해 주로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어음교환, 입출금이체, 인터넷뱅킹 등의 소액결제거래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국 민간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미국 TCH  • CHIPS 거액결제시스템 • ACH 소액결제시스템 • RTP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영국 지급결제협회  • Bacs 대량자금이체시스템 • C & CC 수표청산처리 • FPS 실시간 신속자금이체 처리 • Paym 모바일지급서비스 처리	캐나다 지급결제협회  • Lynx 거액결제시스템 • ACSS 소액결제시스템
호주 지급결제협회  • HVCS 거액결제시스템 • LVSS 소액결제시스템	EU EBA Clearing  • EURO1 거액결제시스템 • STEP1 / STEP2^{주)} 소액결제시스템 • RT1 실시간 자금이체시스템	한국 금융결제원  • 전자금융, 타행환, CD, 어음교환, 지로, B2C 전자상거래, CMS 등 소액결제시스템
* (CHIPS) 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s System * (EPN) Electronic Payments Network * (RTP) Real-Time Payments * (Bacs) Bankers' Automated Clearing System * (C & CC) Cheque & Credit Clearing * (FPS) Faster Payments Service	* (Lynx) Large value Transfer System * (ACSS) 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s * (HVCS) High Value Clearing System * (LVSS) Low Value Settlement Service * (STEP1, 2) Straight Through Euro Payment 1, 2 * (RT1) Real-Time 1	

주) STEP1 참가기관은 EURO1 참가기관을 결제대행은행으로 지정하여 다자간 차액청산으로, STEP2는 유럽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인 TARGET2에 직접 전송하여 다자간 차액청산으로 결제처리

자료 : 각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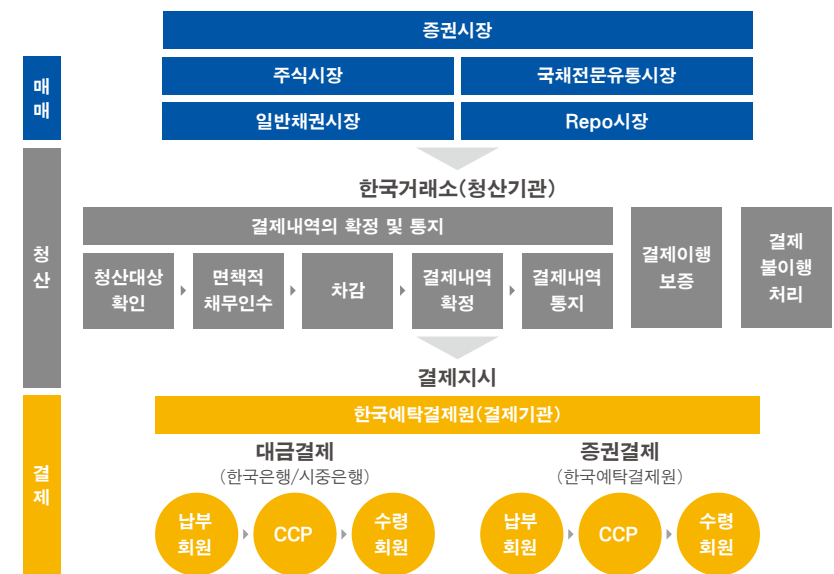
우리나라도 소액결제시스템을 비영리 민간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관이라고 해서 소액결제시스템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과 캐나다처럼 민간기관이 거액결

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을 모두 운영하는 국가도 있다. 아울러 소액결제시스템이 다수인 민간결제시스템은 지급 중계처리와 청산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실제 금융회사의 최종 결제는 중앙은행에 개설된 당좌계좌 내 이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에 연계되어 있다.

3절 증권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은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사고 팔 때 그 증권의 소유권을 계좌대체⁶로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결제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이다. 증권결제 시 수많은 증권 상품 등이 거래되는데 표준화·정형화된 거래 방식인지에 따라 증권시장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증권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팔 때는 증권(주식·채권)을 인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증권결제 시 거래당사자가 증권을 납부하지 않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될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러한 일방의 결제불이행(default)은 시장 전체로 파급되는 시스템리스크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에 증권거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서는 매매체결 → 청산 → 결제의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거래상대방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림3-6〉 증권시장 결제 흐름



자료 : 한국거래소(2019), KRX 청산결제의 이해(재구성)

6. 실물 증권의 이동 없이 실물 수수에 같음하고 장부상의 계좌대체에 의하여 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매매체결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시장에서 거래를 체결하는 행위로 법적 매매거래 계약을 맺는 단계이다. 청산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 채권·채무관계를 차감하여 확정하고 결제기관에 결제지시를 하며 결제가 이행되기까지 결제를 보증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결제는 청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증권과 대금의 최종적인 이전을 통하여 매매 거래를 완결시키는 증권 인도 및 대금 지급 절차를 의미한다. 증권 대금결제는 한은금융망을 통하거나 시중은행 상호 간의 계정을 통하여 결제된다. 증권시장의 청산은 한국거래소가, 결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파생상품시장의 경우에는 청산과 결제를 모두 한국거래소가 수행하고 있다.

〈그림3-7〉증권결제 및 대금결제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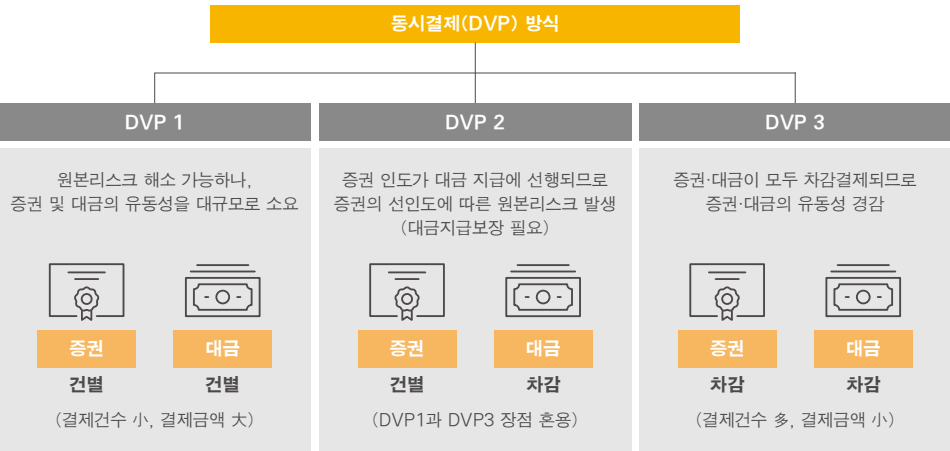


주) 대금결제는 주식·국채·REPO 시장의 경우 한국은행을 통하여, 일반 채권시장의 경우 4개 시중은행(신한, 우리은행, 하나, 교통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료 : 한국거래소(2019), KRX 청산결제의 이해

증권결제 과정에서 증권거래가 증권인도와 대금결제 사이에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면 원금 혹은 증권을 수취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이 과정에서 증권과 대금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한은금융망과 증권결제시스템을 연계하여 증권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을 동시에 처리하는 증권대금동시결제(Delivery versus Payment, DVP)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중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결제된 증권거래자금 결제규모는 일평균 268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

〈그림3-8〉국제기준 동시결제(DVP)의 유형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표3-4〉증권결제시스템 일평균 이용 규모

(십억 원, %)

구분		2021	2022	2023	(증감률) ^{주)}
장 내 결제	주식	945	682	685	(0.5)
	채권	2,568	2,097	2,475	(18.0)
	파생금융상품	135	148	132	(-10.9)
	소계	3,648	2,928	3,292	(12.5)
장 외 결제	주식	1,108	830	844	(1.7)
	채권	12,120	9,837	10,551	(7.3)
	기관 간 RP	180,953	198,072	233,102	(17.7)
	단기금융상품	13,338	14,633	9,420	(-35.6)
	펀드 등	10,424	10,382	10,931	(5.3)
	파생금융상품	65	145	122	(-16.1)
합계		221,656	236,827	268,263	(13.3)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2024. 4. 15.), 2023년도 지급결제보고서

4절 외환결제시스템

외환결제시스템은 외환거래에 따른 이중 통화의 수취 및 지급을 금융회사 간 처리하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외환거래 당사자 간 매도통화와 매입통화를 서로 지급함으로써 채권, 채무를 종결시키기 위한 과정을 처리한다. 국내에는 은행 간 환거래 네트워크,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스템⁷, CLS시스템 등을 통해 외환결제가 이루어진다. 전통방식의 외환결제는 각 지역에 소재한 주요 은행 간 환거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루어졌다. 환거래 네트워크는 외국환은행들이 세계 주요국의 은행들과 환거래 계약에 따라 당좌예치금계좌를 개설하고 상호 간 전문교환을 하기 위해 국제금융통신망(SWIFT)⁸에 가입하면서 형성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방식은 지역 간 영업시간이 달라 매입통화와 매도통화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 매도통화를 이미 지급한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이 파산하는 경우 등 유사 시 매입통화를 수취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와 같은 외환결제리스크를 해결하고자 국제적으로 CLS시스템이 2002년 9월 구축되어 가동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에 동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CLS시스템은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에 관한 BIS의 권고에 따라 전 세계 주요 상업은행들이 외환동시결제의 구현을 목적으로 미국 뉴욕시에서 설립한 외환결제 전문은행인 CLS은행⁹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중앙은행에 개설된 결제회원 은행과 CLS은행 계좌 간 실제 자금이체(자금납입 및 지급)가 연속적으로(continuous) 연계(linked)되어 결제(settlement)된다.

7. 국내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금융회사 고객이 외화자금을 실시간으로 송금하고 그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8. 국제금융통신망(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WIFT) : SWIFT는 해외은행과 자금결제 및 메시지 교환을 신속·저렴·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1973년에 유럽 및 북미 은행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1977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전 세계 은행 간 정보통신망
9.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에 관한 BIS의 권고에 따라 전 세계 외환거래의 동시결제를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된 미국 뉴욕 소재 외환결제 전문 민간은행이다.

〈그림3-9〉 CLS 결제과정(예시 : 원·달러 거래)



즉, CLS시스템은 외환거래 시 결제시점의 불일치로 수반되는 외환결제리스크¹⁰를 제거하기 위하여 CLS은행, 결제회원¹¹, 결제통화국 중앙은행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해당 결제일에 정해진 공통시간대에 매도통화 지급 및 매입통화 수취를 동시에 수행하고, 통화별 차액만을 결제해 주는 외환동시결제(Payment versus Payment, PvP) 방식으로 운영된다. 결제 가능 통화에는 한국 원화,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등 총 18개 통화가 있다. CLS시스템은 공통결제 시간대(중부 유럽 시간 기준 07~12시)에 집중하여 결제를 처리한다.

〈표3-5〉 CLS 결제통화

구분	세부내용
결제통화 (18개)	한국 원화,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스위스 프랑화, 캐나다 달러화, 호주 달러화, 싱가포르 달러화, 스웨덴 크로나화, 덴마크 크로네화, 노르웨이 크로네화, 홍콩 달러화, 뉴질랜드 달러화, 남아공 란드화, 이스라엘 셰켈화, 멕시코 페소화, 헝가리 포린트화

10. 국가별 시차 등의 문제로 거래 일방이 매도통화를 먼저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의 결제불이행 등으로 매입통화를 수취하지 못하는 리스크이다.
11. 국내 결제회원(settlement member)은 CLS은행에 결제계좌를 보유하고 외환거래내역 제출 및 결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금융회사로 국내에서는 하나·국민·신한은행이 CLS은행의 결제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CLS시스템의 실시로 외환거래에 따른 매입통화와 매도통화의 결제가 시차 없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거래 상대방의 결제 실패에 따른 외환결제리스크를 원칙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CLS은행은 결제일자별, 통화별로 금액을 합산하여 수취분과 지급분을 상계한 후 차액만을 결제하기 때문에 거래 건별로 자금이 결제되는 환거래은행 방식에 비해 요구되는 결제유동성 규모가 절감되었다. 아울러, 결제업무의 모든 과정이 표준화됨에 따라 참가기관의 외환결제업무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수작업 처리에 따른 운영리스크도 크게 줄었다.

2024년 5월 현재 전 세계 70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결제회원¹²으로 CLS시스템에 참가 중이며, 국내에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참가 중이다. 2023년 중 CLS시스템을 통한 일평균 외환동시결제 금액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889억 달러를 기록했다.

〈표3-6〉CLS시스템 일평균 이용 규모

(십억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CLS시스템	72.4	75.3	86.5	88.9	(2.8)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2024. 4. 15.), 2023년도 지급결제보고서

12. CLS은행에 결제계좌를 보유하고 CLS 결제를 직접 처리하는 참가기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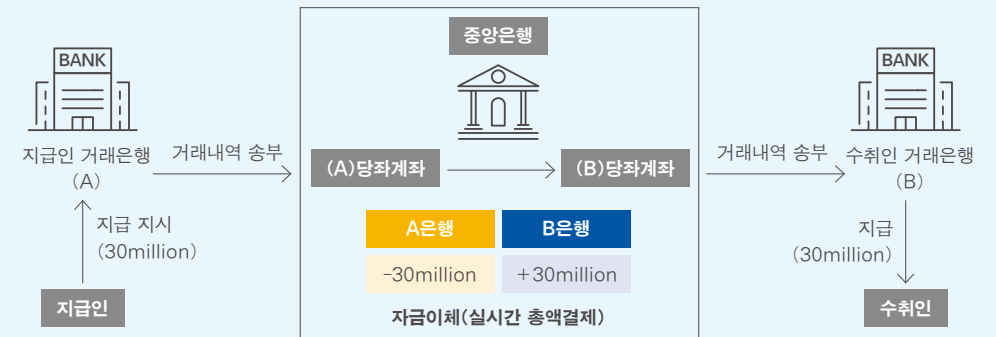
〈Box1-8〉지급결제시스템의 유형

1. 결제 방법에 따른 분류

가.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

보통 RTGS로도 불리는 실시간 총액결제는 금융회사 간 주고받아야 할 최종 결제금액을 수취할 금액에서 지급할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건별 총액으로 즉시 결제하는 방식이다. 실시간 총액결제는 주로 거액결제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 간 최종 자금결제가 건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진다. 실시간 총액결제를 위해 금융회사는 자신이 수취할 금액과 관계 없이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을 보유해야만 결제할 수 있으므로 결제리스크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제자금을 충분히 보유해야 하는 결제유동성 부담이 있다. 이에 따라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각국의 중앙은행은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회사에게 일중당좌대출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실시간 총액결제방식 흐름도



나. 이연 차액결제시스템

차액결제는 금융회사들이 주고받아야 할 총 금액을 합산한 후 상계 처리를 통해 순채무액을 산정하여 결제(net settlement)하는 방식이며, 차액 산출이 두 참가기관 간 일어나는 경우를 양자간 차액결제(bilateral netting), 전체 참가기관 간 일어나는 경우를 다자간 차액결제(multilateral netting)라고 한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은 바로 이 다자간 차액결제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연 차액결제는 상계 처리한 차액을 정해진 주기나 특정 시점에 결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스템도 금융회사 간 최종 자금결제가 한은금융망에서 익영업일 오전 11시에 이루어지는 다자간 이연(지정시점) 차액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연 차액결제시스템의 특징은 순수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으로서 금융회사의 결제유동성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지급과 청산·결제 간 시차가 발생함으로써 결제 채무자인 금융회사에서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 금융회사가 신용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차액 결제방식을 도입·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결제 시차에 따른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결제이행을 보장하는 여러 수단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한은금융망에서 처리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순이체한도 설정,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납부, 결제부족자금의 공동분담제도 등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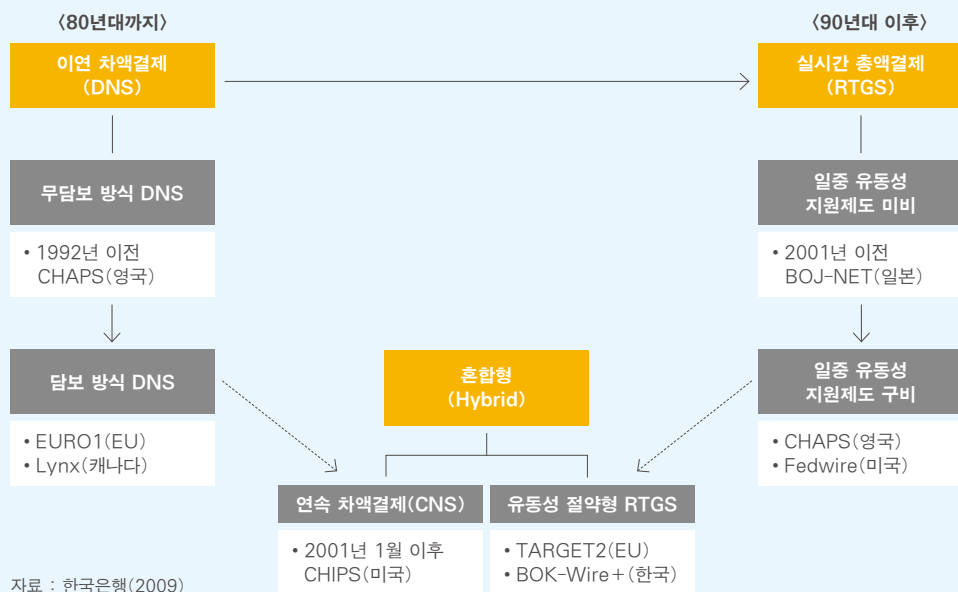
이연 차액결제 방식 흐름도



다. 혼합형 결제시스템

2000년대 이후 금융시장의 성장과 함께 지급결제 처리규모도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으로 운영해 온 거액결제시스템에서 금융회사들이 일중에 결제할 자금의 조달 부담이 늘어났다. 그러자 각국에서는 거액결제시스템의 결제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혼합형 결제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혼합형 결제는 결제완결성이 실시간으로 보장되는 실시간 총액결제와 금융회사의 결제유동성을 절감할 수 있는 이연 차액결제의 각 장점을 결합한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에 2009년 4월부터 반영되었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의 지급지시를 건별 총액으로 실시간 결제하는 실시간 총액결제 방식과 달리, 혼합형 결제는 금융회사의 결제자금이 부족할 때는 상계가 가능한 다수 금융회사의 지급지시를 함께 묶어서 동시에 다자간 차액결제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현재 한은금융망은 대상거래에 따라 총액결제방식만 처리하는 순수 총액결제시스템과 총액결제와 차액결제가 혼합된 혼합형 결제시스템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거액결제시스템의 결제방식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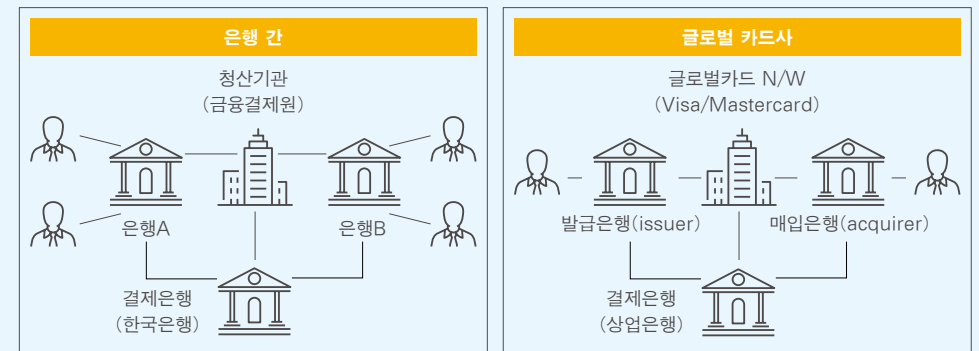
2. 상호운용 여부에 의한 분류

가. 개방형시스템

개방형시스템에서 지급서비스는 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서비스 제공회사가 참가하여 상호운용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고객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하나의 은행만 거래해도 상대방의 거래은행과 관계없이 편리하게 지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늘날 모든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급결제시스템은 이와 같은 개방형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수의 은행 등 금융회사가 참가함으로써 금융회사 간 자금정산을 위한 청산 기능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구조이다. 이 개방형시스템의 대표적인 모델이 개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이며 글로벌 카드네트워크 운영사인 비자, 마스터카드사의 카드 결제시스템도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글로벌 카드거래에서 개방형시스템^{주1)}은 신용카드 결제시장의 다양한 참가자 중 카드 회원서비스를 전담하는 카드발급사와 가맹점서비스를 전담하는 매입사가 분리되어 있으며 네트워크 운영사인 비자나 마스터카드사가 양자를 중계하는 구조이다. 카드발급사와 매입사는 중개자인 비자나 마스터카드사의 네트워크에 각각 회원으로 참가하여 각 시스템 내에서 상호운용이 가능하므로 이들 회원카드사가 발급한 카드를 소지한 고객은 카드발급사와 관계없이 비자나 마스터카드 로고가 부착된 전 세계 가맹점 어디서든 제한 없이 카드거래가 가능하다.

개방형시스템



나. 폐쇄형시스템

폐쇄형시스템은 지급서비스 제공업자가 지급인·수취인 등 이용고객과 서비스 계약을 맺고 이들에게 직접 거래 계정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중개자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개방형시스템에 비해 거래구조 자체는 단순하고 별도 은행 간 청산·결제과정이 없으며 자체 고객 중심의 폐쇄적 서비스라는 특성이 있다. 폐쇄형시스템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결제시스템,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간편결제시스템이 있다.

우리나라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은 앞의 개방형시스템과 달리 카드네트워크 운영사가 개입하지 않으며, 카드발급사와 전표매입사 역할을 단일기관인 카드발급사가 직접 수행하는 폐쇄형 거래구조^{주2)}가 주된 형태이다. 카드발급사가 자사 브랜드로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신용공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 사용대금 회수 및 연회비를 수취한다. 또한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에 거래에 따른 판매대금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운영형태이다.^{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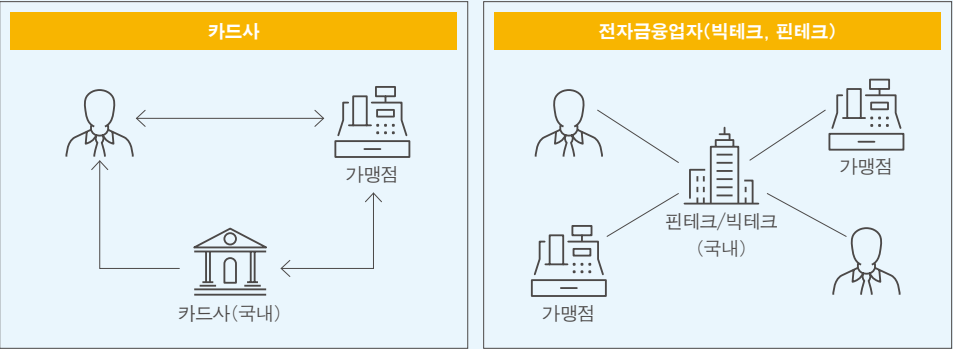
주1) 카드 결제시스템에서는 이를 4당사자 거래시스템이라고도 한다.

주2) 카드 회원, 가맹점, 카드발급사로 구성된 3당사자 거래시스템이라고도 한다.

주3) 우리나라는 카드발급사를 대신하여 가맹점 모집(단말기 설치 포함), 관리 및 거래중계 등을 카드VAN사업자가 대행처리하고 있다.

또한 이베이(eBay)사의 페이팔(PayPal)서비스를 필두로 최근 핀테크, 빅테크 기업 등 비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은행의 개입 없이 자체 계정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편송금·간편결제서비스도 폐쇄형시스템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폐쇄형시스템은 지급서비스 제공업자마다 지급인·수취인 모두와 직접 개별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동일 서비스라도 다른 제공업자와 서로 호환이 되지 않으므로 고객은 이용을 원하는 지급서비스마다 모두 가입해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폐쇄형시스템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기관



지급결제제도의 발전과 함께 지급 → 청산 → 결제로 이어지는 지급결제 처리과정에서 각자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전문기관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상호 연계와 협조 등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함께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장에서는 소액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청산기관, 결제기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4-1〉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기관

지급	청산		결제
개인, 기업 등 경제주체	은행 등 금융회사 대상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청산기관	결제기관	
금융회사, 비금융회사	지급결제중계시스템 운영기관	중앙은행	
• (금융회사)지급수단의 발행, 이전, 결제 관련 등 • (비금융회사)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이전 관련 등	• 소액결제시스템 운영 (제반규정 포함) • 참가기관 간 지급지시 중계 • 청산자료 작성 등	• 결제자산 제공 • 거액결제시스템 운영 • 지급결제제도 감시 등	

1절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양한 비현금 지급수단을 발행하고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에게 자금이체나 대금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은행이 있으며 신용카드 등 지급카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사도 대표적인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 해당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의 증가와 금융시장의 발달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더불어 금융업무의 겸업화 추세로 비은행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지급서비스의 직접 제공이 허용되면서 제공기관이 점차 확대되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망과 모바일기기의 이용 확산은 기존 오프라인거래 중심의 지급서비스 수요를 온라인 거래로 확장하면서 정보통신기술과 지급결제서비스 간 융합을 더욱 촉진시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력이 뛰어난 비금융회사는 지급서비스 시장에 진출하여 금융회사보다 경쟁우위를 선점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더 나아가 지급결제서비스 수요자들로 하여금 핀테크 기술로 무장한 비금융회사를 통해 좀 더 간편해진 지급서비스를 접할 기회도 열어 주었다. 그 결과 이제 은행 등 금융회사는 물론 비금융회사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 경쟁과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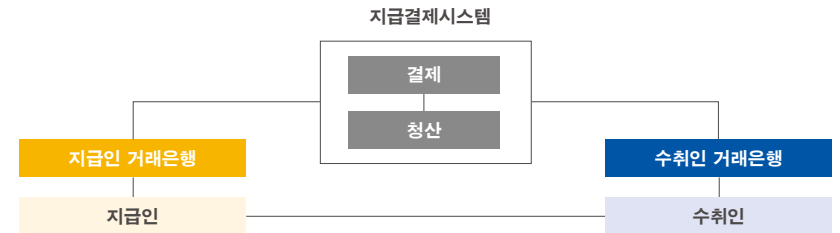
1. 은행

은행 제도의 발달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급서비스는 수시입출금과 원금보장이 가능한 요구불예금을 수취하는 은행이 독점 제공해 온 시장이었다. 이는 「은행법」에 따라 환(exchange)¹업무를 고유 업무로 수행하는 은행만이 요구불예금을 기반으로 어음·수표, 계좌이체 등 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기 은행이 제공하는 지급서비스가 자행 거래 고객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후 여러 은행의 등장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로 은행 간 거래가 확대되면서 다자간 지급서비스의 효율적인 처리와 제공을 위해 은행 간 지급결제시스템이 구축·운영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 모든 경제주체는 자신의 거래은행과 관계없이 은행이 제공하는 지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1. 「은행법」에 명시된 은행의 고유업무 중 하나인 내·외국환업무를 말하며, 환업무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자금거래 당사자 간 직접적인 현금 수수 없이 은행, 채신관서 등이 발행한 증서나 유·무선 전화, 인터넷, CD/ATM 등 금융전산망에 연결된 각종 통신망을 이용하여 자금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업무이다. 한국은행(2014),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따라서 오늘날 은행은 예금계좌를 기반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며, 원활한 지급서비스의 제공과 이에 따른 금융회사 간 청산·결제를 위해 소액결제시스템과 중앙은행 거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은행 또한 대고객 지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전제는 소액결제시스템 및 거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것이다.

〈그림4-2〉은행의 지급서비스 제공 구조



2. 비은행 금융회사²

우체국, 농협·수협·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협·산림조합중앙회 등 서민금융기관과 금융투자회사도 현금인출, 계좌이체, 전자상거래 대금결제서비스 등 각종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체국은 국가가 지급을 보증·운영하는 우체국 예금을 기반으로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여 자금이체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한편, 해당 특별법에 따라 예금취급기관으로서 환업무가 가능한 서민금융기관도 자체 중앙회(연합회)를 대표기관으로 하여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 은행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고객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³ 다만, 최종 결제는 결제대행은행⁴을 통해 차액결제 처리하고 있다.

2. 중앙은행과 일반상업은행 외에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일반상업은행과 유사한 자금중계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각종 금융중계기관을 말한다. 한정미(2009),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제연구, 법제연구 제36호
3. 서민금융기관 중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는 2002년부터, 산림조합중앙회는 2009년부터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여 서비스 중이다.
4. 한국은행 당좌계좌를 통해 다른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차액결제를 대행하는 차액결제 참가기관을 말하며, 자신의 차액결제 대금에 차액결제를 위탁한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차액결제위탁기관)의 차액결제대금을 합산하여 차액결제를 이행한다.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 중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없는 기관(예: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은 차액결제대행은행을 통해 차액결제를 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표4-1〉비은행 금융회사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현황

(개)

구분	전자금융	타행환	오픈뱅킹	CD	B2C 전자상거래	어음	지로	CMS
서민금융기관 ^{주)}	7	7	7	7	6	6	7	7
금융투자회사	29	21	20	15	17	-	18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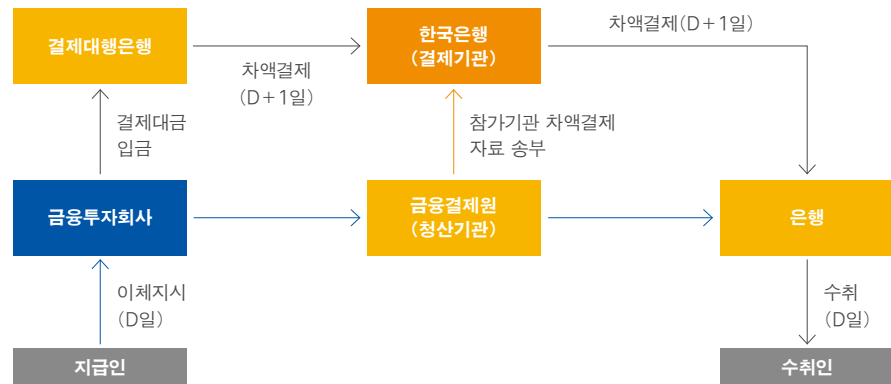
주) 우체국 포함

자료 : 금융결제원, 2024년 5월 기준

금융투자회사는 비예금수취기관으로 지급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없었던 과거에는 CMA(Cash Management Account)⁵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 은행과 제휴한 가상계좌를 통해 간접적으로 CD/ATM 이용, 공과금 자동납부, 급여 이체 등 대고객 지급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2009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⁶이 시행되면서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예탁금을 이용한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금융투자회사도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여 은행과 제휴 없이 고객에게 실시간 자금이체 등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⁷ 다만, 금융투자회사는 대고객 지급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더라도 금융회사 간 결제는 한은금융망에서 바로 당좌계좌를 통해 처리할 수 없고 서민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대행은행에 위탁하여 차액결제를 수행한다.

〈그림4-3〉금융투자회사의 차액결제 수행방식

→ 결제자료 송부 → 자금흐름 → 이체지시



5.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도 하며, 증권사가 고객의 미투자 여유자금을 결제용 자금으로 활용 가능함에 따라 증권사는 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고객에게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행(2006. 7.), 비은행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현황
6.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투자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7년 8월에 제정(2009. 2. 시행)된 법으로 「자본시장법」이라고도 한다. 동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7. 비은행 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제공 허용은 캐나다, EU 등에서 먼저 시행되었는데 캐나다는 2001년에 「Canadian Payments Act」(캐나다 지급결제법)를 개정하여 증권사의 지급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였으며, EU는 2007년 「PSD」를 제정하여 지급기관으로 허가받은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해 지급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였다. 한국은행(2008. 12. 17.), 지급서비스 기본개념과 취급요건

〈Box1-9〉국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금융회사가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해야 한다. 이는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함으로써 다른 금융회사와 고객의 지급지시를 교환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청산의 주체가 되어 결제기관의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 당좌계좌)에서 금융회사 간 차액결제를 통해 지급서비스를 완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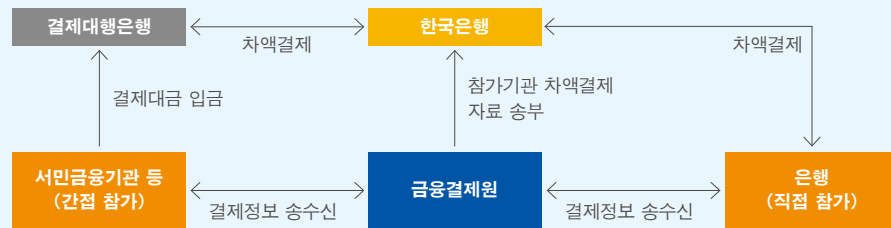
결제중계시스템 운영기관이자 청산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한국은행, 「은행법」상의 은행 그리고 금융업이나 금융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다. 「은행법」상의 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사원은행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참가할 수 있다.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은 크게 사원, 준사원, 특별참가기관으로 구분되는데, 한국은행과 「은행법」상의 은행은 사원, 준사원 또는 특별참가기관이 될 수 있다. 한편 은행이 아닌 금융업이나 금융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는 특별참가기관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사원·준사원은 금융결제원의 모든 소액결제업무에 참가할 수 있는 반면, 특별참가기관은 개별 업무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한편, 최근 핀테크 기업이 지급서비스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비금융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졌다.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참가방식의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제도를 개선·정비하여 시행(2020. 9.) 중이다.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자격 및 참가방식

구분		내용
참가자격		- 한은금융망 가입 대상기관이면서 차액결제 참가요건(직접참가 요건)^{주)} 또는 차액결제위탁기관의 요건(간접참가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차액결제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기관 -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거래 대상기관
참가방식	직접참가	- 은행법상 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에 따른 차액결제를 한국은행에 개설된 자신의 당좌계좌를 통해 직접 수행
	간접참가	- 서민금융기관중앙회, 금융투자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차액결제는 차액결제대행은행을 통해 간접 수행

주)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차액결제 결제불이행 시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부족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함

소액결제시스템(차액결제업무) 직접참가 및 간접참가 방식



가입 절차

- ① (참가 신청기관)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희망하는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은 금융결제원에 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② (금융결제원) 신청기관의 참가기준 충족 여부 심사 및 특별참가금 산출
 - * 당좌계좌 개설, 한은금융망 가입, 한국은행 대출 약정 체결(차액결제 직접 수행 시), 차액결제 대행계약 체결(차액결제 간접 수행 시) 등에 대해 한국은행과 협의 필요
- ③ (참가 신청기관) 한국은행에 차액결제 참가 신청
- ④ (참가 신청기관, 금융결제원, 한국은행) 전산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 ⑤ (참가 신청기관, 금융결제원, 한국은행) 업무 실시일 협의 및 다른 참가기관 앞 통지

자료 : 한국은행 보도참고자료(2020. 6. 24.),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관련 Q&A ; 금융결제원(2020), 차액결제 업무 참가기준

3. 신용카드사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가 예금을 기반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청산과 결제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신용카드사는 예금수취기관은 아니지만, 지급카드를 발행하고 가맹점과 카드 회원을 연결하여 직접 대고객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신용구매·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사가 카드 회원의 신용 상태 등에 따라 부여한 신용공여를 기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은 아무에게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만⁸ 카드 발행이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사는 직불카드(체크카드)와 선불카드도 발행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협회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업자는 신용카드업을 전업으로 하는 전업카드사 8개와 은행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에서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겸영 은행계 카드사 11개 그리고 사업 성격상 신용카드업의 겸영 필요성이 인정되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자사 매장에

8. 은행 등 금융회사는 별도 허가 없이 발행할 수 있다.

만 신용판매업무를 영위하는 유통계 겸영⁹ 신용카드업자 2개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신용카드서비스는 BC카드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 가맹점, 카드 회원 중심의 폐쇄형(3당사자)시스템으로 신용카드사가 직접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 가맹점에 판매대금을 입금 처리한다. 아울러 신용카드서비스는 국내에서 해외검용카드로 발급받아 국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카드발급사와 글로벌서비스망을 갖춘 비자, 마스터카드, 유니온페이 등 국외 카드네트워크 운영사 간 제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표4-2〉신용카드 사업자 현황

구분		사업자 수	사업자 명
전업카드사	은행계	4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기업계	4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겸영 은행		11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수협중앙회, 씨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아이엠뱅크 ^주 , 기업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유통계 겸영 신용카드업자		2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
총 사업자 수(전업 및 겸영)		21(19)	

주) (구)대구은행

자료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2024년 6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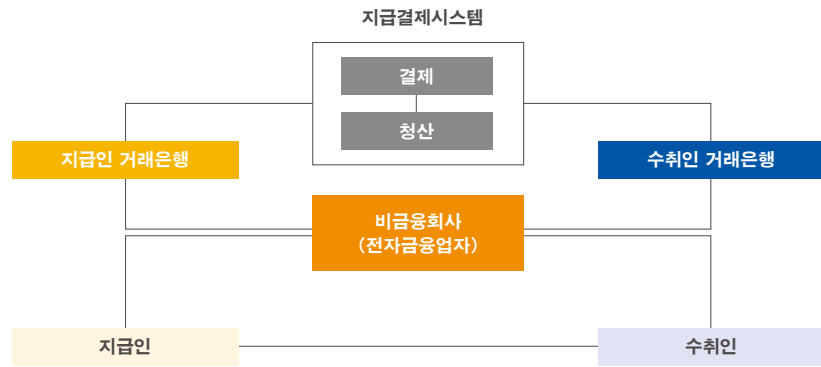
4. 비금융회사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는 이미 인터넷의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전자상거래 등의 활성화가 시작된 1990년대 말부터 제공되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핀테크 기술의 활용 능력이 뛰어난 비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지급서비스 시장에 진입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넓은 고객 저변을 활용해 영향력을 높여 갔다.

비금융회사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는 대신 은행과 제휴하거나 독자적으로 대고객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산·결제서비스 역시 자체 처리하거나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은행을 통해 처리하기도 한다(〈그림4-4〉 참고). 이처럼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제공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6년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함으로써 비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전자금융업무를 별도로 정하고,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한 비금융회사를 전자금융업자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9. 주로 자사 제품의 판매촉진이나 고객의 고정화를 통해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가 적용되지만 현금서비스 등 부대업무 금지, 가맹점 모집 제한, 건전성 규제 미적용 등 일부사항에서 일반 신용카드업자와 차이가 있다.

〈그림4-4〉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제공 구조



가.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으로 비금융회사는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의 허가 또는 등록을 거치면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¹⁰ 즉, 비금융회사는 전자금융업을 수행하는 거래당사자이면서 자금을 직접 수취, 지급, 관리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어 감독기관의 허가나 등록을 필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직불전자지급서비스,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지급결제대행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전자고지결제서비스 등 총 5개 서비스에서 192개(318개 업종)의 비금융회사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다.¹¹

최근 전자금융업자 중에서도 핀테크, 빅테크로 불리는 비금융회사는 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회사를 위협하며 국가마다 지급결제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 페이팔, 중국 알리페이, 우리나라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대표적인 예다. 또한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개발국가에서 간편결제·간편송금서비스의 활성화를 주도하면서 금융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킨 주역 역시 은행이 아닌 비금융회사다. 정부와 중앙은행 등은 지급결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면서 결제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10. 은행 등 금융회사는 전자금융업자와 달리 「전자금융거래법」상의 허가나 등록 없이도 전자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들은 이미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의해 금융업 관련 인·허가를 받은 상태로 해당 법령을 통해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11. 2024년 5월 현재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의 경우 현재 등록·허가받은 비금융회사는 없다.

〈표4-3〉「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구분	서비스 내용 ^{주1)}	제공기관(전자금융업자) ^{주2)} 수
직불전자지급서비스	물품 구매 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인증 절차를 거쳐 구매자의 금융회사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중계	24개
선불전자지급서비스	미리 충전한 선불충전금으로 교통 요금, 물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할 수 있도록 선불충전금을 관리하고 이체를 수행	82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신해 지급결제정보 송·수신, 대금 정산업무를 대행	154개
결제대금예치(Escrow) 서비스	구매대금을 예치 받고 구매자의 물품 수령 확인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	42개
전자고지결제(EBPP ^{주3)}) 서비스	전자적인 방식으로 고지서(예 : 아파트 관리비)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아 정산	16개

주1) 한국은행 보도자료(2024. 3. 18.), 2023년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주2) 금융감독원(2024. 4. 29.), 전자금융업 등록 및 말소현황

주3) 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

나. 전자금융보조업자

지급서비스 시장에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일부를 대행하는 전자금융보조업자도 있다. 전자금융업자가 대고객 지급서비스를 위해 감독기관의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반면,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지급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전자금융업자와 달리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직접 수취하지 않기 때문에 감독기관에 별도 허가나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전자금융보조업자에는 신용카드VAN사업자, 점외CD/ATM사업자, 펌(firm)VAN사업자 등이 있다. 먼저 신용카드VAN사업자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신용카드 거래조회 및 매입업무를 처리하며 가맹점에 결제 단말기를 제작·공급하고 있다. 신용카드VAN사업자가 각 신용카드사의 업무를 대행·통합 처리함으로써 신규 카드사업자의 지급카드 시장 진입이 용이해진 측면이 있으며, 2024년 5월 말 기준 12개¹²의 신용카드VAN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전자금융업자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와 달리 구매자의 지급단계에서 단순히 지급결제 정보를 송수신할 뿐 신용카드VAN사업자 명의로 자금을 수취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금융보조업자로 분류된다.

12. 한국신용카드VAN협회 기준, 금융결제원, NICE정보통신, NICE페이먼트, 다우데이터, Smartro, NHNKCP, KSNET, KOVAN, KIS정보통신, KPN, KOCES, KICC

점외CD/ATM사업자는 편의점이나 지하철역 등에 CD/ATM을 설치하여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회사이며 2024년 5월 기준 5개 사업자¹³가 있다. 그동안 CD/ATM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직접 운영하여 왔으나 현금 수요의 감소와 은행 영업점의 축소로 영업점 내 설치 대수가 많이 감소하였다. 반면, 점외CD/ATM사업자가 운영하는 CD/ATM 대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2021년 기준 국내 전체 설치 대수 11만 7천여 대 대비 42.7% 수준인 5만여 대에 달한다.¹⁴ 또한 점외CD/ATM사업자는 대부분 은행과 개별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¹⁵ 펌중계기관이라고도 불리는 펌VAN사업자는 은행과 이용기관을 연결하고, 실시간 또는 일괄처리 방식으로 자료를 송수신하여 은행과 이용기관 간 펌뱅크서비스를 중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지로나 CMS서비스와 같이 이용기관의 자금수납·지급업무 등을 주로 처리하며, 2024년 5월 기준 13개 사업자¹⁶가 있다. 한편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또 다른 유형으로 결제중계시스템 운영사업자가 있는데,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대표적이며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거래중계 외에 금융회사 간 차액결제자료를 작성하는 청산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표4-4〉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위

전자 금융 감독 규정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예시	신용카드VAN사업자	점외CD/ATM사업자 펌VAN사업자	결제중계시스템 운영사업자 등
서비스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거래 승인 등 실시간으로 카드거래를 중계하고 매출전표 매입·대금청구를 대행	금융회사와 제휴를 통해 지하철역, 편의점 등에 CD/ATM을 설치, 현금인출·잔액조회·계좌이체서비스 등을 제공 또는 은행과 이용기관을 연결하여 자금수납·지급서비스 등을 중계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여 자금정산, 결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결제중계시스템 운영

13. 한국전자금융, 효성티엔에스, 코리아세븐, 한네트, 에이티엠플러스

14.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15. 점외CD/ATM사업자 중 가장 먼저 서비스를 개시한 한국전자금융은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로부터 CD공동망과의 접속을 승인받아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CD공동망에 직접 접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자금 정산도 금융결제원을 통한 전체 은행과의 차액결제방식을 따른다. 나머지 사업자는 제휴 은행을 통해 CD공동망에 간접 접속하는 방식이며, 운영자금 정산은 제휴 은행과 개별 처리한다.

16. 하이폰코퍼레이션, 헥토파이낸셜, 쿠팡, 토스페이먼츠, 삼성SDS, SK C&C, LGCNS, 이지스엔터프라이즈, 나이스페이먼츠, 한국정보통신, 더존, 보난자팩토리, 더존비즈온

2절 청산기관

청산업무는 비현금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지급결제서비스에서 지급인과 수취인이 거래하는 다수의 금융회사 간 주고받을 금액을 차감하여 결제금액을 확정하고 최종 결제를 지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 청산업무를 담당한다. 즉,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참가기관 간 지급지시의 송수신내역을 기반으로 청산 대상거래 확인, 다수의 채권·채무에 대한 차감 작업을 통해 금융회사 간 최종 결제할 금액을 확정하여 결제기관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청산업무는 중앙은행의 최종 결제 수행과 구분되어 주로 소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민간기관이 금융회사 간 협약 등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¹⁷ 우리나라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소액결제시스템의 청산기관 역할도 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소액결제시스템 전담 운영기관으로서 1910년 설립된 경성수형교환소의 어음교환을 시작으로 배치처리 기반의 계좌이체(지로나), 실시간 처리 기반의 계좌이체(금융공동망)로 이어지는 지급수단의 변화 흐름에 맞추어 금융회사 간 차액결제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3절 결제기관

결제기관은 청산 과정에서 확정된 금액을 결제기관에 개설된 당좌계좌로 자금을 실제로 이동시켜 금융회사 간 지급결제를 최종 완결시키는 기관으로 보통 중앙은행이 결제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은행 제도가 발달하기 이전, 금융회사 간 결제는 상업은행이나 별도 청산기관이 수행하였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등장 이후 금융회사가 중앙은행을 최종 결제기관으로 이용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금융회사 간 결제 시 사용하는 중앙은행의 결제자산¹⁸이 안전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라는 점, 그리고 중앙은행이 안정적으로 금융회사에게 일중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제기관으로서 최적이었기 때문이다.¹⁹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금융회사 간 자금결제를 처리하는 거래결제시스템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운영하며, 최종 결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은행이 결제기관으로서 거래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결제자산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결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한은금융망에 참가기관으로 가입하여 한국은행과 당좌예금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7. 예외적으로 중앙은행이 청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연준의 FedACH가 이에 해당한다.

미국의 경우 연준과 민간기관 TCH가 청산 업무수행에 있어 경쟁 관계에 있다.

18. 결제자산은 지급인과 수취인 간 금전적 채권·채무를 해소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자산으로 중앙은행의 현금과 예금,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이 있다. 한국은행(2008. 11.), 지급서비스의 기본개념과 취급요건

19. 한국은행(2003. 12. 19.), 지급결제시스템과 중앙은행 화폐(예금)의 역할

〈Box1-10〉지급결제제도에서 중앙은행(한국은행)의 역할

1. 결제기관으로서 거액결제시스템 운영(operator)

한국은행은 법정화폐와 당좌계좌라는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결제자산을 제공하는 최종 결제 기관으로서 한국은행에 개설된 금융회사 당좌예금의 입출금을 통해 금융회사 간에 최종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은금융망에 참가하는 금융회사가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 최종 대부자로서 일중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여 지급결제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시스템리스크를 방지·관리한다.

2. 지급결제제도 감시(overseer)

지급결제제도의 발전과 함께 거액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여러 지급결제시스템의 연계 심화, 금융회사의 여러 지급결제시스템에 동시 참가 증가, 경제활동의 글로벌화 진전에 따른 국내외 지급결제 시스템 간 높아진 상호 연계 등으로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감시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BIS CPMI 등이 정한 국제기준 준용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미비점 등을 운영기관에 개선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지급결제제도 발전 촉진(catalyst)

지급결제제도의 개선과 발전 촉진을 위해 지급결제시스템의 개선방안 마련 노력,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구(BIS, EMEAP^{주)} 등)에서의 활동 및 협력 추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운영을 통해 금융표준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는 동아시아·대양주지역 중앙은행 간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은행 간 협력기구이다.

제 5 장

지급결제리스크



지급결제 거래 과정에서 거래상대방, 거래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와 중개자, 그리고 최종 은행 간 결제가 이루어지는 중앙은행은 여러 위험에 노출된다. 일반적으로 리스크(risk)는 불확실성(uncertainty)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부정적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지급결제리스크는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로 인해 야기되는 손실 발생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급결제시장의 플레이어가 다양해지고 지급결제 규모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한 리스크의 유형과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1절 지급결제리스크의 종류

최근에는 지급결제수단의 경쟁 심화, 결제시스템의 디지털화 등으로 지급결제에서의 편리함과 효율성이 증가했지만, 한편으로는 전통적으로 은행이 수행해 왔던 영역에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가하여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지급결제 리스크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급결제리스크는 발생 원천 및 형태에 따라 신용리스크(credit risk),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법률리스크(legal risk),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 등이 있으며¹⁾, 비금융회사, 신생 핀테크 기업의 지급결제시장 참가로 인한 리스크도 새로이 관리해야 할 주요 리스크이다.

〈표5-1〉 지급결제리스크의 유형

구분	내용
신용리스크	참가기관의 파산,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인하여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는 위험
유동성리스크	참가기관이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지 못하여 정해진 시점에 채무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
운영리스크	전산시스템의 기술적 오작동, 재해 발생 등으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신용리스크나 유동성리스크가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위험
법률리스크	법·제도의 미비 또는 법적 불확실성 등으로 결제가 제대로 완결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위험
시스템리스크	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참가기관 또는 다른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들의 연쇄적인 결제불이행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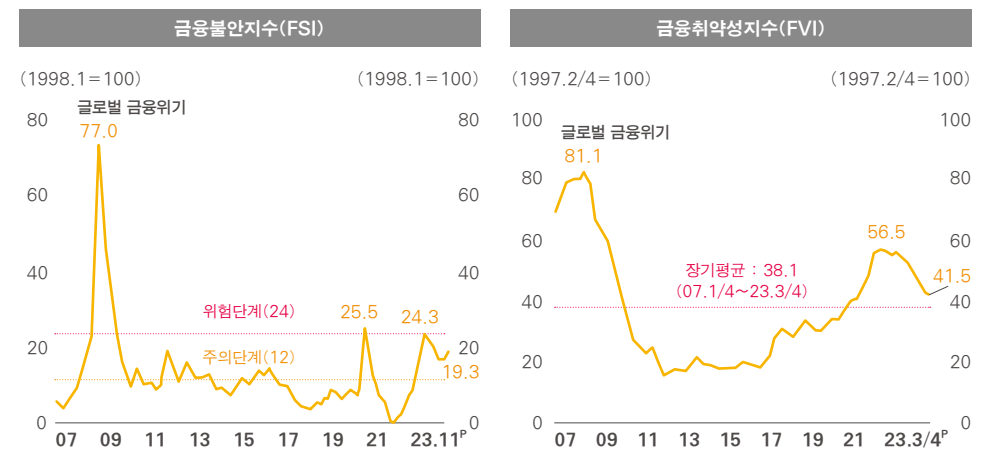
1. 신용리스크

신용리스크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파산 등으로 채무결제를 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차액결제기반의 소액결제시스템에서는 자금이체지시를 받은 은행이 수취고객에게 이체 당일 즉시 자금을 내어 주지만 실제 금융회사 간 정산은 다음날 오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신용리스크를 안게 된다. 지급결제에 사용되는 자금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고객예금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은행 및 예금기관이 그 자금을 그대로 보관한다면 원천적으로 신용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은행 등 예금수취기관은 고객예금에서 지급준비금을 제한 나머지를 채권, 대출 등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이 과정에서 자산운용이 잘못되어 감당하기 힘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산의 평가액이 고객예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융부실로 이어지고 최악의 경우 파산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금융부실 및 파산이 신용리스크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처럼 소액결제시스템의 신용리스크는 예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리스크가 근본 원인이며 모든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안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 간 하루 동안 자금이체지시로 주고받은 금액을 누적하여, 다음날 한 번에 정산하는 국내 소액결제시스템의 특성상 차액으로 결제해야 하는 자금이체 금액이 크며 정산해야 하는 건수도 많다. 이로 인해 특정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소액결제 참가기관 전체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급결제시스템상의 신용리스크는 매우 중요한 관리 대상 리스크이다. 한국은행은 신용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과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와 금융취약성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금융불안지수와 금융취약성지수는 낮을수록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그림5-1〉을 보면 금융시스템의 단기적인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수치가 크게 치솟았으나, 2023년 말에는 위험단계인 24.3을 하회하는 수준이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금융취약성지수는 3/4분기 41.5로 하락하여 장기평균 수준인 38.1에 근접하였다.

〈그림5-1〉 금융불안지수와 금융취약성지수



자료 : 한국은행(2023. 12.), 금융안정보고서

1. BIS(2001. 1.),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core principles for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

2. 유동성리스크

유동성리스크란 지급결제에 참가하는 금융회사가 신용리스크 외에 일시적인 사정으로 예정된 채무결제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리스크를 말한다. 금융회사 파산 등으로 결제이행이 불가능해지는 리스크를 뜻하는 신용리스크에 반해 유동성 리스크는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지만, 투자자산의 현금화 지연, 현금 부족 등 일시적인 사유로 정해진 기일에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일시적인 유동성리스크가 신용리스크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고 발생 시점에서는 두 리스크의 구분이 매우 모호하다는 점에서 두 가지 리스크를 구분하지 않기도 한다. 유동성리스크는 신용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연쇄적으로 참가기관에 유동성 또는 신용리스크를 발생시켜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관리 대상이다. 특히 국내 소액결제시스템은 하루 동안의 자금 지급금액과 수취금액을 정산하여 한 번에 차액결제하기 때문에 결제하는 시점에 신속하고 충분한 유동성 조달이 어려운 경우 유동성리스크를 쉽게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급결제제도에서의 유동성리스크는 자금이체에 소요되는 자금의 원천인 요구불예금, 즉 단기부채를 국채, 채권, 대출 등의 장기채권에 투자, 운용하는 데서 발생한다. 즉 참가기관이 차액결제 결과 통보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 규모보다 순지급대금이 많은 경우 참가기관은 차액결제 시간까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그런데 투자자산매각이나 차입자금 조달에는 상당한 시간 및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서 예상을 벗어난 결제금액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유동성 부족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한국은행은 은행을 대상으로 긴급유동성 공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운영리스크

운영리스크는 기술적인 오류, 운영상의 실수 등과 같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적 요인들로 인해 지급결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참가 금융회사의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 유발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말한다. 전산장애, 통신장애, 태풍, 지진, 화재, 침수, 전력공급 중단, 부적절한 내부 처리절차, 직원 실수, 부정 사건, 신뢰 상실 등 다양한 운영적 요인이 운영리스크에 포함된다. 운영리스크는 크게 정보시스템리스크, 관리리스크, 평판리스크, 기술변화리스크, 재해리스크 및 범죄리스크로 구분된다.

〈표5-2〉 주요 운영리스크 종류

구분	내용
정보시스템리스크	전산시스템 및 정보 통신네트워크의 장애로 지급결제서비스가 지연 또는 중단되는 리스크
관리리스크	전산시스템 운영 방법, 내부 리스크 관리 절차, 담당 직원의 전문성, 백업시스템 등의 문제로 지급결제서비스가 지연 또는 중단되는 리스크
평판리스크	지급결제서비스 중단 또는 해킹 등으로 고객의 신뢰가 무너져 고객이 특정한 결제서비스를 회피하는 리스크
기술변화리스크	IT에 관한 기술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결제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기술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해킹 등의 사태가 발생하는 리스크
재해리스크	태풍, 지진, 홍수, 전기공급 중단, 침수, 테러 등의 대규모 자연·인위적 재해로 전산센터 및 본부시설 등이 피해를 입어 서비스가 중단되는 리스크
범죄리스크	지급결제서비스가 범죄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리스크

4. 법률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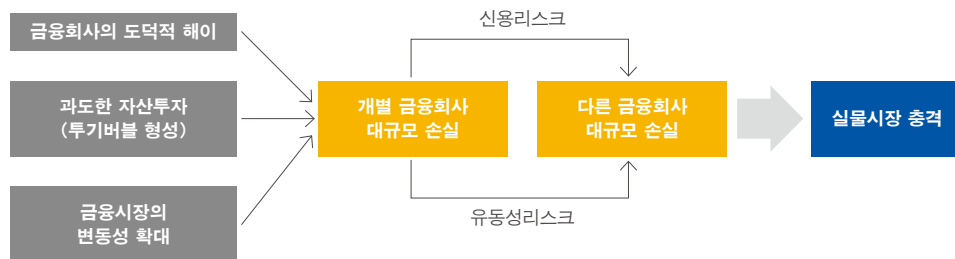
지급결제제도하에서의 법률리스크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법, 제도나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결제가 완결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이는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국내외 정책 당국의 법률·제도 등의 정비 속도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거나 새로운 법률·제도 도입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최근 IT의 급속한 발전은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를 출현시키는 등 지급결제시장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핀테크 기업과 같은 비금융회사의 지급결제시장 진입 확대,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도입·연구, 실시간 총액결제 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 구축 등 지급결제의 전반에 걸쳐 변화가 지속되면서 지급결제 관련 이슈가 정책 당국 및 중앙은행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5. 시스템리스크

시스템리스크란 지급결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 또는 지급결제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다른 참가기관으로 신용리스크나 유동성리스크가 전이되어 광범위한 결제불이행을 야기하거나 다른 금융시스템으로 채무불이행이 전이되어 전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말한다. 개별 금융회사의 대규모 손실 또는 부도 사건이 다른 금융회사나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시스템리스크로 판단하지 않는다. 시스템리스크의 대표적 사례는 1929년 미국의 대공황, 1974년 독일 헤르스타트(herstatt) 은행 부도로 인한 글로벌 은행 연쇄도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있다. 시스템리스크는 이처럼 한번 발생하면 건잡을 수 없는 위기로 번지기 때문에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리스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내 소액결제시스템에서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타 기관으로 결제불이행이 전이되지 않도록 단계별 대응책을 운영하고 있다. 1단계로 금융회사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전담보제도에 따라 한국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적격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국은행이 자금을 지원하여 결제를 완결한다. 2단계로 결제불이행 금액이 담보증권 처분으로도 부족한 경우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도에 따라 여타 참가기관이 공동 분담하여 결제를 완결한다.²⁾

〈그림5-2〉 시스템리스크 개요



2절 지급결제리스크의 관리

유기적이고도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급결제제도 내에서 어느 한 금융회사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금융회사의 결제불이행을 야기할 경우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어 실물경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은 이처럼 지급결제제도가 건전한 금융제도와 신용 질서의 유지 발전에 필요한 하부구조일 뿐만 아니라 통화신용정책의 전달경로를 이루고 있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상의 각종 지급결제리스크를 제거 또는 감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급결제리스크 관리제도 및 원칙으로는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업무지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이하 BCP), PFMI 등이 있다.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리는 신용리스크·유동성리스크, BCP는 운영리스크, PFMI는 지급결제 전반에 관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이다.

2. 시스템리스크는 신용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단계적 대책이 시스템리스크의 대책으로 이용된다.

1.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을 거쳐 중앙은행의 한은금융망을 통해 최종 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즉, 지급결제중계기관이 개입하여 금융회사 간 최종적으로 수취 또는 지급할 차액을 확정하는 청산의 과정을 거쳐 각 금융회사가 중앙은행에 개설해 둔 당좌계좌를 통해 완결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급결제 과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차액결제 방식은 금융회사가 지정된 시각에 채무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신용리스크·유동성리스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각 금융회사가 유기적으로 얹혀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의 특성상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고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방안이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방안으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표5-3〉 소액결제시스템 리스크 관리제도

구분	내용				
순이체한도제	- 미결제순이체액(참가기관의 지급예정액 - 수신예정금액)의 상한을 설정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지시 제한 - 순이체한도는 각 차액결제 참가기관이 자신의 과거 최대 순채무액, 향후 대고객 거래 규모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				
결제이행용 담보증권예치제	- 차액결제불이행 시 결제부족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참가기관이 적격증권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담보로 제공 -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용 담보증권 제공 비율				
	2023. 2.	2023. 8.	2024. 8.	2025. 2.	2025. 8.
	70%	80%	80%	90%	100%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 담보증권 처분 등에도 불구하고 결제자금 부족 시 참가기관 공동으로 부족자금을 담보증권 예치 비율에 따라 분담				

가. 순이체한도제(net debit caps)

순이체한도제는 소액결제 참가기관이 하루 중 발생시킬 수 있는 미지급결제채무의 최대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결제불이행을 예방하고 지급결제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순이체한도의 적용을 받는 차액결제시스템에는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차액결제되고 있는 거래 중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고 차액결제보다 고객 앞 대금지급이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미결제채무가 발생하는 거래들이 해당된다. 순이체한도는 각 차액결제 참가기관이 자신의 과거 최대 순이체액, 향후 대고객 거래 규모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참가기관이 해당 기관의 순이체한도 설정 금액을 한국은행에 통보하면, 한국은행이 순이체한도 모니터링 단말기를 통해 금융결제원 순이체한도 관리시스

템에 등록하며, 차액결제대행은행은 서민금융기관 및 금융투자회사의 순이체한도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표5-4〉 차액결제, 순이체한도 대상거래

구분	차액결제 대상거래	순이체한도 대상거래
어음교환시스템	○	○(실시간 거래)
지로시스템	○	×
CD공동망	○	○(실시간 거래)
타행환공동망	○	○
CMS공동망	○	×
지방은행공동망	○	○
전자금융공동망(오픈뱅킹 포함)	○	○
기업-개인(B2C)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	○(실시간 거래)
기업 간(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	×
국가간공동망	○	○

나. 결제이행용 담보증권예치제

결제이행용 담보증권예치제는 참가기관이 정한 순이체한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담보증권을 한국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이 담보를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우선적으로 결제를 완결하게 된다.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적격증권은 대출 정책 및 유동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산업·중소기업·수출입금융채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과거에 순이체한도의 50%에 해당하는 담보증권을 한국은행에 예치하였지만, 한국은행은 2023년 8월부터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 제공 비율을 70%에서 80%로 인상하였으며, 2025년 8월에는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³⁾

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는 담보증권을 초과하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담보로 결제하지 못한 미결제대금을 나머지 참가기관이 예치한 담보증권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결제를 완결시키는 제도이다. 공동분담은 결제불이행 기관의 사전 담보로 결제이행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불이행자 부담(defaulter pay)과 달리 생존기관(결제이행기관)이 결제이행재원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생존자 부담(survivor pay) 방식이라고도 한다. 결제불이행 기관은 그 분담금에 금융회사에 대한 여신업무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상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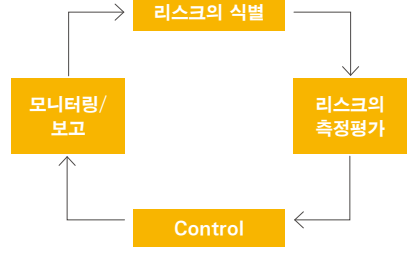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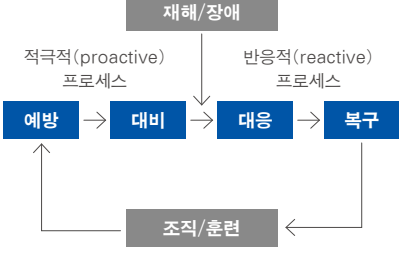
2. 업무지속성계획(BCP)

BCP는 갑작스러운 위기 및 재해 상황 속에서도 기업 혹은 조직이 핵심적인 업무 기능을 계획된 수준 또는 중대한 변경 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전략 방안으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직 전체의 정책 및 절차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핵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BCP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이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대응 역량 확보가 필수적이다. 기업의 BCP는 이러한 역량의 기초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일상생활의 근간이 되는 경제활동은 금융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금융의 중요성,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복잡성과 운영리스크 증대, 금융시스템의 디지털화에 따른 네트워크 인프라 등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BCP는 필수적이다.

또한, 지급결제 절차의 집중화로 이러한 절차가 중단될 경우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급결제 부문에서 BCP는 필수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BCP는 리스크 관리 방안 중 하나이지만 일반적인 운영리스크 관리와는 차이를 보인다. PFMI에서는 운영리스크를 정보시스템의 결함, 인적 실수, 관리 실패, 외부사건으로 인한 혼란으로 금융시장인프라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축소·악화 또는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위협으로 정의한다. BCP는 이 중 외부사건(전기 공급 중단, 지진, 화재, 테러 등의 재해)으로 인하여 전산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할 위험을 주로 다루므로 운영리스크 관리와 BCP는 대상, 범위, 목적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3. 한국은행(2024. 4. 15.), 2023년도 지급결제보고서

〈표5-5〉 일반적인 운영리스크와 업무지속성계획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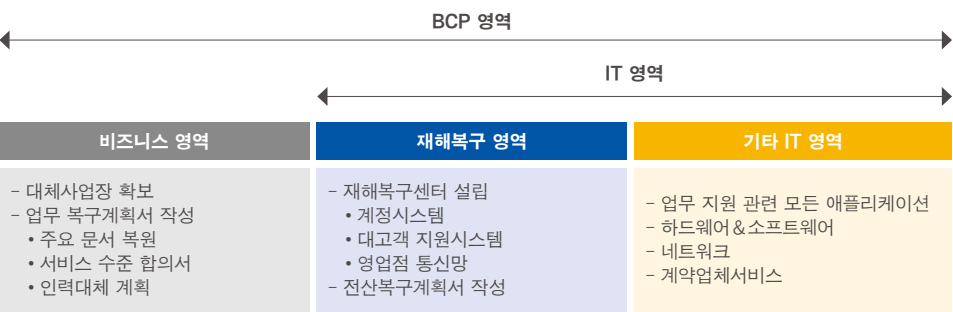
구분	일반적인 운영리스크 관리	업무지속성계획
목적	정상 영업 상황에서 운영리스크 손실 발생 최소화	예측 불가능한 비상 상황의 발생이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범위	전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	핵심 업무 기능 ^{주)} 의 중단
관리	리스크 식별, 측정 평가, 통제, 모니터링 및 보고	재해예방, 대비, 대응, 복구, 조직구성, 모의훈련
프로세스		

주) 피해 규모가 큰 본점 및 전산센터의 주요 인프라 등 低 빈도·高 영향의 영역

가. 업무지속성계획의 범위

BCP는 전체 조직 차원의 인력, 자원, 업무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구축되므로 단순한 IT 영역을 넘어서 전반적인 업무수행 영역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과거에는 IT 부서 중심의 정보시스템 및 핵심 업무의 복구 위주였으나, 현재는 조직 고유의 역할 및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전체 조직의 업무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림5-3〉 업무지속성계획의 포괄범위



나. 업무지속성계획의 수행 절차

BCP는 통상 ① 위험분석 → ② 사업 영향 분석 → ③ 복구전략 수립 → ④ 계획 수립 → ⑤ 모의훈련 수행의 5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특히, 5단계의 모의훈련 수행을 통해 취약점 및 미비점을 발견하여 4단계에서 수립된 계획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표5-6〉 업무지속성계획 수행 프로세스

구분	BCP 수행 내용
① 위험분석	업무중단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및 동 위험요인의 영향력에 따라 위험의 우선순위 파악
② 사업 영향 분석	핵심 업무의 우선순위에 따라 목표복구시간(RTO) ^{주1)} , 목표복구시점(RPO) ^{주2)} 등 목표복구 수준 결정
③ 복구전략 수립	복구우선순위에 의한 핵심 업무 복구전략 수립
④ 계획 수립	업무 및 전산시스템의 복구를 위한 상세계획 수립(재해복구센터, 대체사업장 등)
⑤ 모의훈련 수행	수립된 계획의 정기적 테스트를 통한 미비점 파악 및 수립된 계획의 보완

주1) 목표복구시간(Recovery Time Objective)은 특정 기능을 복구하기 위한 목표 시간으로서 금융회사에 심각한 영향과 손실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업무중단 시간을 의미한다.
주2) 목표복구시점(Recovery Point Objective)은 업무의 계속적인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의 손실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의미하는 손실 허용 시점을 말하며, 업무의 지속적 수행을 위해 어느 시점까지의 데이터가 필요한가에 따라 정해진다.

3. 중앙은행의 결제리스크 감독·감시

최근 지급결제시장에는 핀테크·빅테크 기업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가하고 있다. 다양한 참가자가 등장한 후 전통적인 리스크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도 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인프라와 지급결제시스템을 감독·감시하는 금융당국 및 중앙은행의 역할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⁴⁾

지급결제제도 감시의 개념에는 공공정책 목표(안전성 및 효율성), 감시범위(지급결제시스템), 감시활동(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 권고)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무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

4. 지급결제제도의 감시는 일반적으로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금융회사의 감독은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유지를 통한 신용 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활동을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이유는 소액·증권·외환 결제시스템 등 시스템 대부분이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은행은 여러 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처리하며 감시에 필요한 전문성을 축적했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위기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급결제제도는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반이 되고 유동성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파급되지 않도록 하는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감시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한국은행의 감시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스템의 안정성·효율성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개선 유도 등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은행은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감시 대상 시스템에 중요한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표5-7〉 감시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구분			운영기관
중요지급결제시스템	한음금융망		한국은행
	어음교환시스템		
	금융공동망	타행환	금융결제원
		전자금융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한국예탁결제원
	기관 간 Repo결제시스템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
	CLS시스템		CLS은행
기타지급결제시스템	지로시스템		
	금융공동망	CD공동망	금융결제원
		CMS공동망	
		B2C 전자상거래	
		B2B 전자상거래	
		직불카드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국가간공동망	
		오픈뱅킹시스템	
	BC카드결제시스템		BC카드사

구분		운영기관
기타지급결제시스템	외화자금이체시스템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서민금융기관 중앙조직 지급결제시스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탁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한국예탁결제원
	위안화 청산시스템	교통은행 서울지점

자료 : 한국은행(2024. 4. 15.), 2023년도 지급결제보고서

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다 보면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고, 안전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운영비용이 증가해 효율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렇듯 안전성과 효율성은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과 감독·감시 기관은 안전성과 효율성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Box1-11〉 우리나라 결제완결성 보장 제도

1. 결제완결성의 정의

결제완결성이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파산 및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재산·금융상품의 이전이나 채무의 이행이 취소되지 않고(irrevocable) 무조건적으로(unconditional)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2. 결제완결성 보장의 필요성

참가기관의 파산은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다른 기관의 자금 운용에 차질을 초래하며, 이에 따른 결제불이행이 전체 참가기관에 연쇄적으로 파급될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결제완결성 보장 제도는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파산할 경우 파산 관련 법에 따라 파산 선고일의 결제가 취소되어 결제완결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3. 법적 근거

우리나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및 제336조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의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제완결성 보장시스템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시스템을 통한 이체지시나 지급에 대하여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시스템 운영기관이 정한 대로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4. 보장 대상

현재 우리나라는 한은금융망 등 8개 지급결제시스템을 결제완결성 보장시스템으로 지정하고 있다. 증권결제시스템에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권시장의 청산·결제 제도를 보호하고 있으며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고 있다.^{주)}

우리나라의 결제완결성 보장시스템 현황

구분	운영기관	시스템	거래 대상
거액결제시스템	한국은행	한은금융망	거액 자금이체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	온라인뱅킹 자금이체
		타행환공동망	은행 창구 자금이체
		CD공동망	CD/ATM 자금이체
		어음교환시스템	어음교환, 자기앞수표, 전자어음 등
		지로시스템	지로
외환결제시스템	CLS은행	CMS공동망	CMS 자금이체
		CLS시스템	외환거래에 따른 자금이체

주) 한국거래소(2019. 7.), 주식시장 매매제도의 이해

지급결제 주요 법·규정



지급결제시스템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며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및 금융당국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급속한 디지털 혁신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과거 은행의 독점적 전유물로 여겨지던 지급결제시스템이 개방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들은 자신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지급결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지급결제 관련 주요 정책에 ‘안정’이 최우선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혁신’ 역시 새로운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지급결제제도 전반을 포괄하여 규율하는 일반법의 성격을 지닌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급수단, 지급거래, 지급결제시스템의 유형 등에 따라 관련 법·규정에서 각각 분산하여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결제를 규율하는 우리나라의 법·규정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각각의 법·규정을 전체적으로 참조해야 한다. 아울러 법·규정 간의 상호 연계성 및 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소액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지급, 청산, 결제로 이어지는 지급결제 프로세스에 따라 각 단계에서 적용되는 법·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지급단계에 대하여는 지급수단별로 관련 법이 존재하나, 청산 및 결제단계에 대한 주요 내용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다. 청산의 경우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과 금융회사 간 업무처리 준칙인 금융결제원 규약에서, 결제의 경우 결제기관인 한국은행의 소관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1절 지급단계의 법·규정

지급단계에서는 사전절차로서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이 지급수단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 및 요건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이후 지급거래에 따른 법률관계로 지급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권리·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지급수단별로 적용되는 법·규정을 구분하여 지급단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어음·전자어음·수표에 관한 규정

어음, 전자어음, 수표는 각각 「어음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 「수표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전자어음법」에서는 전자어음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어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4조)라고 하고 있어 전자어음의 일반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어음법」을 따르게 된다.

가. 지급수단의 개념 및 요건

어음 및 수표에 대하여는 법에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전자어음에 대하여는 「전자어음법」에서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이라고 정의한다(제2조 제2호). 어음 및 수표는 법에 규정된 필수적 기재요건이 반드시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법에서는 어음 및 수표의 요건으로 필수적 기재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관련 법의 세부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6-1〉 어음·수표·전자어음의 필수적 기재 사항

구분	내용	관련 조항
환어음	①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②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③ 지급인의 명칭 ④ 만기 ⑤ 지급지 ⑥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⑦ 발행일과 발행지 ⑧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어음법 제1조
약속어음	①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②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③ 만기 ④ 지급지 ⑤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⑥ 발행일과 발행지 ⑦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어음법 제75조
전자어음	①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②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③ 만기 ④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⑤ 발행일과 발행지 ⑥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회사 ⑦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 ⑧ 사업자고유정보 ⑨ 발행인의 전자서명	전자어음법 제6조 제1항, 제3항
수표	①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②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③ 지급인의 명칭 ④ 지급지 ⑤ 발행일과 발행지 ⑥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수표법 제1조

필수적 기재 사항에 관한 요건에 더하여 수표의 경우 지급인을 은행으로 하며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그 은행에 있어야 한다. 더불어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발행인과 지급인 간에 체결되어야만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수표법」 제3조). 또한 전자어음에 대하여 ‘전자어음을 발행하려는 자는 그 전자어음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전자어음법」 제5조 제1항) 발행에 관한 특별한 요건을 두고 있다.

나.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전자어음과 관련하여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분류에 정확히 해당되지는 않으나 전자어음관리기관이라는 특수한 기관이 존재한다.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및 권리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전자어음법」 제16조 제1항). 「전자어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 능력·재정 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전자어음법」 제3조 제2항).

다. 지급거래에 따른 법률관계

어음 및 수표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 및 수표 자체를 제시해야 하며, 지급제시에 따라 지급이 되면 권리가 소멸된다. 법에서는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어음법」 제38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수표법」 제29조), 그 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특히, 어음교환소에서 한 어음·수표의 제시에 대하여도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어음법」 제38조 제2항, 제77조 제1항, 「수표법」 제31조 제2항). 또한 어음·수표의 기재 사항을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때 그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전자적인 방식의 제시도 가능하다(「어음법」 제38조 제3항, 제77조 제2항, 「수표법」 제31조 제1항).

전자어음의 지급제시와 관련하여 「전자어음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전자어음 및 전자어음의 배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지급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에 송신한다. 그 금융회사가 수신한 때에는 「어음법」에서 규정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것으로 보며,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전자어음의 제시도 같은 효력이 있다(제9조 제1항). 이후 지급제시를 받은 금융회사가 어음금을 지급한 후 이에 대해 통지하거나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 어음관계는 소멸하게 된다(제10조).

「전자어음법」에서는 전자어음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도 정하고 있다.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 거래의 전자적 전송·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제15조). 또한 전자어음을 등록할 때 이용자에게 전자어음 거래에 관한 약관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용자가 요청할 때는 그 약관을 발급하고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제18조 제1항). 나아가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 관련 발행상황 및 잔액 등의 결제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업무상 알게 된 전자어음거래정보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제17조).

2. 전자기급수단에 관한 규정

가. 지급수단의 개념 및 요건

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율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수단을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으로 분류(제2조 제11호)하고, 각각의 전자지급수단의 개념 및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세부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6-2〉전자지급수단 유형별 개념 및 요건

구분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조항
전자자금이체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함)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	제2조 제12호
직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유통 받을 수 있는 증표 제외)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제2조 제13호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단, 전자화폐는 제외)	제2조 제14호
전자화폐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①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②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될 것 ③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④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⑤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제2조 제15호
전자채권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금전채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정할 것 ② 전자채권에 채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③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④ 금융회사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될 것 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①~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송신하고 채권자가 이를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할 것	제2조 제16호

나.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상 은행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허가·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에서는 전자금융업의 유형을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 예치, 전자고지 결제로 분류하며, 각각에 대한 허가·등록요건을 정하고 있다. 전자금융업 유형별 서비스 내용은 앞서 <표4-3>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허가·등록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대하여도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표6-3> 전자금융업 등 허가·등록 요건

구분	허가·등록	요건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조항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허가	주식회사, 50억 원 이상의 자본금, 전문인력·물적 시설, 재무건전성, 타당·건전한 사업계획, 주요 출자자의 출자능력·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전자자금이체	등록	상법상 회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 전문인력·물적 시설, 재무건전성	제28조 제2항,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상법상 회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 전문인력·물적 시설, 재무건전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상법상 회사·특별법에 따른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출자총액, 전문인력·물적 시설, 재무건전성	
전자지급결제대행		상법상 회사·민법상 비영리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출자총액·기본재산, 전문인력·물적 시설, 재무건전성	제28조 제2항, 제30조 제3항, 제31조 제1항
결제대금예치			
전자고지결제			

다. 지급거래에 따른 법률관계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거래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로 규정한다. 그중 전자지급거래는 지급인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거래(제2조 제2호)로 정의하며, 거래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 권리·의무관계 및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고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가진다(제24조 제1항). 이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지급인 또는 수취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인 또는 수취인이 거래지시한 금액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때에는 이를 지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12조). 이와 같은 지급의 효력은 전자지급수단별로 법에서 정한 효력 발생시기에 생기게 되며(제13조 제1항),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법에서 정한 시기는 다음과 같다.

<표6-4> 전자지급수단별 지급의 효력 발생 시기

구분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조항
전자자금이체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제13조 제1항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나아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7조). 이용자는 이러한 방법 등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했을 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제8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제26조).

한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제9조, 제10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범위에 관한 세부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6-5〉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책임

구분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조항
전자금융사고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부담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③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가능 ①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②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2항
분실·도난	-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에는 제외	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9조

전자지급거래의 유형에 따른 특별한 규정으로서, 전자자금이체와 관련하여 수취인의 지시에 따른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급인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함을 정하고 있다(제15조). 또한, 전자화폐는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해야 하며(제16조 제1항)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잔액을 환급해야 한다(제19조 제1항).

3. 지급카드에 관한 규정

가, 지급수단의 개념 및 요건

지급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율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개념 및 기능상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업자만 발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금융업자가 발행 주체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과 차이가 있다. 앞서 〈표6-2〉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다루었으므로 아래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세부규정을 다룬다.

〈표6-6〉지급카드 유형별 개념 및 요건

구분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조항
신용카드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 ① 금전채무의 상환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 ④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제2조 제3호
직불카드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	제2조 제6호
선불카드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	제2조 제8호

나.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모두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신용카드업자가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제3조 제1항).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 계약에 따라 같은 업종의 여러 도매·소매 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제3조 제2항). 법에서 정한 신용카드업에 대한 허가·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6-7〉 신용카드업 허가·등록 요건

구분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조항
허가	①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함께 하지 않거나 그중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200억 원, 둘 이상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4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② 거래자를 보호하고 취급하려는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④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제5조 제1항, 제6조 제2항
등록	주식회사로서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20억 원 이상인 자일 것	제5조 제2항
허가·등록 결격사유	① 법에 따라 등록·허가가 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는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이었던 자로서 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③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악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허가신청일 및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허가의 경우만 해당) ⑥ ①~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인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제6조 제1항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 중 대금의 결제업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며(제2조 제2의2호), 부대업무로 직불·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다만,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신용카드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 부대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다. 지급거래에 따른 법률관계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함에 있어 본인이 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제14조 제1항, 제2항). 특히, 신용카드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한도액이 소득·재산·지급보증·대금결제 능력·다른 금융회사로부터의 신용공여액 등을 포함한 신용한도 산정기준에 따른 개인 신용한도를 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제14조 제2항). 「민법」에 따른 성년 연령 이상일 것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자에게만 발급이 가능하다(제14조 제3항).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약관과 함께 회원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제14조 제5항).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각종 요율, 신용카드·직불카드 이용금액의 결제 방법,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책임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에 알려야 한다(제18조).

법에서는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로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제24조의2 제1항). 그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신용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 유통의 최고한도, 직불카드의 1회 또는 1일 이용 한도, 선불카드의 총 발행한도와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신용카드 이용 한도를 정할 때 지켜야 할 사항,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약관의 내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24조).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 경위 및 사용일시·사용내역·사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9). 나아가 법에서는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직불·선불카드 회원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책임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세부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6-8〉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회원 등에 대한 책임

구분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조항
분실·도난	- 신용카드 회원이나 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을 부담 -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음(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시행령 제6조의9
위·변조 신용카드 사용	- 다음과 같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 부담 ① 위·변조된 신용카드 등(신용·직불·선불카드)의 사용 ②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 정보 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한 사용 ③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신용카드 회원 등(신용·직불카드 회원, 선불카드 소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신용카드업자가 ① 및 ②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 회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 회원 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 회원 등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회원 등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음	법 제16조 제5항, 제6항

라. 기타

타 지급수단 중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그 외 각각의 법·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거래관계에 따라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특히 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다.

2절 청산단계의 법·규정

청산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율하지 않고 금융결제원 규약에서 규율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소액결제시스템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참가기관과의 업무처리 준칙인 규약을 업무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청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청산단계에 관한 규정은 주로 청산기관의 역할 및 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것이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산기관

법에서는 청산기관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한 유형으로서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결제중계시스템의 업무처리 범위에 청산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6-9〉 청산기관 관련 법·규정 내용

구분	용어	내용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2조 제3호)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지급결제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지급수단의 교환 또는 이체지시의 송수신을 중계하고 이에 따른 거래의 청산 또는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5호, 제6호)	전자금융보조업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결제중계시스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여 자금정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

2. 청산 대상 거래

청산 대상이 되는 소액결제시스템 범위는 1편 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청산 대상 거래의 결제금액은 금융결제원 업무별 규약에 따라 참가기관 간 거래내역을 결산한 거래자금의 차액으로 하며, 고객 거래일과 참가기관 간 결제일 시차로 인한 참가기관 간 자금수급의 불균형을 보정하기 위하여 차액에 대한 자금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자금조정을 통해 자금을 더 보유하게 됨으로써 이득을 본 기관이 손실을 본 기관에게 일정 금액을 조정하여 보전해주도록 한다. 구체적인 조정금액 산출 방법은 금융결제원 업무별 규약 및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다.

3. 청산 처리절차

청산의 세부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금융결제원 업무별 규약 및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다. 규정내용은 업무별 규약 및 시행세칙 간 큰 차이가 없으므로 대표적으로 「전자금융공동망업무 규약 및 시행세칙」을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지급지시 송·수신

청산기관은 고객으로부터 지급지시를 의뢰받은 참가기관으로부터 고객의 요청을 전달받아 상대기관으로 전송하고, 다시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전송받아 고객에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한다(시행세칙 제22조 제1항). 지급지시를 송·수신할 수 있는 참가기관은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으로서, 참가자격은 앞서 1편 4장 〈Box1-9〉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거래집계 및 대사·확인

청산기관은 업무 종료 즉시 참가기관의 거래를 집계하여 처리 건수 및 금액을 차·대변으로 구분 작성하여 참가기관별로 전송한다(시행세칙 제59조 제1항). 참가기관은 청산기관으로부터 수신한 거래집계내역을 자신의 처리결과와 대사·확인하여 결제금액을 확인한다(시행세칙 제59조 제3항).

다. 결제금액 산출

청산기관은 참가기관별 거래집계내역을 바탕으로 거래 차액을 산출하여 결제금액에 관한 자료를 작성한다(규약 제9조 제1항).

라. 결제자료 전송

청산기관은 거래 익영업일 차액결제 지정처리시점 1시간 전까지 결제금액에 관한 차액결제 자료를 결제기관으로 전송하여 차액결제를 의뢰한다(규약 제9조 제2항, 시행세칙 제60조 제2항).

3절 결제단계의 법·규정

결제단계와 관련해서 「한국은행법」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서 규율하고 있으며, 결제기관의 역할, 차액결제 참가기준, 결제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제리스크 관리제도에 대하여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에서는 지급결제제도 참가자의 회생·파산에 대한 특칙을 두어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결제단계에 관한 법·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결제기관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결제기관으로서 한은 금융망을 통하여 참가기관 간 차액결제 업무를 비롯한 결제업무를 취급하며(규정 제5조 제1항), 참가기관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이를 처리하게 된다(세칙 제16조 제1항). 또한 「한국은행법」에서는 한국은행이 참가기관에 일종의 일시적인 결제 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다(제81조의2). 지원 및 상환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그 세칙·절차에서 정한다.

2. 결제 참가기준

차액결제는 한은금융망에 가입한 기관 간의 자금을 정산하는 제도이므로 차액결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한은금융망에 가입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그 세칙에서 정하는 한은금융망 가입자격 및 차액결제 참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규정 제6조 제4항). 또한 한은금융망 가입을 위해서는 한국은행과 한은금융망 가입약정을, 차액결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차액결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제6조 제3항, 제5항). 차액결제 참가요건에 관한 세부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6-10〉 차액결제 참가요건

구분	내용	관련조항
한은금융망 가입자격	①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부합하는 결제리스크 관리능력을 충분히 갖춘 것 ②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거래대상기관일 것 ③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감독기관이 없거나 재무건전성 기준이 없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 ④ 예상 이용 건수가 가입 후 월평균 50건 이상일 것 ⑤ 한은금융망 이용을 위한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 및 PC 사용자 각각 동일인이 아닌 2명씩 총 4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둘 것 ⑥ 업무지속 능력에 관한 기준으로서 장애 또는 재해 등에 대비하여 한은금융망 단말기를 2곳 이상의 장소에 설치할 것	규정 제6조 제1항, 제2항, 세칙 제4조 제1항, 별표5
차액결제 참가요건	①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②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은행의 대출이 가능할 것 ③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공동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일 것 ④ 신청일 직전 분기 말 기준으로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총 자본비율이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할 것 ⑤ 신청일 직전월 기준으로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이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할 것 ⑥ 차액결제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	규정 제6조 제4항, 세칙 제4조 제2항

차액결제 참가방식은 앞서 1편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 참가와 간접 참가로 나뉜다.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서는 차액결제에 직접 참가하여 다른 참가기관의 차액결제를 대행하는 기관을 ‘차액결제 대행은행’, 차액결제 대행을 위탁하여 간접 참가하는 기관을 ‘차액결제 위탁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5조 제2항). 차액결제 대행은행은 자신의 차액결제 금액에 차액결제 위탁기관의 결제금액을 합산하여 자신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결제를 이행하게 된다(제25조 제2항). 한국은행은 대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차액결제 위탁기관이 차액결제에 직접 참가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제32조 제1항). 차액결제를 대행하고자 하는 참가기관은 차액결제의 대행을 신청하고 한국은행과 차액결제 대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신청 시 차액결제 위탁기관과의 차액 결제대행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규정 제26조 제1항, 세칙 제73조).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세칙에서는 차액결제 위탁기관의 요건 및 차액 결제대행의 승인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세부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6-11〉 차액결제 위탁 및 대행 요건

구분	내용	관련조항
차액결제 위탁기관의 요건	①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②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공동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일 것 ③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으로서 한은금융망 가입기준을 충족할 것 ④ 차액결제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	규정 제25조 제3항, 세칙 제74조 제1항
차액결제 대행의 승인 기준	① 신청일 직전 분기 말 기준으로 차액결제대행 신청기관의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총 자본 비율이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경영지도 비율을 충족할 것 ② 신청일 직전 분기 말 기준으로 차액결제대행 신청기관의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총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이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경영지도 비율을 충족할 것 ③ 차액결제대행계약에 대행업무의 범위와 한도, 대행은행의 이행 의무, 위탁기관의 담보제공의무, 당사자 간 정산 등 세칙 〈별표3〉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④ 차액결제대행계약에 따른 개별 차액결제대행은행의 차액결제대행한도 합계가 동 은행의 차액결제대행 신청일 직전 분기 말 BIS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금액의 10% 이하일 것	세칙 제74조 제1항

3. 결제 처리절차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결제기관인 한국은행은 차액결제 지정처리시점에 이를 처리한다(규정 제8조 제2항). 차액결제 지정처리시점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에 따라 오전 11시이다(세칙 제33조 제1항). 다만, 규정에서는 참가기관의 당좌예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참가기관은 한은금융망을 통한 거래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 결제에 필요한 예금 잔액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규정 제13조 제1항).

4. 결제리스크 관리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앞서 1편 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이체한도 관리, 담보증권 제공,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도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세칙·절차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서는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감시업무의 내용으로 감시 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선정 및 분류, 지급결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감시 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평가, 감시 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개선요청, 긴급상황 시의 조치 등을 정하고 있다(제33조). 감시 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범위는 1편 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결제완결성은 「채무자 회생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자 회생법」에서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특칙을 두어 이를 보장한다(제120조 제1항, 제336조). 결제완결성 보장에 관한 세부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6-12〉 결제완결성 보장 관련규정

구분	내용
「채무자 회생법」(제120조 제1항, 제336조)	지급결제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참가자에 관련된 이체지시 또는 지급 및 이와 관련된 이행, 정산, 차감, 증거금 등 담보의 제공·처분·총당 그 밖의 결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시스템은 「채무자 회생법 시행령」 및 한국은행의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지정하게 된다. 지정방식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직권으로 지정하는 방식과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신청에 따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지정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결제완결성 보장시스템 지정에 관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6-13〉결제완결성 보장시스템 지정요건

구분	내용	관련조항
직권에 의한 지정	한국은행 총재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신청에 의한 지정	① 일부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으로 연쇄하여 파급될 위험(결제위험)이 있고, 결제 규모 및 이체지시의 처리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결제가 완결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지급결제제도일 것 ② 운영기관의 운영규칙이 다음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것 - 이체지시가 최종적이고 취소 불가능해지는 시점 -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나 자신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신청되거나 파산이 선고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운영기관을 통하여 한국은행 총재에 통보하는 절차 - 위 사실을 인지한 운영기관이 해당 참가자에 대하여 취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이용정지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참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이체지시 또는 지급 및 이와 관련된 이행, 정산, 차감, 증거금 등 담보의 제공·처분·충당 그 밖의 결제 등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 참가자가 이체지시 등과 관련된 결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③ 참가자 간 원화 자금이체는 한국은행 원화 당좌예금이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이 없는 다른 결제자산을 이용하여 실행할 것 ④ 장애, 재해, 파업, 테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급결제업무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운영기관이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업무지속계획을 구비할 것	채무자 회생법 시행령 제6조, 한국은행 규정 제3조

〈Box1-12〉디지털금융 관련 입법 동향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2021. 4. 20. 일부개정, 2021. 7. 21. 시행)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기술혁신으로 인해 디지털 금융 육성과 핀테크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통한 금융 및 규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2019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규제 장벽으로 인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입증하여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결정된 경우 정비 지연 시에도 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2021년 4월 20일 개정되었다.

개정법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금융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도록 하였다(제10조의2 제1항 및 2항). 또한 금융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여 시행될 때까지의 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은 2회에 한정하여 각각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제10조의2 제6항 및 7항).

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023. 9. 14. 일부개정, 2024. 9. 15. 시행)

2021년 8월 대규모 환불 대란을 초래한 머지포인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이하 선불업)’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023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9월 14일 공포되었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의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선불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 규칙을 마련하였으며, 간편결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로 도입되었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제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규제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및 선불업 관리감독 강화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 업종 기준을 폐지하고 전자식으로 전환된 지류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는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하였다(제2조 제14호).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록이 면제되는 기준으로서 가맹점 기준을 축소하고, 총 발행잔액 기준뿐만 아니라 총 발행액 기준을 추가하는 등 등록 면제 범위를 축소하였다(제28조 제3항 제1호).

②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및 이용자 보호

-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금융회사에 신탁, 예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였다(제25조의2 제1항 및 제2항).
-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상계·압류(가압류 포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등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하였다(제25조의2 제11항).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마련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9조 제2항 제4호, 제36조의2 제3호 및 제51조 제1항 제7호 신설).

④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

- 현재는 소액후불결제업무가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어 있으나, 금융위원회로부터 겸영업무 승인을 받는 경우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제35조의2, 제49조 제5항 제6호의2·제9호의2).
-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고, 이를 겸영하려는 선불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제35조의2 제1항).
-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소액후불결제 이용자에 대한 금전의 대부나 융자 및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제35조의2 제2항).

부록1

유럽 「PSD2」 주요 내용

최근 지급결제시장은 개방을 촉진하는 정부의 정책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개방형 생태계(open finance)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형 생태계의 초석이 되는 정책이 바로 유럽연합의 「The revised Payment Services Directive」(이하 「PSD2」) 시행이다. 유럽연합은 역내 지급결제시장을 통합하고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지급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급서비스 지침을 개정하여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금융생태계를 개방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국내에서도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이 절에서는 유럽의 금융서비스 혁신 및 개방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한 「PSD2」에 대해 알아본다.

1. 「PSD」

「PSD2」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기존 「PSD」(Payment Services Directive)는 유럽연합 단일지급시장의 형성과 지급결제 관련 소비자 보호, 비금융회사의 지급결제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2007년 제정되었다. 「PSD」에서는 지급서비스(payment service)와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을 정의하고, 지급서비스는 은행 외의 비은행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PSD」 주요 내용

- (제정 배경)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에서 운용되는 모든 지급서비스에 대해 필요한 법체계의 조화를 위해 2007년 1월에 제정되어 2009년 11월에 EU 내 국가에서 입법화 완료
- (주요 내용) EU 내 지급서비스의 효율성·편의성 제고를 목표로 EU 내 발생하는 지급결제 행위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 제공, 지급서비스 제공업자(Payment Service Providers, 이하 PSP)의 권리와 의무, 요구사항 등을 규정
 1. EU 회원국 내에서 받은 허가를 다른 회원국에서도 인정
 2. 소비자와 지급결제업자 간 권리 및 의무 규정
 3. 지급결제시스템 접근에 대한 비차별 명시

「PSD」 도입 추진 경과



기간	주요 동향
2007~2009	- 2007년 PSD 시행 및 2009년 전면 의무 적용 • 30여 개 유럽국가에서 자금이체·지급결제 관련 공동 규정 제정 • 단일유로지급결제지역(SEPA) 활성화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유럽연합 내 수수료 효율화 및 지급결제 보안 향상
2013~2014	- 2013년 유럽집행위원회, PSD 개정(PSD2) 추진 • 지급결제서비스 혁신, 소비자 보호 강화, 인터넷 결제 보안 강화, 계좌접근 허용 등
2015~2016	- 2015년 10월 유럽 의회에서 채택 - 2016년 1월 EU 저널지에서 공식 발표(시행)
2017~2019	- 유럽은행감독청(EBA), PSD2 활성화를 위한 규제기술표준(RTS) 제정 및 시행

자료 : Evry(2017), PSD2 – Strategic opportunities beyond compliance

2. 「PSD2」

「PSD2」는 2015년 10월 EU 의회에서 채택되어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EU 내의 급속한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비금융회사 등 다양한 지급서비스 제공업자 간의 경쟁을 통해 혁신을 도모하고자 기존의 EU 내 「PSD」를 개정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로 유럽의 소비자들은 지급결제시장에서 보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온라인 결제환경에서 더 높은 수준의 보안 수준을 적용받게 되었다. 「PSD2」의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 범위 확대, 지급서비스의 경쟁 및 혁신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투명성 제고가 있다.

가. 적용 범위 확대

기존의 「PSD」에서는 거래당사자(지급인 또는 수취인) 쌍방의 PSP가 EU 내 위치하고 유로를 사용하는 거래만을 적용하여 포함하였다. 그러나 「PSD2」에서는 지리적 범위와 거래통화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지급서비스의 거래 범위도 새로 규정하였다. 첫째, 지리적 범위가 확대되어 거래당사자 중 적어도 일방의 PSP가 역내에 위치하면 통화 종류와 관계없이 지침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즉, 거래당사자(지급인·수취인) 중 적어도 일방의 지급서비스 제공업자가 EU 내에 위치하는 유로 거래 혹은 EU 내에서 거래가 종결되는 비유로 거래 등을 포괄하여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거래당사자 쌍방의 PSP가 역내에 위치하면서 유로화가 아닌 통화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PSD」가 적용되는 등 거래통화 범위도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신규 지급서비스 등 포괄적인 형태의 전자금융거래를 동 지침의 규정 범위에 포함시켜 거래 범위도 새로 규정되었다. 특히 「PSD」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소비자와 PSP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형식의 지급결제는 지침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PSD2」에서는 통신사업자를 통한 상품·서비스 구매에 따른 지급결제도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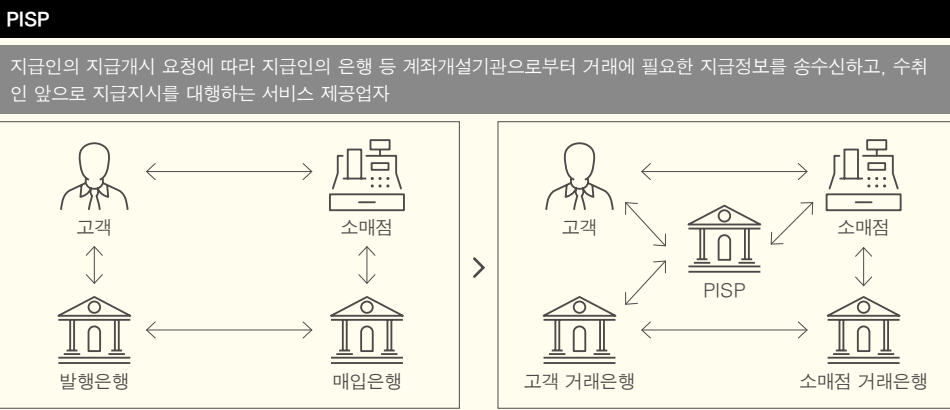
지급서비스 범위

- 지급계좌(payment account)에 현금을 입금하는 서비스
- 지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는 서비스
- 이용자의 지급서비스 제공업자 또는 다른 지급서비스 제공업자의 계좌 간 자금이체 등 지급거래업무 (자동이체, 지급카드 또는 기타 장치를 이용한 지급거래, 입금이체)
- 지급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신용공여 기반의 지급거래업무 (자동이체, 지급 카드 또는 기타 장치를 이용한 지급거래, 입금이체)
- 지급수단의 발행 및 지급거래 매입
- 송금
- 지급지시서비스
- 계좌정보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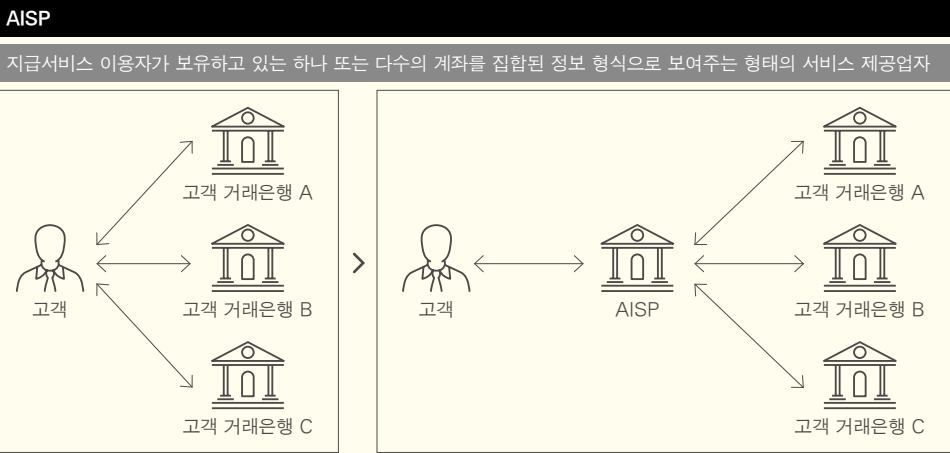
나. 지급서비스의 경쟁 및 혁신 촉진

「PSD2」에서는 지급지시서비스 제공업자(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 이하 PISP), 계좌정보 서비스 제공업자(Accou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이하 AISP) 등 제3자 지급서비스 제공업자(Third Party Payment Service Providers, 이하 TPPSP)를 규정하고 이들이 간접적으로 소비자 계좌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이는 은행이 독점해 온 고객의 금융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거쳐 새롭게 정의한 PISP, AISP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오픈 API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원칙적인 발판이 마련되었다.

PISP 개념 및 업무처리 흐름도



AISP 개념 및 업무처리 흐름도



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및 투명성 제고

「PSD」에서는 제한된 범위의 지급서비스 및 PSP만이 규제 범위에 포함되어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약하였다. 그러나 「PSD」개정에 따라 PSP의 거래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및 거래에 따른 보호조치가 강화되었다.

첫째, PSP에 대한 인허가 요건이 강화되었다. 「PSD2」에서는 PSP 인가 시에 기관의 보안사고 조치 절차, 업무지속성 유지 절차 등을 포함한 보안정책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둘째, 거래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였다. PSP는 고객에게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래정보 및 조건을 명시하고, 서비스 제공 시 추가적인 거래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급서비스에 대한 보안 조치도 강화되었다. 「PSD2」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보안규정 및 조치를 정의하고, 이해관계자들 간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하위 국제기술 표준을 수립하였으며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강력한 고객인증을 요구하는 등 엄격한 보안요구사항을 명시하여 개별 결제의 보안 수준을 강화하였다.

라. 「GDPR」과 「RTS」

「PSD2」의 시행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인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과 규제기술표준인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이하 「RTS」)도 본격 시행되었다. 이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고객 중심의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엄격한 보안 요구사항을 명시하여 개별 거래의 보안 수준도 강화되었다.

(1) 「GDPR」

「GDPR」은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다. EU는 2016년 5월 디지털 단일시장에 대한 회원국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GDPR」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GDPR」이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인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를 대체하여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지침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를 이동하는 등 EU 권역 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자 「GDPR」을 제정하여 통일된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GDPR」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규제 대상

「GDPR」 개인정보 처리 원칙	「GDPR」 규제 대상
1.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의 원칙 2. 목적 제한의 원칙 3. 개인정보 처리의 최소화 4. 정확성의 원칙 5. 보관기간 제한의 원칙 6. 무결성 및 기밀성의 원칙 7. 책임성의 원칙	1. 기본 신상정보(이름, 주소 ID 등) 2. 웹 정보(위치, IP주소, 쿠키 데이터, RFID 태그 등) 3. 건강, 유전정보 4. 생체정보 5. 인종 또는 민족 정보 6. 정치적 의견 7. 성적 취향

(2) 「RTS」

2018년 3월 유럽은행감독청은 「PSD2」에 의거 국제기술 표준인 「RTS」를 승인 및 공표하였다. 2019년 9월 시행된 「RTS」는 동 지침의 후속 조치로 지급서비스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규제기술표준이다. 「RTS」는 리스크 기반의 요구사항을 채택해 지급서비스 이용자·제공업자의 보안 수준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자산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 강력한 고객인증(Strong Customer Authenticaiton, SCA)

「PSD2」 제97조에 언급된 강력한 고객인증에 대한 요구사항은 모든 지급서비스 제공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자금융 개시 및 처리 시 거래자의 신원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력한 고객인증은 온라인으로 지급인의 계좌에 접근하는 경우, 전자지급거래를 지시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사기나 남용의 위험이 있는 원격채널을 통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개방형 통신표준(Common and Secure open standards of Communication, CSC)

소비자는 PISP 또는 AISP에게 그들의 계좌정보 또는 거래 시기에 대한 명확한 동의의사를 밝혀야 하며, 이에 대한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금융회사는 새로운 지급서비스 제공업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통신채널을 통해 계좌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개방형 통신표준의 일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인 기기와 수취인 기기 간 통신 시 안전한 상호 식별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거래 주체들 간 모든 거래내역이 추적 가능한 프로세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신 시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데이터의 기밀성·무결성을 보호하고 세션 및 트랜잭션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Box1-13〉 「PSD3」와 「PSR」의 제안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지급서비스 시장 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빠른 기술 발전과 더불어 더욱 다양한 핀테크서비스가 출시됨에 따라 서비스 혁신 도모·이용자 보호·지급서비스 시장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한 적정 수준의 규제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2023년 3월 EU의 집행위원회 내 규제심사위원회(RSB)는 현 「PSD2」의 규제 내용이 지급결제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도출한 4가지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아래 표 참고), 같은 해 6월 28일에 이를 반영한 새로운 입법안인 「PSD3」과 「PSR」(The Payment Services Regulation)을 제안하였다.

「PSD2」 문제점 및 개선 목표

문제점		개선 목표	
①	소비자가 새로운 사기 위험에 노출되고 지급결제 전반에 대한 신뢰 부족	①	이용자 보호와 지급결제 전반에 대한 신뢰 강화
②	오픈뱅킹 부문의 기능이 불완전	②	오픈뱅킹서비스(AIS·PIS) 경쟁력 제고
③	EU 역내 회원국에 대한 감독기관의 권한과 의무가 일관적이지 않음	③	EU 역내 회원국의 통일성 있는 법 집행 및 이행성 제고
④	은행과 비은행 PSP 간 불공정한 경쟁의 장(기울어진 운동장)	④	비은행 PSP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성 확대

자료 : 「PSD3」(COM/2023/366) 및 PSR(COM/2023/367)의 서문 참고 ; 황유경(2023. 12.), EU 지급서비스 규제·오픈뱅킹 동향 및 시사점, 금융결제원

새로 제안된 입법안은 기존 「PSD2」가 지침으로만 존재했던 것과 달리, 지침(Directive)과 규정(Regulation)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큰 변화를 보였다. 유럽연합의 입법체계에서 ‘규정’은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지침’은 회원국이 자국의 실

행 법안에 반영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다. 금번 개정안은 지급서비스 제공자 및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사항 등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 형태인 「PSR」로 이관하여 EU를 단일 지급결제 시장으로 통일성 있게 규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지급기관(PI)의 등록 및 감독 사항에 관한 내용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재량을 인정하는 ‘지침’의 형식을 유지하였다.

「PSD3」와 「PSR」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규제 범위 밖에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기가 등장하면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다. APP사기(Authorised Push Payment fraud)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사기는 입금이체 거래에서 주로 발생하며, 지급인이 스스로 강력한 고객인증(Strong Customer Authentication)을 수행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사기범의 계좌로 직접 자금을 이체하게 된다. 일부 회원국에서 이러한 형태의 사기 피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유럽 연합의 집행위원회는 APP사기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PSR」에 지급거래 사기와 관련된 이용자 보호 조항을 신설하였다.

둘째, 은행과 비은행 PSP가 공정하게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비은행 PSP의 접근성을 보장하였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은행은 비은행 PSP가 지급서비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거나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것을 쉽게 거부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제안된 「PSR」에서는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비은행 PSP의 시스템 참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적정 수준의 참가 자격을 취득한 비은행 PSP의 은행 계좌 접근성이 확대되었다.

셋째, 오픈뱅킹서비스의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항을 수정 및 신설하였다. TPPSP가 오픈뱅킹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계좌 데이터 접근성을 위하여 은행을 비롯한 계좌기반 지급서비스제공자(Account Servicing Payment Service Provider, 이하 ASPSP)가 전용 인터페이스를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ASPSP가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대시보드(dashboard)를 제공하도록 하여 고객이 계좌 접근을 허용한 PISP·AISP의 이름, 접근가능한 계좌 목록, 허용 목적, 허용 기간 등의 데이터 공유를 한번에 가능하도록 하였다.

금융서비스 표준화 현황 및 전망

1. 표준화 기구

표준화(Standardization)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의 상태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뜻한다.¹ 표준화는 다양한 목적에 사용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서로 다른 산업, 국가 및 조직 간에 일관성을 유지하므로 혼란을 줄이고 상호운용성을 촉진하는 한편, 제품 및 서비스가 특정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어 표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고 안전성이 향상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변화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상호운용성, 국내외 시장진출, 비용절감, 소비자의 편의성 등을 위해 금융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 활용하는 표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 표준을 개발하는 가장 유명한 조직 중 하나는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이다.² ISO에서 각 분야별 표준화를 담당하는 기술위원회는 총 254개이며, 이 중 ISO/TC68에서 금융서비스 분야를 다루고 있다. ISO/TC68에는 2024년 6월 현재 128개 정회원(member bodies)과 39개 준회원(correspondent members)³ 및 4개 통신회원(subscriber members)이 가입·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있고,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ISO/TC68 금융서비스 분야의 국제표준 문서의 검토의견 정리, 정보수집, 국제표준안 제안 등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ISO/IEC Guide 2:2004

2. ISO는 과학, 지식, 기술 등 국제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표준화를 도모하는 국제적인 표준화 기구로서 1947년 2월 설립되어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3. 정회원(P-member)은 표준 제·개정 등에 투표권을 가지며, 준회원(O-member)은 투표권이 없다.

금융서비스 분야 국내외 표준화 기구



ISO/TC68 금융서비스 분야는 다시 금융보안(SC2), 참조데이터(SC8), 정보교환(SC9) 분과위원회(Sub Committee, SC)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메시지 등록그룹인 ISO 20022 RMG(Registration Management Group)는 SC9와 협력하여 메시지 승인 및 등록 과정을 관할한다. 또한 ISO/TC68의 분과위원회는 표준 작업 활동을 위한 자문그룹(Advisory Group, AG), 기술자문그룹(Technical Advisory Group, TAG), 작업반(Working Group, WG)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중 금융서비스 분야는 금융결제원이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서 현재 표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표준화 추진 현황

2024년 5월 기준 ISO/TC68 금융서비스 분야 국제표준은 총 75종이다. 국가표준은 국내에서 개발한 고유표준과 국제표준을 부합화⁴한 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1990년대 이후 국가간 서로 상이한 표준을 단일화하자는 시장의 목소리가 확대되면서 1995년 APEC 정상회담에서 참여국들이 자국의 국가표준을 국제표준과 완전 일치(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시키킬 것이라는 공동 합의에 따른 사항이다. 우리나라 금융서비스 분야 국가표준은 고유표준과 부합화표준을 합쳐 총 42종이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

금융서비스 표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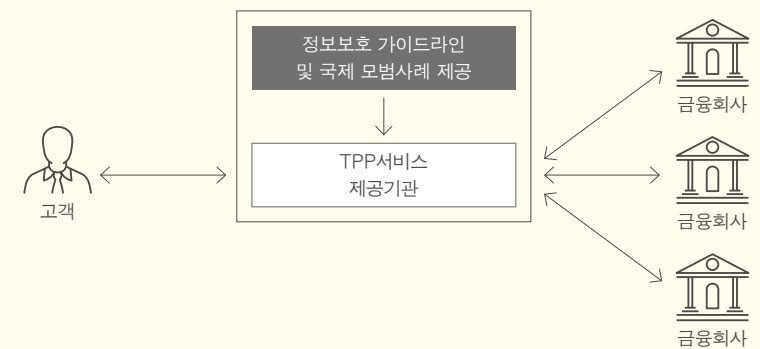
(2024년 5월 기준)

국제표준(ISO/TC68)		국가표준(KS)	
금융서비스 보안(SC2)	19	고유표준	
금융서비스 참조데이터(SC8)	21	부합화 표준	금융서비스 보안
금융서비스 정보교환(SC9)	35		금융서비스 참조데이터
계	75		금융서비스 정보교환
		계	

3. 한국 주도 국제표준 개발 현황

우리나라는 오픈뱅킹, 오픈지로 및 금융인증 오픈API서비스 등을 개발하여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TC68/SC2 금융보안 분야 WG16에서 TPP서비스⁵의 보안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표준화(ISO 18960 : Security controls and implementation guidance for third party payment service providers)를 추진하고 있다. 동 표준은 TPP서비스의 특징을 반영하여 TPP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국제적 모범 사례를 담을 계획이며, 2025년 발간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ISO 18960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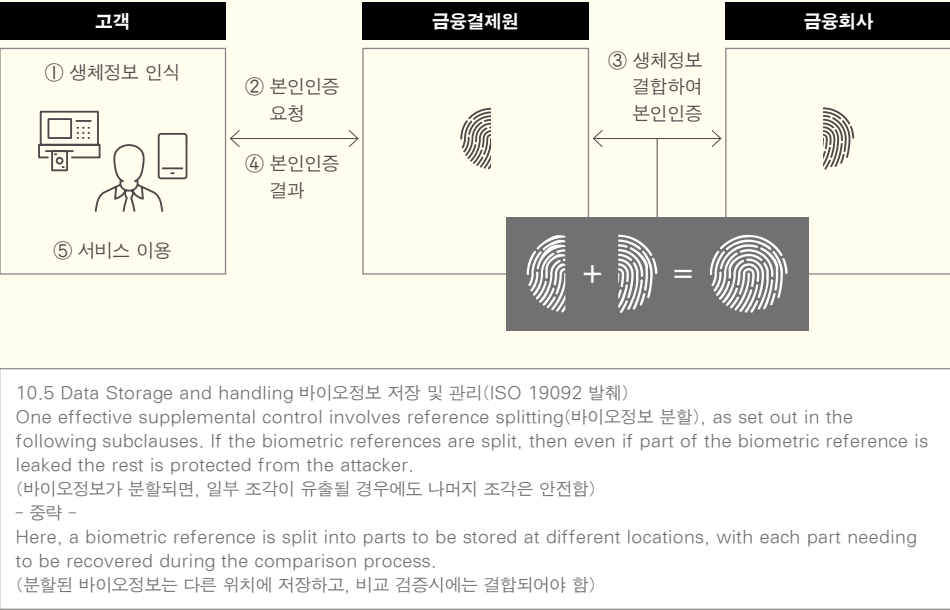
4. 국제표준 부합화는 제·개정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하는 활동을 말하며 국제표준과 완전 일치시키거나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표준화하는 방식이 있다.

5. TPP서비스(Third Party Payment Service)는 고객의 계좌를 보유하지 않고도 고객의 명시적 동의하에 금융회사의 계좌정보에 접근하여 제공하는 제3자 결제서비스로서 모바일 결제, 온라인결제, 초회, 송금 및 전자지갑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정보보호 통제를 다루는 유명한 국제표준은 ‘ISO/IEC 27002 : 2022 Information security controls’이다. 하지만 다양한 IT 기술 분야들이 나타나면서 특정 분야에는 해당 분야에 걸맞는 추가적인 특정 통제(control)가 필요하게 되었다. ISO 18960는 TPP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할 정보보호 분야를 ① 조직의 정책관련 통제(security governance controls), ② 전(全) 조직에 해당되는 통제(cross functional controls), ③ 조직 내 특정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할 통제(function specific controls) 등 세 분야로 그룹화하여, TPP서비스 제공기관에게 필요한 정보보호 사항을 총망라한다. 우리나라는 ISO ISO/TC68에 소속된 워킹그룹 중 TPP서비스 보안분야 담당인 WG16에서 프로젝트 리더로 참여하여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한편, 2023년 3월에는 금융결제원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한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기술을 ISO 국제표준으로 발간을 완료하였다. 본 표준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단체표준(2016년) 및 국가표준(2020년)으로 지정된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ISO TC68 산하 SC2에 소속된 산하의 WG13(소매금융)에 프로젝트 리더로 참여하며 개발되었다. 본 국제표준의 이름은 ‘ISO 19092 : 2023 Financial services – Biometrics’이다. 본 표준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바이오인증을 사용하는 기관이 준수해야 할 보안 요구사항 및 기반 구조를 제시하고, 바이오인증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총망라한 지침서이다. 특히, 바이오정보 해킹 및 유출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강화된 보안 기술로서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에서 개발한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기술을 수록하였다.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기술은 바이오정보를 분할하여 금융회사와 제3의 보관소가 나누어 저장 및 관리함으로써 정보 해킹 및 유출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기술이다.

ISO 19092 수록 내용



4. 금융서비스 표준화 전망

2023년 5월 미국 정부는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국가차원의 핵심·신흥기술 국가 표준 전략⁶⁾을 발표하였다. 동 전략은 주요 전략기술 분야에서 거세게 추격 중인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우호 국가들(like minded countries)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표준 수립 단계에서부터 미국의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투영하려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새로운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표준을 설정하겠다는 목표가 담긴 ‘중국표준 2035’계획을 통해 국제표준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⁷⁾ 기술발전의 속도만큼 국제표준화를 선점하기 위해 각국이 노력 중이기 때문에 금융서비스가 국내외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표준 적용을 통한 상호운용성 확보만큼이나 국제표준화의 진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기 위해 5년 단위 ‘제5차 국가표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⁸⁾ 또한 2024년도 국가표준 시행계획에는 AI 신뢰성 확보, 6G 기술성능, 차세대 융합 보안, 융복합 시스템 상호운용성 등 디지털 전략기술 등의 분야에서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였다.

기술발전의 속도만큼 국제표준화를 선점하기 위해 각국이 노력 중이기 때문에 금융서비스가 국내외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표준 적용을 통한 상호운용성 확보만큼이나 국제표준화의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금융결제원은 ISO/TC68 금융서비스 분야에 한국 대표로서 TPP서비스의 보안성 관련 표준을 제안하였고, 이것이 승인되어 현재 표준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화 기반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표준 및 관련 서비스 등 국내 기술을 국제적인 기술로 승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렛대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6. 동 전략은 핵심·신흥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표준 개발 지원,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기술 분야 등에서 민간의 참여 확대, 표준 개발 인력 확충, 동맹·파트너 국가들과의 통합성 강화 등의 추진 항목으로 구성된다.
7. 세계일보(2021. 5. 1.), 中 기술 권위주의 vs 美 기술 민주주의 불붙은 국제표준 전쟁
8. 산업자원통상부 보도자료(2024. 3. 16.), 법정부, 표준화 역량집결 위해 2,271억 원 투자

2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스템

1장. 금융공동망	146
2장. 어음교환시스템	171
3장. 지로시스템	193
4장. 기타 지급결제시스템	208



금융공동망



금융공동망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금이체 및 각종 조회서비스 등을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참가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서로 연결한 지급결제시스템이다. 1986년 지급결제전담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이 설립되어 5대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중 하나인 금융전산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금융공동망은 1988년 7월 현금카드만으로 타 은행의 CD/ATM을 이용하여 현금인출 및 잔액조회를 할 수 있는 CD공동망의 가동으로 시작되었다. 이듬해인 1989년 4월 은행 고객이 전화기, 팩시밀리 또는 PC를 이용하여 조회, 통지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ARS 공동망이 가동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은행 간 송금업무를 전자적으로 즉시 처리하는 타행환공공동망이 가동되어 타행으로의 현금송금 및 자기앞수표조회업무가 실시되었다.

1990년 후반에 들어 정보통신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은 지급결제 제도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각 경제주체들은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전자방식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ARS공동망은 2001년 4월 전자금융공동망으로 확대·개편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타행이체를 중계하는 홈·편뱅킹 중계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고객은 거래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이체, 금융거래정보조회 등 각종 전자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시간 및 장소의 제약이 해소되었고, 금융회사들은 지급결제업무의 효율성·안전성이 강화되고 고객 니즈에 충실한 새로운 전자금융 서비스를 창출하게 되었다.

최초 금융공동망 가동 시에는 참여기관이 10여 개 은행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전 금융회사로 확대되었다. 1994년에는 우체국과 농·수협 단위조합이, 2001년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금융공동망에 참여함으로써 농·어촌, 산간벽지 등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에서도 금융공동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가 금융공동망업무에 참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도 금융공동망업무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장에서는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공동망, CD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및 국가간공동망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절 전자금융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은 고객이 PC, 유·무선전화(스마트폰 포함) 등을 이용하여 타행이체 등의 금융거래를 수행하고 각종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2000년대에 이르러 일반 국민들에게 인터넷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뱅킹과 같은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의 중계업무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2000년 6월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은행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ARS공동망의 확대·개편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공동망 구축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01년 4월 전자금융공동망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였다. 전자금융공동망은 고객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화, PC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조회 및 조회, 수표조회 등 각종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금융공동망을 대표하는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참가기관들은 창구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고객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었으며, 이용고객들은 거래 금융회사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전화나 컴퓨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금융공동망은 2024년 5월 기준 총 64개¹ 금융회사가 참가하고 있다.

1. 교통은행은 특별참가기관이나, 전자금융공동망업무 미실시

1. 주요 서비스

가. 홈·편뱅킹 중계서비스

홈·편뱅킹 중계서비스는 고객이 PC, 스마트폰 등으로 거래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 접속하여 타행이체, 거래확인조회, 자기앞수표조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오전 0시 5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연중무휴 가동된다.

〈표1-1〉전자금융공동망 홈·편뱅킹 중계서비스 종류

구분	세부 내역
타행이체	거래 금융회사의 고객 계좌에서 타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 자금이체 (단, 10억 원 초과 시 거래타행이체 처리) ^{*)}
거래확인조회	타행이체 처리결과 조회
자기앞수표조회	타 금융회사의 자기앞수표에 대한 사고 유무 조회

주) 건당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 타행이체 거래는 전자금융공동망과 한은금융망 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한은금융망 내 참가기관 계좌에서 실시간 결제 처리

나. 대고객서비스

대고객서비스는 고객이 전화, PC 등을 이용하여 금융결제원 또는 참가기관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로 고객은 ARS 1369서비스를 통해 계좌조회, 수표조회 및 사고수표 신고가 가능하며, 금융정보 조회서비스로는 수취계좌 잔액조회 및 본인계좌를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조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표1-2〉전자금융공동망 대고객서비스 종류

구분	업무명	세부 내역
ARS 1369	계좌조회	계좌조회 시점의 본인 계좌에 대한 잔액, 입·출금내역 조회
	수표조회, 사고수표신고	고객이 요청한 자기앞수표의 사고 유무 조회 및 사고수표 신고
금융정보 조회	수취계좌 잔액조회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타행 본인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 후 수취계좌 잔액 즉시 확인
	비대면 실명확인조회	참가기관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계좌 개설 등을 수행 시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타 금융회사에 기개설된 본인의 계좌정보 조회

2. 업무 처리절차

〈그림1-1〉홈·편뱅킹 타행이체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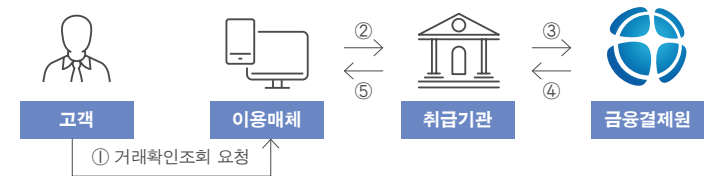


취급기관 : 고객으로부터 전자금융업무를 의뢰받은 기관

개설기관 : 타행이체 수취계좌, 금융정보 조회대상 계좌 등을 개설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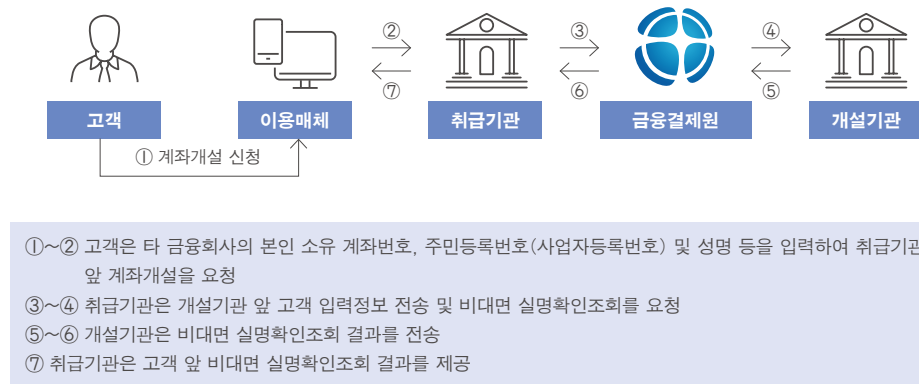
- ①~② 고객은 거래금액 및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취급기관 앞 이체를 요청
- ③~④ 취급기관은 개설기관 앞 고객의 입력정보 전송 및 수취조회를 요청
- ⑤~⑥ 개설기관은 수취조회 결과(수취인명 등)를 전송
- ⑦ 취급기관은 수취조회 결과를 고객 앞 제공
- ③~④ 취급기관은 개설기관 앞 수취인 계좌에 이체를 요청
- ⑤~⑥ 개설기관은 이체 결과를 전송
- ⑦ 취급기관은 고객 앞 이체결과를 제공

〈그림1-2〉홈·편뱅킹 거래확인조회 처리절차



- ①~② 고객은 취급기관 앞 거래확인조회(타행이체 처리결과조회)를 요청
- ③ 취급기관은 자체 보유 파일에서 거래내역이 불명확한 경우 금융결제원 앞 거래확인조회를 요청
- ④ 금융결제원은 거래확인조회 결과를 전송
- ⑤ 취급기관은 고객 앞 거래확인조회 결과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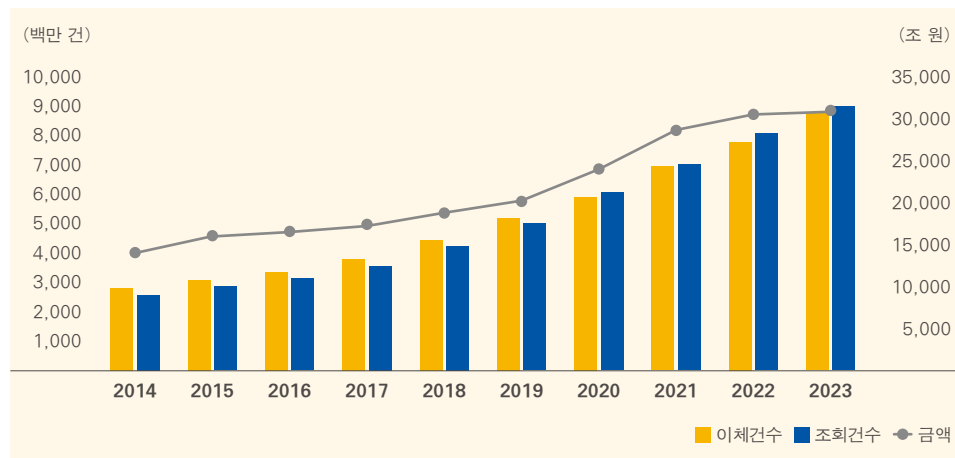
〈그림1-3〉 비대면 실명확인조회 처리절차



3. 이용 현황

2023년 말 기준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 및 조회 규모는 177억 건이며, 이용 금액은 3경 757조 원(일평균 4,870만 건, 84조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2.0%, 1.0% 증가하였다. 전자금융공동망은 이용 편리성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이용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개발되고 있고, 인터넷·모바일뱅킹·핀뱅킹 이용 또한 확대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공동망은 앞으로도 핵심적인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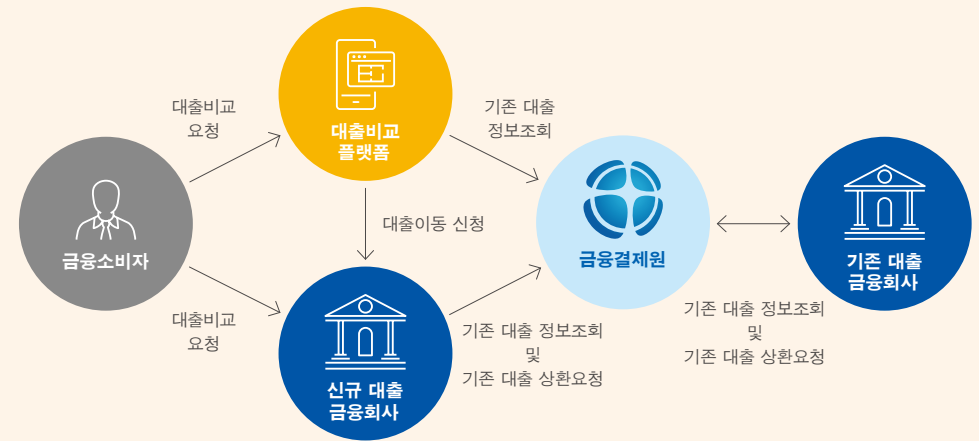
〈그림1-4〉 전자금융공동망 연간 처리규모



〈Box2-1〉 대출이동서비스

대출이동서비스는 소비자들이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신규 대출을 실행할 금융회사에서 기존에 받았던 대출 정보(원리금, 중도상환수수료 등)를 조회하고 기존 대출 상환 및 신규 대출 가입까지 온라인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금융결제원은 대출이동서비스의 핵심 기능인 금융회사 간 기존 대출 정보 조회 및 상환처리 프로세스를 자동화한 전산시스템(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대출이동서비스는 금융권의 경쟁촉진 및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출시된 금융당국의 정책 사업으로 대출이동 가능 상품은 2023년 5월 개인신용대출을 시작으로 2024년 1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까지 확대되었다.^{주)}

대출이동서비스 처리절차



기존에는 금융회사 간 온라인 시스템의 부재로 대출 상환 시 영업점 방문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고, 소비자가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존 대출 정보가 제한되었다. 하지만 대출이동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로부터 받은 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였다.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을 조회한 후, 다양한 신규 대출상품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고, 신규 대출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대출이동 신청 및 기존 대출 상환을 자동으로 처리함으로써 대출이동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주) 개인 신용대출은 신청과 동시에 이동이 완료되고 주택담보 및 전세대출은 금융회사의 심사(2~7영업일 소요)가 끝난 뒤 대출이동을 완료할 수 있다.

대출이동서비스의 효과



대출이동서비스는 2024년 5월 누적 기준, 총 20만 건의 대출이동이 이루어졌으며 상환 금액규모는 약 10조 4,204억 원에 이르렀다. 2024년에는 대출이동 가능 시간 연장, 대출이동 대상주택 증대 및 가능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대출상품별 상환 이용 현황

(2024년 5월 누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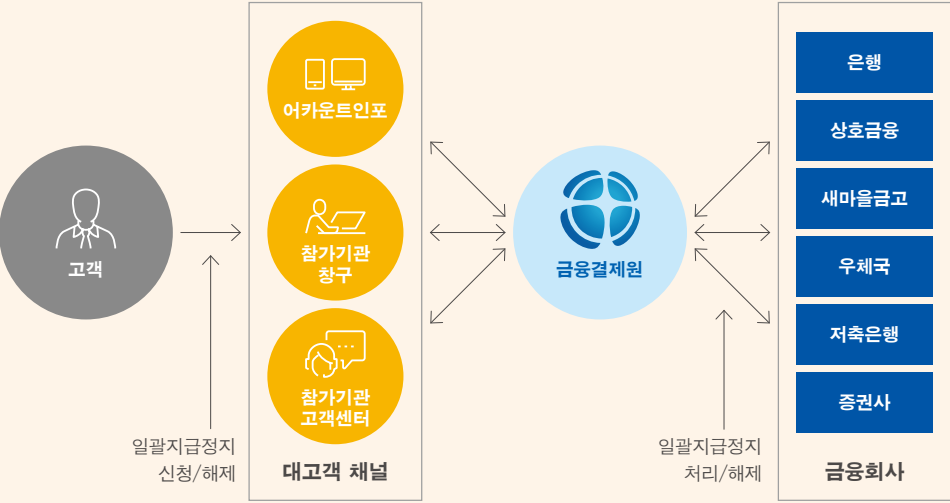
구분	개인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합계
상환 건수	17만 1천 건	2만 6천 건	1만 건	20만 7천 건
상환 금액	4조 356억 원	4조 7,101억 원	1조 6,747억 원	10조 4,204억 원
이자하락폭	1.57%p	1.49%p	1.41%p	1.52%p

대출이동서비스는 모든 절차가 온라인, 원스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대환대출 시장 참여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금융회사 간 대출금리 인하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 전체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Box2-2〉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는 금융권에 산재한 본인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본인계좌를 일괄 또는 일부 선택하여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날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존에는 피해자가 금융회사별로 일일이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 등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어 조치가 지연될 경우 결국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본 서비스는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하여 사기범의 계좌 잔액 편취 등 금전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입되었다. 일괄지급정지서비스를 신청하면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되므로 강력하게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 이용 방법



주)온라인 신청채널 : 어카운트인포(www.accountinfo.or.kr) 및 모바일 앱,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

2023년 7월부터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해당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영업시간 외에는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피해 우려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지급 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하다.

2023년 연간 이용건수는 66만 건(월평균 5.5만 건)이었으며, 특히 서비스 신청채널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한 하반기 월평균 이용건수(10.5만 건)가 상반기 월평균 이용건수(5천 건)의 21배에 달하는 등 오프라인 신청채널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19개 은행, 23개 증권사 및 7개 제2금융권 등 거의 모든 업권의 금융회사에서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어 날로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로부터 재산을 방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 이용 현황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1~5월)
지급정지 신청	온라인	779	54,736	21,032
	오프라인	-	435,530	470,433
지급정지 해제	오프라인	-	171,459	247,750
합계		779	661,725	739,215

주) 업무실사일 : 2022. 12. 27.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 처리절차



2절 타행환공동망

타행환공동망은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금융회사 영업점에서나 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1989년 12월 가동 당시 13개 은행을 대상으로 온라인 송금업무, 추심대전송금업무 및 자기앞수표 조회업무를 처리하였다. 타행환공동망이 구축되면서 당일 자금이체를 통한 지급결제업무가 신속해지고 금융서비스의 공간적 제약이 해소되어 대고객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었다. 2024년 5월 기준 총 56개² 금융회사가 타행환공동망업무에 참가 중이다.

1. 주요 서비스

타행환공동망을 통하여 처리 가능한 업무에는 타행환 송금, 자기앞수표조회, 공동창구 등이 있다. 2024년 5월 말 기준 1회 송금한도는 5억 원 이내에서 참가기관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1회 수신한도는 5억 원이다. 1일 송금한도나 송금횟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거액 자금을 송금할 경우에는 5억 원씩 나누어 송금

2. 키움증권은 특별참가기관이나, 타행환공동망업무 미실시

처리하고 있다. 타행환공동망 운영시간은 영업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고객은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 업무시간에 타행환공동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타행환공동망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영업점 창구를 통해 제공되지만, 일부 참가기관은 창구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 중에도 펌뱅킹계약을 체결한 기업고객에게 송금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표1-3〉 타행환공동망서비스 종류

구분	세부 내역
타행환 송금	송금 의뢰인의 현금 및 자기앞수표를 타 금융회사의 수취인 계좌로 무통장 입금처리
자기앞수표조회	타 금융회사 수표에 대한 수표발행내역과 사고내역을 조회
공동창구	은행권 공동창구(전국 금융취급 우체국 지점)에서 고객 거래 금융회사를 대행하여 고객에게 통장 입출금 등 창구업무를 제공

2. 업무 처리절차

〈그림1-5〉 타행환공동망 타행환 송금 처리절차



의뢰기관 : 고객의 의뢰를 받아 타행환 송금, 조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지급기관 : 타행환 송금을 받아 수취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타행환 조회 요청내역을 확인 후 결과를 송신하는 금융회사

- ① 고객은 의뢰지점(영업창구)을 방문하여 타행환 송금을 요청
- ②~④ 의뢰지점은 고객입력한 수취인 계좌번호 및 예금주명 등이 일치하는지 지급기관 앞 조회를 요청
- ⑤~⑥ 지급기관은 일치여부 결과를 전송
- ③~④ 의뢰기관은 지급기관 앞 타행환 송금을 요청
- ⑤~⑥ 지급기관은 수취인 계좌에 입금처리 후 타행환 송금 결과를 전송
- ⑦ 의뢰기관은 고객 앞 타행환 송금 결과를 제공

〈그림 1-6〉 타행환공동망 자기앞수표조회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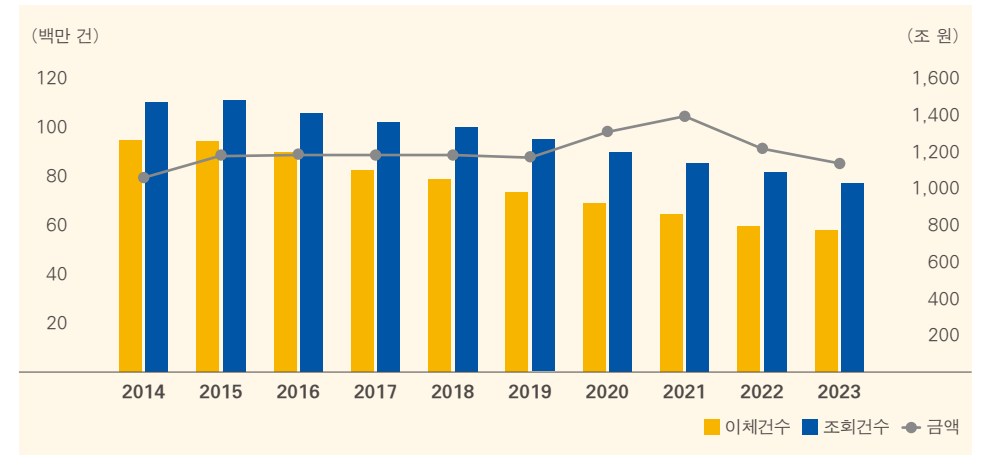
〈그림 1-7〉 타행환공동망 공동창구 입출금 처리절차



3. 이용 현황

2023년 기준 타행환공동망을 이용한 이체 및 조회 규모는 약 1억 3,400만 건, 이용규모는 약 1,137조 원(일평균 약 54만 건, 약 4조 6,020억 원)이다. 이용 시간에 제약이 없고 이용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낮은 CD/ATM,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의 확대에 따라 타행환공동망 이용 건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8〉 타행환공동망 연간 처리규모



3절 CD공동망

CD공동망은 고객의 거래 금융회사와 상관없이 CD/ATM을 통해 현금인출, 현금입금, 계좌이체, 잔액조회 및 현금서비스 등의 각종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 1988년 7월부터 가동되었다. 1994년 2월 타행 CD/ATM을 이용한 계좌이체, 2006년 12월 타행 ATM을 통한 현금입금, 2013년 7월 ATM 금리 고지에 이어 2023년 12월 모바일현금카드 공동QR코드 ATM 입출금서비스 등을 실시하였다. 이용고객은 거래 금융회사와 관계없이 모든 금융회사의 CD/ATM을 이용하여 통장 없이도 간편하게 각종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시간과 이동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 5월 기준 41개³ 금융회사가 CD공동망업무에 참가하여 서비스 중이다.

1. 주요 서비스

CD공동망업무는 현금인출, 현금입금, 계좌이체, 잔액조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이 있으며, 개인의 이용은 제한이 없으나 법인은 금융투자회사를 통한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3. 키움증권은 특별참가기관이나, CD공동망업무 미실시

CD공동망 제공서비스는 크게 지급업무 및 잔액조회업무로 구분된다. 지급업무에는 현금인출, 현금입금,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가 있고, 잔액조회업무에는 계좌 잔액조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잔액조회가 있다. 현재 CD공동망에서 사용 가능한 출금계좌는 보통, 저축, 자유저축, 가계당좌, 기업자유, 신탁예금, 투자자예탁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자예탁금)이다. CD/ATM을 이용한 1회 최대 인출금액은 100만 원 이하 수준에서 참가기관별로 상이하며, 현금입금의 경우에는 1회 1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계좌이체 또한 출금한도는 600만 원 이하로 참가기관마다 상이하지만, 입금한도는 최대 600만 원이다. CD공동망은 연중무휴로 오전 0시 5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운영⁴하고 있다.

〈표1-4〉 CD공동망서비스 종류

구분	세부 내역	서비스 대상
현금인출	CD/ATM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	현금카드 보유 고객
현금입금	CD/ATM을 이용하여 현금을 입금	
계좌이체	CD/ATM을 이용하여 계좌 간 자금을 이체	
잔액조회	CD/ATM을 이용하여 현금카드 계좌의 잔액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잔액을 조회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 보유 고객
현금서비스	CD/ATM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	은행계 신용카드 (BC카드 제외) 보유 고객

2. 업무 처리절차

〈그림1-9〉 CD공동망 현금인출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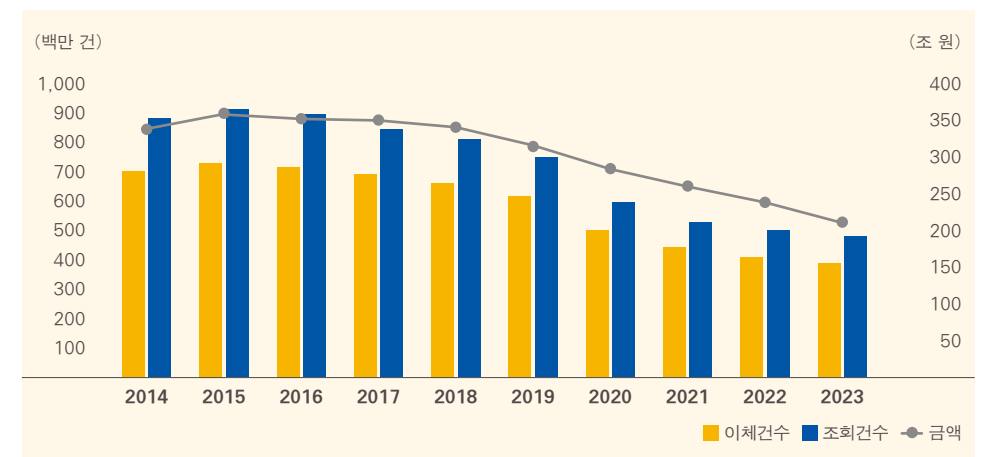
- ①~② 고객은 CD/ATM에 현금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 인출금액 등의 정보 입력 후 취급기관 앞 현금인출을 요청
③~④ 취급기관은 개설기관 앞 현금인출을 요청
⑤~⑥ 개설기관은 현금인출 처리결과를 전송
⑦ 취급기관은 고객 앞 현금 지급 및 거래명세표 등 제공

4. 지로납부의 경우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오후 11시 30분부터 오전 7시까지의 운용여부는 참가기관 자율이므로 운영시간이 상이하다.

3. 이용 현황

2023년 기준 CD공동망을 이용한 이체 및 조회 규모는 약 8억 5,900만 건, 이체금액은 211조 원(일평균 약 235만 건, 이체금액은 5,770억 원)이다. CD공동망 서비스는 2001년부터 실시된 홈·편뱅킹 기반 전자금융공동망거래의 활성화로 일시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CD/ATM 기기 수의 증가 및 이용 편의성 제고에 힘입어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현금인출 이용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주로 고객들이 비현금거래를 선호하여 CD/ATM을 통한 현금인출 수요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 제약 없는 이용 시간 등의 이점이 있는 모바일뱅킹 등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CD공동망을 통한 송금거래를 대체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그림1-10〉 CD공동망 연간 처리규모



자료 : 금융결제원 통계시스템

〈Box2-3〉 금융맵(FIN MAP)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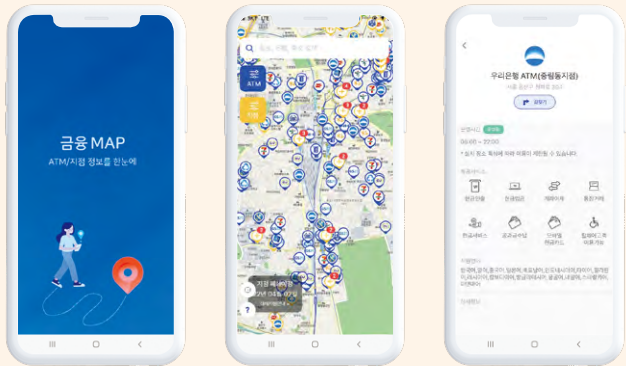
금융맵서비스는 금융회사의 ATM·지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이용자는 매일 업데이트 되는 ATM·지점의 위치, 신규 및 폐쇄 지점, 장애인 지원 기능 등의 정보를 스마트폰 앱 또는 국내 주요 지도플랫폼(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2024년 5월 기준 총 39개의 기관^{주)}이 참여하고 있으며, 24시간 연중무휴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021년 11월 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및 금융권과 공동으로 ATM·지점의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

주) 은행 17개, 서민금융기관(비은행 예금취급기관) 7개, 금융투자회사 8개, CD·VAN사 5개, 정책금융기관 2개

축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맵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금융 맵 앱, 모바일현금카드 앱, 어카운트인포 앱 등 별도 앱을 다운로드하여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22년 12월부터 금융맵서비스 DB와 지도플랫폼 간 전산 연계 작업을 통해 대중적인 지도플랫폼을 통해서도 금융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맵서비스 DB와의 연계를 통해 기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CD·VAN사가 운영하는 ATM 정보도 폭넓게 제공되고 있으며, 매일 1회 업데이트되어 ATM 정보 변경사항이 적시성 있게 반영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지도플랫폼 사업자 등 참여기관은 ATM 정보 제공 창구가 금융맵 DB로 일원화되고 자동화됨에 따라 정보제공 및 입수에 따른 업무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도 있다.

금융맵서비스 화면



금융맵서비스 처리절차



금융맵서비스 제공 채널

서비스명	운영 플랫폼	운영 주체
모바일현금카드	모바일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금융결제원
금융맵	모바일	금융결제원
네이버지도	모바일·웹	네이버
카카오맵	모바일·웹	카카오
티맵	모바일	티맵모빌리티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현대오토에버
맵피	모바일	현대오토에버

〈Box2-4〉 모바일현금카드 공동QR코드 ATM 입·출금서비스

모바일현금카드란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해 한국은행과 은행권, 금융결제원이 만든 서비스로 기존의 NFC 기반의 CD/ATM에 QR코드 방식의 CD/ATM 입출금 기능이 추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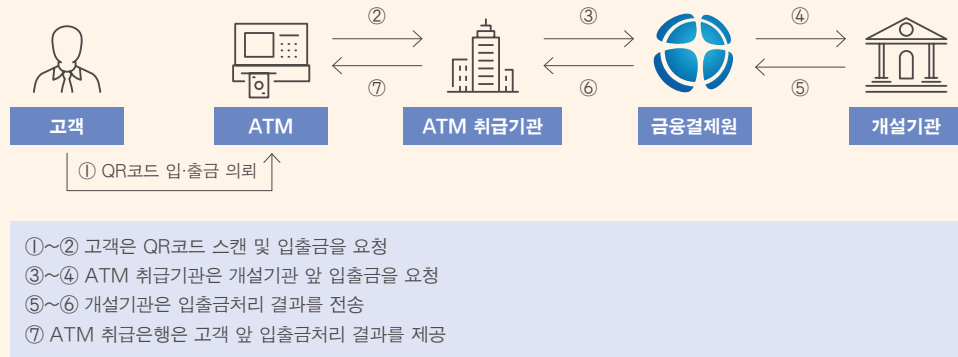
기존에는 NFC 인식이 가능하고 동글 및 보안모듈이 탑재된 ATM에서만 안드로이드 기종의 스마트폰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었다. 또한 참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스마트폰 기반 무매체 출금서비스는 자행 ATM에서만 가능하였다. 이에 스마트폰 및 CD/ATM의 기종, 금융회사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모바일로 편리하게 CD/ATM 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모바일현금카드 공동QR코드 ATM 입출금서비스가 출시되었다.

모바일현금카드 공동QR코드 ATM 입·출금 서비스 화면



현재 모바일현금카드 QR코드 ATM 입출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참가기관은 총 17곳이며, 2023년 6월부터 각 참가기관과 금융결제원이 전산 개발 및 테스트를 거쳐 2023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용자는 모바일현금카드 앱을 다운받아 이용가입 절차를 완료한 후, ATM 화면에 띄워진 QR코드를 모바일현금카드 앱으로 스캔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다. 향후에는 고객이 ATM 입출금서비스를 제약 없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뱅킹 앱 및 결제 플랫폼 앱과 서민금융기관 및 자동화기기사업자(CD·VAN사) ATM으로까지 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현금카드 공동QR코드 ATM 입·출금서비스 처리절차



4절 지방은행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은 고객이 지방은행 공동상품인 ‘뱅크라인’ 통장을 개설하여 지방은행의 모든 영업점에서 예금 입·출금 및 송금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한 공동망⁵으로 1997년 6월부터 가동되었다. 이 시스템의 가동으로 고객은 지방은행의 모든 영업점에서 예금 입·출금 및 송금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지 못한 지방은행들도 전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은행공동망은 지방은행의 통폐합으로 현재 6개 은행(아이엠뱅크⁶,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이 참가하고 있다.

1. 주요 서비스

지방은행공동망은 금전거래업무와 비금전거래업무로 나뉘어진다. 자금의 출납이 수반되는 금전거래업무는 입금거래업무, 출금거래업무가 있고, 비금전거래업무로는 통장 및 증서관련업무, 각종 조회관련업무, 각종 코드의 등록 및 해제업무 등이 있다. 고객은 지방은행 공동상품인 뱅크라인 통장용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지방은행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다. 지방은행공동망 운영시간은 영업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고객은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 업무시간에 지방은행공동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 예외적으로 시중은행이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

6. (구)대구은행으로,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되었으나, 지방은행공동망 참가를 유지하고 있다.

〈표1-5〉 지방은행공동망서비스 종류

구분		세부 내역
금전 거래업무	입금거래업무	고객이 취급은행 지점에서 타행 뱅크라인 통장으로 현금 및 타점권을 입금
	출금거래업무	고객이 취급은행 지점에서 타행 뱅크라인 통장으로 현금을 출금
비금전 거래업무	통장(증서) 관련업무	고객이 취급은행 지점에서 타행 뱅크라인 통장(증서)의 이월, 재발행 및 정리
	조회업무	고객이 취급은행 지점에서 타행 뱅크라인 통장의 만기일, 잔액, 거래내역, 계좌번호 등을 조회
	기타업무	고객이 취급은행 지점에서 타행 뱅크라인 통장 관련 예금 잔액증명 발급, 비밀번호 변경, 사고신고 등록 등을 의뢰

2. 업무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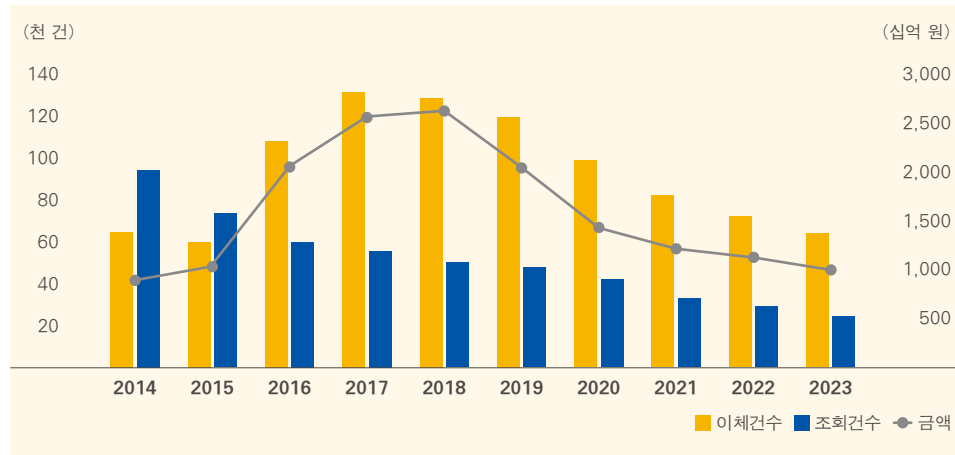
〈그림1-11〉 지방은행공동망 입금거래 처리절차



3. 이용 현황

지방은행공동망 처리규모는 2023년 기준으로 9만 건, 9,850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한 전자금융공동망의 활성화와 지방은행의 영업점 분포 지역 다양화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업무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다만 2015년 지주은행 간 거래 시 지방은행공동정보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정함에 따라 이용도가 높아져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증가하기도 하였다.

〈그림1-12〉 지방은행공동망 연간 처리규모



자료 : 금융결제원 통계시스템

5절 국가간공동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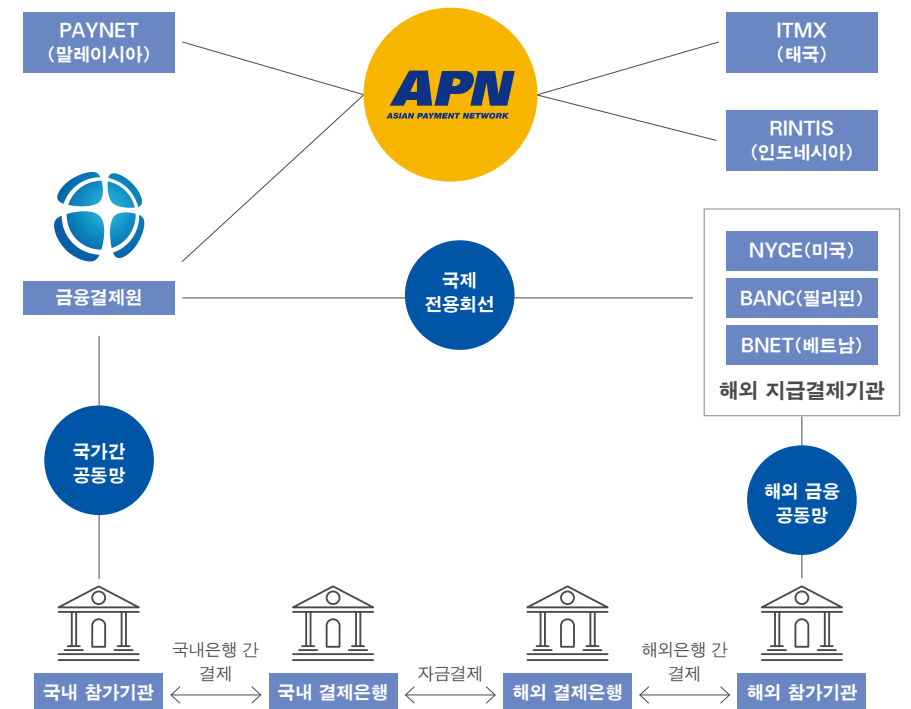
국가간공동망은 각 국가의 지급결제망을 상호 연계하여 국가간 지급결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 등 6개국과 연계되어 있으며, 해외 ATM에서 현지화폐를 인출할 수 있는 국가간 ATM서비스와 실시간으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국가간 송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간공동망은 2018년 아태지역 지급결제기구(APN, Asian Payment Network)⁷ 공동 허브와 연계되어 현재 APN 협의체 및 허브 시스템을 통해 연계 국가 확대 및 신규 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이다. 국가간공동망의 ATM서비스를 통한 해외 현금인출은 글로벌 카드사(Visa, Mastercard 등)에 제공하는 국제 브랜드 수수료(거래 금액의 1%)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가간 송금서비스를 이용한 해외 송금 역시 SWIFT 전신료 등의 수수료를 절감함과 동시에, 송금 실시 전 수취인 계좌 정보(수취인 성명 등)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착오송금을 방지할 수 있다.

1. 주요 서비스

가. 국가간 ATM서비스

국가간 ATM서비스는 각 국가의 ATM망을 연계하여 자국민이 본인 계좌의 카드로 해외의 ATM에서 현지통화를 인출하거나 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 업무이다. 2000년대 이르러 국가간 인적 교류 및 외국체류 인구 증가로 현지화폐 인출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이었으나 당시에는 대부분의 국내 현금인출용 카드는 해외에서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국내 고객은 비자, 마스터카드와 같은 글로벌 카드사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해외 현지화폐 인출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 한국은행의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 글로벌 카드사에 제공하는 고객 수수료를 절감하고 국내 카드로도 해외에서 현금인출을 할 수 있도록 동 서비스의 시행을 의결하였으며, 금융결제원에서 국가간 ATM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림1-13〉 국가간 ATM서비스 개요



7. 2006년 아세안 4개국의 6개 ATM운영기관이 설립한 민간협의체로 현재는 12개국 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설립 당시 회원기관들의 ATM/POS 네트워크 연계 및 표준화가 주목적이었으며 현재는 역내 국가간 지급결제서비스 제공방안, 기술표준화 등을 논의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간 ATM서비스는 국내 고객이 해외 ATM에서 인출하는 개설거래와 해외 고객이 국내 ATM에서 인출하는 취급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개설업무는 국내 카드를 이용하여 해외 제휴 ATM에서 실시간으로 국내 카드와 연결된 국내 계좌의 출금가능 잔액을 확인하거나 해당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해외국가의 현지통화를 출금하는 업무이다. 취급업무는 이와 반대로 해외에서 발행된 카드로 국내의 제휴 ATM에서 출금가능 잔액을 조회하거나 원화를 출금하는 업무이다. 아래 <표1-6>과 같이 2010년 12월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미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1-6> 국가간 ATM서비스 제공국가 현황

국가(시스템명)	실시시기	대상 서비스
말레이시아(PAYNET)	2010. 12.	현금인출
미국(NYCE)	2011. 1.	현금인출, 잔액조회
필리핀(BANCNET)	2011. 8.	현금인출, 잔액조회
베트남(NAPAS)	2011. 8.	현금인출, 잔액조회
태국(ITMX)	2011. 12.	현금인출, 잔액조회
인도네시아(RINTIS)	2015. 12.	현금인출, 잔액조회

양국 간 서비스 수수료 중 고객 수수료의 경우에는 참가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현금인출의 경우 건당 \$0~\$5, 잔액조회는 건당 \$0~\$0.5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현재 개설거래업무는 우리카드, 신한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이, 취급거래업무는 씨티은행, 한국전자금융이 참가하고 있으며, 개설거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해외에서 국가간 ATM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ATM은 금융결제원과 연계된 각 국가 지급결제기관의 동 업무 참가은행 ATM이다.⁸

나. 국가간 송금서비스

국가간 송금은 국가간 ATM업무를 위해 해외 기관과 기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고객이 해외은행 계좌의 수취인을 조회하거나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2010년대 이르러 전 세계적으로 국가간 송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송금서비스에 대한 효율화 요구가 증대되었다. 또한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송금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저개발국가 이주노동자의 본국 송금 비용 절감에 대한

8. 해외에서 이용 가능한 카드와 ATM은 <http://exk.kft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슈⁹가 제기되었다. 2011년 G20 정상회의에서 소액송금 수수료를 거래액의 5% 이하로 인하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금융결제원이 은행과 함께 국가간 송금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국가간 송금에서 양 국가간 거래통화 및 결제통화는 미 달러화이다. 국내 참가기관은 결제은행과 달러 차액결제를 수행하고, 수취은행과 지급은행은 한국으로부터 수신한 달러화를 필요에 따라 해당국 통화로 환전하여 입금처리하고 있다.

국가간 송금서비스는 2014년 12월 베트남의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업체인 NAPAS¹⁰와 서비스를 실시한 데 이어 2020년에는 태국 ITMX¹¹와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 기준 10개 은행과 1개 금융투자회사가 동 업무에 참가하고 있다. 현재는 당발 송금 즉 한국에서 베트남 및 태국으로 송금하는 거래만 가능하다. 해외기관과의 결제 리스크 감축을 위하여 1회 송금 한도는 5천 달러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추후 연계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외 지급결제기관과 직접 연계를 통하여 송금하므로 SWIFT 기반 송금서비스 이용 시 소요되는 SWIFT 전신료(5,000~8,000원) 및 중개은행 수수료(\$15~\$18)의 절감효과가 있다.

<표1-7> 국가간 송금서비스 제공국가 현황

국가	은행명	건당 송금가능 금액
베트남	Vietnam bank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gribank)	~\$2,000
	Saigon Hanoi Commercial bank(SHB), Vietinbank, ABbank, GPbank	~\$5,000
태국	Krungthaibank	~THB 50,000(약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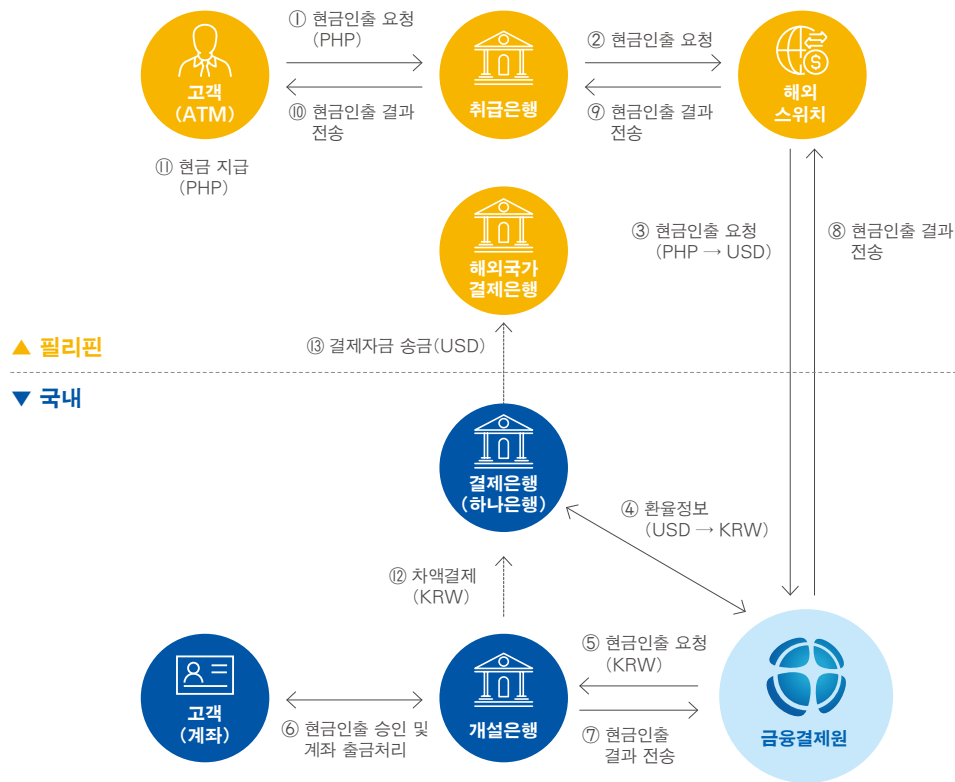
9. 세계은행과 G20은 불투명한 수수료 구조가 경쟁 자체를 저해하여 수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에 세계은행은 2012년 10월 5가지 일반원칙의 이행방안을 제시한 안내서(Guidance Report)를 각국에 배포하였으며, 국제송금 5대 일반원칙은 ①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② 지급결제인프라 개선, ③ 예측가능하고 비차별적인 법적규제, ④ 경쟁시장여건 조성, ⑤ 적절한 거버넌스와 리스크 관리이다.

10. The National Payment Corporation of Vietnam은 2004년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으로부터 금융 스워칭서비스와 전자결제서비스 운영을 인가받은 기관이다.

11. National Interbank Transaction Management and Exchange(ITMX) Company Limi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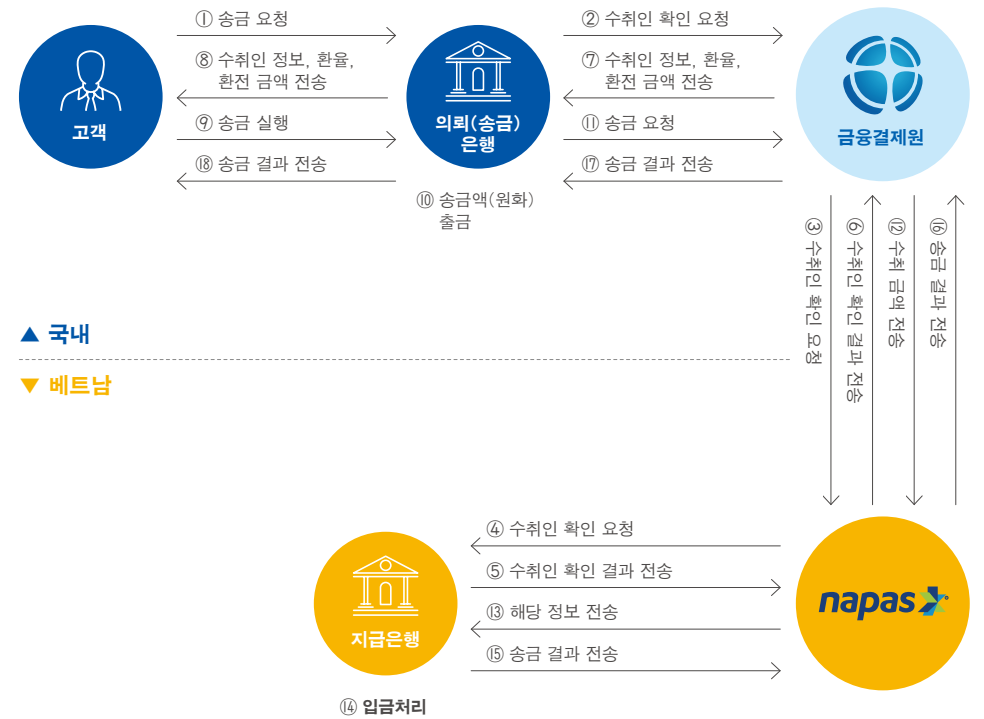
2. 업무 처리절차

〈그림1-14〉 국가간 ATM 처리절차(ex. 필리핀에서 국내 카드를 이용)



- ① 해외(필리핀)에 있는 고객은 현지 ATM에서 현금인출을 요청
- ② 취급은행은 자국 스위치 앞 현금인출을 요청
- ③ 해외 스위치는 현지 화폐(PHP)를 달러(USD)로 환산하여 현금인출을 요청
- ④ 금융결제원은 환율정보를 수신한 후 달러(USD)를 원화(KRW)로 환산
- ⑤ 금융결제원은 개설은행 앞 현금인출을 요청
- ⑥ 개설은행은 현금인출 거래를 승인하고 자행의 환율을 적용하여 고객 계좌에서 출금
- ⑦ 개설은행은 현금인출 결과를 전송
- ⑧ 금융결제원은 현금인출 결과를 전송
- ⑨~⑩ 해외스위치는 현금인출 결과를 전송
- ⑪ ATM을 통해 고객 앞 현금(PHP)을 지급
- ⑫ 개설은행은 결제일(거래일 + 1영업일)에 차액결제를 통해 결제자금(KRW)을 송금
- ⑬ 결제은행은 상대국 결제은행 앞 결제자금(USD)을 송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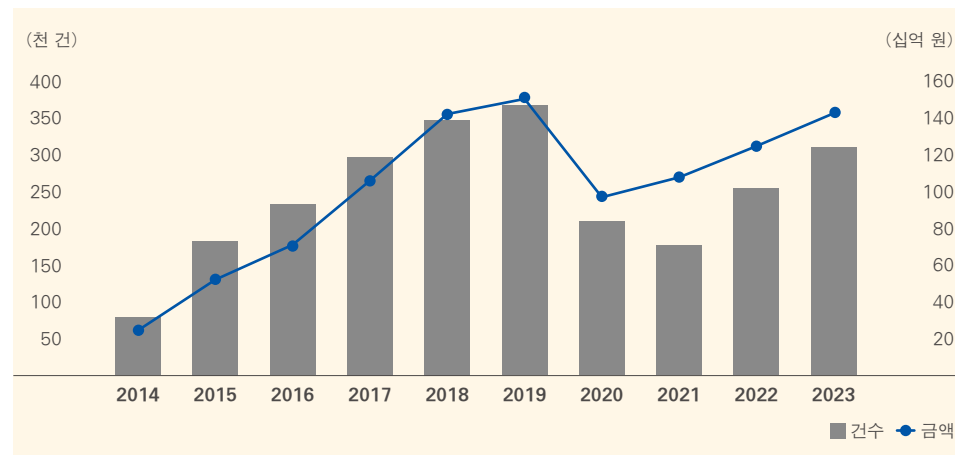
〈그림1-15〉 국가간 송금 처리절차(ex. 한국 → 베트남)



- ① 고객(송금인)은 지급국가명, 지급은행, 수취 계좌번호, 송금액 정보를 입력하며 의뢰은행에 송금을 요청
- ② 의뢰은행은 금융결제원 앞 수취인 확인을 요청
- ③ 금융결제원은 NAPAS 앞 수취인 확인을 요청
- ④ NAPAS는 지급은행 앞 수취인 확인을 요청
- ⑤ 지급은행은 NAPAS 앞 수취인 확인 결과를 전송
- ⑥ NAPAS는 금융결제원 앞 수취인 확인 결과를 전송
- ⑦ 금융결제원은 의뢰은행 앞 수취인 정보, 환율, 외화 환전 금액을 전송
- ⑧ 의뢰은행은 수취인 정보, 환율, 외화 환전 금액, 원화금액, 수수료 정보 등을 고객 앞 제공
- ⑨ 고객은 송금거래를 실행
- ⑩ 의뢰은행은 고객 계좌에서 송금액(원화) 출금
- ⑪ 의뢰은행은 금융결제원 앞 송금을 요청
- ⑫ 금융결제원은 NAPAS 앞 환전된 수취 금액을 전송
- ⑬ NAPAS는 지급은행 앞 해당 정보를 전송
- ⑭ 지급은행은 수취인 계좌에 송금액을 입금처리
- ⑮~⑱ 지급은행은 고객 앞 송금 결과를 제공

국가간 ATM서비스 처리규모는 2023년 기준으로 31만 건, 1,470억 원으로 저렴한 수수료 및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업무량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 동남아(태국, 필리핀 등) 국가의 코로나 관련 제한조치가 해제된 이후부터 해외 현금인출 수요(해외 여행객, 단기 어학연수생 등)가 회복되고 있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원 중이며 전년 대비 건수 21.7%, 금액 14.8%가 증가하였다. 한편, 국가간 송금은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8년까지 업무량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핀테크 산업 발전의 세계적 추세와 국내 제도 변화, 대형은행의 해외진출,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해외 송금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며 업무량이 감소하고 있다.

〈그림1-16〉 국가간 ATM서비스 연간 처리규모



자료 : 금융결제원 통계시스템

어음교환시스템



어음교환시스템은 다수의 은행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자기 은행이 수납한 어음(수표 및 제증서 포함) 중 다른 은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과 다른 은행이 수납한 어음 중 자기 은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을 서로 교환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초기 어음·수표 교환은 수교환 처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각 참가은행의 어음 교환원이 어음교환소¹에 모여 다른 은행이 지급지로 되어 있는 어음을 해당 지급은행 어음교환원 앞으로 제시하고 자기 은행이 지급지로 되어 있는 어음을 수취한 후 이에 따른 어음교환 차액을 직접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때 제시은행은 다수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어음을 여러 지급은행에 제시해야 하므로 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은행의 어음교환원이 특정 장소에 모여 상호 입회하여 어음을 교환하고 차액을 정산하였다.

경제규모의 확대 및 신용경제의 발달로 어음 교환량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1981년 1월부터 서울교환소는 자동판독분류기(R/S²)를 도입하여 서울 시내 일부 점포를 대상으로 우선 기계화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11월부터는 서울 소재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인터넷 기반의 금융거래가 확산되면서 실물운송 및 처리에 따른 사고위험과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기앞수표 정보교환 대상지역을 2000년 5월 서울에서 시작으로 2002년 9월 전국으로 확대하였

1. 어음교환소란 일반적으로 어음을 교환하는 시설, 기구 또는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어음법」, 「수표법」은 어음교환소를 교환 제시 장소로 보고 있다.
2. R/S기는 어음표면에 어음발행번호, 금액, 지급은행 및 점포번호 등 소정의 정보사항을 MICR로 인자하여 이를 판독 분류하도록 한 기기이다.

다. 또한 2000년 8월 어음대체지급수단인 기업구매자금 관련 어음교환제도가 도입되었고, 2004년 3월에는 전자어음의 의무발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전자채권 등 기존 종이어음을 대체하는 지급수단을 도입하였다. 이후 어음·수표이미지교환은 2009년 10월 서울지역에서, 2010년 11월에는 전국에서 시행되었다.

어음교환제도는 추심³에 따른 은행의 업무 부담과 비용을 절감하고 추심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어음교환 차액만을 결제하여 화폐 발행비용을 절감하고, 은행의 결제준비자금 축소 및 자금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에도 기여해왔다. 본 장에서는 어음교환 및 전자어음과 B2B 결제수단인 전자채권, 기업구매자금어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표2-1〉어음교환시스템 종류

구분		세부 내역
어음교환		국내 다수의 금융회사가 일정한 시간에 자기 은행이 수납한 어음·수표 중 타 금융회사를 지급지로 하는 어음과 자기 은행이 지급해야 할 어음을 서로 교환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결제
전자어음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의 결제를 위해 인터넷뱅킹을 통해 어음을 발행하여 판매기업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지급하는 어음 대체 상품이며, 종이어음처럼 배서 및 할인이 가능
B2B 결제 시스템	전자채권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의 결제를 위해 인터넷뱅킹을 통해 채권을 발행하여 판매기업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지급
	기업구매 자금어음	기존 약속어음과는 달리 판매기업이 기업구매자금어음을 발행하고, 구매기업이 대출 또는 자기자금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어음 대체상품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구매기업이 펌뱅킹 등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며, 만기 전에도 판매기업은 해당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부도관리		자금의 부족, 어음법, 수표법 및 당좌거래약관 위배 등의 사유로 어음이 거절된 경우 당좌거래정지처분 등을 실시

1절 어음교환

어음교환은 다른 은행에 지급하여야 하는 어음·수표에 대하여 다수 은행이 어음교환소에서 일괄 교환 즉, 지급제시하고 그 차액만을 결제하는 제도이다. 「어음법」, 「수표법」상 어음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형식적 요건이 필요하며, 어음 소지인이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또한 어음의 채무는 추심 채무로서 어음 소지인이 채무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추심(推尋) : 은행이 수취인의 위탁을 받고 어음, 수표, 배당금 등의 대금을 받아내는 일

〈표2-2〉어음·수표의 특징

구분	세부 내역
요식 증권성	어음·수표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해당 법정요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해당 어음·수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언 증권성	어음·수표의 권리는 그 면상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결정되고, 기재되지 않은 사유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어음·수표상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문언증권성은 무인증권성과 함께 어음·수표의 유통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설권 증권성	다른 여타의 증권은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증권상에 표시 ⁴ 하는 데 그치지만, 어음·수표는 그것을 작성함으로써 비로소 권리가 발생한다. 증권의 작성이 어음·수표상의 권리발생에 절대적 요건이 된다.
무인 증권성	어음이나 수표는 매매, 금전소비대차 등 어음수표 발행의 원인이 되는 관계의 효력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원인관계가 없이 발행되었거나 원인관계가 무효·취소되더라도 어음·수표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소지인은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시 증권성	소지인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그 지급의무자에게 어음·수표 자체를 제시하여야 한다. 어음·수표는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고, 배서라는 간편한 방법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어 채권자의 지급제시 전까지 채무자는 채권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상환 증권성	소지인이 어음·수표금을 지급받을 때는 어음·수표를 교부하여야 하고, 소지인이 그 어음·수표와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인은 지급의무가 없다. 상환된 어음·수표가 다시 유통되어 선의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되면 지급인은 이중변제의 위험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어음·수표 정보교환은 어음 및 수표의 실물 이동 없이 실물에 기록된 수표번호, 금액, 발행은행 등의 정보를 영업점에서 바로 정보화하여, 어음교환소 전산망을 통해 교환·결제하는 업무이다. 어음교환은 지급결제제도의 하나로써, 어음교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다자간 상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 65643 판결). 2007년 5월부터는 「어음법」, 「수표법」의 개정으로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의 추심을 위임받은 수납은행이 그 어음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정보형태로 작성한 후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지급제시⁵하는 방식도 적법한 지급제시로 인정받게 되자, 2010년 11월부터 전국 32개 어음교환소에서 어음·수표 정보교환이 실시되었다. 참가은행은 어음·수표의 실물 이동 없이 영업점에서 바로 정보화하여 어음교환소를 통해 지급제시하면 되므로 교환업무가 대폭 경감됨은 물론 실물 수표의 분실·도난 등에 따른 위험도 크게 감소하였다. 타행 발행 자기앞수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입금 익영업일 자금화가 가능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였으며,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도 증가하였다.

4. 예를 들어 주식회사 주주의 권리(사원권, 주주권)는 그것을 나타내는 증서인 주권이 없더라도 발생한다.

5. 지급제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음법」, 「수표법」에서 어음교환소 앞 지급제시의 효력을 인정(「어음법」 제38조 제2항 및 「수표법」 제31조 제1항)하고 어음 기재사항이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어음교환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정당한 지급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관련 법(「어음법」 제38조 제3항 및 「수표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다.

2024년 5월 기준 29개 금융회사가 참가하고 있으며, 대리교환은 타 참가은행과의 계약을 통하여 어음교환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교환규모가 작은 외국계은행 등이 참가하고 있다.

1. 주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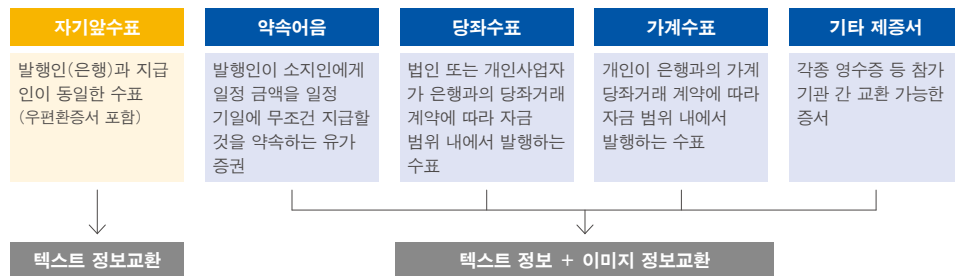
가. 자기앞수표 정보교환

자기앞수표 정보교환이란 정액 및 일반 자기앞수표와 우편환증서의 텍스트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수표 하단에 MICR이 인식된 텍스트 정보(수표번호, 금액, 발행은행 등)를 교환소 전산망을 통해 교환·결제하는 것이다. 수납일 영업 종료 후 해당 수표정보를 교환소를 통해 발행은행으로 일괄전송(Batch) 방식으로 전송한다. 정액 자기앞수표의 경우 고객이 희망하면 발행은행과 실시간으로 전문을 주고받아 지급처리하는 실시간(Real-Time) 방식도 가능하다. 이때 수납은행은 통상 고객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징구한다.

나. 어음 정보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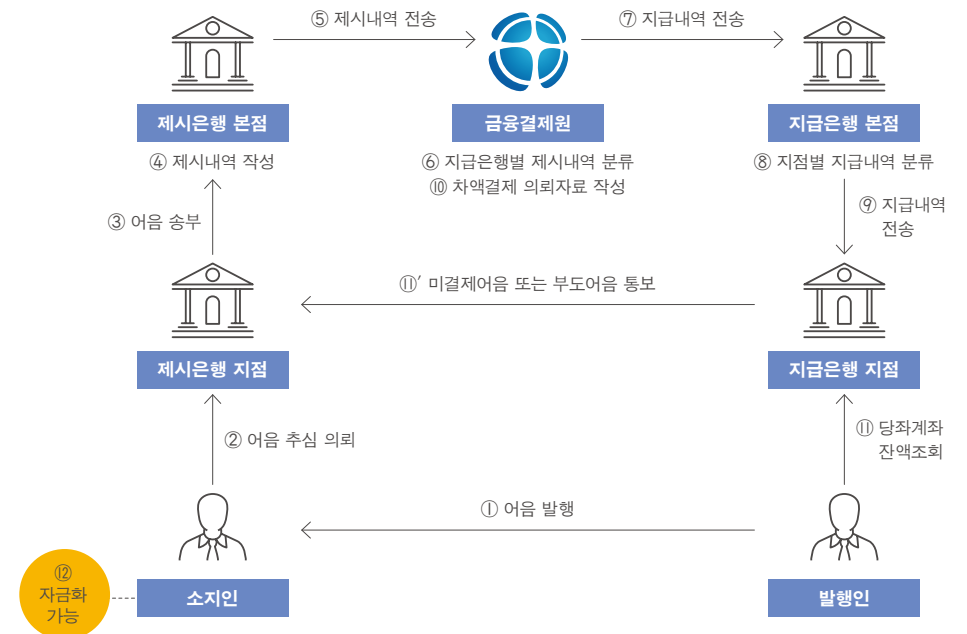
어음 정보교환이란 자기앞수표 외의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및 제증서 등 기타어음의 이미지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인 업무 처리절차는 자기앞수표의 경우와 유사하다. 다만 자기앞수표의 경우 발행은행에서 전산처리로 세부내역을 인자하여 고객에게 배부하게 되므로 전산처리가 수월하나, 기타어음은 은행의 당좌거래처에서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용지에 어음세부사항(금액, 수취인, 만기일 등)을 기재하여 발행하는 특성상 전산으로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어음·수표를 스캔한 이미지도 함께 교환한다.

〈그림2-1〉 어음·수표 정보교환 대상



2. 업무 처리절차

〈그림2-2〉 어음교환 처리절차



제시은행 : 어음교환을 통하여 어음의 대금을 청구 및 영수할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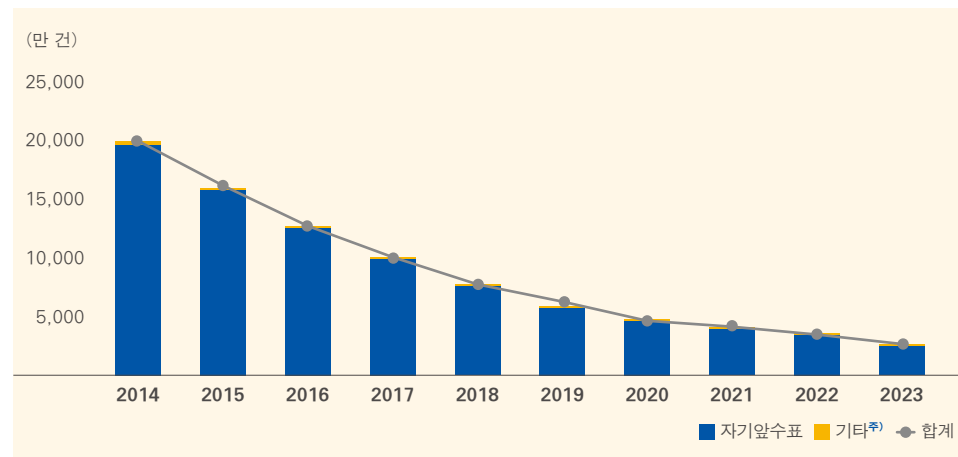
지급은행 : 어음의 대금을 지급할 은행

- ① 어음 발행인은 상품·용역 구입 및 어음 발행
- ② 어음 소지인은 어음 추심 의뢰
- ③ 제시은행 지점은 어음 수납 및 송부
- ④ 제시은행 본점은 각 지점의 어음 수납 및 어음 제시내역을 작성
- ⑤ 제시은행 본점은 금융결제원 앞 제시내역을 전송
- ⑥ 금융결제원은 지급은행별 제시내역을 분류
- ⑦ 금융결제원은 지급은행 본점 앞 지급내역을 전송
- ⑧~⑨ 지급은행 본점은 지점별 지급내역을 분류 및 전송
- ⑩ 한국은행 앞 차액결제 의뢰자료 작성
- ⑪ 지급은행 지점은 발행인 당좌계좌 잔액을 조회
- ⑪' 미결제어음 및 부도어음을 통보
- ⑫ 어음 소지인은 자금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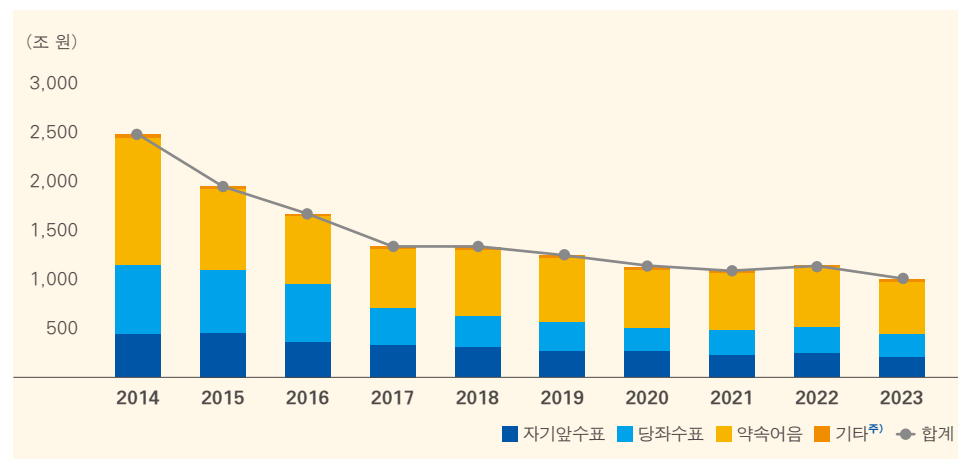
3. 이용 현황

2023년 기준 어음교환시스템을 통한 어음교환 처리규모는 약 2,700만 건, 992조 원(일평균 11만 건, 4조 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26.9%, 금액은 13.1% 감소하였으며, 어음 수표 교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자기앞수표의 교환건수와 금액도 각각 27.2%, 12.3% 감소하였는데, 이는 교환 건수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자기앞수표의 이용량이 2009년 한국은행의 5만 원권 발행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 또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과 같은 어음대체 결제수단과 카드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지급수단의 활성화, 신용카드, 상생결제·팩토링⁶ 등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확산 등으로 어음교환처리 및 어음정보 관리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2-3〉 어음교환 연간 처리규모



주) 당좌수표, 가계수표, 약속어음, 내국신용장



주) 가계수표, 내국신용장

자료 : 금융결제원 통계시스템

2절 전자어음

전자어음은 약속어음을 인터넷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화한 어음으로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발행·배서·결제되는 지급수단이다.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가 보편화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업 간 대금결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전자지급수단이다. 전자어음 도입으로 어음분실 및 위·변조 방지, 어음발행 납발 등 어음제도의 폐해를 줄이거나 보완함으로써 어음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어음의 유통·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표2-3〉 전자어음과 실물어음의 차이

구분	전자어음	실물어음
존재형태	전자문서	서면
종류	약속어음	약속어음 및 환어음
적용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어음법
발행등록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	없음(은행에서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발행)
발행·배서방법	전자문서에 전자서명	기명날인 또는 서명
배서제한	총 배서횟수 20회	무제한
만기제한	발행일로부터 3개월	무제한
일부지급	금지	어음법상 허용(은행약관에서는 불허)
백지어음	금지	가능
관리기관	전자어음관리기관(법무부장관 지정)	없음

전자어음을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기업 간 결제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 의원 입법으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고, 2003년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2004년 3월 법률이 제정되었다. 금융결제원은 2005년 1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전자어음의 등록, 관리 등을 위한 전자어음 관리시스템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6. 팩토링서비스는 2021년 2월에 시작되었으며, 정책금융기관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함으로써 기업의 초기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서비스(중소기업 대상)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2023년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견기업도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전자어음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09년에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전자어음 사용 의무화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전자어음 사용 의무기업은 약속어음 발행 시 반드시 전자어음으로 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어음증권은 「전자어음법」상 전자어음발행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4년 4월에는 의무발행 대상자 확대⁷ 및 분할해서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자어음 이용량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2024년 5월 기준 16개 은행 및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총 22개 금융회사가 참가하고 있다. 한편, 전자어음 이용기관은 발행인 약 2만 개 기관, 수취인 약 61만 개 기관으로 약 63만 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표2-4〉 전자어음 도입효과

이용자	기업
- 어음분실, 위·변조 방지 - 발행 등 어음행위 편리 및 조회 용이 - 어음 보관·관리 및 유통·교환 비용 절감 - 법정기간 초과어음 근절	- 실물어음의 발행·유통·관리 비용 및 인력 절감 - 편리한 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 가능 -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지급결제 수단 확보 -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은행	정부
- 인터넷뱅킹을 연계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 가능 - 기업고객 유치 가능 - 어음 조제·교환 비용 및 인력 절감	- 조세 공정성 확보 및 세수 증대 - 전자상거래 활성화 - 금융질서 확립 - 어음발행 납발 방지

7.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 연도 말 자산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어음발행 시 전자어음으로 발행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2022년 5월에는 자산총액 5억 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었다.

1. 주요 서비스

전자어음은 금액, 만기일 등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어음으로는 발행할 수 없으며, 어음요건을 모두 기재한 완전어음으로만 발행이 가능하다. 금융회사와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지를 금융회사로 정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어음거래 및 결제의 안정성을 위해 만기일은 3개월⁸을 초과할 수 없다. 연쇄부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어음의 배서는 20회로 제한되며 지급수단으로서의 어음이용 활성화를 위해 발행인으로부터 최초 어음을 받은 수취인은 최대 4회에 한하여 어음을 분할하여 배서할 수 있다.

전자어음 관련 주요 업무는 〈표2-5〉과 같이 이용자 등록, 발행, 배서, 보증, 지급제시, 부도제재 등이 있다. 발행, 배서, 보증 등 전자어음 거래는 영업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조회 및 확인서 출력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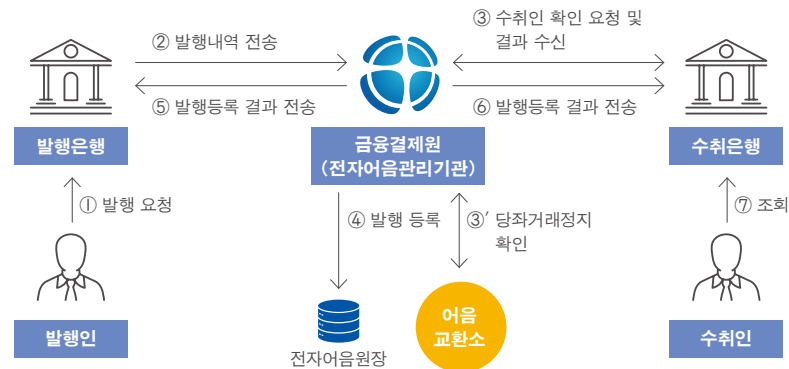
〈표2-5〉 전자어음서비스 종류

구분	세부 내역
이용자 등록	전자어음 이용을 희망하는 모든 고객은 거래은행과 전자어음 이용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하고 거래은행을 통하여 발행인 또는 수취인으로 등록 - 발행인은 발행을 포함한 모든 거래 가능, 수취인은 수취·배서·보증 거래만 가능
발행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전자어음발행에 필요한 항목을 기재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어음 발행
배서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배서할 어음 선택 후 배서에 필요한 항목을 기재하고 전자서명 이행
보증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보증에 필요한 항목을 기재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어음 보증요청 또는 보증승인 거부
지급제시	전자어음은 만기일에 전자어음관리기관에서 자동으로 지급제시 - 발행인은 지급 제시된 날의 오후 4시까지 본인의 발행계좌에 어음금을 입금하여 결제하며, 미입금(일부 입금 포함)된 경우 부도처리 - 만기일에 정상 결제된 어음금은 소지인의 수취계좌로 입금
부도제재	전자어음업무규약에서 정하는 부도제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어음교환소는 발행인에 대해 거래정지처분 등 제재

8. 만기일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2018년 5월 30일부터 6개월로 단축하고 매년 1개월씩 3년간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최종 2021년 5월 30일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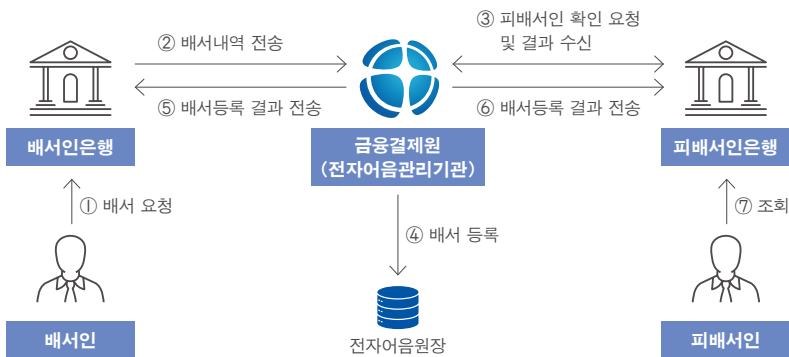
2. 업무 처리절차

〈그림2-4〉 전자어음 발행 처리절차



- ① 전자어음 발행인은 발행요건 기재 및 전자서명 후 전자어음 발행을 요청
- ② 발행은행은 금융결제원 앞 전자어음 발행내역을 전송
- ③ 금융결제원은 수취인 정보를 수취은행 앞 확인 요청 후 결과 수신
- ③' 금융결제원은 발행인의 당좌거래정지 여부를 확인
- ④ 금융결제원은 발행내역을 전자어음원장에 등록
- ⑤ 금융결제원은 발행은행 앞 발행등록 결과를 전송
- ⑥ 금융결제원은 수취은행 앞 발행등록 결과를 전송
- ⑦ 수취인은 전자어음 발행등록 결과를 조회

〈그림2-5〉 전자어음 배서등록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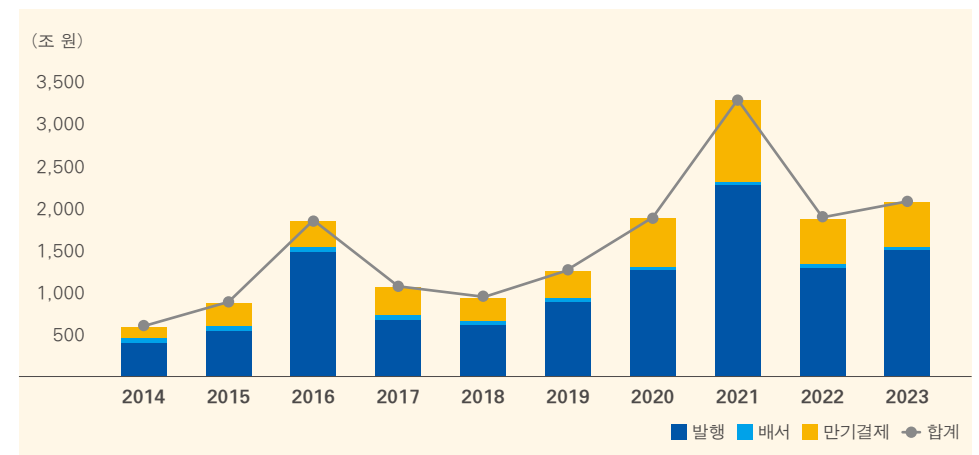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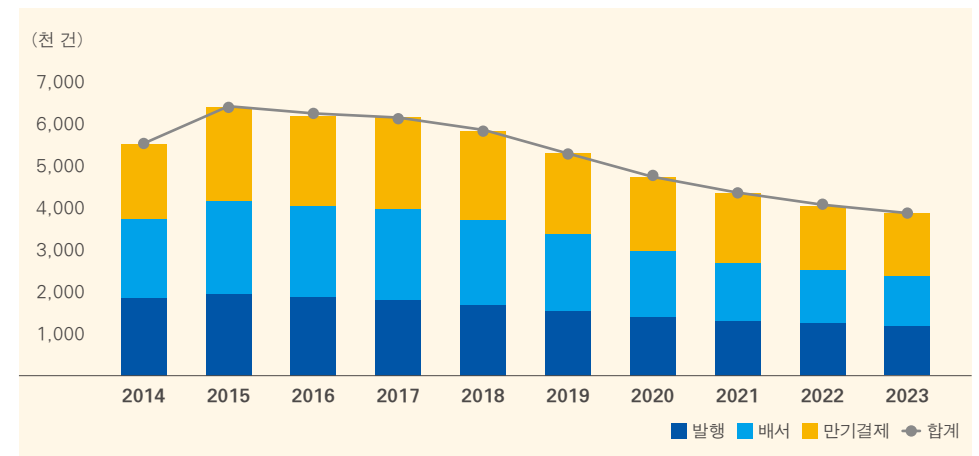


- ① 전자어음 배서인은 배서요건 기재 및 전자서명 후 전자어음 배서를 요청
- ② 배서인은행은 금융결제원 앞 전자어음 배서내역을 전송
- ③ 금융결제원은 피배서인 정보를 피배서인은행 앞 확인 요청 후 결과 수신
- ④ 금융결제원은 배서내역을 전자어음원장에 등록
- ⑤ 금융결제원은 배서인은행 앞 배서등록 결과를 전송
- ⑥ 금융결제원은 피배서인은행 앞 배서등록 결과를 전송
- ⑦ 피배서인은 전자어음 배서등록 결과를 조회

3. 이용 현황

2023년 기준 어음교환시스템을 통한 전자어음 처리규모는 384만 건, 2,063조 원(일평균 1만 5천 건, 8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4.4% 감소하고, 금액은 11.1% 증가하였다. 전자어음 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은 정부가 결제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을 고려하여 어음 만기 단축⁹ 및 수취기일 단축¹⁰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어음 외에도 다른 결제수단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대·중견기업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의무화¹¹하는 등 어음발행 억제 및 현금결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2-6〉 전자어음 연간 처리규모



자료 : 금융결제원 통계시스템

9. 「전자어음법」 개정(2022)

10. 공정거래협약 개정 추진(2022)

11.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대기업(2022)에서 → 중견기업(2023)으로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3절 B2B 결제시스템

B2B 결제시스템은 기업 간 지급결제시스템으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¹²이 인터넷을 통해 상거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전자방식의 기업 간 지급수단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2000년 당시에는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성장하면서 비대면 거래의 단점인 안전성과 보안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되었다. 또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며 참가기관별 시스템 구축비용 최소화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2000년 9월 한국은행 금융정보추진분과위원회는 B2B 결제업무를 2001년도 금융정보화사업으로 선정하였고, 2001년 2월 금융결제원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규약 및 이용약관을 제정하여 같은 해 3월에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2007년 1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라 당해 3월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에 전자채권의 발행, 양도 및 결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였고, 2007년 6월 양도통지를 전자문서 통지방식으로 개선하였다. 2024년 5월 기준 19개의 금융회사가 B2B 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기업 간 지급수단인 전자채권,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정보관리를 각각 설명하고자 한다.

1. 주요 서비스

가. 전자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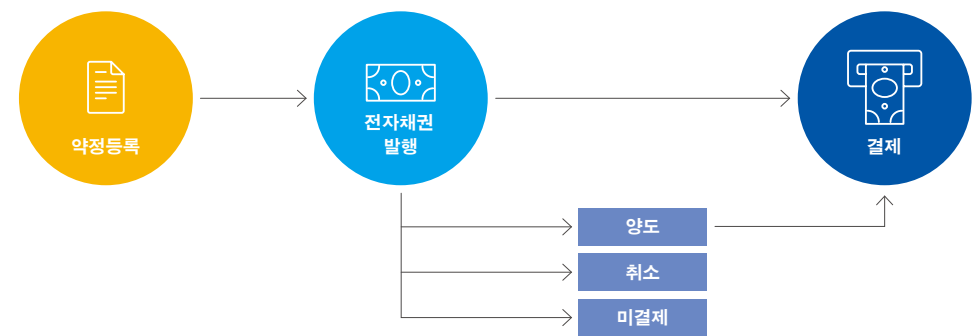
전자채권은 기업 간 상거래에서 발생한 물품대금 등을 구매기업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여 만기에 판매기업이 대금을 지급받거나 만기 전에 거래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전자채권담보대출)을 받는 채권이다.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전자 문서에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하고, 그 전자문서가 관리기관에 등록되면 전자채권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어음·수표 등 장표방식 결제수단과 달리 분실, 위변조 등의 위험이 없고, 거래쌍방이 직접 대면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발행, 결제, 양도통지, 담보대출 등 일련의 거래과정을 편리하게 완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2. 구매기업이란 물품을 구매하고 전자채권 또는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업체를 말하며, 판매기업이란 물품을 판매하고 전자채권 또는 외상매출채권의 채권자로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전자채권은 구매기업 거래은행(발행은행)과 판매기업 거래은행(보관은행)이 다른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고,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만기 전까지 판매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만기일에 전자채권관리기관이 자동 지급 제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자채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등록하여야 하며 실제 상거래에 근거한 채권발행만 허용하는 자금유통 목적 발행 제한이 있다. 그리고 판매기업이 채권담보 대출신청 시 거래은행에만 양도가 가능하다.

전자채권의 주요 업무로는 아래 <그림2-7>에서와 같이 약정내용 등록, 발행, 양도, 결제 등의 업무가 있다.

<그림2-7> 전자채권서비스 종류



구분	세부 내역
약정 체결	전자채권 결제제도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약관을 정확히 이해하고 승인한 후 거래은행과 서비스 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
약정등록	발행은행은 구매기업과 체결한 전자채권 발행거래 약정내용을 관리기관으로 전송하여 약정등록을 처리
전자채권 발행	구매기업의 발행 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발행내역을 관리기관 원장에 등록하고 판매기업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동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
양도통지	판매기업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전자채권 양도 사실을 구매기업에 통지
지급제시 (결제)	전자채권 만기일에 관리기관이 발행은행에 지급 제시하고 구매기업이 결제 대금을 입금하여 판매기업 계좌로 입금
미결제 및 제재	발행은행이 만기일에 미결제 전자채권을 관리기관에 통지하면 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채권을 결제하지 못한 기업을 거래정지처분 조치 - 거래정지 처분은 전체 은행에 통지 - 해당 기업과의 전자채권거래는 즉시 해지되고 2년간 거래 금지

나.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

상업어음제도는 상거래의 활성화, 기업 간 신용공여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발행기업 부도 시 연쇄부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가중하는 역기능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어음결제를 축소하고 어음대체 수단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어음제도가 상거래 시 대금을 주고받는 오랜 관행으로 정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금융·결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음결제를 축소하는 것은 기업 간 상거래 위축, 신용경색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금융회사에서 할인하여 자금을 조달해 온 중소기업의 금융애로가 증대될 우려가 크다. 어음대체 수단 활성화를 위하여 2000년 2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주관의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환어음 기반의 구매자 금융제도 도입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기존 어음교환제도로는 이 제도를 수용하기 어려워 환어음교환 결제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였고, 같은 해 8월 가동하였다. 이후 2005년 8월 기존의 환어음 이외에 전자방식의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통해서도 기업구매자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결제기일 이전에 선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후 2010년 11월에는 판매기업 거래은행이 구매기업의 거래약정 정보를 구매기업 거래은행에 사전 조회할 수 있는 정보증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기업구매자금어음¹³ 정보교환업무는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환어음 형식의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교환 및 결제서비스로서 구매기업은 기업구매자금어음 대출을 통하여 결제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참가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추심 의뢰 받은 기업구매자금어음 내역을 전산 정보화하여 금융결제원으로 전송하면, 이는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해 정보교환되고, 대금은 추심 의뢰일로부터 8영업일(D+7일) 후 어음금 청구내역의 정보교환을 통해 결제된다. 채무자인 구매기업이 발행하는 형식인 약속어음 등과 달리 구매자금어음을 판매기업이 환어음방식으로 발행하고, 납품 후 대금 회수까지의 기간 동안 구매기업은 대금을 대출받아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에는 어음 정보교환업무와 어음금 청구업무가 있다. 어음 정보교환업무는 판매기업이 추심의뢰¹⁴한 구매자금어음과 세금계산서를 거래은행이 정보화하여 은행 간 교환을 통해 구매기업 거래은행에 제시하는 업무이며, 어음금청구업무는 판매기업 거래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인수한 동 어음에 대하여

13. 기업구매자금어음은 어음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2000년 8월 도입한 어음대체 지급수단의 하나로 판매기업이 재화 및 용역 제공의 대가를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발행한 환어음과 판매대금추심의뢰서가 있다.

14. 추심의뢰(인수제시)는 소지인이 지급인에게 기업구매자금어음을 제시하고 인수(어음금의 지급채무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판매기업은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1일 이내에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어음 정보 교환일로부터 제7일에 금융결제원을 통해 어음금을 청구하고 구매기업이 익영업일에 결제하는 업무이다.

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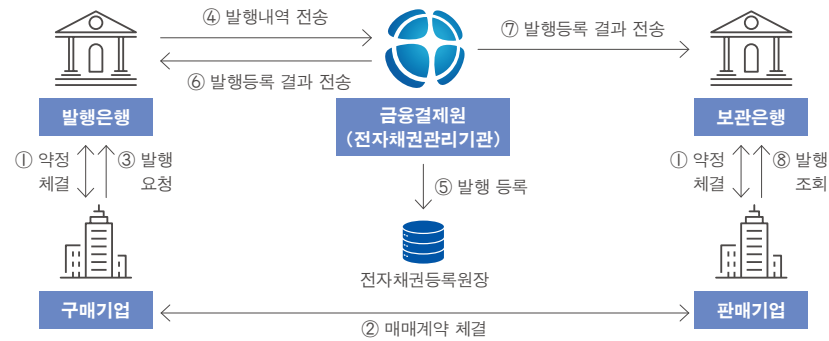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구매기업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지급수단으로, 가장 활성화된 어음대체수단이다. 형식적으로는 전자채권과 유사한 지급수단이나,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동일한 은행을 거래할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개별은행의 서비스이며 양도통지 시 우편통지 방식을 이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2001년 2월 어음 대체수단의 일환으로 시행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활성화되고 있었으나, 2008년 경기 악화로 일부 구매기업의 만기 미결제에 의해 판매기업의 대출 연체 및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금융위원회)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미결제 구매기업에 대한 제재를 위해 금융결제원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요청하였고 금융결제원은 참가은행과 시스템을 구축한 뒤 2009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용약정 및 발행내역, 결제 및 미결제 정보는 금융결제원으로 집중하고, 미결제 발행기업에 대한 신규 발행 금지 및 신용등급 산정 시 반영 등의 제재 조치는 은행 자율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결제 발행기업에 대한 미약한 규제로 인하여 판매기업의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요구로 2015년 6월 거래정지처분제도를 실시하였다.

외상매출채권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동일하고 양도가 제한적(은행만 가능)이며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만기 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 외상매출채권의 주요 업무로는 발행, 결제 및 미결제 제재업무가 있다. 참가은행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거래약정을 맺은 기업은 펌뱅킹 등을 통하여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발행내역, 결제내역, 미결제내역, 발행한도내역을 금융결제원으로 전송한다. 금융결제원은 해당 정보를 집중·관리하고, 발행기업의 미결제 및 거래정지처분 내역을 모든 참가기관으로 전송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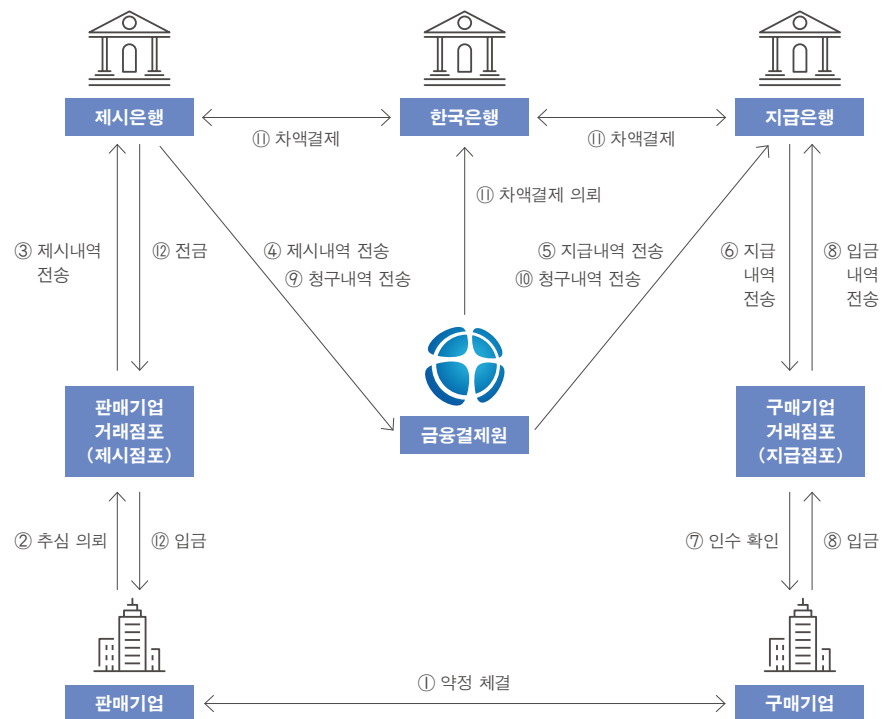
2. 업무 처리절차

〈그림2-8〉 전자채권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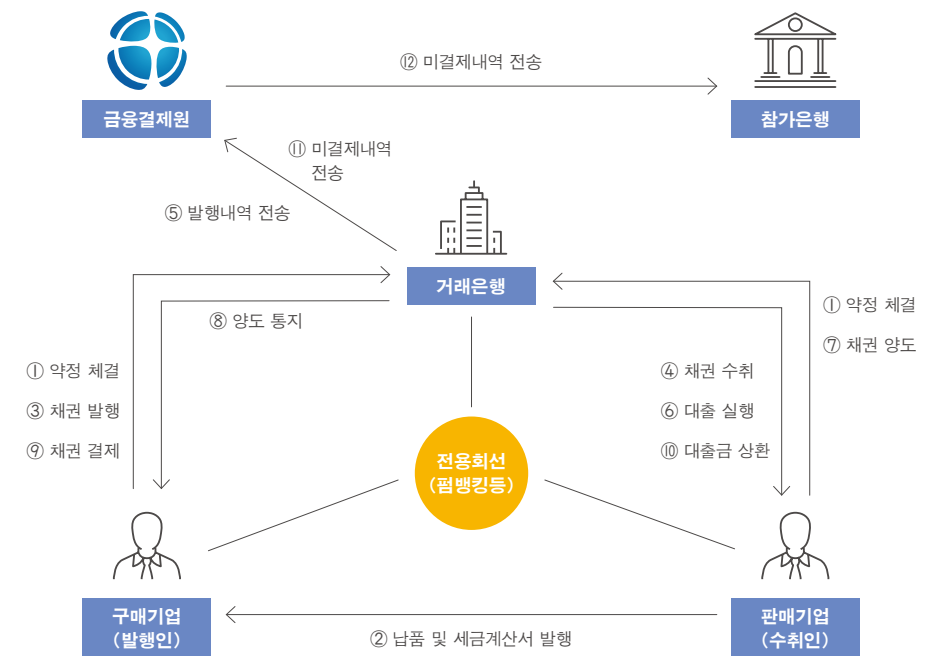
- ①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은 각각 발행은행 및 보관은행에 전자채권 약정을 체결
- ②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 매매계약 체결
- ③ 구매기업은 발행은행 앞 전자채권 발행을 요청
- ④ 발행은행은 전자채권 발행 가능여부를 확인 후 금융결제원 앞 전자채권 발행내역을 전송
- ⑤ 금융결제원은 전자채권등록원장에 발행내역을 등록
- ⑥ 금융결제원은 발행은행 앞 발행등록 결과를 전송
- ⑦ 금융결제원은 보관은행 앞 발행등록 결과를 전송
- ⑧ 판매기업은 전자채권 발행등록 결과를 조회

〈그림2-9〉 기업구매자금 처리절차



- ① 판매기업 및 구매기업은 기업구매자금 이용약정을 체결
- ② 판매기업은 대금수취를 위해 판매기업 거래점포에 추심 의뢰
- ③ 판매기업 거래점포는 제시은행 앞 어음 제시내역을 전송
- ④ 제시은행은 금융결제원 앞 각 점포의 어음 제시내역을 전송
- ⑤ 금융결제원은 제시정보 확인 및 지급은행 앞 지급내역을 전송
- ⑥ 지급은행은 구매기업 거래점포별 지급내역 분류 및 전송
- ⑦ 구매기업 거래점포는 구매기업 앞 인수 제시
- ⑧ 구매기업은 구매기업 거래점포 앞 어음금 입금 및 입금내역을 전송
- ⑨ 제시은행은 금융결제원 앞 어음 청구내역을 전송
- ⑩ 금융결제원은 지급은행 앞 어음 청구내역을 전송
- ⑪ 한국은행 앞 차액결제 의뢰 후 참가기관 당좌계좌를 통해 전금처리
- ⑫ 제시은행은 판매기업 계좌로 입금

〈그림2-10〉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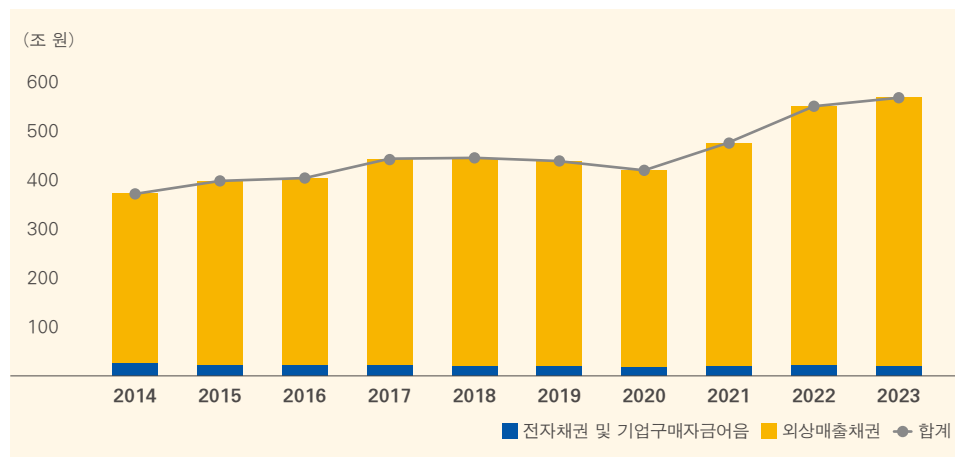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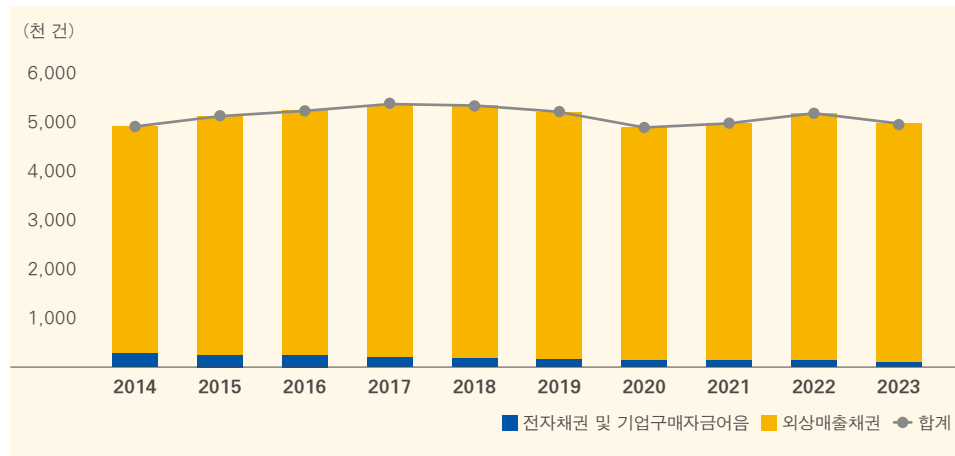


- ①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은 거래은행과 외상매출채권 이용약정을 체결
- ②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에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 ③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
- ④ 판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수취
- ⑤ 거래은행은 금융결제원 앞 외상매출채권 발행내역을 전송
- ⑥ 거래은행은 판매기업에 대출 실행
- ⑦ 판매기업은 거래은행에 채권을 양도
- ⑧ 거래은행은 구매기업 앞 채권양도 사실 통지
- ⑨ 구매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을 결제
- ⑩ 거래은행은 결제금액으로 담보금 대출금 상환
- ⑪ 거래은행은 금융결제원 앞 채권 미결제내역을 전송
- ⑫ 금융결제원은 참가은행 앞 기업의 미결제내역을 전송

3. 이용 현황

2023년 기준 어음교환시스템을 통한 B2B 결제시스템 처리규모는 500만 건, 562조 원(일평균 2만 건, 2조 2,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3.9% 감소하고 금액은 2.8% 증가하였다. 결제수단 중 외상매출채권이 건수와 금액 모두 96% 이상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외상매출채권은 정부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추진 등 어음 대체 결제수단 확대 제도 개선으로 안정적인 업무량을 지속하고 있다.

〈그림2-11〉 B2B 결제시스템 연간 처리규모



자료 : 금융결제원 통계시스템

4절 부도관리

어음교환을 통해서 자행의 지급어음을 수취한 지급은행은 당일 중으로 어음의 지급 또는 부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도가 발생하면 해당 어음의 궁극적인 지급의무자(이하 발행인)에 대하여 부도사실을 교환소에 신고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교환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교환소는 신고받은 부도내역 중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도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이라는 제재를 가한다.

1. 주요 서비스

가. 부도

부도란 지급 제시된 어음의 대금을 발행인이 일정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지급 제시된 어음을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거나 「어음법」, 「수표법」 등의 제한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어음발행인의 부도내역을 어음교환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부도정보를 참가은행과 공유하여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에서 배제함으로써 어음의 원활한 유통과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로 1910년부터 수행하여 왔다. 부도는 실무적으로는 발행인으로부터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지급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분쟁 예방 및 거래안정성을 위하여 <표2-6>과 같이 부도의 사유를 11가지로 정하고 있다. 금융회사에 지급 제시된 어음 중에서 부도어음을 해당 금융회사에서 어음교환소에 신고하면, 동 교환소는 신고내역에 따라 부도정보를 관리한다.

〈표2-6〉 부도의 사유

- ① 예금부족 : 지급자금이 부족하여 어음금을 결제할 수 없는 경우
- ② 무거래 : 당좌예금거래가 없는 경우
- ③ 형식 불비 : 법정요건 누락, 횡선조건위배, 배서불비, 약정용지상위 등
- ④ 안내서 미착 : 국고수표의 발행필통지서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 ⑤ 사고신고서 접수 : 분실, 도난, 피사취, 계약불이행 등으로 사고 신고한 경우
- ⑥ 위조, 변조 : 위조, 변조가 명확하거나 발행인의 신고가 있을 경우
- ⑦ 제시기간 경과 또는 미도래(제시기간 미도래는 수표의 경우 제외)
- ⑧ 인감서명 상이 : 거래은행에 신고된 인감, 서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⑨ 지급지 상이 : 지급지가 다를 경우
- ⑩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 가압류, 가처분, 재산보전처분, 제권판결 등
- ⑪ 가계수표 장당 최고발행한도 초과 : 신용에 따라 100, 300, 500만 원 이하

한편 전자어음의 경우 발행인 거래은행은 만기일 오후 6시까지 전자어음별로 부도 사유 등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전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발행인 거래은행에서 오후 6시까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결제내역과 부도신고 내역 모두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전자어음관리기관은 해당 전자어음에 대하여 예금부족(발행인이 거래정지자인 경우에는 무거래)으로 자동 부도처리하고, 그 사실을 발행인 거래은행과 소지인 거래은행에 전송한다.

나. 거래정지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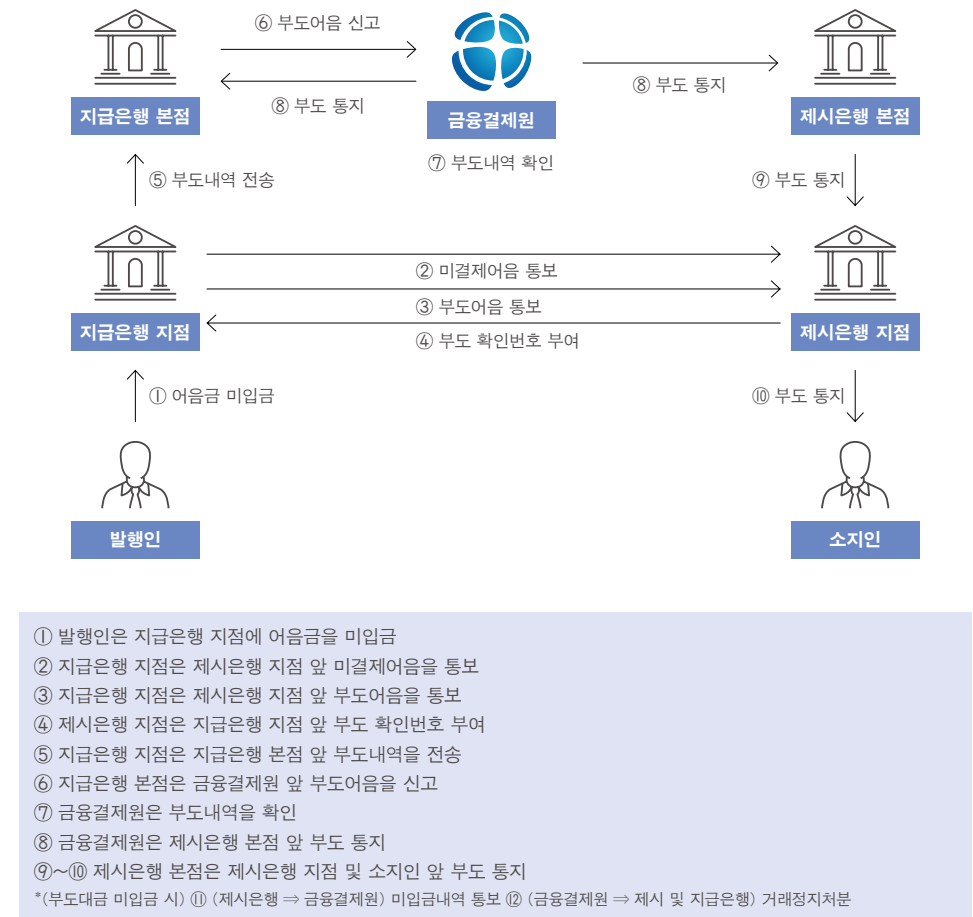
거래정지처분은 적법하게 지급 제시된 어음·수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결제하지 못한 발행인에 대하여 모든 참가은행을 대상으로 2년간 당좌예금거래를 금지시키는 처분이다. 본 제도는 최종 부도어음 발행인을 금융회사와의 거래에서 일정기간 동안 배제시켜 어음거래의 안정성과 금융거래 질서유지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거래정지처분 대상은 당좌예금거래를 전제로 하는 전자어음,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발행인으로 언론 및 어음정보센터 등에 공시되며,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주요 신용도 판단정보로 등록 및 관리되어 대출금 회수 등 은행 거래에 영향을 받게 된다.

다. 부도제재에 대한 구제

부도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이어지기까지 은행의 착오 및 전자적 결제시스템의 장애로 발행인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부도구제는 어음의 부도통지 및 거래정지처분까지의 절차가 발행인이 아닌 참가은행의 착오에 기인하였거나, 참가은행 또는 참가은행과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자적 결제시스템의 장애에 기인하였을 경우 발행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부도신고 취소, 부도통지 취소, 거래정지처분 취소 제도가 있다. 또한 발행인이 신용을 회복한 경우에는 당좌예금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정지처분 해제 제도가 있다.

2. 업무 처리절차

〈그림2-12〉 부도관리 처리절차



2023년 기준 어음교환시스템을 통한 부도관리 처리규모는 1만여 건, 4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22.2%, 금액은 118.8% 증가하였다. 부도금액이 급증한 것은 채권담보부증권(P-CBO) 기초자산 채권의 차환과정에서 만기 불일치 등의 기술적인 부도가 늘어난 데에 기인하였으며, P-CBO 관련 기술적 부도 분을 제외한 어음부도율에 따르면 2022년 0.06%, 2023년 0.12%로 2010년~2019년 중 평균 어음부도율 0.1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¹⁵

〈그림2-13〉 부도관리 연간 처리규모



자료 : 금융결제원 통계시스템

지로시스템



지로시스템은 일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결제나 각종 자금 이전을 지급인과 수취인이 직접 현금이나 수표로 주고받는 대신에 금융회사의 예금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지로 제도는 1977년 2월 서울 지역 전기요금 수납을 시작으로 1981년 장표지로, 자동이체 및 대량지급, 1994년 납부자자동이체 등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에는 기존 장표지로를 대체할 수 있는 인터넷지로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지로제도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 이후 2007년에는 지급수단 범위가 계좌 납부에서 신용카드로 확대되었으며, 2008년에는 인터넷뱅킹 및 CD/ATM에서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지로납부가 가능한 인터넷전용 지로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로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지로는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믿을 수 있는 결제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로는 사전에 지로 이용승인을 받은 기관만 자금을 수취할 수 있으며 수취계좌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여타 결제수단에 비해 매우 낮다.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에도 그 원인 및 과정을 쉽게 추적, 규명할 수 있어 다른 결제수단보다 안전하다. 또한 다수의 거래당사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도 자금을 수수하고, 거래하는 금융회사와 소재 지역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5월 기준 20개 은행을 비롯하여 총 47개 금융회사가 지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전자지로, 인터넷지로 및 장표지로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5.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표3-1〉지로시스템 종류

구분		주요 내용
전자지로	자동이체	이용기관의 출금청구에 따라 자동이체 납부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수납 처리하고 수납금을 이용기관의 지로거래 계좌에 입금(전기·통신요금의 자동납부 등)
	대량지급	이용기관의 이체의뢰에 따라 자금을 지로이용기관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수취계좌에 입금(급여, 연금, 배당금 등)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의 신청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자의 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을 납부자가 지정한 수취계좌에 입금(대출 원리금의 상환이나 정기적금 불입금 등)
인터넷지로		전자수납 : 전자수납매체를 통해 국고, 지방세, 지로자금 등을 수납 처리하고 수납금을 이용기관의 지로거래 계좌에 입금 전자고지 :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부자에게 청구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고지
장표지로		이용기관이 발행한 지로장표를 참가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자금을 수납 처리하고 수납금을 이용기관의 지로거래 계좌에 입금

1절 전자지로

전자지로는 지로 이용기관이 납부자 대상 청구내역을 금융결제원에 전송하면 납부자는 온라인으로 고지된 청구내역 등을 확인 후 납부하고, 금융결제원이 납부자의 출금계좌로부터 출금하는 방식이다. 1999년 9월 금융결제원 이사회의 ‘전자지로 다양화 추진계획’에 따라 금융회사 창구의 수납업무를 경감하고 지로 이용기관의 지로장표 발송·청구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납부자의 납부편의 등을 제고하고자 지로제도가 개선되었다. 지로대금의 고지·납부 및 관리 등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로 이용기관이 지로대금의 청구를 위하여 일일이 지로장표 발행 및 발송하여 납부자 앞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납부자는 금융회사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지로장표와 대금을 납부하는 등 기존 장표지로의 번거로움이 해소되었다.

1. 주요 서비스

가. 자동이체

자동이체는 납부자가 금융회사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정해진 일자(출금일)에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에 의해 납부자 계좌에서 각종 대금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지정계좌로 입금해 주는 서비스이다. 전기·통신·가스요금¹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금 수납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안정적인 수납이 가능하고, 수납비용이 매우 저렴한 수준이며, 자동납부되므로 납부자가 매우 편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유사 서비스로는 개별 금융회사 펌뱅크²이나 CMS,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의 서비스가 있는데, 자동이체는 은행 등 전 금융회사와 연계되어 있어 고객의 자금을 하나의 계좌로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으며, 낮은 수수료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대량지급

대량지급은 이용기관 계좌에서 여러 수취인 계좌로 일괄 이체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용기관의 이체의뢰에 따라 이용기관의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수취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급여, 연금 및 각종 지원금 등을 지속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이용된다. 대량의 지급업무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수취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어디든 이용이 가능하고, 수취인 계좌 확인 후 지급하므로 오류 지급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 자동이체는 납부자의 사전신청에 의거하여 거래 참가기관이 매월 정해진 일자에 정해진 금액을 납부자 계좌에서 출금하여 수취인 계좌로 입금해 주는 업무이다.

납부자 자동이체업무는 타행환으로 송금하거나 직접 수취 금융회사에 가서 납부하는 대신 거래 금융회사에 한 번만 신청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대출원리금 상환이나 정기적금 불입, 각종 회비 및 후원금 납부 및 용돈 송금 등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납부내역을 수취인 앞으로 통보할 필요가 없고, 납부자와 출금 참가기관 간 사전약정에 의하여 이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별도의 이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출금일과 이체일 간 1영업일의 차이가 발생하는 서비스로서 출금일(이체일의 전 영업일)에 출금계좌 잔액이 부족하여 처리되지 않는 경우 다음날 재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출금일 영업마감시간(오후 4시)까지 이체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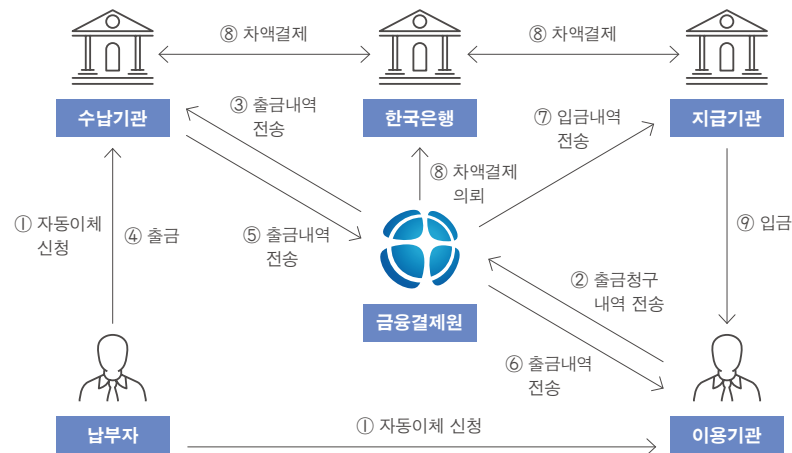
1. 전기요금,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케이블방송요금, 보험료, 지방세,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신용카드요금, 물품판매대금, 서비스 사용료, 후원금 등 자동이체 수납가능 요금에 제한이 없다.

2. 펌뱅크는 이용기관과 금융회사 상호 간 연결된 전산망(전용선 또는 VAN)을 통하여 다양한 금융거래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한편 2015년 2월부터는 납부자 자동이체업무의 출·입금일간 시차발생문제 해소를 위해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당일 실시간 이체방식인 타행 자동이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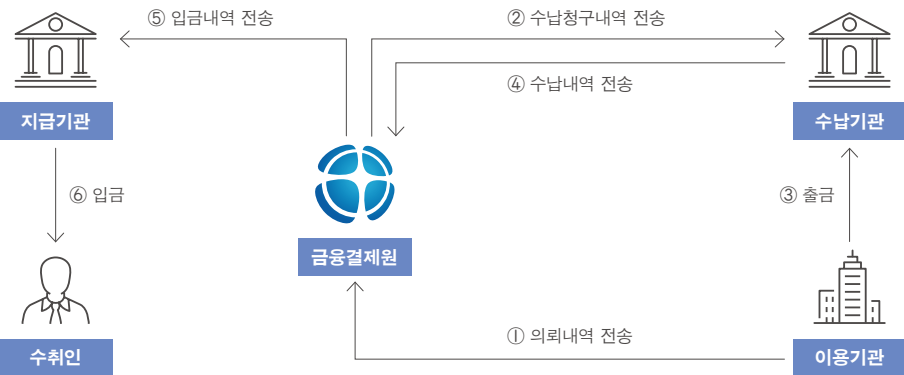
2. 업무 처리절차

〈그림3-1〉 자동이체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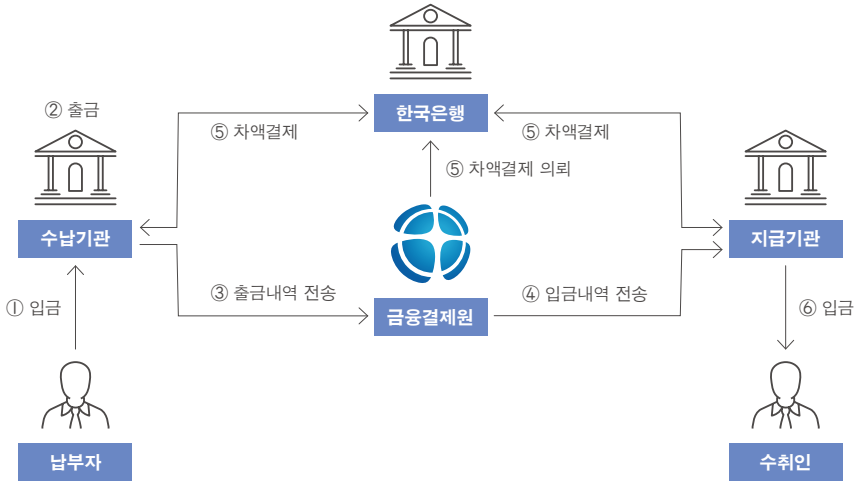
- ① 납부자는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
- ② 이용기관은 출금청구내역을 전송
- ③ 금융결제원은 수납기관 앞 출금청구내역을 전송
- ④ 수납기관은 납부자 계좌에서 출금
- ⑤ 수납기관은 금융결제원 앞 출금내역 전송
- ⑥ 금융결제원은 이용기관 앞 출금내역 전송
- ⑦ 금융결제원은 지급기관 앞 입금내역 전송
- ⑧ 한국은행 앞 차액결제 의뢰 후 참가기관 당좌계좌를 통해 지로 차액결제
- ⑨ 지급기관은 이용기관 계좌에 입금

〈그림3-2〉 대량지급 처리절차



- ① 이용기관은 대량지급 의뢰내역을 전송
- ② 금융결제원은 수납기관 앞 수납청구내역을 전송
- ③ 수납기관은 이용기관 이체자금을 수납
- ④ 수납기관은 금융결제원 앞 수납내역을 전송
- ⑤ 금융결제원은 지급기관 앞 입금내역을 전송
- ⑥ 지급기관은 수취인 계좌에 입금

〈그림3-3〉 납부자자동이체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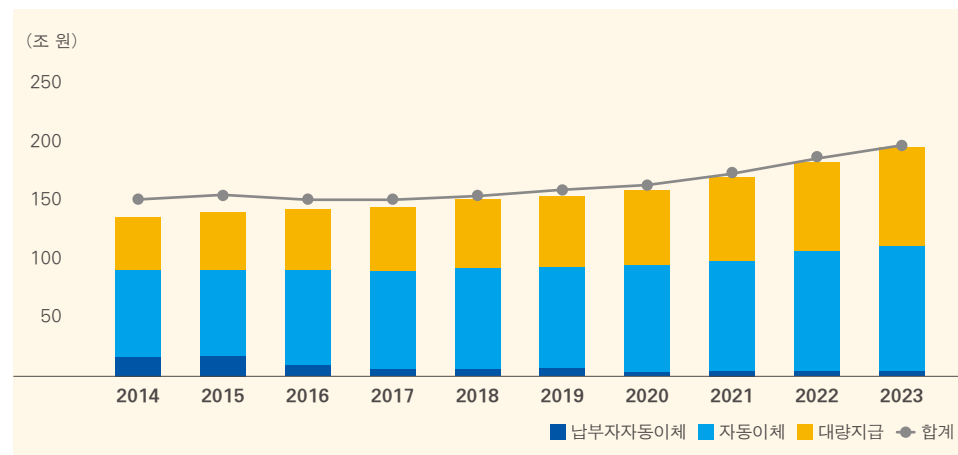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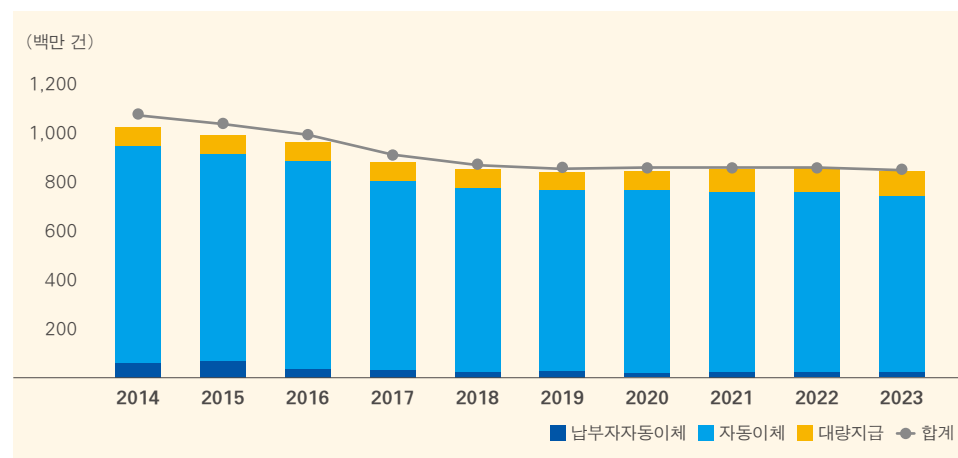


- ① 납부자는 출금계좌에 입금
- ② 수납기관은 고객 계좌에서 출금
- ③ 수납기관은 금융결제원 앞 출금내역을 전송
- ④ 금융결제원은 지급기관 앞 입금내역을 전송
- ⑤ 한국은행 앞 차액결제 의뢰 후 참가기관 당좌계좌를 통해 지로 차액결제
- ⑥ 지급기관은 수취인 계좌에 입금

3. 이용 현황

2023년 전자지로 처리규모는 8억 6천만 건, 196조 원(일평균 350만 건,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0.7% 감소하고, 금액은 6.4% 증가하였다. 자동이체 건수는 경쟁 관계에 있는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자동이체와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 등의 영향으로 2014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량지급은 수수료가 낮고 각종 연금 및 급여이체 등의 업무로 처리건수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납부자 자동이체는 2015년 금융공동망을 통한 실시간 이체 방식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3-4〉 전자지로 이용 현황



자료 : 금융결제원 통계시스템

2절 인터넷지로

인터넷지로는 각종 지로요금 및 세금, 공과금 등을 금융회사에 가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인터넷지로 이용기관은 온라인으로 지로장표를 발송하여 수납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인터넷 납부를 통해 창구수납업무 경감 및 처리비용 절감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납부자는 금융회사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 활성화에 발맞추어 인터넷 기반의 지로 제도를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으며, '전자지로 다양화 추진계획'이 1999년 10월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의결되면서 기존 장표지로를 대체할 수 있는 인터넷지로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2021년 3월부터는 도시가스요금, 기부금 등 생활밀착형 요금을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알림을 받아 요금을 확인하고 별도 로그인 없이 바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오픈지로서비스가 실시되었다. 이로 인해 지로용지 기반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종이 없는 요금 고지 및 비대면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자는 어디서나 편리하게 대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고,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해졌다. 지로 이용기관은 지로장표의 발행 및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대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지로 수납 및 업무 처리비용의 감소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1. 주요 서비스

인터넷지로 수납채널은 참가기관의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CD/ATM, 창구단말기 등과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 앱(모바일지로) 등이 있다. 고객은 인터넷지로를 통해 지로자금, 중앙정부기관이 징수하는 국세와 그 밖의 국고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 상하수도 요금 등을 납부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지급수단으로는 계좌납부와 신용카드납부가 있다. 계좌납부는 고객이 예금계좌의 현금을 출금하여 이용기관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모든 납부요금에 적용된다. 한편, 신용카드납부는 수수료 부담주체 및 수납 수수료율이 정해진 일부 요금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계좌납부는 이용기관에 납부 건당 정액³의 수납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에 신용카드납부는 고객 또는 이용기관에 납부 금액당 정률⁴의 수납 수수료를 부과한다. 납부 가능시간은 연중 오전 0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이고, 고지자료와 수납결과의 조회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 가능하다.

납부방식에 따라서는 크게 고지납부, 조회납부 및 입력납부로 구분할 수 있다. 고지납부는 사전에 전자고지서비스를 신청한 이용기관과 인터넷지로 회원 간의 납부방식으로 인터넷청구서, 이메일 등으로 고객에게 고지내역을 통지하면, 납부자가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고지된 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한 후 등록된 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하는 방식이다. 조회납부는 인터넷지로 고지DB에 저장된 이용기관의 고지내역을 고객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조회하여 확인한 후 등록된 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하는 방식이다. 입력납부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지로에서 지로용지 상 고객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납부하는 서비스이다.

〈표3-2〉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납부가능 요금 및 수수료

요금 종류	수수료(납부주체)	비고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세외수입·상하수도	-	수수료가 없고 계약기간 동안 신용카드사가 자금을 지원 이체 ^{주1)}
국세·관세	납부요금의 0.8% (납부자부담 ^{주2)} , 체크카드는 0.5%)	납부한도 없음
법무부 국고금 (검찰청벌과금 및 과태료)	납부요금의 0.8% (납부자부담, 체크카드는 0.5%)	납부한도 없음
경찰청 벌과금 및 범칙금	납부요금의 1% (납부자부담)	납부한도 200만 원 이하
통합사회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납부요금의 0.8% (납부자부담, 체크카드는 0.5%)	납부한도 없음
국민연금보험 반납·추납보험료	납부요금의 0.8% (납부자부담, 체크카드는 0.5%)	납부한도 없음
일반 지로요금 중 일부	-	BC카드, KB카드만 가능 ^{주3)}

주1) 지연이체기간 동안 신용카드사는 자금을 활용하고 그 이익을 수납대행수수료로 대체

주2) 국세 및 경찰청 범칙금 등은 해당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재정손실 및 현금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신용카드 납세자가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

주3) 일반 지로요금을 제외한 국세·지방세 등은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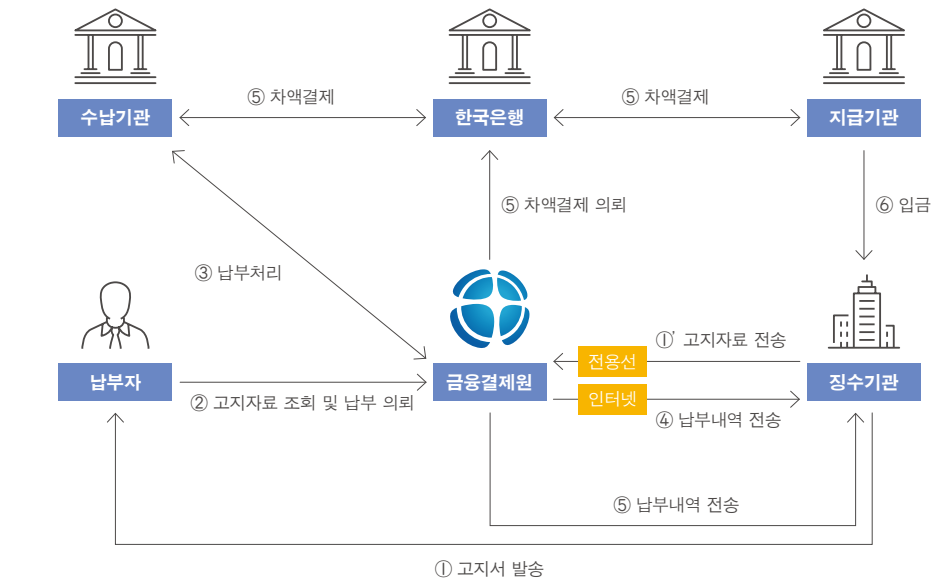
〈표3-3〉인터넷지로 납부채널 및 요금

구분		세부 내역
인터넷 지로	고지납부	이용기관이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고지된 내역을 납부자가 인터넷(또는 모바일)에서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 국세·지방세 및 일반 지로요금
	조회납부	인터넷지로 DB에 저장된 이용기관의 전자고지 데이터를 납부자가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조회하여 청구내역을 확인한 후 인터넷(또는 모바일)으로 납부 • 국세·지방세, 사회보험료, 전기/전화요금 및 일반 지로요금
	입력납부	지로용지상의 납부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납부 • 일반 지로요금
참가 은행	인터넷뱅킹	참가은행의 인터넷(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하여 납부 • 국세·지방세, 사회보험료, 전기/전화요금 및 일반 지로요금
	CD/ATM	참가은행의 CD/ATM을 통하여 납부 • 국세·지방세, 사회보험료, 전기/전화요금 및 일반 지로요금
위택스(wetax)		행정안전부 지방세 납부 관련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하여 납부 • 지방세·세외수입
이택스(ETAX)		서울시의 지방세 납부 관련 홈페이지 이택스를 통하여 납부 • 지방세·세외수입(서울시)
홈택스(Hometax)		국세청의 국세 납부 관련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하여 납부 • 국세
유니패스(UNI-PASS)		관세청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서비스 유니패스를 통하여 납부 • 관세

3. 계좌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자는 수납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용기관에는 사전에 계약된 건당 정액의 수납대행수수료가 차감되고 이체된다(예, 100만 원의 국고금을 계좌 납부하는 경우 ① 납부자 계좌에서 100만 원 출금(수납수수료 없음). ② 이용기관에게는 100만 원-α(계약된 수납 수수료)를 입금 ③ 수납기관은 α를 수납대행수수료로 편입).
4.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납부자에게는 수수료가 반영된 익월 신용카드대금이 청구되고, 이용기관에는 수수료를 제외한 납부금액이 이체된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자는 통상 한 달 뒤에 그 대금을 결제하므로, 그 기간 동안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를 누군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업무 처리절차

〈그림3-5〉 인터넷지로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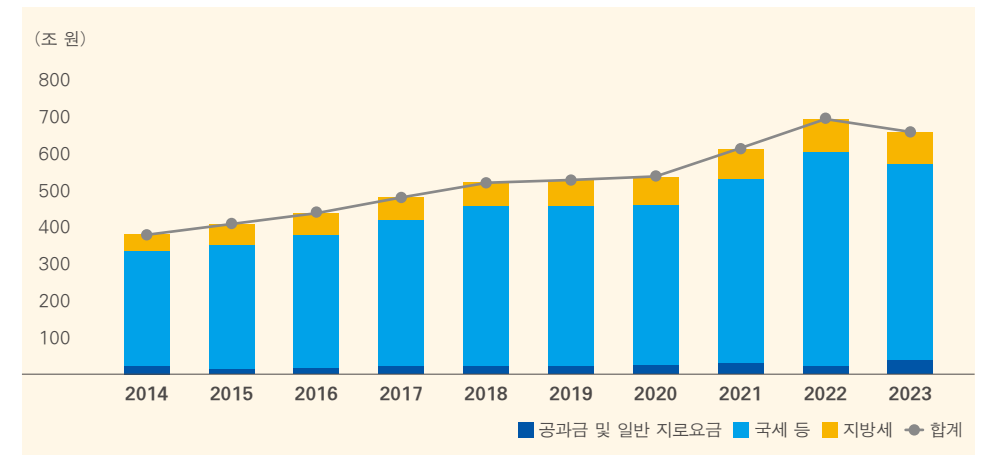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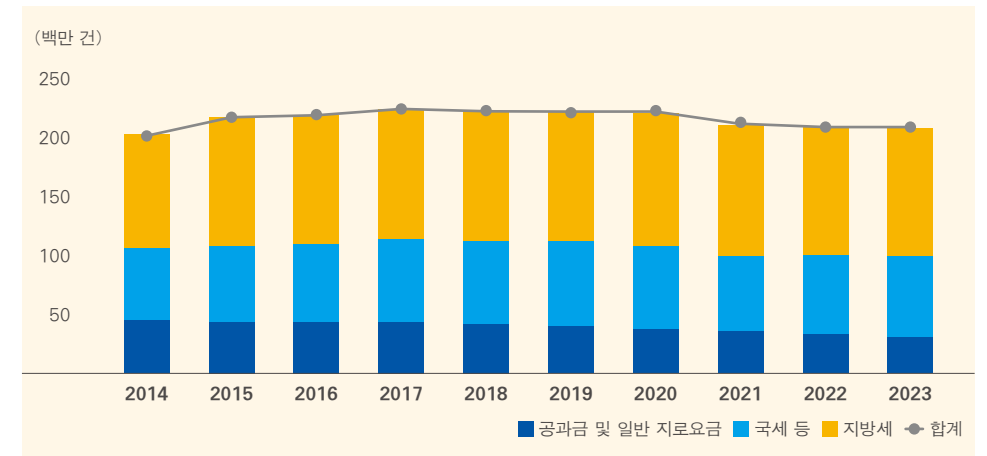


- ① ① 징수기관은 납부자 앞 고지서 발송 및 금융결제원 앞 고지자료 전송
 ② 납부자는 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 고지자료를 조회 및 납부 의뢰
 ③ 금융결제원은 수납기관 앞 출금 요청 후 출금결과 수신
 ④ 금융결제원은 징수기관 앞 납부내역을 전송
 ⑤ 한국은행 앞 차액결제 의뢰 후 참가기관 당좌계좌를 통해 지로 차액결제
 ⑥ 지급기관은 징수기관 계좌에 입금

3. 이용 현황

2023년 인터넷지로 처리규모는 2억 7백만 건, 651조 원(일평균 84만 건, 2조 6,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0.9% 감소하고, 금액은 4.8% 감소하였다. 경쟁 관계에 있는 통신사 및 핀테크 기업 등의 출금이체, 가상계좌 등 대체 납부수단을 통한 간편납부서비스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인터넷지로는 납부가능 요금 및 납부 수단 확대 등 꾸준한 제도 개선을 이뤄내면서 업무량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림3-6〉 인터넷지로 연간 처리규모



자료 : 금융결제원 통계시스템

3절 장표지로

장표지로는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수납하여야 하는 기관이 사전에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지로번호와 지로장표를 승인받은 후 고객에게 지로장표를 배포하여 금융회사 등을 통해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는 업무이다. 고객이 지로장표와 함께 대금을 은행에 납부하면 금융결제원은 수납된 자금을 이용기관의 계좌에 이체하고 해당 수납내역을 제공한다.

1981년 3월 실시된 장표지로업무 초기에는 은행창구에서 수납한 장표 실물을 금융결제원에 집중하여 전산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2000년 7월 수납장표정보화 실시 이후에는 수납점이 직접 무인수납기 등 정보작성 기기(스캐너 등)를 이용하여 수납장표를 정보화하여 본부로 전송하고, 수납점 본부는 수납점별 수납정보를 취합하여 확인한 후 금융결제원으로 전송하고 있다.

장표지로서비스 이용기관은 전 참가기관을 수납창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이 지로자료 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납내역을 제공하므로 자금수납 및 고객관리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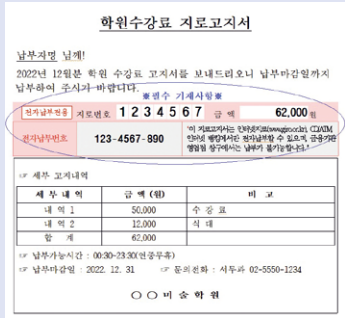
1. 주요 서비스

금융결제원은 신청기관의 업종을 감안하여 지로번호를 부여하고 지로장표 사용을 승인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장표지로 수납가능 요금은 보험료, 도시가스요금, 신문구독료, 학자금, 물품판매대금, 사용료, 각종 회비 등이 있으며, 지로 이용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수납할 내역(금액)을 지로장표에 기재하여 배포하면 고객은 지로장표를 기반으로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인터넷 등 전자수납매체에서 납부하고 고객이 납부한 요금은 지로 이용기관이 지정한 계좌(모계좌)로 입금된다.

장표지로 수납 방식에는 장표수납과 전자수납 방식이 있다. 장표수납은 은행창구에서 장표실물을 받아서 수납하는 방식이며, 전자수납은 고객이 전자수납매체(인터넷, CD/ATM, 유·무선전화, 모바일 등)에서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을 조회 또는 직접 입력하고 확인한 후 본인의 계좌에서 전자적으로 출금하여 납부하는 방식이다. 고객이 고지내역을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전자조회 수납서비스 이용기관은 매일 지로장표 배포 시 동일한 고지내역(고지정보) 파일을 금융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하며 금융결제원은 전송받은 고지내역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원활한 전자조회 수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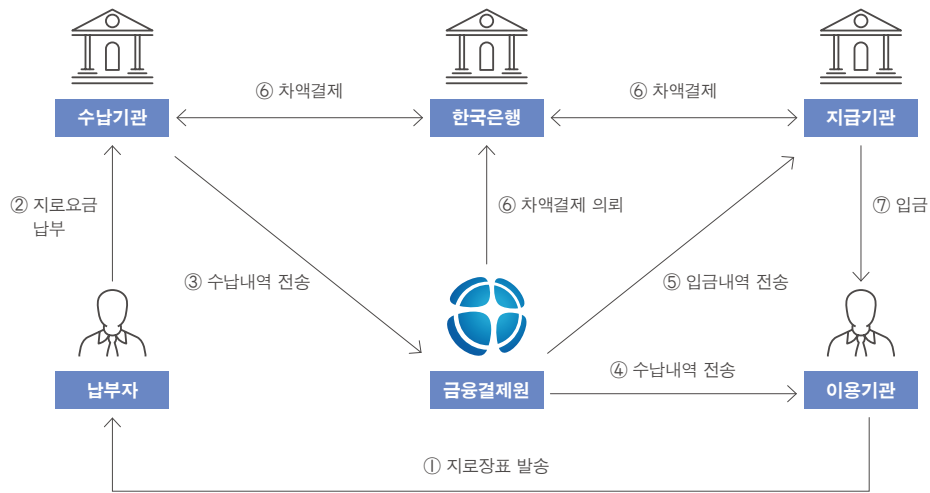
지로장표의 종류에는 일반OCR, 정액OCR, MICR, 표준OCR 장표, 전자납부전용장표가 있으며, 지로이용기관은 사용할 장표를 금융결제원이 정한 장표구비요건에 따라 인쇄하여야 하며, 동 요건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이용기관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림3-7〉 지로장표 종류 및 특징

일반OCR 장표		장표상의 수납내역을 규정된 활자체(OCR-B1 FONT)로 인자하여 발행하는 장표
정액OCR 장표		신문대금 등과 같이 수납할 금액이 일정한 경우에 사용하는 장표
MICR 장표		지로장표 조제 시 지로번호를 미리 인쇄하고 납부자내역은 이용기관 또는 납부자가 수기로 작성할 수 있는 장표
표준OCR 장표		2000년 7월부터 4대 공과금(전기요금, 전화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수납장표정보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장표 ※ 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1월 27일부터 표준OCR장표 미사용
전자납부전용 장표		이용기관이 A4용지 등 임의규격 용지에 자체적으로 인쇄 및 배포할 수 있는 장표로 반드시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 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전자수납매체에서 조회납부만 가능한 장표(장표수납 불가)

2. 업무 처리절차

〈그림3-8〉 장표지로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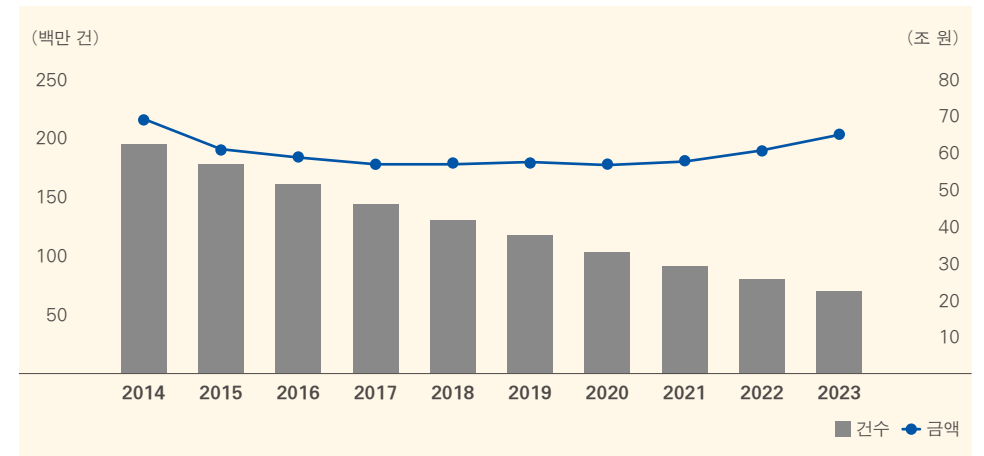


- ① 이용기관은 납부자 앞 지로장표를 발송
- ② 납부자는 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 지로요금을 납부
- ③ 수납기관은 금융결제원 앞 지로 수납내역을 전송
- ④ 금융결제원은 이용기관 앞 수납내역을 전송
- ⑤ 금융결제원은 지급기관 앞 입금내역을 전송
- ⑥ 한국은행 앞 차액결제 의뢰 후 참가기관 당좌계좌를 통해 지로 차액결제
- ⑦ 지급기관은 이용기관 계좌에 입금

3. 이용 현황

2023년 장표지로 처리규모는 6,890만 건, 65조 원(일평균 28만 건, 2,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11.8% 감소하고, 금액은 8.0% 증가하였다. 장표지로 는 다양한 납부서비스의 출현으로 처리건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이 대체 납부수단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통신사나 플랫폼 기관에서의 간편결제를 통한 신종 공과금 납부 채널·수단 다양화 또한 활성화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

〈그림3-9〉 장표지로 연간 처리규모



자료 : 금융결제원 통계시스템

기타 지급결제시스템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2015년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을 구축하였다. 개별은행이 제공하는 플랫폼에 핀테크 기업이 각각 별도로 연계하여야 하는 해외의 오픈뱅킹 방식과 달리 우리나라는 은행과 핀테크 기업을 모두 중계하는 단일 공동 플랫폼 형태로 구축하였다. 핀테크 기업은 개별은행과 일일이 제휴를 맺을 필요 없이 공동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방식(API)을 통해 은행의 조회·이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약 또한 모든 은행과 개별적으로 체결하지 않고 플랫폼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과 단일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핀테크 기업에 한하여 제공되었던 오픈플랫폼은 2019년 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현행 오픈뱅킹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참여업권을 기존의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2020. 12.), 금융투자회사(2020. 12.), 카드사(2021. 5.) 등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고객은 단일 채널을 통해서도 계좌뿐만 아니라 카드정보 및 선불계정 등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자금이체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 5월 기준 총 57개 금융회사가 오픈뱅킹시스템에 참가 중이다.

〈표4-1〉 오픈뱅킹 참여업권 확대 추진 경과

일자	세부 내역
20. 10. 21.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발표(금융위원회, 제3차 디지털금융협의회)
20. 12. 10.	카드사 및 핀테크의 오픈뱅킹 참여 확대 추진 기본계획(안) 이사회 의결
20. 12. 22.	참여기관 확대 : 금투사,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입금가능 계좌 확대 : 요구불예금 → 예·적금 등 오픈뱅킹 조회수수료 인하
21. 4. 29.	참여기관 확대 : 저축은행
21. 5. 31.	참여기관 확대 : 카드사 조회정보 범위 확대 : 카드 정보 추가
21. 7. 29.	조회정보 범위 확대 : 선불충전금 정보 추가
20. 12. 10.	보험사 및 캐피탈사의 오픈뱅킹 참여 확대 추진 기본계획(안) 이사회 의결
22. 12. 29.	참여기관 확대 : 보험사, 할부금융사 조회정보 범위 확대 : 보험/대출리스 정보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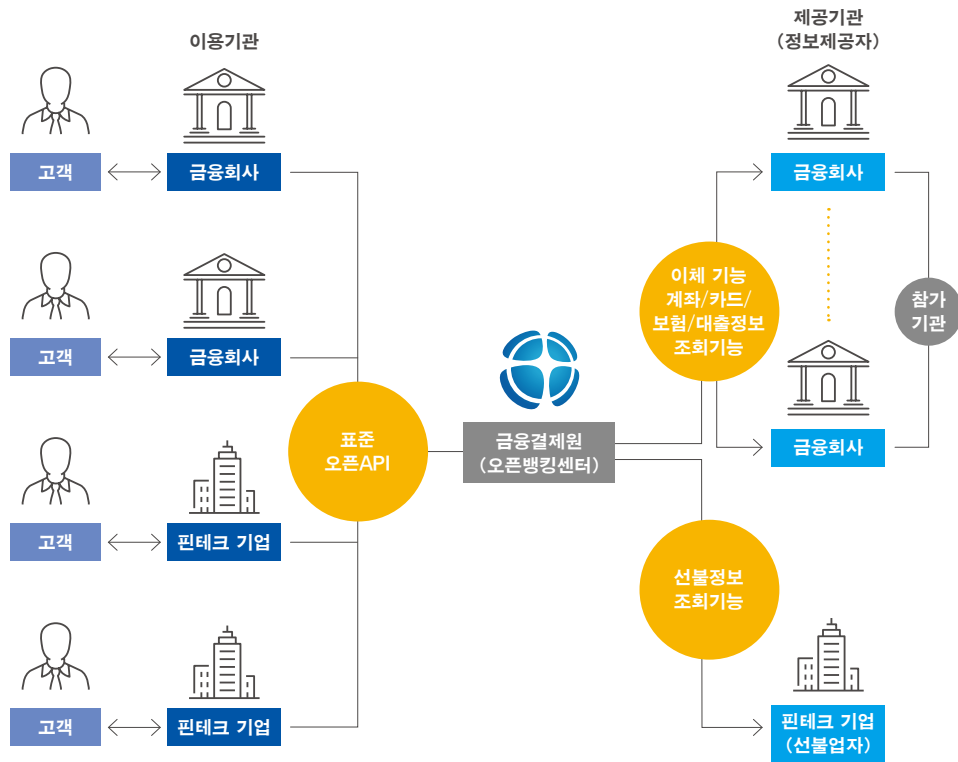
1.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특정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 규칙을 말한다.

1절 오픈뱅킹시스템

오픈뱅킹시스템은 고객이 하나의 앱(금융회사 또는 핀테크 기업)에서 본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API¹ 방식으로 금융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개방형 공동인프라를 말한다. 다음 3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리나라의 기존 지급서비스 시장은 소수 금융회사의 과점 체제로 인하여 새로운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사업자는 간편결제·송금 등 새롭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더라도 은행 결제망 접근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은행도 자행 고객 중심의 한정적인 결제 인프라로 인해 금융 산업의 경쟁 및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한편, 주요 선진국들은 핀테크 활성화 및 금융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결제 및 데이터 인프라의 과감한 변화와 개방을 추진하였다. 유럽연합은 「PSD2」, 일본은 「자금결제법」 및 「은행법」 개정 등 주요 국가에서는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에게 고객의 계좌정보 접근권한을 API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그림4-1〉 오픈뱅킹 처리흐름 및 참여기관



또한,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참가를 원하는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앱 서비스 기능 테스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보안원은 해당 기업의 서비스 운영 환경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 점검 및 앱 취약점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핀테크 기업이 안정적으로 금융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FDS(Fraud Detection System) 고도화²를 추진하고, 핀테크 기업 대상으로 사전·사후 보안 관리³ 제도 등을 도입하여 오픈뱅킹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에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로부터 고객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신규 가입 시 3일간 해당고객의 이용한도를 축소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2. 결제금액 및 시간대 차이 등 의심 패턴을 기반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일정 기준 초과 시 의심계좌로 분류하고, 동 계좌에서 거래 발생 시 이상거래로 탐지하여 이용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3. 사전점검 시 외부 보안점검이 의무화되며, 각 핀테크 기업의 특정 API(입금이체, 출금이체, 거래내역조회, 잔액조회) 이용 여부, 거래규모, 사고이력에 따라 사후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4. 3일간 자금이체 1일 이용한도가 1천만 원에서 300만 원로 축소되며, 송금이 아닌 결제, 선불충전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향후에는 오픈뱅킹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계좌 잔액 및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법인이 각 은행별로 전자금융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아도 하나의 주거래은행 채널을 통해 전 은행 계좌의 잔액과 거래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기업의 자금관리 편의를 크게 증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객이 영업점에서도 타 금융회사의 계좌 잔액 및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게 되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주요 서비스

현재 오픈뱅킹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크게 계좌 API와 비계좌(카드 및 선불정보) API로 나누어볼 수 있고 그 외에 주요 서비스를 보조하는 사용자 인증 및 관리 기능 등이 있다. 참여업권이 금융투자회사 및 카드사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오픈뱅킹시스템에 참가하는 각 주체가 일정 범위의 데이터를 서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아래 〈표4-2〉에서 볼 수 있듯이 은행, 카드사, 금융투자회사 및 핀테크 기업에서 제공하는 API를 비롯하여 기타 관리 API까지 다양한 API가 오픈뱅킹시스템에서 제공되고 있다.

〈표4-2〉 오픈뱅킹서비스 종류

API 분류		서비스 내용
계좌	잔액조회	고객이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 계좌의 잔액 및 출금 가능 금액 조회
	거래내역조회	고객이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 계좌의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
	계좌실명조회	오픈뱅킹서비스 이용 기업이 출금이체를 신청한 고객 계좌의 정상 여부 및 실명정보 조회
	송금인정보조회	오픈뱅킹서비스 이용 기업이 출금이체를 신청한 고객 계좌의 정상 여부 조회
	수취조회	오픈뱅킹서비스 이용 기업이 입금이체 요청 전 수취계좌의 입금 가능 여부와 수취인성명 조회
	입금이체	오픈뱅킹서비스 이용 기업이 지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수취인 계좌로 실시간으로 입금
	출금이체	오픈뱅킹서비스 이용 기업이 출금이체에 동의한 고객의 계좌 내 자금을 자사 수납계좌로 이체
카드	카드목록조회	고객이 보유한 모든 카드 목록 조회
	카드기본정보조회	고객이 보유한 카드의 발급일자과 결제 계좌번호 확인
	청구서기본정보조회	고객의 월별 카드 청구서 총 청구금액과 결제일 확인
	청구서상세정보조회	고객의 월별 카드 청구서 사용일자와 금액, 사용처 확인

	API 분류	서비스 내용
선불	선불목록조회	고객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권면 목록 조회
	선불연계정보조회	고객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연계 계좌번호 확인
	선불잔액조회	고객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권면별 잔액 확인
	선불거래내역조회	고객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권면별 거래내역 확인
보험	보험목록조회	고객이 가입한 보험상품명 등 조회
	보험납입정보조회	고객이 가입한 보험의 납입정보 확인
대출리스	대출리스목록조회	고객이 가입한 대출·리스상품명 등 조회
	대출리스기본정보조회	고객이 가입한 대출·리스별 상환정보 등 조회
기타	사용자인증	위 계좌 분야 7개 서비스 API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에 대한 인증 절차 및 동의 과정을 거쳐 해당 고객의 계좌 등록
	관리	오픈뱅킹서비스 이용 기업의 서비스 관리 지원 (통계, 수수료 조회, 사용자 탈퇴 등)

자료 : 금융결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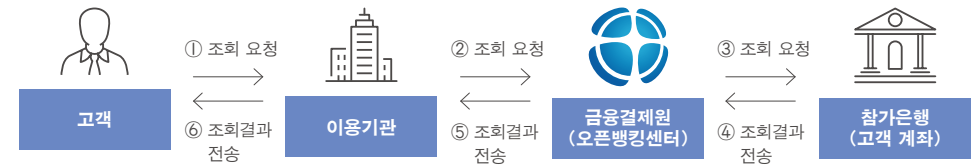
아래 <그림4-2>는 오픈뱅킹 API를 활용한 예시이다. 핀테크 기업들은 오픈뱅킹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API를 서로 조합하여 간편송금, 간편결제, 해외송금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그림4-2> 오픈뱅킹 API 활용 예시

활용 예시	사업모델
잔액조회 API + 출금이체 API + 입금이체 API	간편송금서비스
출금이체 API + 입금이체 API	간편결제서비스
출금이체 API	선불충전서비스
(당발송금) 잔액조회 API + 출금이체 API (타발송금) 수취조회 API + 입금이체 API	해외송금서비스
입금이체 API + 계좌실명조회 API	보유계좌인증서비스
거래내역조회 API + 카드조회 API + 선불조회 API	자산관리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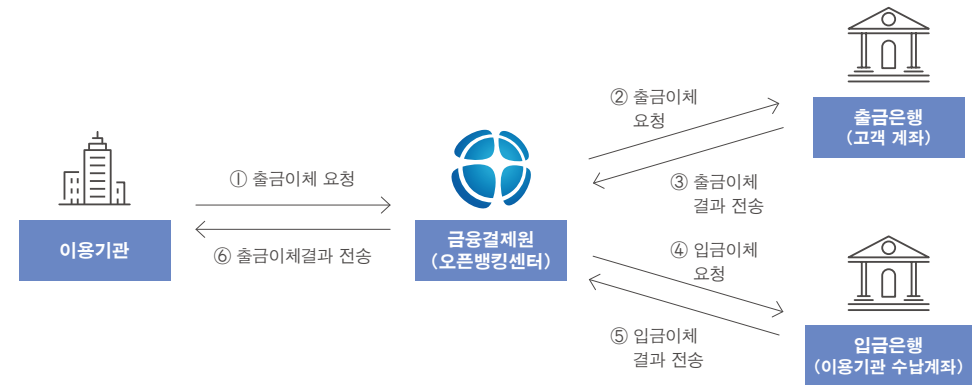
2. 업무 처리절차

<그림4-3> 오픈뱅킹 잔액·거래내역조회 처리절차



- ① 고객은 이용기관 앱에서 계좌 잔액 또는 거래내역 조회를 요청
- ② 이용기관은 금융결제원 앞 조회요청 내역을 전송
- ③ 금융결제원은 조회요청 정당성과 인증토큰의 유효성 검증 후 참가은행 앞 조회요청 내역을 전송
- ④ 참가기관은 금융결제원 앞 조회결과를 전송
- ⑤ 금융결제원은 이용기관 앞 조회결과를 전송
- ⑥ 이용기관은 고객 앞 조회결과를 제공

<그림4-4> 오픈뱅킹 출금이체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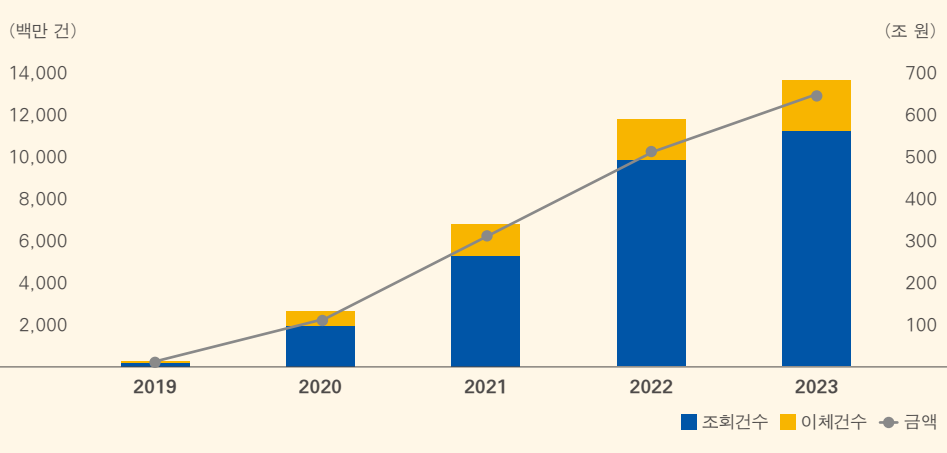


- ① 이용기관은 금융결제원 앞 출금이체를 요청
- ② 금융결제원은 출금이체요청 정당성과 인증토큰의 유효성 검증 후 출금은행 앞 출금이체 요청내역을 전송
- ③ 출금은행은 출금처리 후 금융결제원 앞 출금결과를 전송
- ④ 금융결제원은 입금은행 앞 입금이체 요청내역을 전송
- ⑤ 입금은행은 입금처리 후 금융결제원 앞 입금결과를 전송
- ⑥ 금융결제원은 이용기관 앞 출금결과를 제공

3. 이용 현황

2023년 오픈뱅킹 처리규모는 130억 건, 624조 원(일평균 3천 5백만 건, 1조 7,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15.2%, 금액은 25.3% 증가하였다. 2019년 12월 18일 본격 실시 이후 간편결제·플랫폼금융,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의 이용이 늘었고, 카드사 등 참여업권 또한 확대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4-5〉 오픈뱅킹 연간 처리규모



자료 : 금융결제원 통계시스템

오픈뱅킹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은 2024년 5월 기준 총 138개로 오픈뱅킹 순 가입자는 약 3,500만 명(누적 기준 1억 9천만 명)이다.

〈표4-3〉 오픈뱅킹 참여기관 현황

(2024년 5월 기준)

구분	금융회사					핀테크 ^{주1)}	기타	합계
	은행	서민금융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보험캐피탈			
이용기관	19	7	20	8	2	81	1 ^{주2)}	138
제공기관	19	7	20	8	2	44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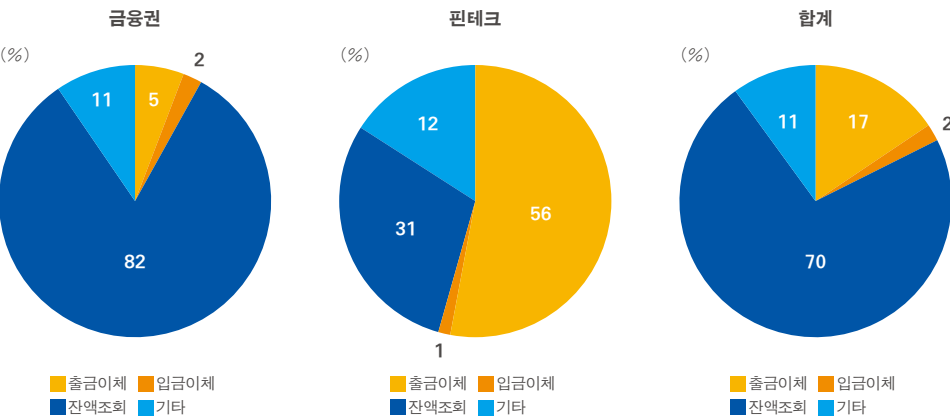
주1) 오픈뱅킹 이용기관(핀테크 기업) 중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주2) 여신금융협회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주로 이용한 오픈뱅킹서비스는 금융회사의 경우 잔액조회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거래내역조회, 출금이체 순이었다. 반면 핀테크 기업은 출금이체,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4-6〉 참여업권별 오픈뱅킹 이용 현황

(2023년 12월 기준)



한편, 오픈뱅킹시스템에서의 API 누적이용건수는 금융회사가 256억 건, 핀테크 기업은 80억 건으로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과 비교하여 약 3배 많았으나, 출금이체 건수 규모는 금융회사가 13억 건, 핀테크 기업은 45억 건으로 핀테크 기업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표4-4〉 누적 API 이용 현황^{주)}

(천 건, 십억 원)

구분	금융회사		핀테크	
	이용건수	이체금액	이용건수	이체금액
출금이체	1,325,880	737,335	4,479,866	543,184
입금이체	534,971	253,197	35,269	16,580
잔액조회	21,118,551	-	2,494,233	-
거래내역조회	1,332,676		887,356	
계좌실명조회	41,982		43,925	
수취조회	630,726		30,902	
송금인정보조회	0		259	
카드정보조회	416,600		4,574	
선불정보조회	216,939		1,363	
보험/대출리스정보조회	44		0	
합계	25,618,369	990,532	7,977,747	559,764

주) 2019. 10. 3. ~ 2023. 12. 31.

〈Box2-5〉오픈뱅킹 이용자격 및 이용승인 절차

■ 오픈뱅킹 이체업무 이용자격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
 - 「외국환거래법」상 소액해외송금업자
 -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업모델^{주)}을 영위하는 것으로 금융결제원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주)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 보호체계를 갖추거나, 사용자 본인 계좌 간 이체 등 이체대상이 제한된 경우

■ 오픈뱅킹 조회업무 이용자격

- 오픈뱅킹 이체업무 이용자격 충족 기관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핀테크산업 분류업종 기업

업종코드	업종명	내용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OS, DBMS 개발 등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사무용 S/W 개발 등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맞춤형 S/W개발 등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시스템 통합(SI) 구축 설계 등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컴퓨터 장애 복구 등
63111	자료 처리업	자료 입력 처리 등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포털서비스 등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학습 정보 온라인서비스 등
66199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어음, 수표교환서비스 등

- 기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오픈뱅킹 이용승인 절차

구분	주요 내용	수행주체
① 이용신청	이용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서비스 계획서 등) 제출	이용기관
② 이용적합성 심사	이용자격 충족 여부 ^{주1)} , 제외업종 해당 여부 ^{주2)} , 법적 자격요건, 기업규모, 자체인증 허용 여부 등 심사 주1) 전자금융업자, 소액 해외송금업자 등 주2) 사행행위기업, 게임머니·가상화폐 관련 기업, 다단계 판매업자, 대부업자 등	금융결제원
③ 서비스 개발	서비스 개발 및 자체 테스트 실시 ^{주)} 주) 개발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API명세서, 개발가이드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능 테스트 수행	이용기관
④ 기능테스트	기능테스트 ^{주)} 실시 및 보완사항 확인 주) 서비스(인증페이지 포함) 정상 작동 여부, 승인받은 사업모델과의 일치여부 확인 등	금융결제원
⑤ 보안점검	보안점검 ^{주)} 실시 및 보완사항 확인 주) Web/App 서비스 취약점 점검, 기업 인프라 점검 등	평가전문기관 (금융보안원)
⑥ 이용계약 체결	주거래은행 선정, 출금이체 보증한도 산정 및 보증보험증권 징구 완료 후 계약 체결	금융결제원/ 이용기관
⑦ 서비스 실시	대고객서비스 실시일 결제원 앞 사전 통지	이용기관

2절 B2C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중계시스템

B2C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중계시스템은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대금결제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그 결과를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즉, 고객이 판매기업의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 구입대금이나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면 판매기업의 계좌로는 익영업일 또는 실시간 입금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이 판매기업과 금융회사 간 결제정보를 중계처리한다. 다른 말로 계좌이체 PG(Payment Gateway)서비스라고도 하며 뱅크페이(BANKPAY)라는 서비스 명칭을 제정하여 대고객 서비스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 보급 확산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초기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서비스는 정보통신업체들이 선점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주도권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은행 공동의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2000년 12월부터 본격 가동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동 중계서비스(이하 계좌이체 PG서비스)는 PC 및 스마트폰 등 다양한 결제수단의 확산에 따른 결제 편의성 및 보안성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에는 결제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결제 시 이를 활용하는 간편결제서비스를 도입하였고, 2014년 6월에는 휴대폰 추가인증을 도입하여 거래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2016년 7월에는 간편결제를 스마트폰 번호 기반으로 개선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계좌이체 PG서비스는 2024년 5월 기준 총 42개 기관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용기관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민원24 등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온라인쇼핑몰 등 약 25만 개의 가맹점이 참가하고 있다.

1. 주요 서비스

계좌이체 PG서비스에는 결제, 취소, 환불, 실시간 환불, 조회,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가 있다. 고객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결제 방식으로는 사전에 결제정보를 등록하고 이용하는 간편결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결제 전마다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이용하는 일반 결제,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에서 결제를 진행하는 앱 결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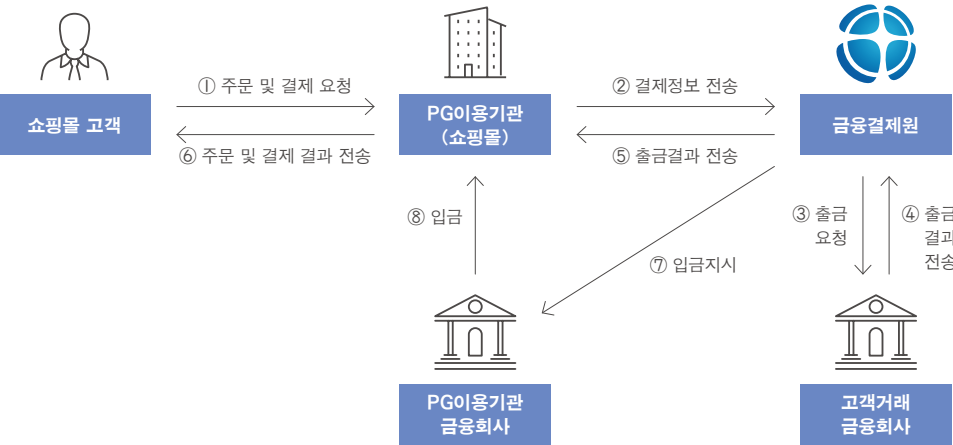
PG서비스 이용고객은 인터넷(스마트)뱅킹에 가입한 고객이면 개인은 물론 법인도 이용 가능하다. 결제 시에는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 및 예금주 생년월일을 기본으로 하되 결제방법이나 이용기관 및 고객 유형에 따라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안카드·OTP와 같은 보안매체를 필요로 하기도 하며, 이용기관별 출금한도를 설정하여 거래 안전성을 도모하고 있다. 가맹점에서 강화된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보안매체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일반 전자상거래에서의 고객 1계좌당 1일 최고 출금한도는 1천만 원이며, 가맹점 및 업무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다만, 출금한도는 참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표4-5〉계좌이체 PG서비스 종류

구분	세부 내역
결제서비스	이용고객 거래 금융회사 계좌에서 출금하여 다음 영업일(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실시간)에 가맹점 계좌로 입금
취소서비스	참가은행 간 자금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당일 거래를 실시간으로 취소한 후 고객계좌로 결제대금 전액을 즉시 입금
환불서비스 (다음 영업일)	자금정산이 완료된 당일 이전 거래(180일 이전 거래까지)에 대하여 가맹점을 통하여 이용고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가맹점의 다음 영업일 입금예정금액에서 환불요청 금액을 차감하여 고객계좌로 익영업일 입금
실시간 환불서비스	자금정산이 완료된 당일 이전 거래(180일 이전 거래까지)에 대하여 가맹점을 통하여 이용고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실시간으로 가맹점의 환불금 출금계좌에서 환불금을 출금하여 고객의 원거래 출금계좌에 환불금을 실시간 입금 (2015년 11월 도입하였고, 다음 영업일 환불방식에서 순차적으로 전환 중)
조회서비스	이용고객 및 가맹점이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중계업무의 웹사이트(www.bankpay.or.kr)를 통해 거래내역 및 입금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이용고객이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중계업무를 통하여 결제한 건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을 발급

2. 업무 처리절차

〈그림4-7〉계좌이체 PG 결제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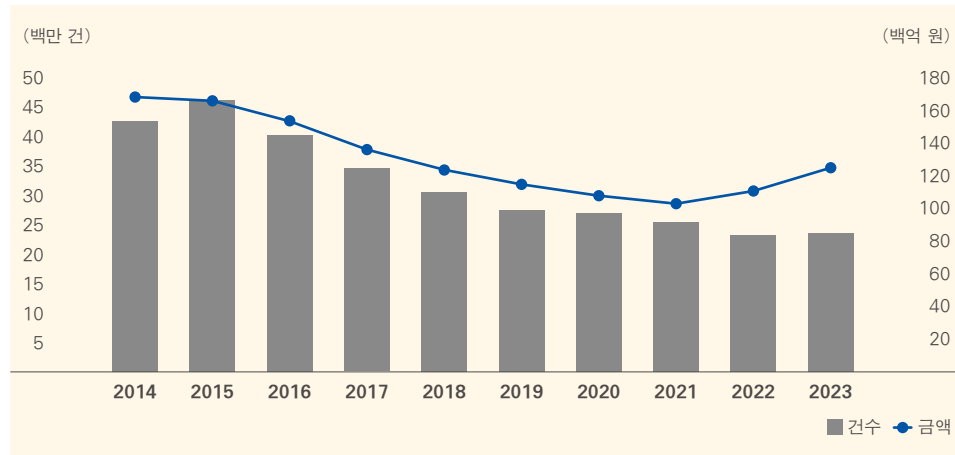


- ① 고객은 이용기관의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 및 서비스 결제를 요청
- ② 이용기관은 금융결제원 앞 결제정보 전송 및 결제 요청
- ③ 금융결제원은 고객거래 금융회사 앞 출금을 요청
- ④ 고객거래 금융회사는 출금 후 금융결제원 앞 출금결과를 전송
- ⑤ 금융결제원은 이용기관 앞 출금결과를 전송
- ⑥ 이용기관은 고객 앞 주문 및 결제 결과를 전송
- ⑦ 금융결제원은 이용기관 금융회사 앞 결제금액 입금지시
- ⑧ 해당 금융회사는 이용기관의 입금계좌로 결제금액 입금

3. 이용 현황

2023년 기준 계좌이체 PG서비스의 처리규모는 처리규모는 2,387만 건, 1조 2,570억 원(일평균 6만 5천 건, 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1.9%, 금액은 12.7% 증가하였다. 핀테크 기반의 간편결제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시장에서의 실시간 계좌이체 이용률은 전반적인 감소 또는 답보 추세이다.

〈그림4-8〉계좌이체 PG서비스 연간 처리규모



자료 : 금융결제원 통계시스템

3절 CMS공동망

CMS(Cash Management Service)는 금융결제원이 이용기관과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이용기관이 주거래 금융회사 한 곳만 거래하여도 이용기관의 고객이 이용하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입금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금관리서비스라고도 불린다.

참가기관은 창구업무 감소를 통한 사무 합리화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이용기관은 복수 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따른 금융 편의 증진, 인력·시간 등의 비용 절감을 위해 1995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에서 ‘자금관리서비스(CMS)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방안’을 의결하면서 금융결제원 앞으로 동 시스템 구축을 위탁하였으며, 1996년 8월 동 서비스 처리를 위한 CMS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이에 자금수납·지급업무가 필요한 이용기관은 CMS를 통해 국내 모든 금융회사의 금융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로 수납비용 등을 절감하여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캐시리스(cashless), 페이퍼리스(paperless) 업무처리로 금융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2024년 5월 기준 총 55개 금융회사가 CMS공동망에 참가 중이다.

1. 주요 서비스

가. 출금이체

출금이체업무는 각종 물품판매대금, 보험료, 카드대금, 회비, 학자금, 후원금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자금을 일괄 수납하기 위하여 납부자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이용기관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업무이다. 이용기관이 출금을 요청하여 출금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익일출금서비스와 당일출금서비스가 있다. 익일출금 및 당일출금은 병행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용기관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출금이체는 상대방의 계좌정보만 알고 있으면 출금이 가능하다. 이에 납부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실명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전자금융감독규정⁵⁾에 의거, 무단 출금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납부자로부터 출금동의를 얻어야 한다. 납부자가 거래 금융회사(은행,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출금동의를 얻는 방법과 이용기관이 직접 납부자로부터 CMS 출금동의를 얻는 방법이 있다. 금융결제원은 2017년부터 납부자 자신의 출금이체 동의관련 증빙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출금동의 증빙자료 보관서비스도 실시하여 CMS 이용자들의 금융거래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나. 실시간 계좌조회/등록(해지)서비스

실시간 계좌조회/등록(해지)서비스는 CMS 이용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입출금 업무처리를 위하여 계좌의 실명조회 및 납부자 계좌등록(해지)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이다. 계좌 실명조회서비스는 납부자 계좌가 정상계좌인 경우 계좌실명(예금주명)을, 비정상계좌인 경우 불능사유를 즉시 알려 주는 서비스이다.

또한 납부자 계좌가 정상계좌인 경우 금융회사 전산에 즉시 출금이체 신청(해지)내역을 등록하고, 비정상계좌이거나 등록(해지)이 불가능한 경우 불능사유를 즉시 알려 주는 실시간 출금 이체 신청 등록(해지)서비스가 있다.

5.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에 의거 서면(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전화 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한다.

다. 입금이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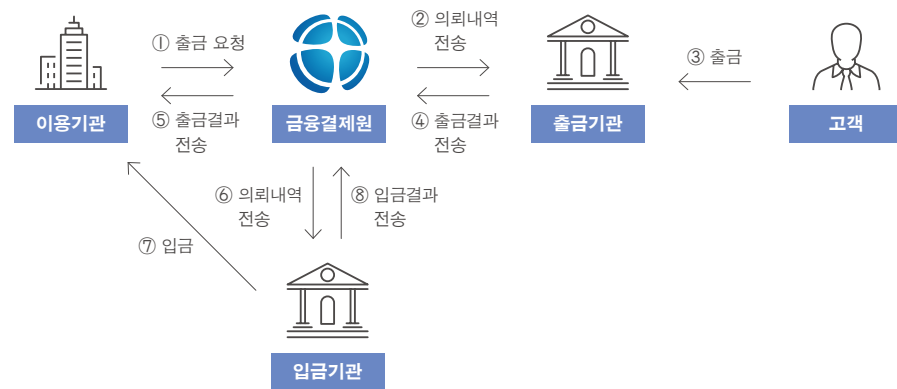
입금이체업무는 급여, 배당금, 이자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자금의 일괄지급을 위해 이용기관 계좌에서 다수의 고객 계좌로 입금해 주는 업무이다.

라. 빌링원플러스

빌링원플러스는 CMS 출금·입금이체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기관이 별도의 고객원장과 프로그램을 구축하지 않아도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객원장 관리부터 수납 및 지급 파일 생성과 송수신, 수납·지급내역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서비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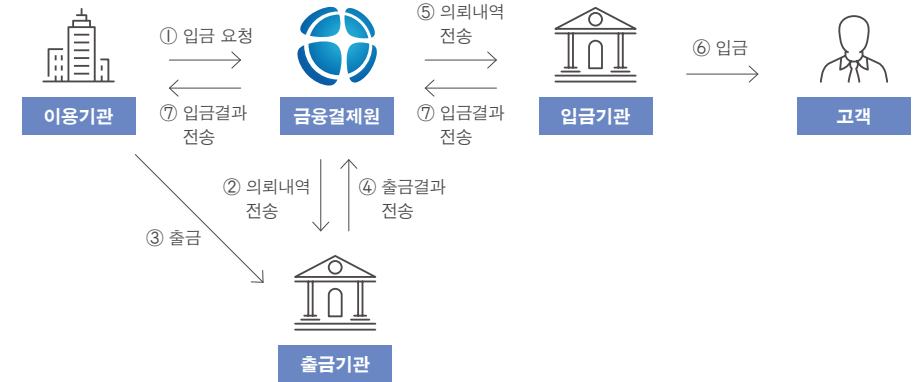
2. 업무 처리절차

〈그림4-9〉 CMS 출금이체 처리절차



- ① 이용기관은 금융결제원 앞 출금이체를 요청
- ② 금융결제원은 출금기관 앞 이용기관 의뢰내역을 전송
- ③ 출금기관은 고객 계좌에서 출금
- ④~⑤ 출금기관은 출금결과를 전송
- ⑥ 금융결제원은 입금의뢰내역을 전송
- ⑦~⑧ 입금기관은 이용기관의 입금계좌로 입금 및 입금결과를 전송

〈그림4-10〉 CMS 입금이체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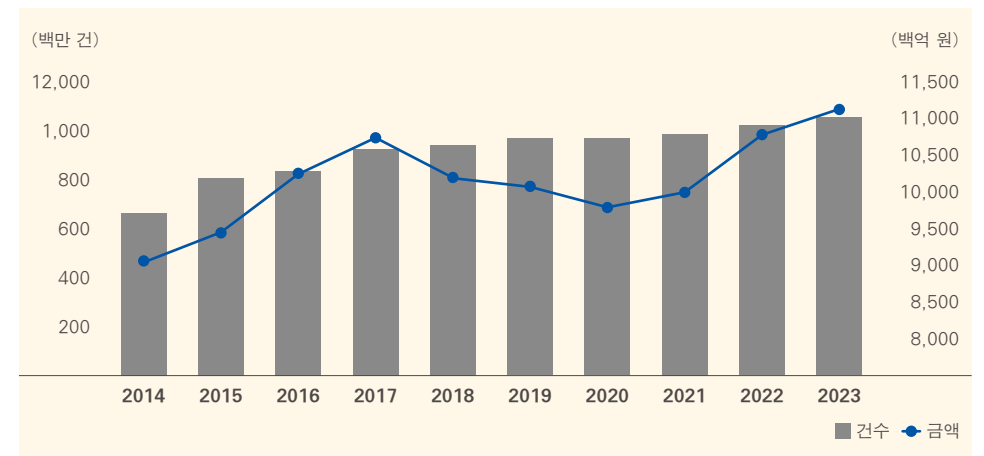


- ① 이용기관은 모계좌에 입금하고, 금융결제원 앞 입금이체를 요청
- ② 금융결제원은 출금기관 앞 출금의뢰내역을 전송
- ③~④ 출금기관은 이용기관 계좌에서 출금하고, 금융결제원 앞 출금결과를 전송
- ⑤ 금융결제원은 입금의뢰내역을 전송
- ⑥~⑦ 입금기관은 고객의 입금계좌로 입금 및 입금결과를 전송

3. 이용 현황

CMS는 2024년 5월 기준 약 2만 개의 업체가 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연간 처리건수는 10억 4,200만 건(일평균 420만 건)으로 처리금액은 약 112조 원(일평균 4,500억 원)이다. 매년 업무 건수의 큰 증감 폭의 변화 없이 안정적인 업무량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4-11〉 CMS 연간 처리규모



자료 : 금융결제원 통계시스템

3

지급결제 트렌드와 미래

1장. 지급서비스의 경쟁가속	226
2장. 간편결제/송금서비스의 활성화	263
3장. 국가간 지급거래 확산	293
4장. 전자지급서비스의 접근성 이슈 대응	315
5장. 전자지급서비스의 안전성 이슈 대응	337



지급서비스의 경쟁가속



금융회사들이 지급결제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정보기술(IT)의 빠른 발전으로 이 분야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비금융회사들은 지급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간편결제, 간편송금 등의 새로운 지급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시장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의 등장으로 금융소비자들은 이전에 없던 편의성과 속도를 누리게 되며, 지급서비스 시장의 경쟁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들은 자신들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제도적 변화에 적응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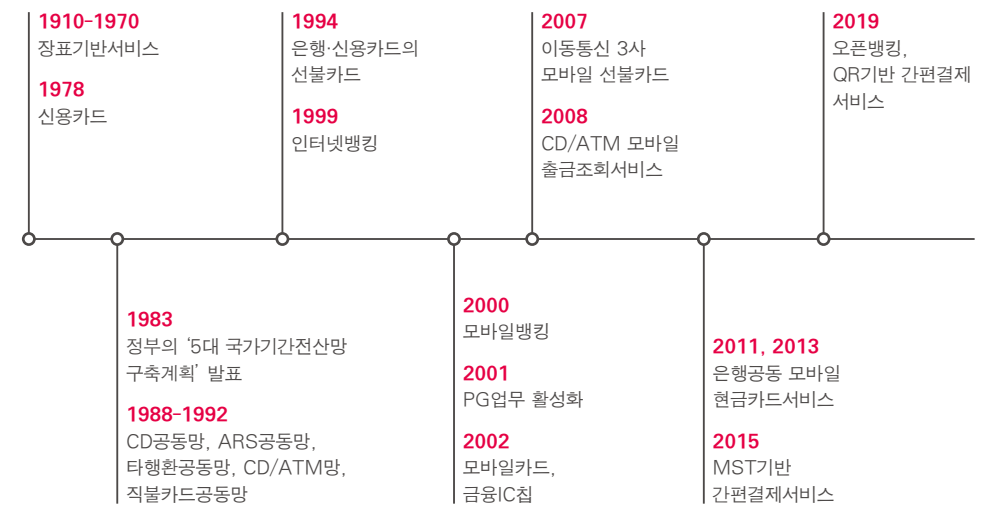
이 장에서는 비금융회사들이 지급서비스 분야에 진출하면서 지급결제제도, 시스템, 인프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금융회사들의 지급서비스 시장 진출 배경을 조사하고, 제도·시스템 개방 관점에서 국내외 주요국의 현황을 분석하며, 지급결제 인프라 측면에서의 경쟁 확산의 움직임을 살펴본다. 이는 지급서비스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1절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자의 등장

1. 국내 지급서비스 변천

지급서비스는 경제주체가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당사자들 간에 지급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¹ 이러한 지급서비스에는 「은행법」상의 환업무, 「여신전문금융법」상의 신용카드업무, 「외국환거래법」상의 외화이체업무, 「자본시장법」(2009년 시행)상의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 「전자금융거래법」(2007년 시행)상의 전자지급거래,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의 통신과금서비스(2008년 신설) 등이 포함된다. 지급서비스는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과거에는 금융회사의 전유 분야로 간주하였으나, 최근에는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회사들도 이 영역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지급서비스와 관련된 새로운 시도들은 기술의 발전, 소비자의 요구 변화, 정부의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그림1-1〉 국내 지급서비스 변천



1. 한국은행(2008. 11.), 지급서비스의 기본개념과 취급요건

가. 금융회사 중심의 지급서비스 시기(1900~2000)

과거에는 지급서비스를 은행 등 예금수취기관이 취급하는 요구불예금에 부가된 핵심 기능인 환입무의 일종으로 인식했다. 환입무는 법으로 근거가 명시된 예금수취기관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지급서비스 제공자는 예금수취기관으로 한정되었고,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는 금융회사는 지급서비스를 취급할 수 없었다. 예금수취기관에는 은행 외에도 농협·수협·상호저축은행·신협·산림조합중앙회 등 서민금융회사와 우체국이 포함된다.

컴퓨터가 보급되기 이전인 197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상거래에서 현금, 어음, 수표 같은 장표 기반의 지급수단이 사용되었다. 이 시기의 지급결제시스템은 원활한 현금의 흐름과 자금 유통을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대표적인 비현금 지급수단인 어음과 수표는 1900년대 초부터 현금을 대신하여 사용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1980년대 들어 정부 정책과 은행의 필요에 따라 전자 방식의 새로운 지급수단이 생겨나고, 이에 맞는 전자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전자지급수단의 기반 환경이 되는 금융회사의 전산화는 1970년 후반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본·지점 간 전산망이 구축되면서 시작되었고, 1980년대 중반에는 대부분의 은행들에서 전산화가 완료되었다.² 이어 1986년에 설립된 금융결제원을 통해 CD공동망, ARS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등 금융공동망이 차례로 구축되면서 은행 간 전산시스템이 서로 연결될 수 있었다. 금융공동망의 구축과 은행의 전산화로 비로소 은행 간 송금 및 조회업무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타행 간 계좌이체, 직불카드서비스,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등 지급서비스의 개선과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비은행 금융회사인 금융투자회사의 지급서비스는 2009년에 들어서야 가능하게 되었다. 그 이전에도 세계적인 금융규제 완화와 겸업화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금융투자회사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자산관리계좌(CMA)를 취급할 수 있었으나, 예금수취기관이 아니므로 CMA에 예치된 자금은 예금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금융공동망에 참가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제휴 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09년에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금융투자회사도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여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이체업무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 한국경제(1994. 4. 9.), 1996년 외환은행이 '전산화' 용어 첫 도입.. 국내은행 전산화 역사

신용카드업무는 1982년에 은행들이 연합하여 은행신용카드협회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카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1987년에는 「신용카드업법」이 제정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신용카드업무는 단기간 내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정부의 정책 목적은 현금 거래로 세원 포착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었지만,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 외환위기 여파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의도도 있었다. 1998년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 의무수납제가 도입되었다. 1999년에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치는 신용카드를 통한 지급결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표1-1〉 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와 금융공동망 참가 시기

구분			지급서비스 근거 법률	업무 종류	금융공동망 참가 시기
은행	일반은행		은행법	환입무	1988
	특수은행		개별 특수은행법		
비은행 금융회사	예금 취급	서민금융회사	개별 서민금융회사법	환입무	1994
		우체국	우정사업법	전자자금이체업무	1994
	비예금 취급	금융투자회사	자본시장법	자금이체업무	2009
		신용카드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업무	-

나.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시장 진출 시기(2000~2014)

21세기 초,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발전과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비금융회사들이 지급서비스 분야로 진출하는 데 큰 동기를 제공하였다. 이 시기에 비금융회사들은 기존의 예금수취기관의 지급서비스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교통카드, 모바일 결제, 결제대행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지급서비스를 대량으로 출시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등장한 비금융회사들의 지급서비스 유형에는 선불전자지급업무, 전자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 이하 PG)업무, 결제대금예치업무, 전자고지결제(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 EBPP)업무 등이 포함된다.

우선 선불전자지급업무는 비접촉 IC카드 기술의 발전과 소액 결제의 증가에 대응하여 등장하였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가치를 저장하는 매체에 따라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나뉘며, 이는 온·오프라인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계되었다. IC카드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은 RF 카드의 비접촉 기능을 활용하여 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하므로, 대중교통이나 소액 상품 구매 등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반면, 네트워크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온라인 쇼핑의 확대와 온라인 결제 방식의 다양화에 따라 발전하였다. SK텔레콤이 2002년에 휴대전화에 내장된 스마트

카드칩을 이용하여 네트워크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휴대전화로 인터넷 결제, 오프라인 결제, 은행 계좌 조회,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도 출금 기능 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2004년에 가입자 예금이 불법으로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폐기되었다.³ 2007년에는 이동통신 3사가 선불교통카드사와 협력하여 USIM칩형 선불충전식 모바일 교통카드를 출시하였다. 모바일 교통카드는 선불 교통카드 기능을 모바일로 이전한 것으로,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연결로 자동 충전이 가능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기존의 오프라인 지급수단을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방법이 필요해졌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이러한 지급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어려웠으므로 지급결제를 대행해 주는 아웃소싱 수요가 증가하였다. 은행, 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들은 PG업무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소극적이었고, 결과적으로 IT업체가 주요 사업자가 되었다. PG업무는 특히 신용카드 부문에서 체계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주요 가맹점을 통해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졌다.

에스크로(Escrow) 또는 안전구매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결제대금예치업무는 오픈마켓에서 시작되었다. 이 업무는 구매자가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그 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대신 보관해 두었다가 구매자가 제품을 받은 뒤에 판매자에게 대신 지급해 주는 서비스이다. 특히 오픈마켓과 같은 개인 간 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신용도가 낮은 개인이 온라인에서 쉽게 판매자로 진입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전자고지결제업무는 전자고지서비스에 PG업무 기능을 결합한 것이다. 이전에도 결제 기능이 없는 단순 전자고지서비스가 비용 절감 및 안전한 고지서 전달의 필요에 의해 활발히 사용되어 왔다. 일부 전자고지업체가 전자고지서비스에 PG기능을 결합하여 고지와 대금결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전체 소액지급서비스 이용 실적 가운데 건수 기준 50%에 육박하였다.⁴ 하지만, SK텔레콤의 불법 인출사고에서 보듯이 해킹·도청·정보유출에 의한 부정이체, 현금카드·신용카드 복제에 의한 부정 사용, PG업자 등의 정산 불이행,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도산, 환급 미이행 등 전자금융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3. 한국은행(2004), 우리나라의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 현황

4. 한국은행(2008. 11.), 국내 비금융회사의 지급결제업무 취급 현황

인터넷뱅킹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확산과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의 등장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비대면 특성을 반영하고 거래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한 허가,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2007년 1월에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선불전자지급업자, PG업자, 결제대금예치업자, 전자고지결제업자 등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었고, 이들의 진입기준과 업무범위 등이 명확해짐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지급서비스의 등장에 많은 제약이 생겼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을 허용하면서도 그들이 고객의 자산과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이후 2014년 ‘천송이 코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약하는 한도 내에서 다양성을 탐색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로, 결제대금을 통신사의 통신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PG업자는 2007년 12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방법」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어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다. 핀테크 등 비금융 지급결제 사업자의 금융시장 재진출 시기(2014~)

「전자금융거래법」은 지급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공인인증서와 ActiveX 사용과 같은 폐쇄적인 요소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저해하고,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2014년에 발생하였던 ‘천송이 코트’ 사건은 이러한 문제점을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류 열풍으로 국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천송이’가 입었던 코트를 중국인들이 국내 쇼핑몰에서 구매하려 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할 수 없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공인인증서 폐지 여론이 일기 시작했고, 그 해 7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 방안에서는 공인인증서와 Active-X 보안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적격 PG업자에게 카드정보의 저장을 허용하는 등 간편결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2015년 3월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되어,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로 기존 전자상거래에서 전자금융거래로 확장되었고 이로 인해 간편송금의 가능성이 열렸다. 실제로 2015년에 토스가 제기한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비회원 은행 계좌로 환급해주는 것이 전자자금이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서 금융위원회는 ‘자금이체업무 수행자는 금융회사이며 토스가 자금이체업무를 한다

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렸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금결제업무만 가능했으나, 이 해석으로 전자자금이체업 등록 없이 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핀테크사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한 전자자금이체업 대신 선불전자지급수단업 등록으로 몰리게 되었다.

2015년 8월에는 삼성전자가 마그네틱 보안전송(MST) 기술을 활용한 삼성페이서비스를 출시하고 2017년 6월에 LG전자가 LG페이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스마트폰 제조사가 간편결제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스마트폰 운영체제 개발사인 애플과 구글이 모바일 플랫폼을 앞세워 전 세계 간편결제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국내 간편결제 경쟁력을 높이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삼성페이서비스를 일반 신용카드 단말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강점으로 내세워 2021년 국내 가입자 수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현재까지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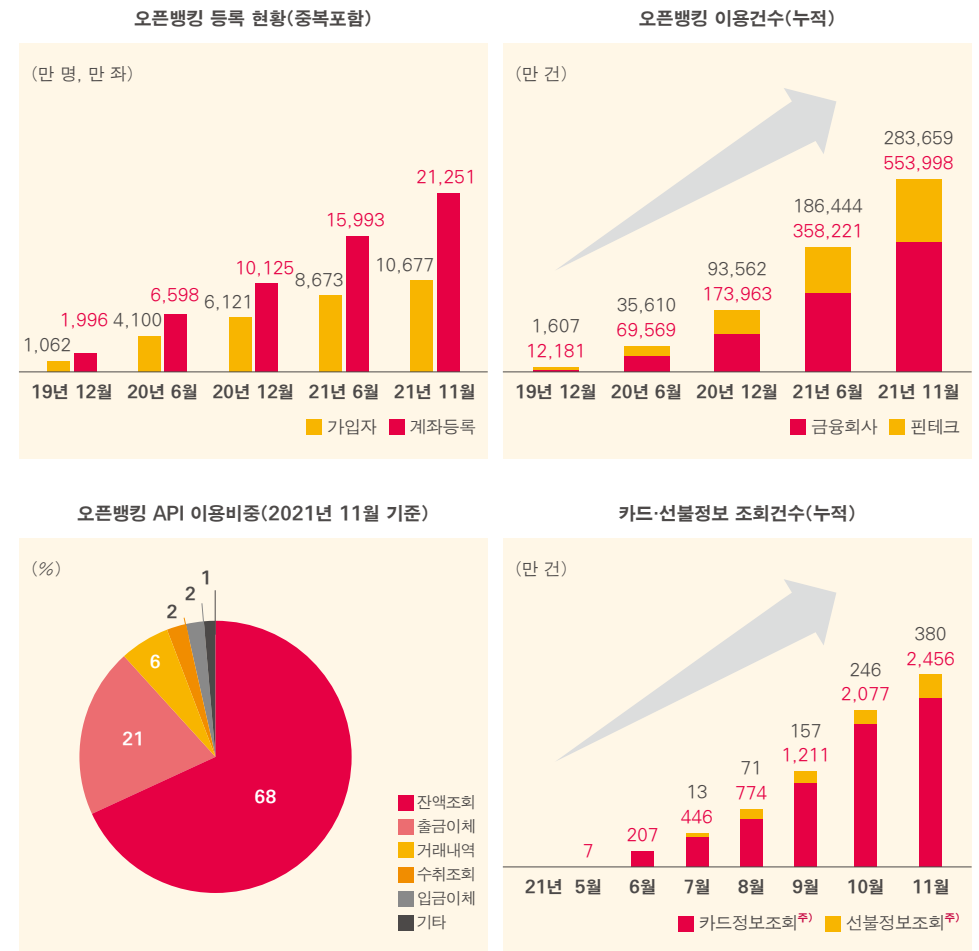
2019년 2월,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의 도입을 통해 금융결제망을 개방하고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전에도 비금융회사들은 간편송금이나 간편결제 등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금융공동망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금융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참여할 수 있었다. 이는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지급서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10월부터 오픈뱅킹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크게 변화하였다. 오픈뱅킹은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은행의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인프라를 말한다. 오픈뱅킹을 통해 핀테크 기업들이 직접 뱅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다양하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다. 오픈뱅킹 사용자는 단일 앱으로 여러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결제 및 송금할 수 있게 되었다.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회사는 신규고객을 확보하고 핀테크 기업과의 경쟁 및 협력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며, 핀테크 기업은 핀테크서비스 출시를 위해 개별적인 은행 제휴 없이 전자지급거래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은행서비스⁵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금융거래에서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고, 핀테크 인프라 혁신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6,7} 또한, 이를 통해 지급지시서비스업과 같은 새로운 결제서비스의 출현이 가능해졌다.

5.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송금인정보조회, 출금이체 등을 포함한다.

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 12. 21.), 오픈뱅킹 시행 2년이 만든 디지털 금융혁신 성과

7. 금융결제원 오픈API 홈페이지, <https://openapi.kftc.or.kr/service/openBanking>

〈그림1-2〉 오픈뱅킹 초기 이용 현황



주) 카드정보 2021년 5월, 선불정보 7월부터 조회서비스 개시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은 규제가 많은 산업으로 알려진 만큼 금융회사 등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실현하는 데에는 기존의 엄격한 허가제도와 다양한 영업행위 규제 등의 장애물이 존재한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혁신을 제한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에 대응하여, 금융위원회는 2018년에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9년 4월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시행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지급서비스 분야에서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모두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2019년 4월에 출시된 카드 송금서비스와 2022년 9월에 출시된 네이버페이 머니 통장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에 인한 사업화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금융회사의 대응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동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거대한 물결이 일었다. 이 변화는 각 분야에서 혁신의 촉매가 되었으며, 금융 분야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금융산업에서는 금융과 비금융 영역 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규제의 벽에 부딪힌 기존 금융회사들과 달리, 정부의 핀테크 촉진 정책을 등에 업은 빅테크 기업들은 사업 영역을 자유롭게 확장하며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도 금융회사들은 빅테크의 성장과 디지털 전환에 발맞추어 경쟁을 넘어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모색하며 디지털 금융 전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니버설 뱅크가 있다. 유니버설 뱅크는 계좌 조회, 이체 등의 기본적인 은행업무뿐만 아니라 결제(카드), 증권, 보험 등의 다양한 핵심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은 유니버설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계열사를 아우르는 유니버설 허브 앱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구축하고 있으며, 전 계열사에 걸쳐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은행의 비금융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신한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입점료나 광고료 없이 낮은 중개 수수료로 운영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로 알뜰폰 사업을 진행 중이며, KB국민은행은 부동산과 금융을 결합한 독립적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편의점과 연계하여 고객이 근처 편의점을 지정하여 배달 픽업을 신청 후 방문하여 처리하는 방식의 택배 픽업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들은 핀테크 랩을 운영하거나 금융상품 판매 채널로 핀테크 기업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의 상호 유익한 관계를 구축하고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랩은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이들의 기술과 서비스를 구매할 금융회사, 해외 진출의 발판이 될 해외 업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신한금융지주의 ‘신한퓨처스랩’, 우리금융그룹의 ‘디노랩(Dinnolab)’, KB금융그룹의 ‘KB스타터스’는 금융 관련 신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금융회사들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3. 다양한 혁신서비스 촉진

금융산업은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를 통해 고객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들은 기존의 제한적인 규제를 넘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기반의 송금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신한카드 회원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앱 기반의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 특례는 신용카드 기반의 경조사비 등 개인 간 송금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였다. 비씨카드는 개인 간 경조금 간편 수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개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신용, 직불,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송금하고자 하는 금액만큼을 해당 가맹점을 통해 결제함으로써 개인 상호 간 경조금 등을 간편하게 송·수신할 수 있게 하였다. 네이버페이는 페이머니 통장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하고, 고객이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를 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루어지는 연계서비스이다. 이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 협업 확대의 좋은 사례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하나카드는 은행 계좌가 필요 없는 포인트 기반의 체크카드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 이 서비스는 금융거래 계좌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한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이용할 수 있다.

2절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자 관련 국내외 현황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자(Non-Bank Payment Service Provider, 이하 NBPSP)의 진출을 허용하고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일부 국가의 시도는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유럽연합,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지급서비스를 출시하여 기존 은행 및 금융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은행 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핀테크 등이 오픈뱅킹 API를 활용하여 고객의 계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절에서는 국내외 주요국의 NBPSP 현황을 제도 및 시스템 개방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유럽연합(EU)

가. 유럽연합의 「지급서비스지침」

유럽연합은 지급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NBPSP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은 2007년에 지급서비스 및 그 제공자에 대한 규율 체계인 「지급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 이하 PSD)을 처음 도입하였고 이를 개정하여 2015년에 「PSD」 개정안(이하 「PSD2」)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은 2018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초기 「PSD」는 유럽연합의 단일유로지급결제지역(Single Euro Payments Area, 이하 SEPA) 구축, 소비자 보호, 그리고 NBPSP의 지급결제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PSD」는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을 지급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며, 지급기관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PSD」에 따르면,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신용기관(Credit Institution), 전자화폐기관(Electronic Money Institution), 그리고 지급기관으로, 각각의 기관은 「신용기관지침」(Credit Institutions Directive), 「전자화폐지침」(Electronic Money Directive), 그리고 「PSD」에서 정의된 사업 범위와 관련 규제를 따르게 된다. 전자화폐기관은 지급기관의 업무 외에도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신용기관은 여·수신, 환입무를 다루는 일반적인 은행을 의미한다(〈표1-2〉 참고).

〈표1-2〉 EU 내 지급서비스 제공기관별 업무범위 및 특징

관련 제도	서비스 유형	비은행		은행
		지급기관	전자화폐기관	신용기관
지급서비스 지침	지급 계좌 기반 현금 입출금	○	○	○
	지급 계좌 기반 자금의 지급거래	○	○	○
	신용 기반 자금의 지급거래	○	○	○
	지급수단 발행 및 매입	○	○	○
	송금	○	○	○
	지급지시서비스	○	○	○
	계좌정보서비스	○	○	○
	지급계좌 ^{주1)} 개설	○	○	△ ^{주2)}
전자화폐 지침	전자화폐 발행		○	○
신용기관 지침	예금·대출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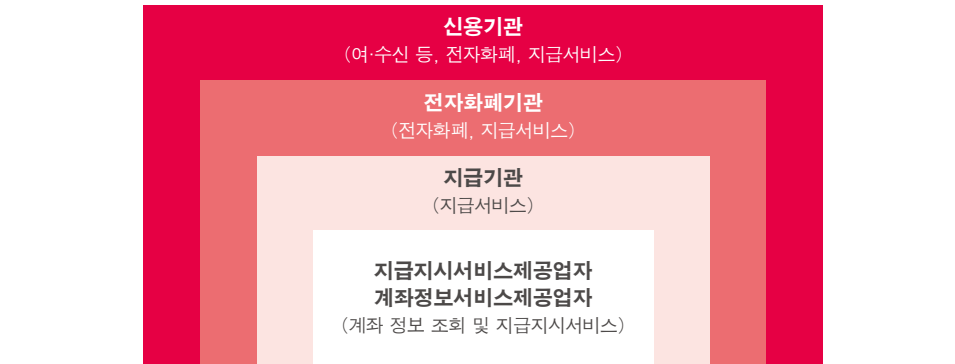
주1) 지급계좌는 지급거래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를 의미하며, 이자 지급은 신용기관의 예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주2) 신용기관의 계좌는 예금 계좌로서 이자 지급이 가능하며 은행의 자금 운용 및 대출 상환 등의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를 의미한다.

자료 : 「PSD2」 Annex 1 등

2015년 10월에 채택된 「PSD2」는 지급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유럽 내에서 NBPSP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PSD2」는 제3자지급서비스 제공자(Third Party payment service providers, 이하 TPPSP)라는 새로운 유형의 지급서비스 제공자를 정의했다. TPPSP는 고객의 계좌를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타 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접근하여 정보 조회 또는 지급지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TPPSP에 해당하는 계좌정보서비스 제공자(Accou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이하 AISP)⁸와 지급지시서비스 제공자(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 이하 PISP)⁹는 각각 계좌정보 조회와 자금이체(또는 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고객 동의가 전제된 경우에 AISP와 PISP에 은행 내 계좌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AISP는 API를 통해 고객의 계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PISP는 고객의 지급결제 요청이 있는 경우, 개별 은행과 각각 계약을 맺지 않아도 계좌이체 지시대행을 할 수 있다.

〈그림1-3〉 유럽의 지급서비스 제공자별 업무범위



주) 기존 「PSD」에서 규정한 전자화폐기관과 지급기관은 자체 지급 계좌를 개설해 주고, 고객의 자금을 받아 자금이체 및 송금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PSD2」에서 규정하는 TPPSP인 PISP와 AISP는 계좌를 개설하거나 고객의 자금을 직접 수취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자료 : 정민지(2023. 7.) 해외 비은행 계좌-결제 기반 지급서비스 제도 현황 및 시사점, 금융결제원 ; 최규선, 이지영(2019), 「PSD2」 시행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금융결제원 ; 「PSD2」 Annex 1 등

8. AISP란 지급서비스 이용고객이 보유한 하나 이상의 계좌를 집합된 정보 형식으로 공개하는 서비스 제공업자를 의미한다.

9. PISP란 지급인의 지급개시 요청에 따라 지급인의 은행 등 계좌개설기관으로부터 지급정보를 송수신하고, 수취인 앞으로 지급지시를 대행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한다.

2024년 5월 기준 유럽은행감독청에 등록된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을 보면, 지급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가 가장 많다(〈표1-3〉참고). 유럽 내 각 회원국은 「PSD2」에 따라 자국 내 지급기관 등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 지급서비스 제공자로는 독일의 SOFORT, Nexi, 핀란드의 Pliant, Holvi, 스웨덴의 Trustly, Tink, 프랑스의 Qonto 등이 있다(〈표1-4〉참고).

〈표1-3〉 EU 내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개)

구분	은행	전자화폐기관	지급기관	AISP
총 기관 수	5,121	354	896	114

자료 : 유럽은행감독청 홈페이지, Credit Institution register, Payment institution register(2024. 5.)

〈표1-4〉 EU 내 대표적 지급서비스 제공자

등록국가	기관명	라이선스	서비스 유형
독일		지급기관	- 지급지시서비스 - 계좌정보서비스
독일		전자화폐기관	- 지급수단 발행 및 매입 - (독일 내) 지급계좌 기반 현금 입출금, 자동이체서비스, 지급지시서비스, 계좌정보서비스
핀란드		전자화폐기관, AISP	- 지급계좌에서 현금 입출금 - 자동이체 및 지급서비스 - 지급수단 발행 및 매입 - 지급지시서비스 - 계좌정보서비스
핀란드		지급기관, AISP	- 지급계좌에서 현금 입출금 - 자동이체서비스 - 지급지시서비스 - 계좌정보서비스
스웨덴		지급기관	- 자동이체 및 지급서비스 - 자금이체서비스 - 지급지시서비스 - 계좌정보서비스
스웨덴		지급기관	- 지급지시서비스 - 계좌정보서비스
프랑스		지급기관	- 지급계좌에서 현금 인출 - 자동이체 및 지급서비스 - 지급수단 발행 및 매입 - 지급지시서비스 - 계좌정보서비스

자료 : 유럽은행감독청 및 각 사 홈페이지

2023년 6월에 EU 집행위원회는 기존의 「PSD2」를 「PSD3」와 「지급서비스규정」(Payment Service Regulation)¹⁰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입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된 지급서비스 관련 규제는 전자지급거래 분야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지급서비스 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PSD2」 규제 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기에 대응하여 이러한 사기 피해로부터 이용자들을 사전적으로 보호하고 사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지급서비스규정」에 반영하였다. 또한, NBPSP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은행 계좌 개설 및 필요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NBPSP의 계좌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은행 계좌정보 접근권 확대

「PSD2」는 TPPSP에 은행 계좌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신용기관인 은행은 TPPSP가 고객 계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지 않아야 하며, 모든 제공자가 관련 정보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TPPSP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조건과 범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보교환 방식은 「PSD2」의 후속 조치인 「규제기술표준안」(The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RTS)을 준수해야 한다. 이 표준안은 신용기관, 전자화폐기관, 지급기관, TPPSP 등 「PSD2」에서 규정하는 모든 지급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고객인증과 개방형 통신표준을 요구하고 있다. 강력한 고객인증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든 지급서비스 제공자는 전자거래 개시 및 처리 시 거래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인증 방식으로는 2요소 인증¹¹과 동적요소 인증¹² 프로세스를 구성해야 한다. 개방형 통신표준(Common and Secure open standards of Communication, CSC)에 대해서는 명시적 동의 조건과 안전한 통신채널을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는 TPPSP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정보 제공에 대한 명확한 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TPPSP가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대하여 TPPSP의 계좌접근 인터페이스를 위한 API 구축의 내용도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유럽연합에서는 고객의 계좌정보에 대한 주권이 금융회사가 아닌 고객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고객의 동의하에 고객 데이터 조회 및 지급지시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10. EU의 입법체계는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권고(Recommendation), 견해(Opinion)로 나뉜다. 그중 규정은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지침은 회원국이 자국 실행 법안에 반영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규정은 EU 전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규제를, 지침은 각국의 국내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11. 강력한 고객인증(Strong Customer Authenticaion, SCA)이 제시하는 2가지 또는 그 이상의 요소를 사용하여 인증 프로세스를 구성하여야 한다.

12. 특히 원거리(인터넷·모바일) 전자지급거래 시 중간자 공격, 세션 하이재킹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래에서 특정되는 금액·수취인과 연동되는 동적요소를 포함하는 보다 강력한 인증방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유럽연합은 API 공개에 따른 데이터 보안 이슈에 대응하여 2018년 5월부터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을 시행하고 있다. 「GDPR」에서는 ‘개인정보이동권’을 새롭게 정의하여 API 공개에 따른 정보 보안과 고객인증 강화를 명시하고, 정보 주체인 고객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였다. 「GDPR」에 따르면 은행과 NBPSP 등 모든 지급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보안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영국

가. 영국의 「지급서비스규정」

영국은 2020년 브렉시트 이전 유럽연합국이었던 당시 「PSD2」와 「전자화폐지침」에 따라 「지급서비스규정」과 「전자화폐규정」(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을 도입하여 영국 내 지급서비스제공자(PSP)를 규율하고 있다. 「지급서비스 규정」과 「전자화폐규정」에 따라 영국 내 NBPSP도 EU와 마찬가지로 전자화폐기관 또는 지급기관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영국은 결제 규모가 작은 소규모 지급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소규모 전자화폐기관 또는 소규모 지급기관 라이선스도 운영하고 있다.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자체 계좌에 고객의 자금을 보유할 수 없지만, 전자화폐기관과 제휴를 맺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화폐기관 대리업 관련 규정도 마련되어 있으며, 지급기관 및 지급지시제공자의 일부 업무를 대리하는 지급기관 대리업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PSD2」에서 새롭게 정의한 PISP와 AISP도 지급서비스 제공자로 도입되어 있다.

〈표1-5〉 영국의 지급서비스 제공자별 업무 범위 및 특징

지급서비스 제공업자	관련 규정	인가·등록	업무 범위 및 특징
전자화폐기관	전자화폐 규정	인가	- EEA 내 회원국에서 인가권 사용 가능 - 리스크 관리 세부 절차 제출 필수 - 최소자본금 35만 유로 - 전자화폐 발행 가능 - 「PSD2」에 규정된 지급서비스 가능 - 고객 자금 보호 대책 마련
소규모 전자화폐기관		등록	- 등록 신청 직전 평균 미결제 전자화폐 금액이 5백만 유로 초과 불가 - 신청 이전 12개월간 월평균 지급거래 금액 3백만 유로 초과 불가 - 계좌정보서비스, 지급지시서비스 외 지급서비스 가능 - 고객 자금 보호 대책 마련
전자화폐기관 대리업		등록	- 대리인을 통한 전자화폐 유통 및 상환 허용 -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이행 의무

지급서비스 제공업자	관련 규정	인가·등록	업무 범위 및 특징
지급기관	지급서비스 규정	인가	- 지급결제 관련 이용자 자금 보호 대책 마련 필요 - 영국 내 지급서비스 ^{*1)} 수행 - 최소 자본금 보유 필요
소규모 지급기관		등록	- 등록 신청 전 12개월간 월평균 지급거래 금액이 3백만 유로 초과불가 - 계좌정보서비스, 지급지시서비스 외 지급서비스 가능
지급지시서비스 제공업자		등록	- 타 지급서비스 제공업자에 개설된 지급계좌에 대해 지급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으로 지급지시 개시 가능 - 계좌정보서비스제공업자로 등록 후 해당 서비스 제공 가능
계좌정보서비스 제공업자		등록	-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하에 지정된 지급계좌 및 지급거래 정보에 접근 가능
지급기관 대리업		등록	- 지급기관, 소규모지급기관, 계좌정보서비스제공업자의 대리업무 가능

주 1) 「PSD2」에서 규정하는 지급서비스 범위와 동일

자료 : 정민지(2023. 7.), 해외 비은행 계좌-계정 기반 지급서비스 제도 현황 및 시사점, 금융결제원

나.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 개방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방식은 직접 참가와 간접 참가로 구분된다. 직접 참가의 경우 지급서비스 제공자는 영란은행의 지급결제 계좌를 통해 직접 결제하며, 자체 기술로 게이트웨이를 구축하여 중앙지급결제 인프라에 접속하고 있다. 반면에 간접 참가의 경우 PSP가 대행 기관을 통해 지급결제에 참가한다.

초기 영국의 NBPSP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고 있는 대행은행(sponsor bank)과 제휴하거나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Indirect Access Provider, IAP)을 통해 간접 참가하는 방식으로만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¹³ 2013년 영국 재무부(HM Treasury)는 소수의 대형 은행만이 핀테크 기업과 제휴 계약을 맺음에 따라 제휴 대상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고, 제휴 은행의 서비스 중단 시 제휴 계약을 맺은 NBPSP의 서비스도 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간접 참가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였다.¹⁴ 이후 2015년 지급결제시스템 규제기관(payment system regulator)은 지급결제 참가방식 개편안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 직·간접 참가요건을 완화하였고, 2016년에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확대가 시장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¹⁵

13. Barclays, Clearbank, HSBC 등 10개 기관이 IAP로서 간접참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은행(2023. 12.), 영란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개편 특징 및 시사점

14. HM Treasury(2013), Opening up UK payment

15. 2016년부터는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해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지 못하는 기관도 애그리게이터(aggregator) 제도를 도입해 게이트웨이를 통한 지급결제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애그리게이터 제도란,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이 별도의 전산설비 등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지급결제시스템의 서버에 연결할 수 있도록 게이트웨이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회사를 의미한다.

2017년 7월 영국은 지급결제시스템 규제기관의 주도하에 NBPSP를 위한 「지급결제 시스템 참가허용지침」¹⁶을 발표하였다. 이에 영란은행은 NBPSP에 영란은행 결제계좌(settlement account)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영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인 CHAPS를 비롯해 FPS¹⁷, Bacs¹⁸ 등의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직접참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NBPSP는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의 인가(authorise)를 취득한 전자화폐기관과 지급기관이며, 각 시스템이 요구한 적격성 기준, 영란은행 결제 계좌 허용을 위한 적격성 기준, FCA의 감독 평가 통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제도 변화를 통하여 NBPSP는 은행 등에 지급서비스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없어졌고, 영국의 NBPSP가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다. 고객의 은행 계좌 데이터 개방

2017년 영국의 경쟁시장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이하 CMA)이 영국 내 소매금융시장이 일부 대형은행들을 중심으로 과점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시장 내 경쟁 촉진이라는 목적을 바탕으로 오픈뱅킹이 시작되었다. 영국의 9개 주요 은행들(CMA9¹⁹)에 대해 의무적으로 오픈뱅킹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²⁰을 발동하여, 유럽연합의 「PSD2」와 합치되는 오픈뱅킹 기준을 설계하고 2018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영국의 오픈뱅킹은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하여 은행이 타행이나 TPPSP에게 결제계좌 정보를 개방하도록 하였으며, 9개의 대형 은행에 대하여 오픈API를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였다.

CMA는 오픈뱅킹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CMA9로 구성된 오픈뱅킹워킹그룹(OBWG)을 조직하고 산하에 별도의 민간 기구인 OBIE(Open Banking Implementation Entity)를 설립하였다. 오픈뱅킹 정책에 참가하는 기관은 은행 및 전자화폐기관과 같은 계좌(계정)기반 지급서비스 제공자(Account Servicing Payment Service Provider, ASPSP), 기술 서비스 제공자(Technical Service Provider, TSP), TPPSP로 구성된다. 영국은 주요 대형 은행(CMA9)에 기술사양, 보안, 데이터 공유 등의 API 표준 도입을 의무화하였으며, 정부 주도로 오픈뱅킹 체제를 정착시키고자 하고 있다.

16. Access to UK Payment Schemes for non-bank Paymeny Service Providers(2017)
17. Pay.UK가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실시간 이체)이다
18. Pay.UK가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대량이체 중심)이다.
19. AIB(Allied Irish Bank) Group(UK) plc, Bank of Ireland(UK) plc, Barclays Bank plc, HSBC Group, Lloyds Banking Group plc, Nationwide Building Society, Northern Bank Limited(trading as Danske Bank), The Royal Bank of Scotland Group plc, Santander UK plc
20. Retail Banking Market Investigation Order(2017)

3.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의 지급기관과 「지급서비스에 관한 법률」

싱가포르는 기술발달로 더욱 편리하게 발전하는 지급서비스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국의 금융서비스 디지털화와 혁신을 위해 「지급서비스에 관한 법률」(the Payment Service Act 2019, 이하 PSA)을 제정하였다. PSA는 기존에 나누어져 있던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에 관한 법률」(Payment Systems(Oversight) Act, PS(O)A)과 「환전 및 송금 사업에 관한 법률」(Money-Changing and Remittance Business Act, MCRBA)을 통합한 것으로, 계좌개설, 국내외 송금, 환전 등 총 7가지의 지급결제서비스 및 기능을 규율하고 있다.²¹

싱가포르에서 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이하 MAS)의 면허(licensing)²²를 받아야 한다. 면허제도는 환전(money-changing), 일반지급기관(Standard Payment Institution, SPI), 주요지급기관(Major Payment Institution, MPI)의 3가지로 구분되고 있으며 각 NBPSP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규제가 적용된다(〈표1-6〉참고).

〈표1-6〉 싱가포르의 지급기관 라이선스별 금융회사 현황 (개)

라이선스 유형	기관 수	사업 유형						
		계좌 개설	국내 송금	해외 송금	가맹점 매입	전자화폐 발행	디지털 토큰	환전
SPI	15	7	12	1	9	5	6	1
MPI	212	60	195	19	98	52	63	42
Money Changing	232	-	-	-	-	-	-	232

주) 금융회사는 복수의 라이선스 보유 가능

자료 : MAS 홈페이지(2024. 2.)

21. 계좌 개설(account issuance), 국내 송금(domestic money transfer), 해외송금(cross-border money transfer), 가맹점 인수(merchant acquisition), 전자화폐 발행(e-money Issuance), 디지털토큰(digital payment token), 환전(money-changing)로 구성된다. 「PSA」(2019) 제6조 제4항
22. 「PSA」(2019) 제6조 제4항

나. 싱가포르의 지급결제시스템 개방

싱가포르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NBPSP에 지급결제시스템을 개방한 국가 중 하나이다. MAS는 2021년 2월부터 요건을 갖춘 비금융회사(Non-Financial Institution, NFI)도 본격적으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NBPSP인 지급기관도 즉시 송금용 지급거래 시스템인 FAST(Fast and Secure Transfers)와 P2P 즉시 송금서비스 PayNow에 직접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은행 및 지급기관 상호 간 실시간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NBPSP는 DFWG(Direct Fast Working Group)²³가 개발한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인프라에 직접 접속할 수 있으며, FAST와 PayNow를 각각 관리하는 싱가포르 청산협회(Singapore Clearing House Association, SHA)와 싱가포르 은행협회(The Association of Banks in Singapore, ABS)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²⁴

〈표1-7〉 MPI의 싱가포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현황 (개)

	FAST 참가기관 수	PayNow 참가기관 수
은행	30	21
MPI	7	5

자료 : MAS 홈페이지(2023. 9.)

다. 고객의 은행 계좌 데이터 개방

오픈뱅킹을 정부 주도로 추진했던 영국의 사례와 달리 싱가포르는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²⁵ MAS는 NBPSP의 은행 계좌 접근권을 보장하고 금융 데이터를 개방하도록 제도화하는 대신, 싱가포르 은행연합회와 협력하여 데이터 및 정보 표준을 포함한 개방형 API 시스템을 개발하여 은행과 핀테크 간 API를 통한 데이터 및 기능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금융회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금융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MAS와 스마트디지털정부그룹(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Group)은

23. DFWG는 Citi Singapore, DBS, Deutsche Bank AG Singapore, Grab Financial Group, HSBC Singapore, Liquid Group, MatchMove, MayBank Singapore, OCBC Bank, Razer Fintech, Slingel Dash, Standard Chartered Bank, Transferwise, UOB으로 구성되어 있다.

24. MAS(2020. 11. 30.),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to have Access to FAST and PayNow

25. NUS Centre for Banking&Finance Law Working paper(2022), Open Banking in the UK and Singapore : Open possibilities for Enhancing Financial Inclusion

개인 금융 데이터를 한 곳에서 확인 가능한 금융데이터거래소(Singapore financial Data Exchange, SGFinDex)를 2020년 출범하였다.

MAS는 2016년 오픈뱅킹과 관련된 지침으로 API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MAS가 제공하는 금융API 안내서(API Playbook)²⁶에는 금융산업 공통 API 보안 표준과 거버넌스 모델 등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으며, 금융산업 API를 등록(financial industry API register)하도록 함으로써 핀테크 기업 등 NBPSP가 제공하려는 서비스에 필요한 오픈 API를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싱가포르 내 은행을 비롯하여 지급기관, 투자증권회사, 보험회사, 감독당국(MAS)이 API 등록소에 참여하여 거래내역, 고객정보, 금융상품 등과 관련된 API를 개방하고 있다(〈표1-8〉참고). 그러나 싱가포르에는 유럽연합 「PSD2」의 PISP와 AISP 제도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다.

〈표1-8〉 싱가포르 오픈 API 참가기관 현황 (개)

구분	기관 수	기관/기업
은행	7	 CIMB BANK  BNP PARIBAS  DBS  OCBC Bank  UOB  standard chartered  citibank
지급기관	4	 NIUM  NETS  wise  PayPal
투자증권회사	3	 SAXO CAPITAL MARKETS  PhillipCapital Your Partner In Finance  TIGER BROKERS
보험회사	1	 etiqa
감독당국	1	 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자료 : 싱가포르 통화청(MAS) 홈페이지(2022. 4.)

4. 일본

가. 일본의 자금이동업과 선불식지급수단발행업

일본은 현금사용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일본 정부는 캐시리스 결제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9년 제정된 「자금결제법」에서 NBPSP의 서비스 영역과 규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자금결제법」에서는 자금이동업과 선불식지급수단발행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6. ABS-MAS Financial world(2016), Financial-as-a-service : API playbook

자금이동업은 은행 이외의 자가 환거래(소액자금이전거래)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금융청 등록을 통해 자금이동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이용자자금(미달채무) 공탁 의무가 부과된다. 일본은 2020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자금이동업(제2종)에 더하여 고액 송금을 취급할 수 있는 제1종 자금이동업(인가제)과 소액 송금만을 다루는 제3종 자금이동업을 신설하여 자금이동업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제1종) 규제를 완화(제3종)하였다(〈표1-9〉 참고).

〈표1-9〉 「자금결제법」 개정안에 따른 자금이동업 유형

유형	진입규제	송금상한액(건당)
제1종(고액) 자금이동업	인가제	없음
제2종(현행) 자금이동업	등록제	100만 엔 상당
제3종(소액) 자금이동업		수만 엔 상당

자료 : 다이와종합연구소 홈페이지 재구성

2024년 5월 말 기준 등록된 자금이동업 사업자 수는 82개²⁷이며 대표적 사업자로는 페이페이, 라쿠텐페이, 라인페이, 씨스퀘어(C-Square) 등이 있다.

한편, 일본은 2023년 4월부터 「노동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급여를 자금이동업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가능해졌다.²⁸ 근로자 본인의 동의하에 급여의 전액 또는 일부를 자금이동업자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일본 내 비현금 결제가 확대되고, 은행·증권·자금이동업자 간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금결제법」은 자금이동업과 함께 선불식지급수단발행업²⁹을 규율하고 있다. 선불식지급수단이란, 증표, 전자기기 그 밖의 물건에 기재되어 있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기록된 금액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고 발행되는 증표 등을 의미한다. 즉, 상품권,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교통카드, 전자화폐 등 금전적 대가를 받고 발행되어 상품구매나 서비스 제공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지급수단을 뜻한다. 이때 해당 지급수단을 발행한 자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한 경우를 자가형 선불식지급수단, 제3자에 게도 사용 가능한 경우를 제3자형 선불식지급수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선불식지급수단발행업자는 금융당국에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하며, 미사용잔액의 1/2 이상의 발행 보증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일본에서는 사용처가 다양한 제3자형 선불식지급수단발행업자가 핀테크 산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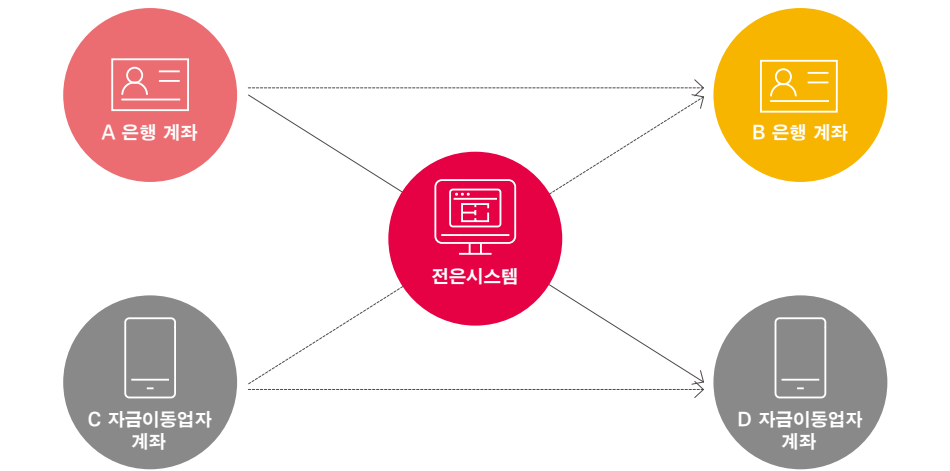
27. 일본 금융청 홈페이지, 자금이동업 등록 목록
 28.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지정을 받은 자금이동업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디지털 급여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금이동업자는 제2종 사업자로 송금 상한액이 100만 엔이다.
 29. 국내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과 유사하다.

나. 일본 소액결제시스템의 개방형 전환

일본 내 지급결제시스템 개방에 관한 논의는 2020년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폐쇄성이 높은 은행 수수료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공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22년 일본 전국은행협회는 예금취급기관으로 참가자격을 제한을 두었던 소액결제시스템(전은시스템)에 자금이동업자의 참여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

기존 전은시스템에는 예금취급기관이 아닌 핀테크 기업은 가입할 수 없어 같은 핀테크 앱 이용자 간에만 송금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전은시스템 개방을 통해 자금이동업자도 참가가 가능해지면서 은행과 자금이동업자 간 계좌 송금 및 수취, 자금이동업자 간 계좌 송금 및 수취가 가능해졌다. 자금이동업자의 전은시스템 참가요건과 형태, 절차 등을 예금취급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지급결제시장의 경쟁을 도모하고 있다(〈그림 1-4〉 참고).

〈그림1-4〉 자금이동업자 참가 후 전은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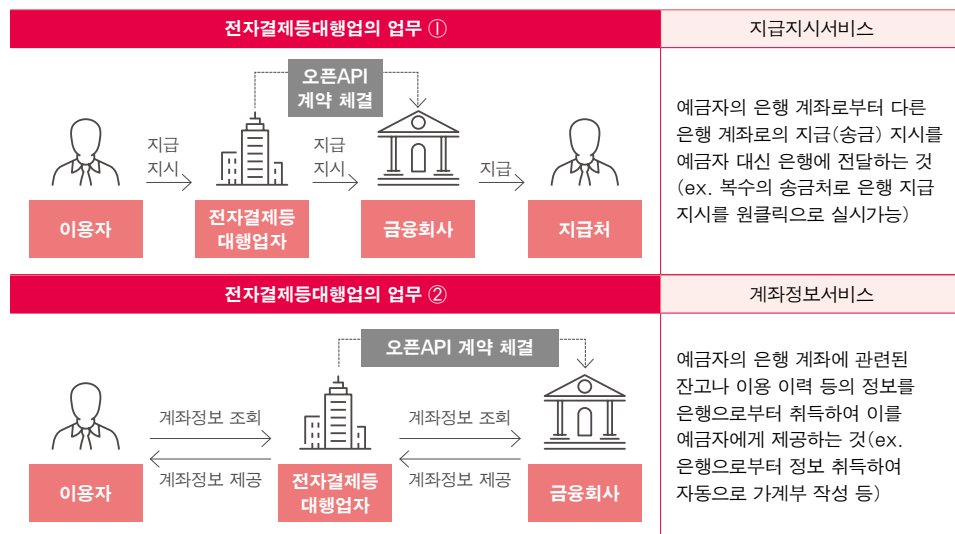
자료 : 일본 전국은행협회, 한국은행 동경사무소(2022. 9. 20.) 현지정보 소액결제시스템에 자금이동업자(핀테크 기업) 참여 허용, 재구성

한편, 일본의 소액결제시스템인 전은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인 전국은행자금결제 네트워크(이하 전은넷)는 2027년부터 개방형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0년 5월 차세대자금결제시스템검토TF³⁰를 설치하여, 자금이동업자의 접속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API를 활용한 새로운 접속방법인 API 게이트웨이를 구축할 방침을 논의하였다. 2025~26년 중 현행 접속방식과 병행하여 API 게이트웨이 접속을 개시하고, 차세대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API 게이트웨이 접속방식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개방형으로 전환될 경우 시스템 관리 및 유지비용이 절감되면서 결제 시스템 참여자의 전은시스템 이용 비용 및 소비자의 송금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 일본의 TPPSP, 전자결제등대행업

일본 정부는 2017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2018년 6월부터 EU의 「PSD2」의 API 모델을 채택한 전자결제등대행업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며 오픈뱅킹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자결제등대행업자는 유럽의 「PSD2」에서 규정하는 PISP와 AISP를 통합한 개념으로, 은행과 이용자를 중개하는 자로서 이용자가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 전자결제등대행업자의 앱 등을 통해 여러 은행에 개설된 계좌에서 자금이체를 가능하게 하며, 잔고 및 거래기록을 포함한 계좌정보를 받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1-5〉 전자결제등대행업의 업무



자료 : SG컨설팅 홈페이지, 전자결제등대행업에 관한 법규제 해설

30. 일본 자금결제업 협회, 핀테크 협회, 시스템벤더, 관계당국, 은행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2022. 9.), 소액결제시스템에 자금이동업자(핀테크 기업) 참여 허용

전자결제등대행업자는 등록제로 운영되며,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은행과의 계약 체결 의무 등의 규제가 부과되고 있다. 전자결제등대행업자는 은행과 서비스 제공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계약 내용에는 이용자에게 손해 발생 시 은행과 전자결제등대행업자 간 배상책임 분담, 이용자 정보의 적정한 취급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된 「은행법」은 은행에게도 오픈 API 도입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각 은행은 전자결제등대행업자와의 계약과 협력에 대한 정책을 공시하고 이를 충족한 전자결제등대행업자와 API 계약을 체결한다.

5. 미국

가. 미국의 특수목적은행

미국의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이하 OCC)은 2018년 7월 금융소비자의 선택 기회 확대, 은행 산업의 혁신과 경쟁 촉진, 금융포용의 실현, 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입 완화 등을 목적으로 스몰뱅킹라이선스(small banking license) 개념의 특수목적은행(special purpose national bank) 인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에는 핀테크 기업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주(state)에서 송금업(money transmission) 라이선스를 취득하여야 했다. 그러나 특수목적은행 인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주별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아도 특수목적은행 인가를 취득하면 미국 전역에서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핀테크의 시장 진입과 혁신 촉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특수목적은행은 예금 수취가 불가하고, 지급서비스나 대출업무만 제공할 수 있으며³¹, 일반 은행(national bank)과 동일하게 은행 감독 대상이 된다. 따라서 특수목적은행도 자본건전성, 유동성, 리스크관리, 금융포용, 업무지속성계획(contingency planning) 등 일반 은행과 동일한 규제 기준이 적용된다.

31. 핀테크 은행은 일반적인 예금 수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취한 예금에 기반한 소매결제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나. 특수목적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미국은 NBPSP와 같은 핀테크 기업에 지급결제시스템을 전면 개방하지 않고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은행업(특수목적은행) 인가를 취득하도록 유도하여, 인가받은 은행에 대해서만 지급결제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OCC의 인가를 받은 핀테크 은행이라도 은행 결제망을 이용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준(Fed)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³² Fed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 주요 감독기관으로서 감독 및 규제 권한을 보유하며, 소액결제망인 FedACH와 거액결제망인 Fedwire를 운영하고 있다.

아직까지 미국 내 특수목적은행 인가를 받은 사례가 없어 FedACH에 직접 참가하고 있는 특수목적은행도 없는 실정이지만³³, 추후 핀테크 은행이 특수목적은행 인가를 통해 Fed 결제망을 직접 참가하게 된다면 미국 내 NBPSP의 서비스 규모 확대, 거래 비용 절감, 서비스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다. 고객의 은행 계좌 데이터 개방

한편, 미국은 표준화된 오픈뱅킹 정책을 도입하기보다는 시장 주도형 이니셔티브를 통해 은행 데이터 개방을 촉진하고 있다. 고객의 금융데이터 이동권과 자기결정권을 규정하면서, 시장 자체적으로 정보 공유의 API 표준이 구축되도록 하여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협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이하 CFPB)은 2016년 10월 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권에 정보공유의 개념을 포함하여 제3자를 통한 계좌정보 접근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2017년 고객 정보 수집에 관한 개략적인 원칙을 발표하였으며, 2018년 비영리 보안 단체인 금융서비스정보공유분석센터(Financial Services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 FS-ISAC)는 100여 개의 금융사와 함께 계좌 정보의 공유, 결제, 사기 방지 등을 위한 표준 API의 정의를 발표하였다.

32. 한국금융연구원(2019. 3.), 최근 핀테크의 지급결제시장 참여 확대와 시사점

33. 원래 특별목적은행 인가를 받으려고 계획했던 Varo Money와 SoFi는 각각 2020년 7월과 2022년 1월에 풀뱅킹(full banking) 전국은행(national bank) 인가를 받았고, Sqaure는 2020년 3월에 산업대출은행(ILC) 인가를 받았다, 이성복(2023),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쟁점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지난 2023년 10월에는 CFPB가 개인정보금융데이터 권리(personal financial data rights) 규칙을 공식 제안하여 소비자가 신용카드, 당좌예금, 선불 및 디지털 지갑 계정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3자에게 허용할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일부 주에서는 주법(state-law)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금융데이터 접근성과 관련된 내용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개인정보관리법」(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CPRA)³⁴에서 소비자의 금융 데이터에 관한 권리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6. 우리나라

가. 「전자금융거래법」

우리나라의 NBPSP는 2015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간편송금·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서비스는 복잡한 인증절차 대신 간편 비밀번호나 생체인증 정보 등으로 결제하거나 송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간편송금·간편결제 사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³⁵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이하 선불업) 또는 전자결제대행업에 해당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는 금융회사와 계좌를 연동하여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상거래 대금이나 교통요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된 사업자로 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등 ‘충전’하여 사용하는 페이머니 사업자가 있다. 한편, 국내 간편결제서비스는 주로 사용자의 신용카드나 계좌 정보를 미리 등록하여 생체인식 또는 간편 비밀번호 등과 같은 간단한 인증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내 간편송금·간편결제서비스는 유럽연합과 영국의 전자화폐기관 및 지급기관이 제공하는 지급서비스와 유사하다.

34. 미국 내에서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 관련 법률로 평가되는 「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이하 「CCPA」)를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GDPR」에 더욱 근접하도록 소비자 개인정보 권리를 더욱 강화한 법률이다.

35. 국내의 NBPSP를 관장하는 주요 법률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동법 28조에 따르면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등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오픈뱅킹시스템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참가·직접결제³⁶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권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등의 비은행 금융회사는 대형 계약을 맺은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등의 NBPSP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오픈뱅킹시스템의 오픈 API를 활용하거나 개별 은행과 제휴하는 방식으로 간편송금과 같은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NBPSP는 시스템 접속만으로 은행을 비롯한 전체 참여기관과 연결되며, 표준API를 통하여 은행 등에 개설된 이용자의 계좌에 접근하여 대금을 인출하거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개별 은행이 제공하는 API를 핀테크 업체가 각각 연계하는 유럽의 TPPSP와 달리, 한국의 오픈뱅킹시스템은 정보 제공기관과 이용기관을 모두 중계하는 단일의 공동 플랫폼 형태로 구축되었다. 그 결과 이용기관이 은행마다 개별 제휴 계약을 맺을 필요 없이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API를 이용하여 필요한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오픈뱅킹시스템에서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외에도 핀테크 기업 등의 다양한 지급서비스 제공 주체가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각자가 보유한 금융 데이터를 상호 조회할 수 있도록 발전하였다. 향후 오픈뱅킹은 서비스 제공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하고, 은행 창구 등 오프라인 채널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오픈뱅킹 기능 고도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³⁷

36. 「한국은행법」상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로서 결제불이행 시 한은이 일시부족자금대출제도를 통해 결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고, 금감원과 공동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한하여 직접 참가를 허용하고 있다.

37. 금융위원회(2024. 1.), 주요 업무 추진계획

〈Box3-1〉국내의 오픈뱅킹

해외에서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계좌나 정보에 제3자가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라고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에서는 오픈뱅킹을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은행이 제3자지급서비스 제공자(TPPSP) 및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주1)} 특히, 유럽연합의 오픈뱅킹은 지급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자신의 계좌와 관련된 데이터를 TPPSP인 PISP, AISP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로, 은

행 데이터 개방 차원의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프레임워크로서 오픈뱅킹은 앞서 다룬 EU의 「PSD2」나 「GDPR」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추진되고 있다. 영국의 오픈뱅킹은 조회, 이체 등 은행의 핵심 बैं킹 기능을 표준화하여 TPPSP에게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간 기구인 OBIE를 두어 오픈뱅킹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전자결제등대행업 라이선스를 두어 핀테크가 계좌 조회 및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싱가포르와 미국의 경우에는 ‘오픈뱅킹’이라는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 자체적으로 은행과 NBPSP가 API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활용되는 오픈뱅킹은 해외 오픈뱅킹 개념을 바탕으로 은행이 보유한 지급결제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오픈API 방식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인프라의 의미가 추가되어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국내 오픈뱅킹은 지급결제서비스 중심으로 NBPSP에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강하다.

〈Box3-2〉종합지급결제사업자 관련 논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제도로써 지난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란, 지급서비스 사업자가 지급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하며 자금이체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할 수 있어 은행과 유사한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등 계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장점이며, 핀테크 기업들의 사업 영역 확장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은행의 여·수신(예금 및 대출)업무는 취급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및 고객 자금의 외부예치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후 2023년에 대형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해소하고 금융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지급결제업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반영하자는 논의가 재차 제기되었다.

은행 등은 산업 자본이 은행업으로 진출할 가능성과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의 약화,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저해 등을 이유로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을 우려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핀테크 업계와 신용카드 업계는 자금이체업의 경쟁 강화 및 금융서비스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거래비용 효율화, 금융 소비자의 편익 증대 등을 이유로 종합지급결제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주2)}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은 금융산업 경쟁 촉진을 통한 지급서비스 혁신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금융인프라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1) BIS(2019. 11.), Report on open banking and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주2) 이성복(2023. 11.),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쟁점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3절 지급결제 인프라 측면의 움직임

1. 실시간 이체서비스의 진화

실시간(real-time) 이체서비스는 연중무휴(24/7) 지급인과 수취인의 계정 간에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이체를 말한다. 실시간 이체서비스는 지급지시 후 고객이 신속하게 자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제일이 1일 이상 소요되는 기존의 전통적인 이체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다. 실시간이라는 용어는 국가마다 실시간(real-time), 신속(fast), 즉시(instant)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본 절에서는 혼돈을 피하고자 실시간으로 일괄 표현하겠다. 실시간 이체서비스는 청산·결제 방식에 따라 이연차액결제(Deferred Net Settlement, DNS) 방식과 실시간 총액결제(Real-Time Gross Settlement, RTGS) 방식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이연차액결제 방식으로 전자금융공동망을 구축(2001년)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 이체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시작하였다. 국가별 상황과 실시간 이체서비스 도입 목적에 따라 이연차액결제방식 또는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을 선택하고 있으며, 대부분 모바일 또는 인터넷 기반으로 실시간 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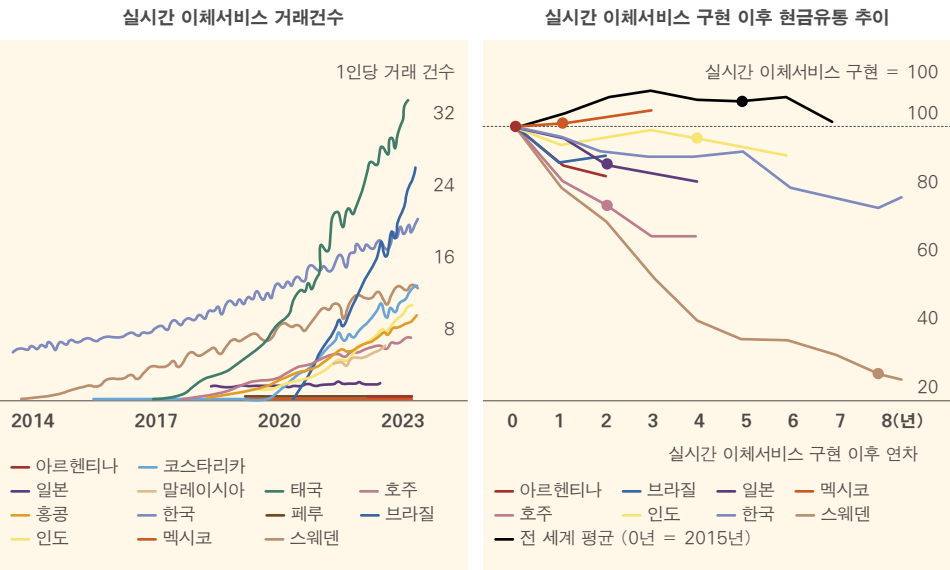
최근 지급결제시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사용자 선호도의 변화로 인해 디지털화되는 추세이며,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지급결제의 디지털화를 더욱 가속화하였고³⁸ 여러 국가에서 지급결제서비스의 신속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이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금융회사와 핀테크로 대변되는 비금융회사의 경쟁 심화로 인하여 더더욱 실시간 이체서비스가 필수사항이 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하여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시간 이체서비스의 이용이 급증하였다. 2022년 실시간 이체서비스 거래건수 기준으로³⁹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은 인도(486억), 중국(185억), 태국(97억), 브라질(87억)이고, 1인당 기준으로는 태국(월 1인당 거래 35건), 브라질(27건), 한국(21건)의 거래건수가 가장 많다. 실시간 이체서비스 거래건수의 증가는 현금사용의 감소와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지급결제의 디지털화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8. Auer, R, G Cornelli and J Frost(2022. 12. 6.), The pandemic, cash and retail payment behaviour: insights from the future of payments database, BIS
 39. J Frost, P Wilkens, A Kosse, V Shreeti and C Velásquez(2024. 3. 4.), Fast payments : design and adoption, BIS

실시간 이체서비스의 거래건수 증가는 다양한 혜택에서 비롯된다. 실시간 이체서비스는 개인과 기업에게 현금보다 빠르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대안을 디지털로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보급률이 낮은 국가에서 더욱 유용하다.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 이체서비스는 다양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출시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동기는 금융포용성 강화, 지급서비스 제공자 간의 경쟁 촉진, 디지털화 추진, 지급결제 인프라 개발 및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⁴⁰

이러한 정책 목표의 실현 결과로 인하여 지급결제 인프라의 기술 혁신, 중앙은행과 지급결제기관의 우선 순위 변경, 경제인구 및 고객가치의 변화 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지급결제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더 빠르고 저렴하고 편리한 지급수단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비금융회사의 지급결제시장 진출로 인한 서비스 경쟁 심화, 고객 맞춤형 서비스 혁신, 스마트폰 기반의 간편한 지급서비스에 익숙한 고객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 이체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간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간에도 실시간 이체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표1-10〉 실시간 이체서비스 거래건수 및 현금유통 추이



자료 : BIS(2024), Fast payments: design and adoption

40. Aurazo, J, H Banka, J Frost, A Kosse and T Piveteau(2024),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nd fast payment systems: rivals or partners?, mimeo

이용자가 다른 금융회사 또는 다른 지급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하여 자금이체 거래를 하고자 할 때 계좌 변경에 대한 장벽인 전환 비용(switching cost)이 발생하는데, 실시간 이체서비스는 이러한 전환비용을 없애고 여러 계좌를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 역할을 하며 아울러 지급결제 생태계의 혁신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실시간 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신속한 자금 수취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서비스 구현 시스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지급결제 생태 전반에서 변화와 혁신을 기할 수 있다.

2. 주요국의 실시간 소액결제시스템 현황

가. 영국 : Faster Payment System

영국의 실시간 소액결제시스템인 Faster Payment System은 2008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자금이체의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Bacs Ltd. 등 3개 기관을 통합 운영하고자 설립된 Pay.UK는 Faster Payment System뿐만 아니라 소액결제시스템인 Bacs와 ICS(Image Clearing System)도 운영하고 있다. Faster Payment System에는 2024년 기준으로 은행, 지급서비스 제공자 등 43개 회사가 참가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실시간 이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ISO 20022 국제표준 전문을 적용하여 실시간 이체서비스를 처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표준 전문을 사용하는 타 국가 지급결제시스템과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반은 갖추어져 있다. 동 시스템에서 즉시결제, 예약결제, 납부자자동이체, 대량지급 등의 업무가 가능하며,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그리고 참가기관의 점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Faster Payment System의 처리실적이 2023년에 34억 건, 2조 6천억 파운드로 2022년 대비 건수와 금액이 각각 20%, 24%로 기록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 시스템은 बैं킹 및 지급결제 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영국 지급결제 및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 촉진의 일환으로 향후 NPA(New Payments Architecture)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러한 NPA는 현행 지급결제시스템 Faster Payment System, Bacs, ICS 등의 상이한 규정, 표준 및 처리절차를 단순화하고 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국 소액결제플랫폼 모델로 2025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또한, NPA는 고객이 지급시기와 금액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수취인 확인서비스(confirmation of payee), 결제 요청서비스(request to pay)도 제공한다. 이와 같이 NPA는 실시간 이체는 물론 지급결제시장의 니즈를 신속히 반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Pay.UK는 향후 고객의 지급결제 행태 분석을 통한 NPA 개념 구조 테스트,

보안 및 시스템 복구 모델 정립 등 NPA의 설계 및 이행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표1-11〉 Pay.UK의 소액결제시스템 현황

구분	Image Clearing System	Bacs Payment System	Faster Payment System
가동년도	2017년	1968년	2008년
참가기관	20개	27개	43개
거래한도	없음	2천만 파운드	25만 파운드
이용시간	은행 업무시간	주 7일 24시간	주 7일 24시간
차액결제	일중 1회	일중 1회	일중 3회
거래대상	공과금, 무역대금, 급여, 각종 회비 등	온라인, 모바일 결제, 납부자자동이체 등	대량 입·출금이체 (급여, 연금, 공과금 등)

자료 : Pay.UK 홈페이지(재구성)

나. 유럽연합 : RT1

RT1(Real-Time 1)은 EBA Clearing이 운영하는 실시간 소액결제시스템으로, 2017년 11월부터 SEPA 회원국 간 실시간 이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플랫폼이다. 이 시스템은 SEPA 실시간 입금이체서비스(SEPA Credit Transfer Instant, SCT Inst)를 제공하여, 기존의 일중 차액결제 방식과 달리 건별로 실시간 자금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EBA Clearing이 운영하는 RT1은 이탈리아의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인 SIA가 기술 지원을 맡고 있으며, 유럽 내 주요 은행들이 참가하고 있고 국제 전문표준 ISO 20022를 적용하여 높은 수준의 거래처리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 동 시스템은 EBA Clearing과 스페인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Iberpay가 공동으로 개발한 SEPA Request-to-Pay(SRTP)와도 호환이 되어, SRTP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서비스 제공자들은 유럽 전역에서 지급 요청을 수초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표1-12〉 EBA Clearing 소개

(설립) 범유럽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으로 1998년에 설립
(성격) 유럽 48개 은행이 소유하는 비영리기관
(역할) 범유럽 차원에서 거래결제시스템(EURO1), 소액결제시스템(STEP2), 실시간 결제시스템(RT1) 운영

자료 : EBA Clearing 홈페이지(재구성)

RT1은 유럽지급결제위원회(European Payments Council, EPC)의 지원을 받아 범유럽 실시간 입금이체서비스를 처리하며, 24시간 내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SEPA 실시간 입금이체서비스 규정과 유럽지급결제위원회의 이행 지침을 준수하며, 「결제완결성지침」(Settlement Finality Directive, SFD)의 보호를 받는다. RT1은 유럽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인 TARGET2 계좌를 보유한 신용기관만이 참가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기술 및 운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거래는 유로화로 처리되며 거래당 최대 10만 유로까지 처리할 수 있고, 자금이체는 10초 이내에 완료되며 이체 취소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거래의 최종 완결성을 보장하며 고객에게는 실시간으로 자금이체 내역을 제공한다. RT1의 활성화는 특히 SEPA 실시간 입금이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럽 내 다른 국가들과의 지급결제 인프라 간 호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4월 기준, RT1을 통한 일 평균 거래 건수는 약 287만 건, 거래 금액은 19억 유로로, 이는 2021년 1월 91만 건, 4억 9,600만 유로 대비 각각 약 215%, 약 280% 증가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는 RT1이 유럽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다. 미국 : Real-Time Payments(RTP)

Real-Time Payments(이하 RTP) 시스템은 미국의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기관 TCH(The Clearing House)가 2017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결제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은 2015년 5월 출범한 연방준비제도의 Faster Payments Task Force에서 2020년까지 추진한 미국 실시간 결제시스템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된 금융회사가 이용할 수 있다. RTP는 주 7일, 하루 24시간 운영되며, 개인과 기업은 RTP 참가기관의 계좌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금이체를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이체 처리되는 예금 계좌는 미국 전체 요구불 예금계좌의 약 60%에 달한다. RTP는 영국의 Vocalink사와 24개 TCH 회원은행이 공동으로 시스템 설계 및 구축에 참여하였으며, ISO 20022 국제표준 전문을 기반으로 대용량 정보 처리가 가능하게 설계되었다.

〈표1-13〉 TCH 소개

(설립) 1853년 미국 은행 간 지급결제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대형은행들이 설립한 New York Clearing House Association이 전신인 민간 지급결제기관
(성격) 미국 민간 ACH 운영기관으로 24개 은행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비영리기관 형태의 유한책임회사
(역할) 실시간 소액결제시스템(RTP), 민간 소액결제시스템(Automated Clearing House, ACH), 민간 거액결제시스템(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s System, CHIPS) 운영

자료 : TCH 홈페이지(재구성)

RTP는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지급 취소가 불가능하여 즉시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고 있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350개 금융회사가 참가하고 있으며, 2024년 1분기 7,600만 건, 42억 달러로 2023년 4분기 대비 건수, 금액 각각 3%, 8% 증가하였다.

라. 미국 : FedNow

미국 연준은 지급결제 분야 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다수의 금융회사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의 실시간 이체시스템인 FedNow를 신규로 구축하여 2023년 7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35개 금융회사, 미국 재무부, 16개의 지급서비스 제공업자가 FedNow 실시예 참여하였으며, 연준은 미국 내 9천 개 이상의 은행과 신용조합(credit union)이 FedNow에 가입하여 전국의 기업과 개인에게 신속한 자금이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연준이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FedACH를 통한 전자자금이체서비스는 거래 데이터를 배치(batch)로 처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금융회사의 영업시간 외에는 처리 시간이 더 소요되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실시간 이체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이었다. 또한, TCH가 운영하는 RTP는 대형은행 위주로 운영되며 소형은행과 신용조합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연준은 더 많은 기업과 개인이 실시간 이체서비스의 장점을 경험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의 10대 은행 중 JPMorgan Chase를 비롯하여 Wells Fargo와 US Bank가 FedNow에 참여하긴 하였지만 Citi, PNV, Capital One, Bank of America 등은 여전히 RTP에만 참여하고 있다. 두 개의 실시간 이체서비스가 공존하면서 경쟁을 통한 혁신을 기대하는 시각이 있지만, FedNow의 실시간 이체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직불 및 신용카드 거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은행의 카드 정산수수료 수입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즉, FedNow가 카드 네트워크를 우회하는 경쟁 서비스로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정부 시스템에 FedNow를 사용하는 금융회사가 많지 않은데 FedNow의 운영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점도 FedNow로의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한다. 일부 은행들은 FedNow에 이미 참여한 은행들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FedNow가 임계량에 도달하고 후발자 우위가 발생할 때 참여하려고 한다. 각종 수수료 정책, 유동성 관리의 편의성, 금융회사들 간의 상호운영성 측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FedNow와 RTP의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주요 이슈 및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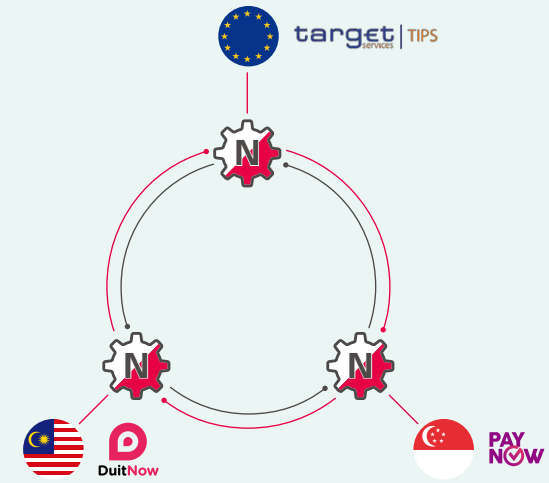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시간 이체서비스는 현대 지급결제 생태계의 표준 기능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급결제 생태계의 형성은 서로 다른 국가간에도 실시간 또는 거의 실시간으로 24시간 내내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환경을 기대하고 있다.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⁴¹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 이체서비스 시장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35.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실시간 이체서비스가 매우 활성화되어 2030년에는 전 세계 실시간 이체서비스 시장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시간 이체서비스의 확산과 개선은 새로운 서비스의 유형과 질적인 향상, 접근의 용이성 등 시장 참여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지급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모바일 전자화폐와 같은 지급서비스 제공자들이 실시간 이체서비스 시장에 진출하였지만, 타 금융회사 또는 타 모바일 전자화폐 생태계와의 상호 운용성 부족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실시간 이체서비스 운영기관들은 새로운 유형의 회원들과 참가기관들을 통합하거나 지배구조의 변경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인도의 UPI 시스템은 구글, WhatsApp(메타의 모바일 메신저 앱), 아마존과 같은 제3자 앱 제공업체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결제를 시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제공하고 있다.

실시간 이체서비스는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개인 간 송금을 위한 P2P 결제(자금 이체 포함)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시되었지만 기술의 발전, 기대치의 변화, 사용자 수와 다양성의 증가에 따라 시스템이 성숙해짐에 따라 P2B와 B2B 결제의 비중이 높아지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부 국가의 실시간 이체서비스는 다른 국가와의 실시간 상거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간에 실시간 이체서비스를 상호 연결하고 있다. 전 세계 시장에서 ISO 20022를 이용한 실시간 이체서비스 도입 등 지급결제 메시지의 표준화가 증가하면서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 운용이 가능해지고, 최종 소비자가 국경을 넘어 거의 실시간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촉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태국의 PromptPay와 싱가포르의 PayNow는 실시간 이체서비스를 연결하여 사용자에게 국가간 결제를 제공하였다. PromptPay와 말레이시아의 DuitNow 간에도 비슷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인도 NPCI(National Payments Corporation of India)는 2022년 8월에 영국 내 모든 PayXpert 매장의 POS(카드단말기)에서 QR코드를 이용한 결제방식으로 UPI(Unified Payments Interface, 인도의 모바일 결제시스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발표하였다. BIS는 실시간 이체서비스를 위한 국가간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Nexus”를 개발 중이다.

41. Real-Time Payments Market Size, Share and Trends Analysis Report by Enterprise Size(Large, SME), by Payment Type(P2B, P2P), by End-Use Industry, by Component, by Deployment, and Segment Forecasts, 2023 – 2030, Grand View Research(2022)

〈Box3-3〉 BIS의 국가간 실시간 이체 프로젝트 Nexus

BIS가 개발한 프로젝트 Nexus는 국가별 실시간 이체서비스를 서로 연결하는 방식을 표준화하여, 국가간 지급결제를 효율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실시간 이체서비스 운영기관은 Nexus 플랫폼과의 단일 연결을 통해 실시간 이체서비스를 Nexus 플랫폼에 연결된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다. 2022년에 유로시스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실시간 이체서비스를 테스트 환경에서 연결하는 Nexus 프로토타입을 구축하여 국가간 실시간 이체서비스(instant cross-border payments)에 대한 개념 증명에 성공하였다.



- 유로존의 TARGET Instant Payment Settlement(TIPS) 시스템 : 이탈리아 중앙은행 운영
- 말레이시아의 Real-Time Retail Payments Platform(RPP) : 말레이시아 PayNet 운영
- 싱가포르의 Fast and Secure Transfer(FAST) 이체시스템 : 싱가포르 BCS(Banking Computer Services) 운영

Nexus는 접근성, 유용성과 사용자 경험(UX)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계좌 번호 대신 휴대폰 번호와 같은 정보로 이체할 수 있는 경우 휴대폰 번호를 국가간 이체에도 사용할 수 있다. 즉, 송금인은 매우 긴 국가간 송금번호나 익숙하지 않은 타 국가의 계좌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 BIS는 Nexus의 개념 증명에서 TIPS의 MPL(Mobile Proxy Lookup), 말레이시아 DuitNow, 그리고 싱가포르 PayNow의 휴대폰 번호 기반 이체서비스를 연결함으로써, 국가간 실시간 이체서비스의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BIS는 Nexus 플랫폼을 더 많은 국가에 적용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및 태국의 중앙은행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ASEAN 국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 세계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실시간 이체서비스의 도입과 개선은 소액결제시스템의 현대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다. 코어시스템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UI/UX 개선, 국가간 상호운용성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확장성과 개방성을 확대하고 있다. 실시간 이체서비스의 사회 전반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은행으로 대변되는 금융회사와 핀테크로 대변되는 비금융회사에 대해 고객의 बैं킹 이용가치 측면에서 차이가 줄어들다 보니 차별성을 찾기 위한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 유럽,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대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ISO 20022 국제표준 전문을 채택하여 실시간 이체서비스를 확산시키는 추세인데, 동 표준의 적용은 실시간 이체서비스의 국제적 확산과 고도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실시간 이체서비스는 디지털경제의 확장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금융거래의 속도와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조인 비대면 중심의 금융거래 흐름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의 통합과 상호운용성은 실시간 이체서비스의 중요한 발전 방향 중 하나로 국가간 결제와 송금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들의 지급결제시스템이 연계될 전망이다. 이는 국제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키며, 전 세계적인 금융 포용성을 촉진할 것이다. 특히 실시간 이체서비스는 소비자와 기업에게 새롭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열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 간 송금 및 결제뿐만 아니라 실시간 청구에 따른 실시간 납부, 실시간 급여이체 등이 일상화될 것이다. 또한, 핀테크 스타트업과 같은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여 지급결제 생태계를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간편결제/송금서비스의 활성화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소비자들의 결제 방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간편결제, 간편송금, 그리고 BNPL(Buy Now Pay Later) 같은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유연한 결제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지급서비스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은 소비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결제하고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는 QR코드, NFC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결제와 송금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물리적인 카드나 현금 없이도 결제와 송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BNPL(Buy Now Pay Later)은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즉시 구매하고 나중에 결제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유연한 결제 옵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추어 결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설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기업들에게 소비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개선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혁신은 기술적인 측면과 아울러 서비스 디자인, 마케팅 전략, 고객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절 간편결제서비스

1. 간편결제서비스의 개요

간편결제서비스는 신용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지급수단이나 계좌 정보를 미리 등록하고, 결제 시 사용하여 재화·서비스 구매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서비스는 거래 시 비밀번호, 지문·얼굴 인식 등의 인증수단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도 한다. 간편결제 이전에는 온라인 신용카드 지급 과정에서 카드 번호, 유효기간, 카드 비밀번호 등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추가 인증을 완료해야 했다. 그러나 간편결제에서는 결제 시 비밀번호 또는 지문 등의 간편인증만 수행하면 지급이 완료된다. 오프라인에서도 결제 시 실물 카드를 직접 제시하는 대신 스마트폰에 저장된 카드정보를 실물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어 실물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간편결제서비스는 지급수단을 사전 등록 후 간단한 인증수단만 거치면 결제할 수 있어 기존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간편결제서비스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비대면 결제의 증가와 함께 크게 활성화되었다. <표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모바일 기기를 통한 비대면 결제 방식과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간편결제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금융뿐만이 아닌 유통·통신과 같은 비금융회사들이 서비스에 적극 참여하고, 가맹점들이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¹

〈표2-1〉 유형별 지급수단 이용 금액 동향^{주)}

유형		증가	감소
결제형태	접근기기	모바일기기 및 PC 등	실물카드
	방식	비대면	대면
소비유형		전자상거래 등	여행, 교육서비스 등

주) 2020년 1~9월 기준

자료 : 한국은행(2020. 11. 3.),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국내 지급결제동향

간편결제 이용자들이 간편결제서비스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결제의 편의성이다. 한국은행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로 현금이나 실물 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는 점, 그리고 앱의 구성과 사용

1. 매일경제(2024. 2. 12.) 삼성페이 덕에…간편결제 작년 17조 늘었다.

절차가 편리한 점을 들었다.^{2,3}

간편결제 사업자들에게 간편결제서비스는 고객의 결제전환율⁴과 재구매율을 증가시키고 자신의 플랫폼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터넷 쇼핑 물이나 전자상거래 중개업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편리한 구매 경험을 제공하면서 결제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데, 이는 로그인만으로 결제 과정의 페이지 이동을 최소화하고 결제를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간편결제는 재구매 시에 정보를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어 재구매율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락인(lock-in) 효과⁵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독립적인 고객 접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고객을 모집하고 자체 결제 브랜드(즉, OO페이)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자체 결제 브랜드를 통해 많은 이용자와 가맹점을 확보하면, 플랫폼으로서의 성장을 추진할 수 있다.

2. 간편결제 유형

가. 결제 방식

간편결제서비스의 결제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제 방식으로 구분된다. 온라인 결제 방식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가 웹이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간편인증을 거친 뒤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반면 오프라인 결제 방식은 실제 매장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대신 모바일 기기를 카드 결제 단말기에 접촉하거나 QR코드 및 바코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결제 방식의 대표적인 간편결제 사업자로는 전자금융업자가 있다. 간편결제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PG사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크게 구분된다. PG사는 지급수단 정보를 서버에 미리 등록한 후 추후 결제 시 지급수단 정보를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등록된 정보를 통하여 결제를 진행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 머니를 충전하여 결제하는 것과 같이 선불전자지급수

2. 지급수단별 간편결제서비스 사용 이유(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로는 '현금, 실물카드 등 지급수단을 실물로 갖고 있지 않아도 되어서'가 54.6%, '앱 구성 및 이용 절차가 편해서'가 21.0%를 차지하였다.

한국은행(2022. 5.),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3. 이외에도 간편결제서비스와 제휴한 카드를 통해 이용자가 추가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간편결제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사용자가 웹사이트나 앱 등의 플랫폼을 방문한 후 실제로 구매나 서비스 구독과 같은 결제 관련 행동을 완료하는 비율을 말한다.

5. 소비자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 타 상품 혹은 서비스로 이동하기 어렵도록 고객의 선택을 가두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단을 이용하여 결제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PG업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을 모두 등록하여 두 가지 형태의 간편결제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⁶

오프라인 결제 방식의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는 휴대폰 제조사인데, 지급수단 정보를 스마트폰에 등록한 후 스마트폰으로 실물카드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간편결제를 제공한다. 삼성페이⁷나 애플페이가 휴대폰 제조사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오프라인 결제 방식도 카드 정보를 저장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결제 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결제 진행 시 통신 기술이 추가로 사용되고 지급수단 정보가 기기에 주로 저장된다는 점에서 온라인 결제 방식과 구분된다.

전자금융업자, 휴대폰 제조사뿐만 아니라 은행 및 카드사와 같은 금융회사도 빅테크·핀테크와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카드사의 경우 지급결제 시장에서 최종 이용자 접점을 상실하게 되면, 신용 공여 등의 기능만 수행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⁸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지주사들은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여 간편결제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KB금융그룹의 간편결제서비스인 ‘KB페이’를 시작으로 주요 금융회사들이 서비스를 출시하며 빅테크·핀테크 중심의 간편결제 시장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기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고객 접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⁹

〈표2-2〉간편결제 사업자 유형

사업자		서비스 형태	예시
금융회사(은행·카드사)		지급 계좌·카드 정보를 금융회사 앱에 사전 등록한 후 간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결제	(은행) 신한 pPay, KB pay 등 (카드사) 현대·삼성 앱카드 등
전자 금융 업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타 지급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 후 간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결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 (PG사)	지급 계좌·카드 정보를 PG사에 사전 등록한 후 간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결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SSG페이, 11PAY 등
휴대폰제조사		지급카드 정보를 휴대폰 단말기에 사전 등록한 후 휴대폰을 이용하여 결제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

자료 : 원종서(2023. 7.), 지급결제서비스 수수료 이슈 및 시사점, 금융결제원

6. 원종서(2023. 7.), 지급결제서비스 수수료 이슈 및 시사점, 금융결제원

7. 2024년 3월 20일부터 모바일 결제 서비스 명칭은 삼성페이에서 삼성월렛(Samsung Wallet)으로 변경되었으나 온오프라인 결제서비스명은 삼성페이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8. 이코노미스트(2023. 5. 11.), 카드사, 빅테크에 밀리면 중간 유통사 전략 가능성 있어

9. 연합인포맥스(2021. 4. 21.), 금융그룹 간편결제시장 진출…빅테크에 도전장

최근 간편결제 시장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 일례로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는 2023년 3월부터 사업자 간 제휴를 통하여 협업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삼성페이 사용자는 네이버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삼성페이를 통한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 사용자는 삼성페이가 가능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오프라인 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¹⁰ 이러한 협력은 각 간편결제서비스 사용자들의 온·오프라인 결제 경험을 향상 및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적용 기술

간편결제서비스에는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는데, 카드정보를 보호하는 토큰 기술, 이용자 확인을 위한 인증 기술, 결제 시 이용자 단말기와 가맹점 단말기 사이의 통신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표2-3〉간편결제서비스 적용 기술

구분	결제 방식	주요 내용
토큰 기술	온·오프라인	카드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용 하드웨어 방식/소프트웨어 방식
인증 기술	온·오프라인	이용자 확인을 위하여 사용 지문 인증, 얼굴 인식 등
통신 기술	오프라인	이용자와 가맹점 사이의 상호 연결을 위하여 사용 MST, NFC, QR·바코드 ^{주)} 방식 등

주) QR·바코드 방식은 온·오프라인 결제 방식에 모두 호환이 가능하다.

자료 : 조혜숙(2023. 12.), 모바일 기반 간편결제·디지털월렛의 성장과 과제, 금융결제원

(1) 토큰 기술

토큰 기술은 간편결제 시 카드 번호, 고객의 이름 및 주소, 계좌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토큰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기술이다. 토큰 기술은 정보의 저장 위치에 따라 하드웨어 방식과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드웨어 방식에서는 카드 소지자가 카드사에 카드 정보를 미리 보내고 토큰을 받아 모바일 기기에 저장한다. 이때 토큰화와 토큰 저장은 카드사 또는 제3의 신뢰 기관인 토큰서비스

10. 삼성전자 뉴스룸(2023. 3. 22.), 삼성페이 X 네이버페이 협업서비스 시작

제공자(Token Service Provider, TSP)가 담당한다.¹¹ 소프트웨어 방식에서는 토큰 정보가 간편결제 사업자의 서버 또는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 저장된다. 토큰 기술을 적용하면 결제 도중 토큰 정보가 유출되어도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이고 실제 카드나 계좌의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안성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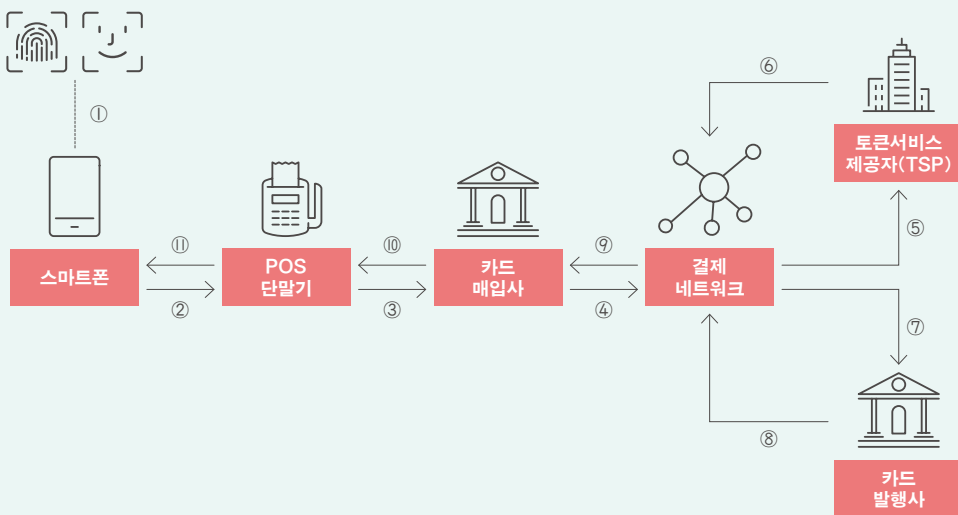
〈그림2-1〉 토큰화(tokenization)의 예시



자료 : 글로벌경제신문(2015. 5. 6.), (Weekly 심층기획) 삼성페이, 애플페이가 적용한 토큰화(tokenization) 기술이란?, 재구성

11. 토큰서비스 제공자(Token Service Provider, TSP)는 결제 과정 중 고객 정보를 대체한 토큰을 제공하는 주체를 뜻한다. 또한, 결제 자각 증명, 토큰화를 구현하여 결제 카드 사기를 줄이고 관리 변환 또는 유효성 검사를 통해 기존 인증 호스트와 통합할 거래 암호문은 물론 처리 검사도 수행하고 있다.
12. 글로벌경제신문(2015. 5. 6.), 삼성페이, 애플페이가 적용한 토큰화(Tokenization) 기술이란

〈Box3-4〉 토큰 기술이 포함된 결제 과정(해외 4당사자 방식 신용카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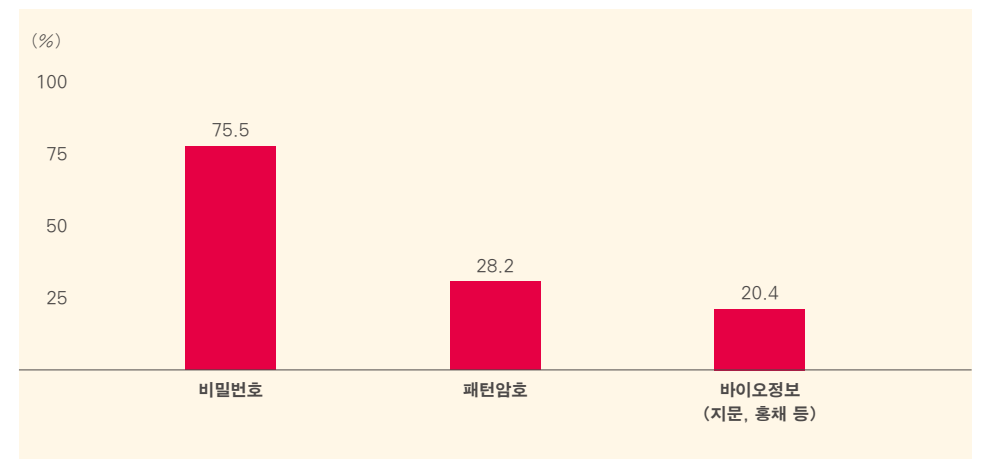
토큰 기술이 적용된 간편결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용자가 결제를 위한 간편인증 수행 후 스마트폰에서 거래를 진행하면(①), 토큰과 결제 정보는 암호화되어 POS 단말기로 전송된다(②). 이어서 해당 정보는 매입사를 통해 결제 네트워크로 전송된다(③, ④). 암호화된 토큰은 결제 네트워크의 토큰 식별을 거친 후 토큰서비스 제공자로 이동하게 되고, 토큰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복호화한 후 결제 토큰과 관련된 실제 카드 정보를 확인한다(⑤). 확인된 실제 카드 정보는 결제 네트워크로 다시 보내지며(⑥), 네트워크에서 실제 고객 정보 수신 후 발행사에 거래 내역 및 고객 정보를 전송한다(⑦). 이후 카드 발행사는 고객의 신용 한도를 확인한 후 거래를 승인하게 된다(⑧). 승인된 정보는 결제 네트워크를 통해 순차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전송된다(⑨, ⑩, ⑪)

자료 : Codeburst(2019. 11. 6.), How Apple Pay works under the hood?, 재구성

(2) 인증 기술

인증 기술은 온·오프라인에서 저장된 토큰과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결제하기 전에 이용자 인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다. 이용자는 자신의 편의에 따라 다양한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주요 보안인증 수단으로는 비밀번호 기반 인증, 패턴암호 인증, 지문·홍채·얼굴 인식 등의 생체정보를 사용하는 바이오 인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림2-2〉 간편결제서비스 보안 인증수단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9. 4.), 2018 정보보호 이용실태조사

(3) 통신 기술

오프라인으로 결제 시 모바일 기기와 가맹점 결제 단말기 사이의 통신 기술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먼저 MST 방식은 휴대폰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와 동일한 자기장을 발생시켜 신용카드 정보를 결제 단말기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자기장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결제 시 단말기에 가까이 접근시켜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방식은 기존의 마그네틱 방식의 결제 단말기를 비롯한 결제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범용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NFC 방식은 13.56M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해 가까운 거리에서 두 기기 간 정보를 전달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다.¹³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 카드를 단말기에 가져가면 바로 결제 처리가 되는 것이 NFC 방식의 대표적인 예이다. NFC 방식은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장점이다. QR·바코드 방식은 모바일 앱에서 QR·바코드를 통하여 거래 정보를 인식하고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결제할 수 있고, 별도의 전용 단말기가 필요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¹⁴ 다만, QR코드나 바코드가 복제, 위·변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표2-4〉간편결제 통신 기술 비교

구분	주요 특징	사례
MST 방식	- 마그네틱 신호를 사용하여 결제 정보 전송 - 기존 MS 단말기 사용 - 암호화된 일회성 결제 정보 생성	삼성페이 등
NFC 방식	- 근거리 무선 통신을 사용하여 결제 정보 전송 - 별도 NFC 단말기 필요 -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기술	애플페이 등
QR·바코드 방식	- QR·바코드 형태의 결제 정보를 스캔하여 결제 - 내장 카메라, 바코드 인식기술 사용 -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현 비용	신한 pPay, KB Pay 등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7. 8. 17.), 모바일 결제 기술 특성 및 현황, 재구성

3. 간편결제 사업자 현황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간편결제 사업자는 총 57개이다. 이들 중에서 전자금융업자는 38개, 금융회사는 16개, 그리고 휴대폰 제조사가 3개를 차지하고 있다.¹⁵ 2023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온라인 간편결제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 금융회사, 휴대폰 제조사의 온라

13. 삼성디스플레이(2023. 4. 14.), 애플 Pay 상륙이 부른 나비효과, NFC 너는 누구나
14. 한국경제(2019. 6. 21.), 더 쉽고 편리하게 진화하는 'QR결제' 서비스
15. 한국은행 보도자료(2024. 3. 18.), 2023년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인 간편결제서비스 주이용률은 각각 45%, 40%, 13%로 조사되었다.¹⁶ 특히 주이용률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서비스는 네이버페이(20%), 삼성페이(13%), 카카오페이(10%)로 금융회사의 간편결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으며 5년 전 46%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페이는 네이버파이낸셜이 2015년 6월에 시작한 간편결제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스토어¹⁷를 기반으로 다양한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적립금 지급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최근에는 사용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페이스사인(Facesign) 결제'서비스를 도입하였다.¹⁸ 또한, 네이버페이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종합 금융 플랫폼을 목표로 하여, 금융상품 비교 및 추천, 대안 신용평가 고도화 등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페이는 삼성전자에서 2015년 8월 출시한 간편결제서비스로, MST 방식과 NFC 방식으로 모두 결제가 가능하여 범용성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토큰화 기술, 지문 인식 기능 외에 기기내장형 보안요소를 탑재하여 보안성을 높이고 있다.¹⁹ 최근에는 결제서비스 이외에도 디지털 자산 조회,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자사의 스마트폰 환경에서 실물 지갑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종합 전자지갑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2014년 9월에 출시된 카카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간편결제서비스로, 널리 사용되는 메신저 플랫폼인 카카오톡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2024년 4월부터는 삼성페이와의 협력을 통해 오프라인 결제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최근에는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되어 간편결제서비스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애플페이는 미국의 IT 기업 애플이 2014년 하반기에 선보인 간편결제서비스로, 국내에서는 2023년 3월에 현대카드와 협력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NFC 기술을 활용한 빠른 결제 속도가 특징이다. 애플페이는 전 세계 75개국 약 5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2020년 기준), 약 6.1조 달러의 거래 규모(2021년 기준)를 기록하였다.²⁰ 국내에서는 2023년 6월 기준 결제 건수는 2,580만 건을 달성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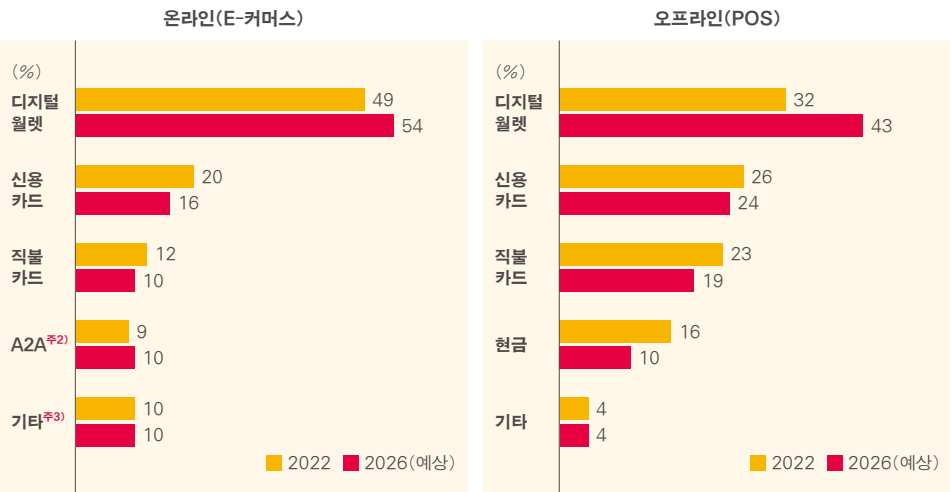
16. 컨슈머인사이트(2024. 1. 29.), '네카토'나 '삼성페이'나, 온라인 간편결제 최종 승자는
17.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쇼핑물 구축 솔루션으로, 다양한 판매 영역과 검색 결과에 상품을 노출할 수 있어 이용자를 빠르게 만나고,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추가 운영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18. 네이버파이낸셜(2024. 3. 11.), 네이버페이, AI 얼굴인식 기술 기반 '페이스사인 결제' 경희대에 첫 상용화
19. 윤종문(2015), 삼성페이가 지불결제시장에 미치는 영향 - 오프라인 모바일 결제를 중심으로, 여신금융연구소
20. 한국은행(2023. 5. 4.), 애플사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

고, 결제가 이루어진 가맹점은 10만 8천여 곳으로 나타났다.²¹ 그 외에도 애플은 애플캐시(Apple Cash)²², 애플페이 레이터(Apple Pay Later)²³ 등의 서비스를 미국에서 선보이며 금융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간편결제서비스 추이 및 향후 전망

글로벌 금융 IT기업 FIS(Fidelity Information Services)의 2023년 글로벌 결제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간편결제(디지털월렛) 비중은 온·오프라인 각각 49%, 32%에 달하고, 2026년에는 각 54%, 43%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반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실물 카드를 이용한 결제 비중은 일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2-3> 글로벌 결제 수단별 거래 금액 비중^{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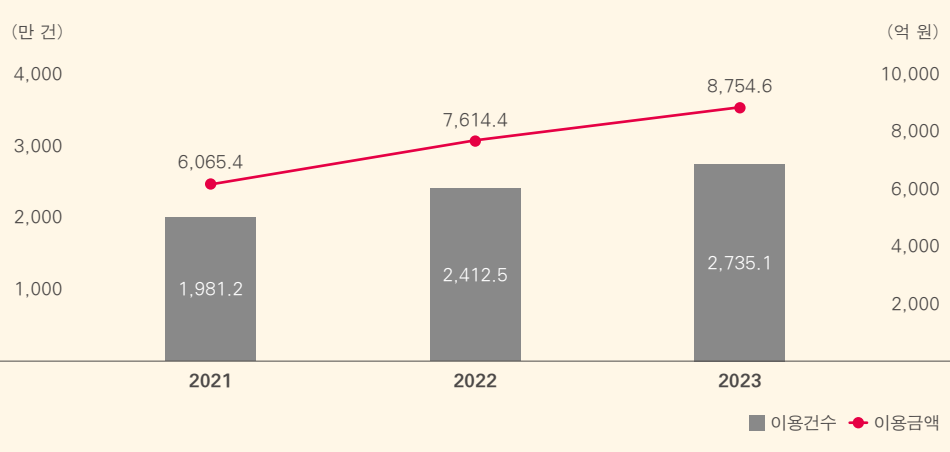


주1) 거래 금액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온·오프라인별 상위 4개 지급결제 수단까지 차트에 구성하였다.
주2) A2A(Account-to-Account)는 계좌이체에 의한 대금결제를 말한다.
주3) 기타 지급결제 수단에는 BNPL(Buy Now Pay Later), CoD(Cash on Delivery), 선불카드 등이 포함되며, 반올림으로 인해 총계는 100%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자료 : FIS(2023), The Global Payments Report

21. 딜사이트(2023. 6. 29.), 현대카드, 애플페이 석달간 2,600만 건 결제
22. 제휴은행의 애플캐시 계좌 잔액을 이용하여 결제부터 개인 간 송금 기능까지 제공하는 애플의 금융서비스 중 하나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출시되지 않았다(2024년 4월 기준).
23. 애플에서 출시한 선구매·후결제(BNPL : Buy Now Pay Later) 서비스로, 할부이자나 서비스 이용료 없이 구매 대금을 4회로 나누어 6주에 걸쳐 지불할 수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출시되지 않았다(2024년 4월 기준).

국내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규모도 해외와 유사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규모는 2,735만 건, 8,7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4%, 15.0%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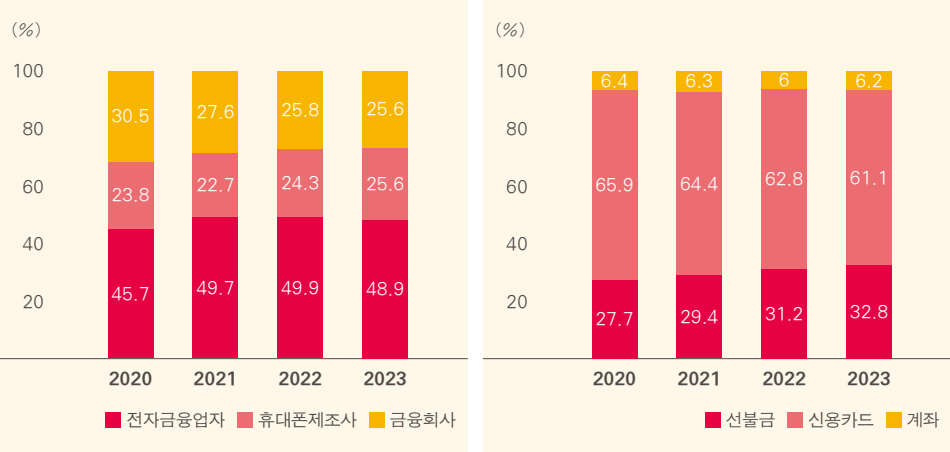
<그림2-4> 간편결제서비스 일평균 이용 현황



자료 : 한국은행(2024. 3. 18.), 2023년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서비스 제공자를 살펴보면 전자금융업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휴대폰 제조사의 비중도 2021년 22.7%에서 2023년 25.6%로 증가하였다. 한편,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서비스 방식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간편결제 비중 역시 2020년 27.7%에서 2023년 32.8%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림2-5>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업자별 비중 <그림2-6>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방식별 이용 현황



자료 : 한국은행(2024. 3. 18.), 2023년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2절 간편송금서비스

1. 간편송금서비스의 개요

간편송금서비스는 은행 계좌 또는 선불충전금 계정에 있는 자금을 보안카드나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없이 간편인증 수단(예 : 비밀번호, 지문·얼굴 등 생체정보)을 이용하여 수취인의 계좌나 선불충전금 계정으로 송금하는 서비스이다. 친구들과 식사 후 각자의 몫을 송금하거나, 중고 물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때 구매 대금을 보내는 등 간편송금서비스는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간편송금서비스는 플랫폼에서 충전된 선불전자지급수단 계정을 이용하여 송금하거나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간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포함한다.

간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크게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로 구분된다.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은 선불전자지급수단²⁴을 발행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환급하는 방식으로 송금이 이루어진다. 반면, 금융회사의 경우 자행 계좌에서의 송금은 일반적인 전자자금이체로 처리하고, 타행 계좌에서의 송금은 전자금융업자와 같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여 송금이 이루어진다. 본 절에서는 소액송금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의 간편송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2-5〉간편송금 사업자 분류

사업자	서비스 형태	예시
전자금융업자	타 지급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 후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송금	카카오페이, 페이코, 토스 등
금융회사 외 (은행·카드사)	금융회사 앱에 계좌 등록 후 간편 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송금	(은행) 하나N Wallet, 케이뱅크 킷 송금 등 (카드) 하나멤버스, 신한pay머니 등

자료 : 한국은행(2024. 3. 18.), 2023년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재구성

간편송금서비스 출시 전 기존의 인터넷뱅킹을 통한 송금은 이용자 인증 과정에서 인증서, OTP, 보안카드 정보 등의 입력을 요구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관련 규제 개선이²⁵ 이루어지면서 송금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핀테크 산업의 성장과 맞물려 토스,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송금서비스의 출시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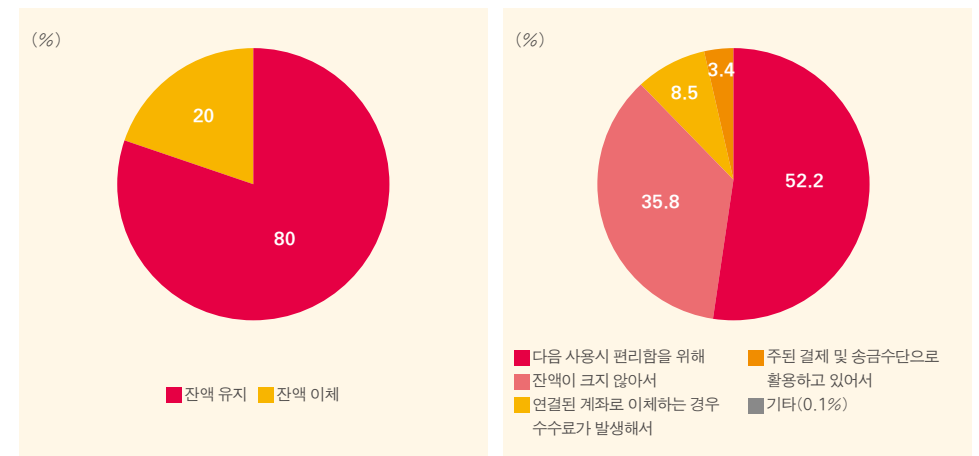
24.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전 가능한 금전적인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카카오페이 머니, 토스 머니 등을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5. 2015년 2월 시행된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폐지, 2015년 3월 시행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2016년 6월 시행된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 적용 의무 폐지 등이 이에 속한다.

이용자의 관점에서 간편송금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한다. 첫 번째는 인증 수단·접근매체²⁶의 간편화이다. 기존에는 인증서, 보안카드는 물론 고액 송금 시 전화와 ARS 인증 등의 추가 인증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간편송금은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 등만 수행하면 되어 이용이 편리해졌다. 두 번째는 편리한 앱과 빠른 속도이다. 이용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간결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송금을 안전하고 빠르게 할 수 있어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하게 된다. 세 번째는 수취인 지정의 편리성이다. 기존의 계좌번호 외에 메신저 플랫폼 내 대화상대나 연락처를 통해 수취인을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정산하기나 경조금과 같이 시나리오 기반으로 송금할 수 있어, 이용자는 상황에 적합한 송금이 가능해졌다.

사업자 관점에서도 간편송금서비스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 성장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한다. 송금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확보하여 증권, 보험 등의 금융상품·서비스를 중개·제공함으로써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간편송금을 통해 금융 플랫폼에 자금을 유치하고, 그 자금을 그대로 플랫폼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여 이용자를 확보하는 전략이 주로 사용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자금 보유는 이용자가 다음 결제나 송금을 편리하게 해주어, 예금 계좌로의 인출이나 은행 접근 필요성을 줄여준다(〈그림2-8〉참고). 일례로 간편송금업자는 최소 1만 원 단위로 이용자가 송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충전하게 유도하며, 포인트 적립과 같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지속적인 사용을 장려한다. 이렇게 사업자는 이용자를 정착시킴으로써 자산관리, 마케팅과 같은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외부 금융회사와 외부 PG사와의 거래를 줄임으로써 비용 절감도 도모할 수 있다.

〈그림2-7〉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관리 방식 〈그림2-8〉잔액 유지 방식 선택 이유



자료 : 한국은행(2022. 5.),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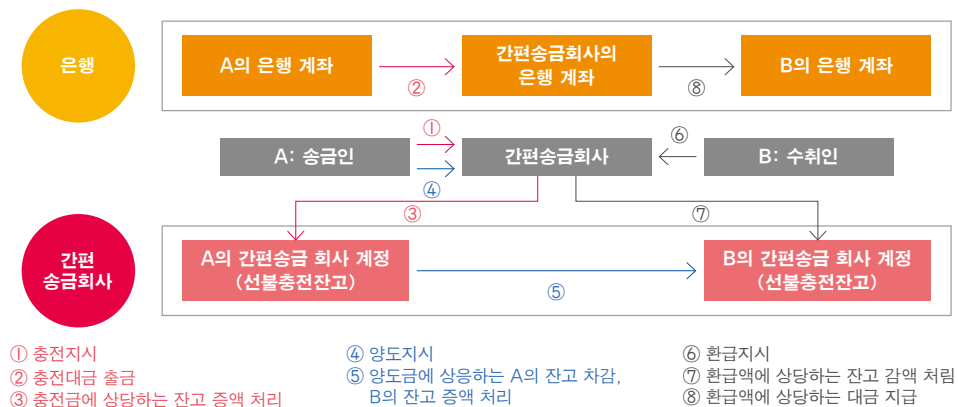
26.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을 뜻한다.

2. 간편송금 구조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들은 인터넷, 모바일뱅킹을 통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빅테크·핀테크의 간편송금에 대응하여 인증 수단을 간편화하는 등 송금 절차·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간편송금을 제공하고 있다. 송금인의 은행 계좌에서 수취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고 간편인증만으로 송금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용자의 지시 이후의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은행 등의 금융회사는 자금을 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직접 전자자금이체가 가능하므로, 자행 계좌에서의 간편송금 시에는 수취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직접 보내게 된다. 다만, 외부 금융회사에 있는 자금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도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여 자금을 보내게 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방식은 후술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처리된다.

선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간편송금은 자금이 바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여 이를 양도 및 환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송금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게 되면 송금인의 은행 계좌에서 간편송금 회사의 은행 계좌로 충전대금이 출금된다. 그와 동시에 송금인의 간편송금 회사 계정 내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고가 증액되며, 증액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수취인에게 양도되면서 수취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고에 반영된다. 마지막으로 수취인이 은행 계좌에 환급을 지시하는 경우, 환급액만큼 선불충전 잔고가 감액됨과 동시에 간편송금 회사의 은행 계좌에서 수취인의 은행 계좌로 대금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이미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수취인의 은행 계좌로 환급하여 송금하는 경우, 송금인과 수취인의 간편송금 회사 계정 사이에만 송금하는 경우 등의 다양한 간편송금 구조가 존재한다.

〈그림2-9〉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의 간편송금 구조



자료 : 박선영(2019. 3. 12.), 오픈뱅킹 구축과 핀테크 산업의 혁신, 자본시장연구원

〈Box3-5〉 간편송금 파생서비스 사례

최근 간편송금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파생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ATM출금서비스와 유스앱서비스를 들 수 있다. 다양한 파생 서비스의 등장은 간편송금업자가 생활편의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 ATM출금서비스

은행 현금카드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현금이 필요할 때 ATM에서 간편송금업자를 선택 후 기본 정보와 출금 액수를 입력한 뒤 추가 인증을 완료함으로써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이용 한도는 사업자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회 최대 30만 원, 1일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입금은 간편송금업자에 따라 서비스 지원 여부가 상이하며, ATM을 통한 계좌이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2. 유스앱서비스

유스앱서비스는 알파세대^{주1)}를 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의 소액 계정(준계좌)서비스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카오페이 미니가 있다. 입금용 체크카드와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아 결제와 ATM 입·출금,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 등이 가능하다. 휴대전화 본인인증만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편의성과 마케팅을 통해 많은 고객을 확보하였다.^{주2)}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입 대상은 만 7세 이상 18세 이하의 내국인이고, 이용 연령에 따라 만 13세 이상은 일 30만 원과 월 200만 원, 만 12세 이하의 일 15만 원, 월 100만 원의 한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스앱서비스는 이용자와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많은 금융회사의 관심을 받고 있다.^{주3)}

주1) 미출생아를 포함한 만 12세 이하(2010~2024년 출생)의 청소년을 뜻한다.

주2) 남상현(2023. 12.), 알파세대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 현황 및 시사점, 금융결제원

주3) 주간경향(2023. 9. 11.), '잘파세대' 등장, 은행권 위기일까 기회일까

3. 간편송금 사업자 현황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간편송금 사업자는 총 26개이다. 이들 중에서 전자금융업자는 19개를 차지하고 나머지 7개는 금융회사 등이 차지하고 있다.²⁷⁾

27. 한국은행 보도자료(2024. 3. 18.), 2023년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2015년 2월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의 간편송금서비스를 최초로 시장에 도입하였다.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미리 충전하지 않더라도 간편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간편송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토스는 불필요한 절차나 화면을 생략하고²⁸ 수취인의 계좌번호나 연락처, 금액, 암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하였다. 최근에는 송금 외에도 계열사인 토스증권, 토스뱅크를 인수 및 설립함으로써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2016년 4월 메신저인 카카오톡 기반의 간편송금서비스를 출시하였다. 카카오톡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락처에서 수취인을 선택하고 송금 금액을 입력한 다음 간편인증 수단을 거치면 간편하게 송금을 완료할 수 있다. 예금 계좌에서의 자금인출, 송금 방식은 토스와 거의 동일하다. 또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연락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수취인에게 송금할 수 있는 계좌 송금과 QR송금, 더치페이, 예약송금 등 이용자의 다양한 생활 방식과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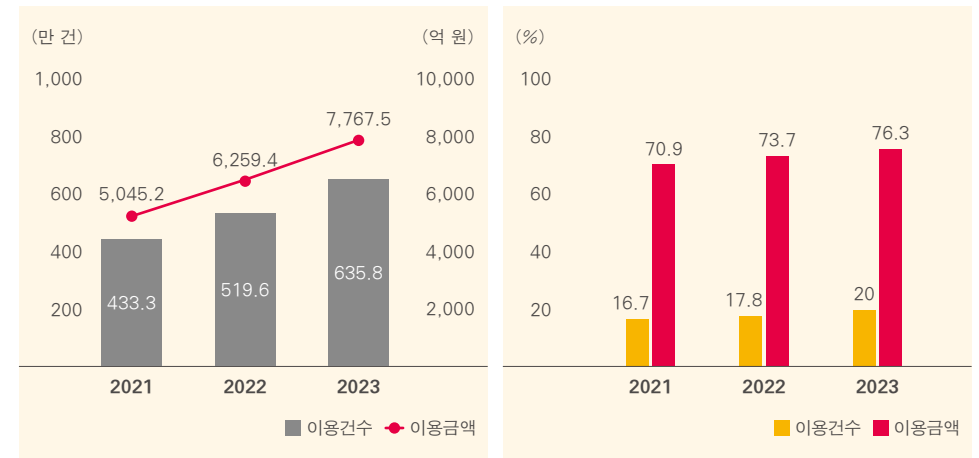
4. 간편송금서비스 추이 및 향후 전망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선불충전금 기반 간편송금서비스 이용건수는 일평균 약 636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하였고, 이용금액도 약 7,7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1% 증가하여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에서 간편송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증가하여 이용건수는 2023년 20.0%, 이용금액은 2023년 7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 전자신문(2019. 8. 30.), 간편송금 '토스' 송금액 1조원 돌파...핀테크가 금융 판 바꿨다

29. 전자신문(2018. 9. 3.), 카카오, 경조사문화까지 바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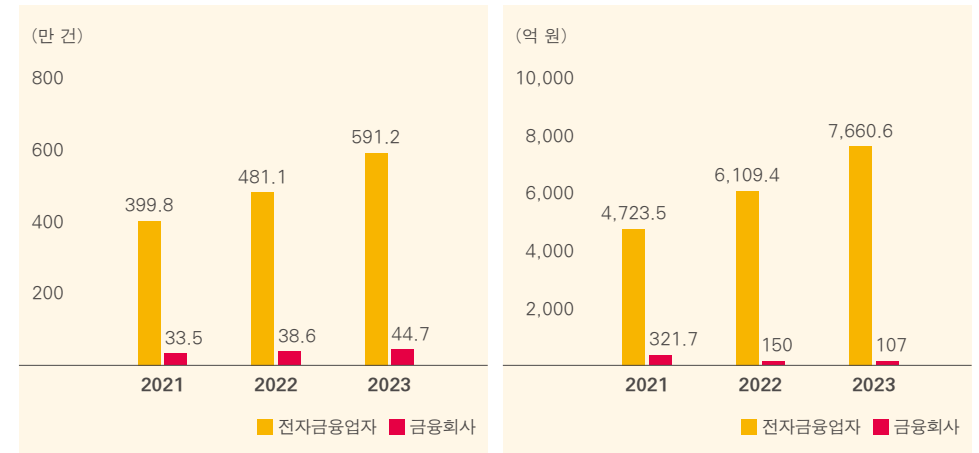
〈그림2-10〉 간편송금서비스 일평균 이용 현황 〈그림2-11〉 선불전자지급수단서비스 일평균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 대비 간편 송금 비중



자료 : 한국은행(2024. 3. 18.), 2023년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사업자별 비중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전자금융업자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³⁰,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 간의 차이도 증가하고 있다.

〈그림2-12〉 간편송금 사업자별 이용건수 현황 〈그림2-13〉 간편송금 사업자별 이용금액 현황



자료 : 한국은행(2024. 3. 18.), 2023년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30. 2023년 기준 전자금융업자의 이용 건수 및 금액 비중은 각각 93.0%, 9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2024. 3. 18.), 2023년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3절 기타 결제서비스

1. 후불결제서비스

가. 후불결제서비스 개요

후불결제서비스 중 하나인 BNPL(Buy Now Pay Later)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 BNPL은 상거래 시 소비자가 물품을 먼저 수취하고, 구매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는 후불결제서비스이다. 전통적인 신용평가를 대신하여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 기반의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 BNPL의 큰 특징이다. BNPL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썬파일러(Thin Filer) 계층도 신용카드와 같은 양질의 후불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BNPL서비스는 해외에서 먼저 출시되어 성장하였다. 해외의 신용카드 사용 환경 측면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준의 신용(credit score)이 쌓여 있어야 하고, 신용카드 발급 절차가 복잡하며, 카드 보급률이 낮고, 할부 방식이 주류여서 높은 이자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BNPL은 신용카드와 동일한 후불결제이면서 별도의 신용점수를 체크하지 않거나 간단한 신용만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금융권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받지 않으며,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가운데 BNPL을 사용한 비중은 50%에 달하며, 이 중 48%가 신용카드 보다 BNPL서비스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³¹ 반면 국내는 신용카드 보급률이 높고, 무이자 할부 결제 및 휴대폰 소액결제 등 후불결제 이용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썬파일러 등 금융소외계층에게는 접근성이 제한적인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국내에서는 빅테크 중심으로 썬파일러 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 BNPL서비스 제공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액 BNPL서비스는 소비자에게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면서 18세 이상이라면 앱 설치를 통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어 이용 접근성이 높은 결제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표2-6〉 소비자의 BNPL 사용의 주요 장단점

장점	단점
구입 비용 없이 필요한 물건 구입	과잉 지출 가능성
무이자	연체 시 수수료와 이자 적용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연체 시 영향 가능성
원하는 물건을 구입 가능	불필요한 구매를 하게 될 가능성

자료 : Mary-Ann Marriott(2023. 8. 14.), Buy Now, Pay Later, Allan Marshall

한편, BNPL 운영구조를 살펴보면, BNPL 제공업체의 주요 수입원은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이다. BNPL 제공업체 측면에서 서비스 플랫폼 개발·유지와 고객지원, 신용조사 및 마케팅을 수행하는 데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소비자가 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일례로 BNPL 결제 비중이 높은 스웨덴의 BNPL 제공업체들은 최근 몇 년 동안 큰 손실을 입었다고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BNPL서비스가 지속되는 이유로 대규모 이용고객을 확보한 이후에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나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³²

해외의 경우 가맹점으로부터 5~6%의 수수료를 받는데 이는 통상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2~4%보다 높다. 가맹점이 신용카드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도 BNPL서비스를 채택하는 주요 이유는 고객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판매자가 고객에게 결제 옵션으로 BNPL을 제공했을 때 장바구니에서 구매 포기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재구매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³³ ³⁴ 또한, BNPL서비스는 지정된 기간 동안 대금을 상환하는 특성으로 잠재적 구매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또 다른 이점으로는 가맹점이 신속하게 판매 대금을 정산 받을 수 있고 BNPL 제공업체가 신용제공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가맹점은 지급거절 및 사기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특히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BNPL 서비스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맹점이 결제 옵션으로 BNPL을 추가하는 것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가맹점은 BNPL 제공업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맞춤 서비스나 마케팅으로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일례로 BNPL 제공업체는 틱톡(TikTok)이나 인스타그램(Instagram) 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품의 홍보, 세일 이벤트,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 포인트를 주는 이벤트를 제공하기도 한다.^{35 36}

31. Liberty korea post news(2023. 11. 16.), 일단 사고 나중에 결제, 소액 후불결제(BNPL) 제도화 추진… 부작용은 어떻게

32. Sveriges Riksbank(2023. 9.), Buy now, pay later – a threat to financial stability, 스웨덴 중앙은행

33. Payments Canada(2022. 1. 14.), Buy now, pay later – Is it here to stay

34. J. Alcazar and T. Bradford(2021. 11. 10.), The Appeal and Proliferation of Buy Now, Pay Later : Consumer and Merchant Perspectives,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35. Emily Schinella(2023. 8. 9.), What Is Afterpay Day? : All You Need To Know

36. NAVER(2022. 4. 27.), 후불결제 1% 추가 적립 이벤트

〈그림2-14〉 Afterpay 이벤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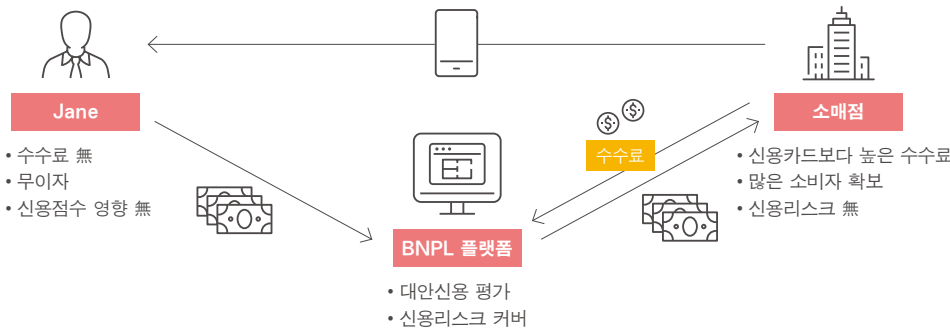


자료 : Afterpay

나. BNPL서비스 절차 및 사례

일반적인 BNPL서비스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Jane이 온라인 소매점(BNPL 가맹점)에서 800달러짜리 스마트폰을 구입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는 전액을 지불하는 대신 BNPL서비스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Jane은 결제 과정에서 BNPL 옵션을 선택하여 자신의 이름, 이메일 주소, 결제 세부정보 등 몇 가지 기본 정보를 입력한다. BNPL 제공업체는 Jane의 신용 점수 및 구매 내역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Jane의 신용도를 평가한다. 승인이 이루어지면, 비용 지불 없이 구매를 완료할 수 있다. BNPL서비스는 Jane 대신 스마트폰 비용 전액을 소매점에 지급한다. Jane은 스마트폰을 받은 이후 800달러를 소액으로 분할 상환한다. 예를 들어, 지불액을 각각 200달러씩 4번으로 나누어 2주마다 지불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BNPL 제공업체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Jane은 이자나 수수료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 BNPL서비스는 할부금을 제때에 납부하는 경우 무이자로 제공하는 반면, 연체대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Jane은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필요 없이 즉시 스마트폰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약속한 기일에 대금을 납부하는 한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고 대금 납부를 분산할 수 있어 현금 흐름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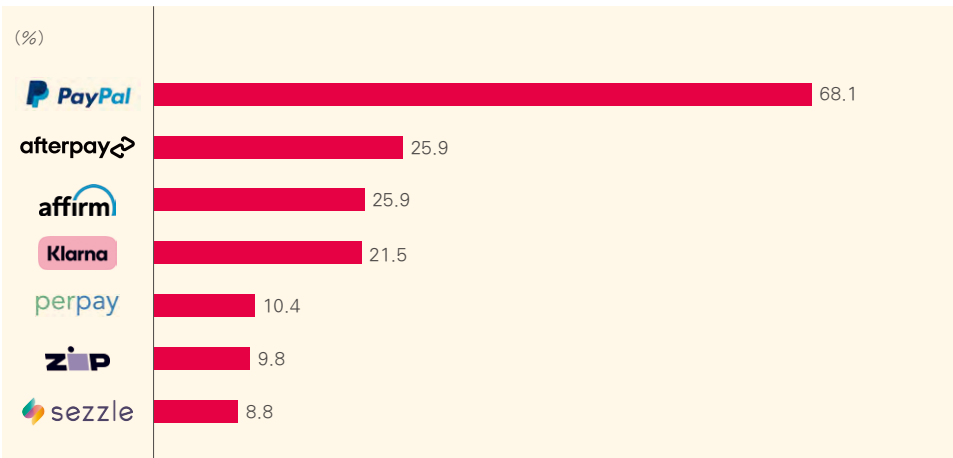
〈그림2-15〉 BNPL서비스 사례



자료 : BIS 재구성

Amazon 및 Walmart와 같은 대형소매업체의 BNPL 제공도 확대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소매점이 Klarna, Sezzle, Afterpay, Zip, Affirm, PayBright 등의 BNPL 제공업체와 제휴하여 BNPL 결제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의 BNPL 제공업체는 보통 구매 가격의 25%를 즉시 납부 받고 75%는 3회 이상 무이자 할부로 받고 있다. 호주의 BNPL 제공업체 에프터페이(Afterpay)는 성인의 38%가 이용 경험이 있을 만큼 대중화되어 있다.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영국 성인의 27%(약 1,400만 명)가 6개월 동안 최소 한번 BNPL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⁷

〈그림2-16〉 2023년 미국의 BNPL서비스 사용률



자료 : Statista³⁸

하지만, BNPL은 사용자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최근의 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미국의 BNPL 사용자는 비사용자보다 부채가 더 많고 신용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NPL 사용자가 비사용자보다 연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부양책이 2021년에 중단됨에 따라 BNPL 연체율은 동일 기간 신용카드 연체율의 4배까지 증가하였다.³⁹

37. Financial Conduct Authority(2023. 10. 31.), FCA secures contract changes for buy-now-pay-later customers as more consumers use the product
 38. Statista(2023. 11. 2.), Buy Now, Pay(Pal) Late
 39. Berg et al(2021), The allure of cost-free borrowing can push households towards overborrowing ; Mason et al(2022), a trend amplified by the growing smartphone reliance of newer generations

다. BNPL 규제 현황^{40 41}

BNPL서비스의 이용 확대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로 BNPL에 대한 규제가 논의되거나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BNPL 제공업체의 자율 규제부터 관련법에 BNPL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BNPL서비스가 기존 신용관련 규제 체제 내에 포함되지 않는 신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가에서 BNPL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과도한 부채로 이어질 수 있는 신용제공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호주는 2023년 5월 BNPL 규제를 포함하는 「소비자 신용보호법」(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개정 초안을 공개하여 맞춤형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에는 BNPL 제공업체가 신용·대출 서비스기관 라이선스(Australian credit licence)를 취득하고 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호주금융산업협회는 BNPL 행동강령을 통해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윤리적인 영업, 사용자 수수료, 연체 등에 관한 정보제공, 고객평가를 통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모범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⁴²

영국은 2023년 2월 BNPL 규정 초안인 「Regulation of Buy-Now Pay-Later」를 발표하였으며 2년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완료될 예정이다.⁴³ 규정에는 BNPL 제공업체가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관측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규제와 소비자 신용 규칙준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BNPL 관련 규정이 다르다. 일부 주에서는 BNPL 라이선스 또는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소비자 신용법」(Consumer Credit Act)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한편, 2023년 12월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은행이 제공하는 BNPL의 위험 관리에 관한 지침⁴⁴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에서는 은행이 BNPL서비스를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과 고객에게 금융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BNPL서비스와 관련하여 은행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위험과 신용 위험 관리, 신용 조사기관의

40. BIS(2023. 12. 4.), Giulio. etc., Buy now, pay later : a cross-country
41. BIS, Buy now(2023. 12. 4.), pay later : a cross-country analysis, BIS Quarterly Review
42. Australian Finance Industry Association(2021. 3. 1.), Buy Now Pay Later Code of Practice,
43. HM Treasury(2023. 2. 14.), Regulation of Buy-Now Pay-Later : consultation on draft legislation
44. OCC(2023. 12. 6.), Retail Lending : Risk Management of 'Buy Now, Pay Later' Lending

기록 참조, 운영 위험 관리, 제3자 위험 관리,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이사회(EC)가 2023년 10월 「소비자 신용지침」(Consumer Credits Directive, CCD)⁴⁵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BNPL 제공업체의 라이선스 취득, 감독대상으로의 지정, 무분별한 신용제공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EU 회원국은 동 개정안을 2년 이내 자국 내 법으로 수용해야 한다.⁴⁶ 한편, 일부 EU 회원국 내에서는 BNPL 제공업체들이 자체 행동강령(2023. 10.)⁴⁷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행동강령에는 관련 법 적용 이전에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소비자에게 BNPL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 재정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자에게 BNPL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 대금을 연체한 소비자에게 새로운 BNPL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 연체 수수료 부과 시 상한선 적용, 행동강령 수준과 준수여부의 적정 기준 관련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2022년에 BNPL 관련 자율 규제 접근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는 신용평가에서부터 공시, 마케팅 전략, 신용정보 공유까지 BNPL 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핀테크 협회(Singapore FinTech Association, SFA)⁴⁸는 2022년 11월에 BNPL 행동강령⁴⁹을 발표하였으며, 모든 기존 및 신규 BNPL 제공업체가 2023년 11월부터 동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함을 공지하였다. BNPL 행동강령에는 소비자의 과도한 부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둘 것을 규정하며 업계 모범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SFA는 BNPL 제공업체가 소비자 연체 데이터를 민간 신용조사기관에 제공하고 모든 BNPL 제공업체가 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BNPL 제공업체에 동 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2024년 3월까지 SFA의 인증(유효기간 3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내 BNPL서비스는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받아 제공되고 있으며, 2023년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4년 9월부터 선불업자가 BNPL서비스를 정식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45. Revised Consumer Credit Directive(2023/2225/EU)
46. Loyens Loeff(2023. 11. 17.), Regulating Buy Now, Pay Later: code of conduct and revision of Consumer Credits Directive
47. Buy Now, Pay Later(BNPL)-Gedragscode(2023. 10. 30.)
48. SFA는 비영리 조직으로 싱가포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참가자(회원 약 800기관 이상)와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혁신 기업부터 대규모 금융기업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 이르기까지 핀테크 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표한다. SFA, singaporefintech.org
49. SFA, BNPL Code of Conduct,

2. 사용자 경험 기반 서비스

가. 사용자 경험 기반 서비스 개요

지급결제분야에서 사용자 경험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서비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용자들은 복잡한 결제 과정보다는 빠르고 편리한 결제 경험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은 어떠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을 의미하며, 서비스 전후에 사용자의 느낌, 선호도, 지각, 정신적 반응이나 행동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⁵⁰ 사용자 경험은 과거와 현재의 경험이 미래에 사용자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들은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고 사용자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기 위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있다.

전자지급서비스 제공자들은 온·오프라인에 적용되는 결제 인터페이스를 쉽게 만들고 사용자 요구를 예측하여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에서 결제 앱 또는 웹사이트의 UI 디자인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구성하고, 사용자가 검색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며,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자사 서비스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용자 경험의 중요성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하는 과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쇼핑몰은 사용자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및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을 완료해야 하며, 정보를 잘못 입력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쇼핑몰에서는 사용자가 물건을 선택한 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결제가 완료된다면, 사용자 만족도를 측정하지 않아도 비슷한 가격이라면 두 번째 쇼핑몰을 선호하는 사용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사용자 경험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급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차별화 전략에 사용자 경험 요소를 포함시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편의성 있게 개선하고 보안기술과 인증기술, 통신기술을 적용하여 결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개선을 하고 있다. 간편결제서비스 이전에는 결제 시 사용자에게 기본 결제정보와 보안에 사용되는 정보를 매번 요구하였다면, 간편결제서비스를 도입하여 기본결제 정보를 서비스제공자가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사용자는 인증만 수행하게 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있다.

50. 황성원, 김현석(2019. 8.), 패스트푸드점의 무인주문결제 키오스크 사용자 경험 연구, JDCS

이와 함께 은행, 카드사 등의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사용자 경험 개선을 통해 단순히 결제서비스뿐만 아니라 앱에서 송금, 대출, 보험, 환전, 선불, 해외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락인(lock-in)효과를 얻으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Box3-6〉 사용자 경험 요소



사용자 경험에 대한 연구는 1971년^{주1)} '사용하기 쉬움(ease of use)'의 정도를 측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관련 국제표준인 ISO/IEC 25010^{주2)}의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품질 요구 사항 및 평가-제품 품질 모델」에서는 사용자 경험을 나타내는 상호작용 능력(interaction capability)에 대해 인식 가능성(appropriateness recognizability), 학습 가능성(learnability), 운용성(operability), 사용자 오류보호(user error protection), 사용자 참여(user engagement), 포괄성(inclusivity), 사용자 지원(user assistance), 자기 설명성(self-descriptiveness)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주1) Miller(1971), Human ease of use criteria and their tradeoffs, IBM

주2) ISO/IEC 25010:2023, Systems and software engineering – Systems and software Qual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SQuaRE) – Product quality model

사용자 경험 요인 구분 요소

구분	설명
인식 가능성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요구에 적합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
학습 가능성	특정 사용자가 지정된 시간 내에 서비스 기능의 사용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정도
운용성	쉽게 작동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및 특성을 갖는 정도
사용자 오류보호	작동 오류를 방지하는 정도
사용자 참여	사용 독려와 동기부여하는 방식의 기능과 정보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장려하는 정도
포괄성	다양한 배경(예 : 다양한 연령, 능력, 문화, 민족, 언어, 성별, 경제적 상황 등)의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사용자 지원	정해진 사용 범위에서 지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 능력(장애 포함)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자기 설명성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타 자료(예 : 사 용 자 설명서 등)의 과도한 참고 없이 제품의 기능과 사용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정도

나. 사용자 경험 향상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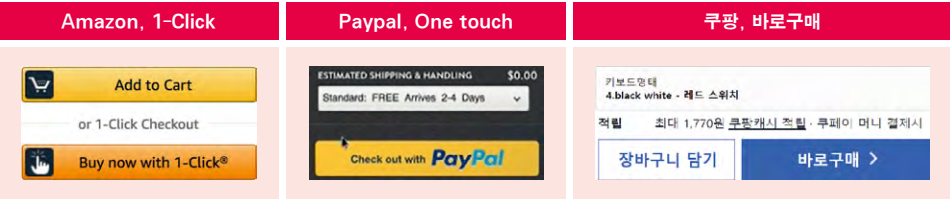
최근 IT 기반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급결제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존 금융 회사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력 확보·강화를 위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자사 서비스에 어떠한 사용자 경험 요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경험 요소를 보다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경험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개선이다. 이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시각적으로 매력적이고 기능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고, 사용자가 원하는 요소를 효과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자신감과 편안함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결제 프로세스의 간소화도 사용자 경험 개선 요소이다. 예를 들어 Amazon, Paypal, 쿠팡 등은 ‘원클릭’ 결제 옵션으로 사용자가 손쉽게 구매를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복잡한 입력 및 추가 인증절차 없이 한 번의 클릭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를 완료할 수 있다. 또한, 저장된 결제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사용자 결제 페이지에서 결제 정보의 저장 기능과 구독 또는 반복 결제 기능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매번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다. 미국의 한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우 ‘One

Touch’ 모바일 앱서비스를 출시하여 6개월 만에 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며 사용자 경험 개선 효과를 보여준 바 있다.⁵¹

〈그림2-17〉 사용자 경험 사례



자료 : 각 사 홈페이지

또 다른 사용자 경험 향상 시도로 사용자가 인증절차를 수행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인증절차가 수행되는 무자각 인증 결제서비스도 있다. 생체 인식을 기반으로 한 무자각 결제가 현재 오프라인 무인 매장에서 시도되고 있다.⁵² 사용자의 신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시간 기반 인증방식과 특정 이벤트나 상태정보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 신원을 확인하는 이벤트 기반 방식이 이용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Amazon의 ‘Amazon Go(아마존 고)’인데, 고객이 제품을 들고 나가면 카메라와 센서가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어떤 제품이 바구니에 담겼는지 식별하여 결제를 완료하게 되며, 결제 시 이용자의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⁵³

다음은 보안 강화 경험 즉, 사용자의 결제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일례로 실시간 결제 알림이 있다. 결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림을 보내는 것은 사용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또한, 결제 상태의 실시간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가 결제 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 사용자 정보의 안전함과 결제 시스템의 신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다른 요소인 개인화된 추천 및 프로모션 제공은 사용자의 구매 이력과 선호도를 기반으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게 해준다. 사용자 결제 시에 BNPL서비스나 계좌이체와 같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결제시간, 장소, 금액 등의 정보를 수집·활용하여 쿠폰, 상품, 대출 등의 서비스로 개인화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

51. Paypal News room(2015. 12. 21.), 10M+ People Use One Touch™ Just Six Months After Launch
52. ETRI(2018. 2. 1.), 기존 인증과 무자각 지속인증의 차이점, 전자통신동향분석
53. Amazon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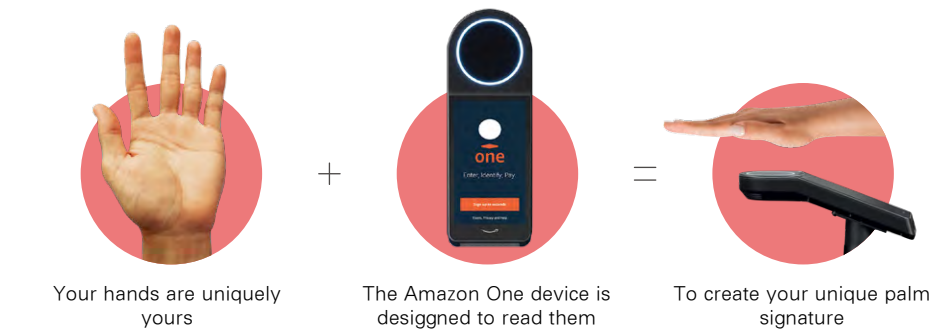
다. 서비스 사례

(1) Amazon One서비스⁵⁴

아마존은 2020년 9월 생체인증 기반의 손바닥 서명 Amazon One서비스를 선보였다. 오프라인 매장 출입 시 손바닥 정맥을 사용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결제 시에도 신용카드나 모바일 대신 손바닥을 사용한다. 이 서비스는 아마존고 매장에 우선 적용되고 있다. 작동방식은 Amazon One 장치가 손바닥 이미지를 캡처하여 암호화하고 사용자의 손바닥 특징점을 추출하여 고유한 손바닥 서명을 생성한다. 생성된 손바닥 서명은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손바닥 서명 정보는 Amazon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매장 방문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부가적으로 운전면허증, 신분증 등의 연결 서비스 등록 후 담배, 주류 등 연령 제한이 있는 상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그림2-18〉 Amazon One서비스 예시



자료 : Amazon One 홈페이지

(2) Alipay서비스

알리페이(Alipay)는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전자상거래서비스로 신용카드가 보편화되지 않은 중국에서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알리페이 앱에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하면서 빠르게 성장하였다. 알리페이서비스는 온·오프라인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며 온라인 가맹점으로는 알리바바 그룹 계열사인 타오바오와 TMall 등이 있으며 그 외 온라인 마켓 등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에서는 사용자가 모바일 QR코드를 제시하여 가맹점의 스캔을 거치거나 판매자가 제시하는 QR코드를 사용자가 모바일로 스캔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러한 방

54. Amazon One 홈페이지

식으로 대형 마켓에서부터 POS 단말기가 없는 작은 상점에 이르는 다양한 오프라인 사용처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알리페이는 간편결제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속 서비스를 결합하여 사용자 경험을 높이고 있다. 알리페이는 디지털지갑과 간편결제서비스를 국가간 거래로 확장시켜 현지 통화로 결제할 수 있게 하고, 구매자가 상품을 받아 확인할 때까지 결제를 보류하는 에스크로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대출, 보험, 공공요금, 신용평가 조회 등의 금융서비스와 항공편 예매, 음식배달 등 생활 속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3) 자동차 결제서비스

자동차 결제서비스는 자동차 내에서 차량과 관련된 서비스 등의 이용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의 상용화, 자율주행 차의 개발, 커넥티드카 확산, MZ세대의 영향, 인구의 노령화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드라이브 스루⁵⁵를 통해 자동차 결제에 대한 관심과 성장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국내 자동차 결제는 주로 커넥티드카(connected car)⁵⁶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현재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 주유비, 주차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2-7〉 커넥티드카 결제 사례

업체명	페이명	특징
현대자동차	현대페이	주유소, 전기차 충전소, 주차비용 차량 내 결제
기아	기아페이	
제네시스	제네시스 카페이	주유소, 주차비용 차량 내 결제 비밀번호 또는 지문인증으로 결제
르노삼성 자동차	인카페이먼트	주유소, 주차장, 식당, 카페 등 차량 내 주문 및 결제
포르쉐	포르쉐파킹	실시간 주차요금 확인 및 차량 내 결제

자료 : 국민일보⁵⁷, 각 사 홈페이지

현재로서는 결제 가능 대상이 많지 않으나 향후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전기차 충전 시간 동안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부가서비스에 대한 결제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는 급속충전의 경우 약 40~50분이 소요되며, 전체 충전에 최소 6시간에서 최대 10시간이 소요된다. 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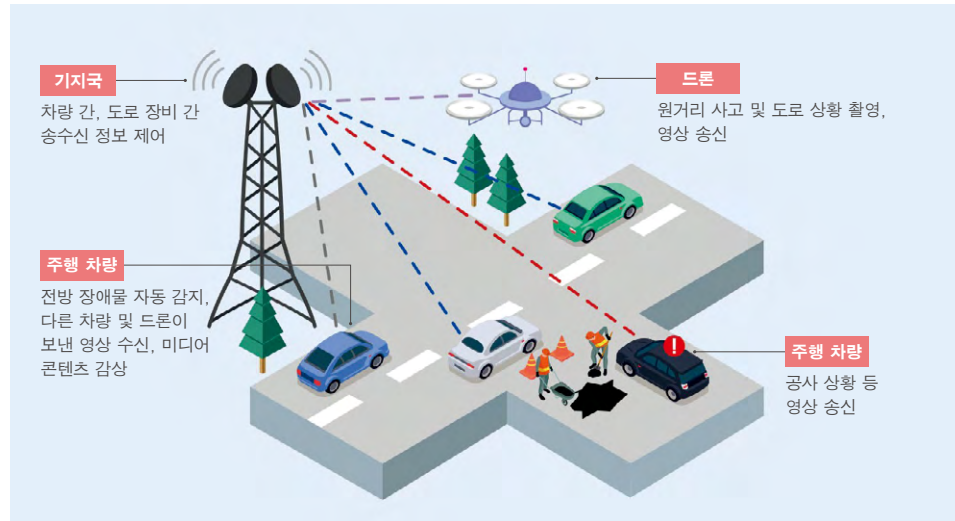
55. 주문한 상품을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운영방식 중 하나이다.

56. 커넥티드카(connected car)는 다른 차량이나 교통 및 통신 인프라 등과 실시간으로 통신하며 운전자의 편의를 돕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도로교통공단

57. 국민일보(2021. 6. 17.), 차에서 결제하고 차에서 커피받고

인해 사용자는 차량 충전시간 동안 차 안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활용하여 미디어 콘텐츠나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자율주행이 도입될 경우 자동차가 게임, 운동, 업무 등의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 결제 관련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2-19〉 커넥티드카 개념도



자료 : 도로교통공단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차에서 필요한 기능이 음식, 연료, 주차비용의 차량 내 결제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 주차 정보, 실시간 교통정보의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수신 등이 우선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미 많은 자동차가 LTE 또는 5G를 이용하여 온라인에 연결해 다양한 차량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운전자 보험가입 시 커넥티드카 보험할인 등의 서비스를 들 수 있다. 향후에는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 기반의 결제서비스도 자연스럽게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간 지급거래 확산



국가간 지급거래(cross-border payments)¹란 각기 다른 국가에 속하는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의 자금 이동 거래를 의미한다. 국가간 지급거래는 넓은 의미에서 ‘결제(payment)²’와 ‘송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³와 BIS 등 국제기구는 국가간 ‘결제’의 경우 주로 상거래 대금 지급과 관련되고 ‘해외송금’은 비상업적인 개인 간 소액 자금이체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국가간 지급거래 중 다수는 송금인과 수취인이 서로 다른 통화로 지급 및 인출하는 교차 통화 결제를 포함한다. 한 국가 내 지급거래와 달리 외환거래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거래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중간에 개입되어 있는 중개기관의 수도 많다.

1. “cross-border”라는 용어를 ‘국경 간’으로 번역하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국가간’으로 통일하여 서술하였다.

2. payment는 일반적으로 ‘지급’ 또는 ‘지급결제’라고 번역하나, 본고에서는 해외송금과 구분의 편의상 ‘결제’라고 서술하였다.

3. 국제적인 수준에서 금융 당국과 국제 표준 설정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와 각국 중앙은행, 재무부, 감독기구 등이 회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도 회원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국가간 온·오프라인 상거래 활성화와 함께 전자적 장치에 카드 정보 등 기초 지급수단을 저장하고 거래 시 간편 인증수단을 활용하는 ‘국가간 간편결제서비스’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오프라인 결제 시장의 성장은 코로나19 사태가 공식적으로 해제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외국 현지에서의 거래가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 전자상거래 결제 시장의 성장은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의 증가 및 IT 기술의 발전으로 직구·역직구 규모가 증가한 것이 그 배경에 있다. 국가간 결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외 이주 노동자 및 유학생이 많아짐에 따라 비상업적인 ‘개인 간 해외 송금’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책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국가간 지급거래 시장을 ① 거액결제(wholesale payments), ② 소액결제(retail payments), ③ 해외송금(remittances) 세 부문으로 나누고 있다. 먼저 ‘거액결제’ 시장부문은 금융회사(은행과 비은행 모두 포함) 간 결제로 정의된다. 이는 국가간 지급거래 금액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소액결제나 해외송금에 비하여 거래건수 자체는 작으며 대부분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ing)’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국가간 ‘소액결제’ 시장부문은 금융회사 간 결제를 제외한 나머지로 거액결제 부문에 비하여 거래건수는 많지만 거래금액은 작다. 소액결제에는 개인·기업·공공부문이 개입된 국가간 오프라인 상거래 결제, 전자상거래 결제, 전자자금이체 등이 포함되며 B2B(거액거래 제외)·B2P·P2B·P2P 거래로 분류되기도 한다. 다만, 소액결제 시장 부문의 개인 간 거래(P2P)는 ‘해외송금’으로 정의되는 개인 간 거래와 분리하기 위해 ‘기타 P2P 거래’라는 이름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타 P2P 거래’의 종류에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상품 판매 대금 지급 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 지불과 관련된 개인 간 거래⁴와 유학생 자녀의 학비를 보내는 가족 간 지급거래가 포함된다.⁵

마지막으로 ‘해외송금’ 시장부문의 지급거래란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내는 비상업적인 소액(건당 200달러)의 자금이체로 정의되며 주로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이하 EMDE)’으로 흘러가는 송금 거래를 의미한다.⁶ 해외송금서비스의 주요 이용자는 해외 이주 노동자들인데 이들의 본국 송금 영향으로 인해 대부분의 송금 흐름이 고소득 국가에서 저소득·중간소득 국가(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이하 LMICs)로 향하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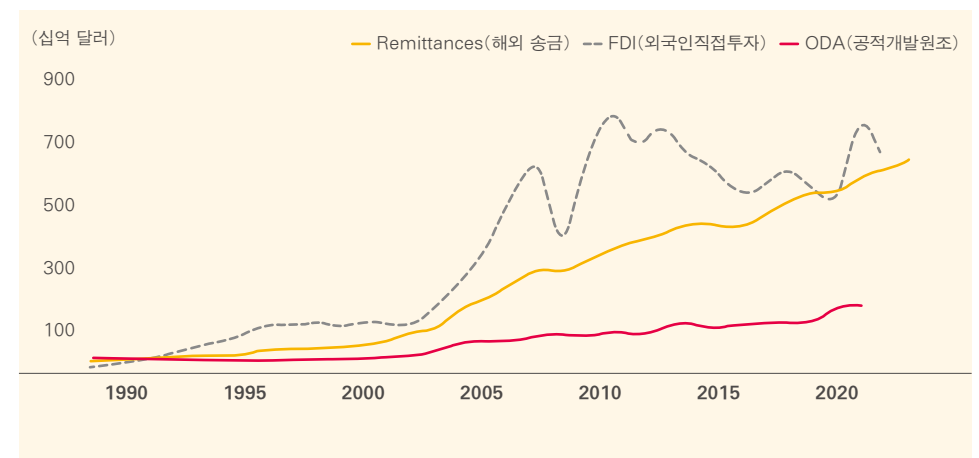
4. FSB(2021. 10. 13.), Targets for Addressing the Four Challenges of Cross-Border Payments, p.7.

5. FSB(2022. 11. 17.), Developing the Implementation Approach for the Cross-Border Payments Targets, p.17.

6. 세계은행은 2009년 9월부터 해외소액송금비용 통계 데이터틀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 송금 통로를 통하여 돈을 보낼 때 송금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모니터링하여 분기별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 기준 48개 송금국가와 105개 수취국가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송금서비스는 일반적으로 EMDE 국가 출신의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최초로 이용하게 되는 금융서비스이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해외송금은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 국민의 여타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포용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⁷ BIS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간 송금의 디지털화로 편의성이 높아지면 계좌에 대한 접근성과 사용이 증가하여 금융포용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더불어 2020년 국가간 송금흐름의 규모가 외국인직접투자(FDI)⁸와 공적개발원조(ODA)⁹에 따른 국가간 자금 이동 규모를 추월했다는 점에서 해외송금은 경제발전 측면에서도 관심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림3-1〉 연도별 해외송금, 외국인직접투자, 공적개발원조 규모 비교



주) 2021~2023은 예상치

자료 : WB(2022. 5.), Implications of the Ukraine crisis and COVID-19 on global governance of migration and remittance flows, p.3.

다음 절에서는 일반적인 최종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액결제’ 시장 부문과 ‘해외송금’ 측면에서 국가간 지급거래가 확산되는 양상과 그 배경, 관련 법·제도, 그리고 시장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7. 해외송금과 기타 P2P 송금거래의 구분은 G20 국가가 해외송금시장 개선에 부여한 특별한 중요성 등이 고려되었다.

FSB(2021. 10. 13.), Targets for Addressing the Four Challenges of Cross-Border Payments

8.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 국경 간 자본이동의 한 종류로 외국에 있는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등 영속적인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한다.

9.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그 집행기관들이 양허적 성격으로 국제기구 또는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표3-1〉 국가간 지급거래 시장의 구분

구분		내용	건당 거래금액 ^{주1)} 및 데이터 출처
거액 결제	Wholesale payments	금융회사 간 거래	- \$100,000 이상 - SWIFT ^{주2)}
소액 결제	Retail payments	개인·기업·공공 부문이 개입된 상업적인 거래 - B2B·B2P·P2B·기타 P2P(해외송금 제외) - (예) 상거래, 전자상거래, 관광, 해외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청구서 결제 등 대금 지급, 유학생에 대한 송금	- \$100,000 미만으로 정의하지만 FSB에서 사용가능한 데이터는 \$100~\$20,000 범위 - FXC Intelligence ^{주3)}
해외 송금	Remittances	해외에 있는 가족·친구에게 보내는 비상업적인 P2P 소액 송금 - (예) 해외 이주 노동자의 본국 송금	- \$200 또는 \$500 ^{주4)} - World Bank(RPW)

주1) FSB는 G20국이 승인한 국가간 지급거래 목표 달성 프로젝트를 위해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정도 측정이라는 실무적인 목적에 한해서 각 시장 부문을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하였다.

주2)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스위프트) : 국제 금융, 외환 거래 등에 수반되는 국제 은행 간의 자금결제와 금융 관련 메시지를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1970년대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주3) FXC Intelligence : 국가간 결제 관련 데이터 셋을 수집·제공하는 금융데이터 관련 기업으로 2023년에 FSB로부터 소액결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주4) 해외송금 데이터는 세계은행(WB)이 매분기마다 발간하는 Remittance Prices Worldwide(RPW) 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이는 신흥 및 개발도상국으로 송금하는 전형적인 두 가지 거래 규모를 반영한 금액이다.

자료 : FSB(2020. 10.), Targets for Addressing the Four Challenges of Cross-Border Pay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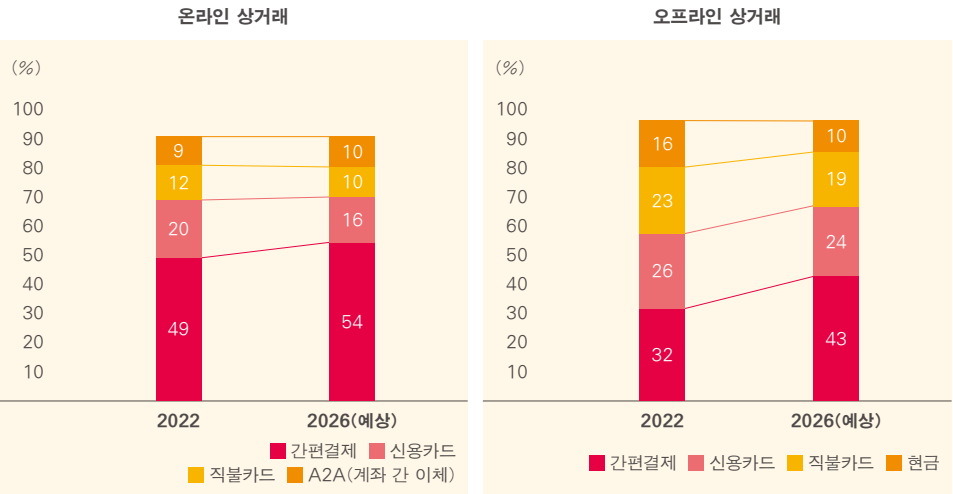
1절 국가간 지급거래의 확산 배경

1. 국가간 결제·송금 관련 환경 변화

가. 소액결제

국가간 결제 부문은 간편결제(digital wallet)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간편결제’란 전자적 장치(모바일 디바이스·앱)에 은행 계좌 정보·카드 정보·선불충전금을 저장하고, 거래 시 간편 인증수단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모바일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애플페이(Apple Pay)·삼성월렛(Samsung Wallet)과 앱을 기반으로 하는 페이팔(Paypal)·알리페이(Alipay)등이 대표적인 글로벌 간편결제서비스이다. ‘국가간 간편결제서비스’는 국가간 온·오프라인 상거래가 발생할 때 지급거래 단계에서 활용되는 간편결제서비스를 의미한다. 글로벌 조사기관에 따르면 2022년 온·오프라인 양 부문에서 간편결제가 지급수단별 거래량 1위를 차지하였고 향후에도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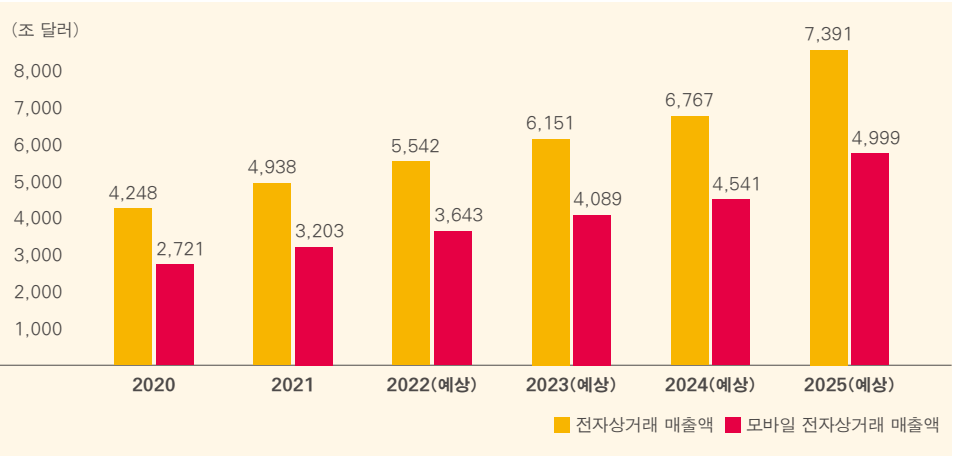
〈그림3-2〉 글로벌 온·오프라인 상거래의 지급수단별 구성비



자료 : FIS(2023), The Global Payments Report 8th edition, 재구성

국가간 간편결제서비스 시장의 성장은 온라인상에서 직구·역직구 증가의 영향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오프라인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한 것과 관련이 있다. 직구와 역직구는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직구’는 국내 소비자에 의한 해외제품·서비스 직접구매를 의미하고 반대로 ‘역직구’는 해외 소비자에 의한 국내제품·서비스 직접구매를 의미한다. 전 세계 B2C부문 전자상거래 시장의 매출액은 비대면 선호 및 인터넷 접근성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직구·역직구 역시 앞으로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3-3〉 전 세계(B2C) 전체 전자상거래·모바일 전자상거래의 매출액



자료 : eMarketer(2022. 1.), Global Ecommerce Forecast, 재구성

이처럼 온라인 채널뿐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아웃바운드 해외여행객의 해외 제품·서비스 구매와 인바운드 여행객의 국내제품·서비스 구매 증가가 예상되면서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해외 사업자들과 제휴하여 다양한 형태의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국내 간편결제 사업자가 해외 대규모 가맹점과 거래 관계를 맺거나 해외 가맹점을 기 확보한 해외 간편결제 사업자와 직접 제휴를 맺는 방식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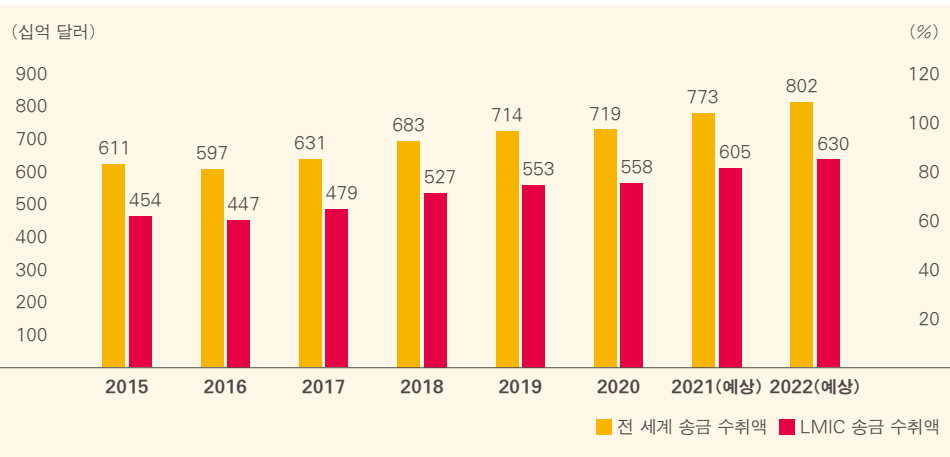
나. 해외송금

FSB, WB, BIS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경제발전과 금융포용 관점에서 해외송금의 범위를 해외 이주 노동자의 반복적인 소액 송금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¹⁰ 실제로 해외송금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즉, 넓은 범위의 해외송금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출신 국가 거주 가족들에게 보내는 부양비뿐 아니라 해외 유학생에 대한 생활비 지원 또는 상거래 관련 대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송금(remittance)은 우편환처럼 현금으로 지급 의뢰하고 현금으로 수취하는 형태에서부터 계좌에서 계좌로 보내는 자금이체(credit transfer)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해외송금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송금 수취액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코로나19의 앤데미 선언으로 해외 이주 및 유학을 저해하는 요인이 사라짐에 따라 앞으로 해외송금 거래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해외송금 수취액은 7,190억 달러이며, 이 중 저소득·중간소득 국가(LMIC)의 수취액은 5,580억 달러로 LMIC 수취액의 비중이 약 77%에 달한다. 또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수취액 기준으로 저소득·중간소득 국가로의 송금은 연평균 약 4%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꾸준히 증가하였고 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¹

10. BIS(2022. 1. 15.), The journey so far : making cross-border remittances work for financial inclusion, p.6.
11. WB(2022. 5. 11.), Implications of the Ukraine crisis and COVID-19 on global governance of migration and remittance flows, p.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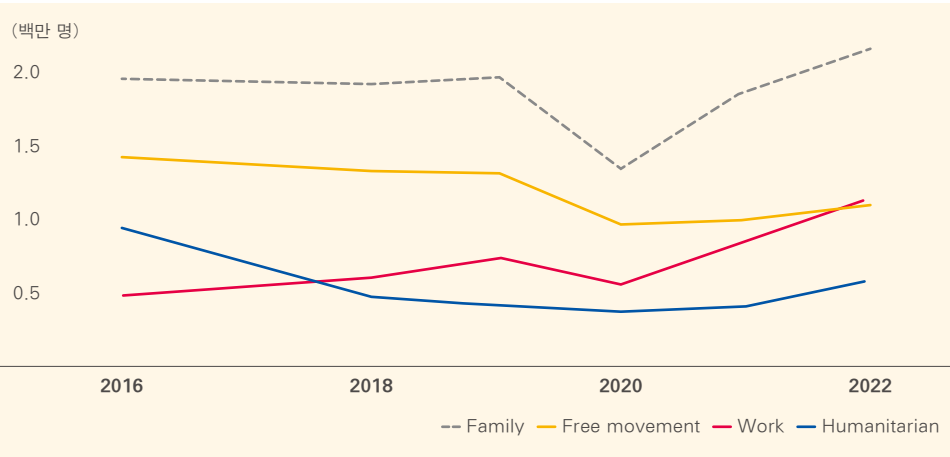
〈그림3-4〉 전 세계 및 저소득·중간소득 국가(LMIC)로의 송금 흐름



자료 : WB(2022. 5.), Implications of the Ukraine crisis and COVID-19 on global governance of migration and remittance flows, p.2. 재구성

LMIC가 수취하는 송금액은 이주 노동자들이 생활비 명목으로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과 관련되므로 해외송금 증가 추세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 이주 노동자 동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아래 OECD 자료에서 알 수 있듯 2016년부터 2022년까지 OECD 국가로 이주하는 노동자는 늘어나는 추세이며 2022년 이주 노동자 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36% 증가하였다. 한편, 고소득 국가로의 해외송금 흐름 증가는 세계화 및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해외 유학생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그림3-5〉 OECD 국가로의 이주 노동자 수 증가 추이



자료 : OECD(2023. 10.),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3

2.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다양화

가. 소액결제

기존 국가간 지급거래는 지급수단 중 현금과 카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전통적인 금융회사인 은행과 비자·마스터카드와 같은 글로벌 카드 네트워크 사업자가 주요 플레이어로 활동하였다. 각기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 사이의 지급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결제 사업자들은 상호 협력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IT기술이 발전하고 핀테크와 금융혁신을 촉진하려는 각국의 정책적 기조에 힘입어 NBPSP(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자)가 등장하면서부터 지급결제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다양해졌다.

기존의 시장 플레이어인 은행·카드사·글로벌 카드네트워크 사업자가 구축한 개방형 카드 네트워크와 카드의 표준화 덕분에 사람들은 해외 어느 국가를 방문하더라도 ATM 기기에 직불카드를 넣고 현지 통화를 인출할 수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 채널에 관계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해외 판매자가 파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앱 기반 디지털 월렛(전자지갑)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범위가 기존 금융회사에서 핀테크 또는 빅테크(삼성·애플)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인 삼성페이와 애플페이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기 확보한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전 세계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국가별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지급수단 중 전자지갑의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이고 대표적인 서비스에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있다.¹² 이들은 기존의 개방형 카드 네트워크 시스템과 달리 폐쇄형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 결제플랫폼 이용자들끼리는 거래가 가능하지만 은행을 포함한 다른 결제플랫폼 이용자와는 직접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불특정 다수와 거래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으려면 플랫폼별로 서비스를 가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폐쇄형 결제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테크 기업까지 지급결제시장에 진입하면서 다양한 사업자들이 각자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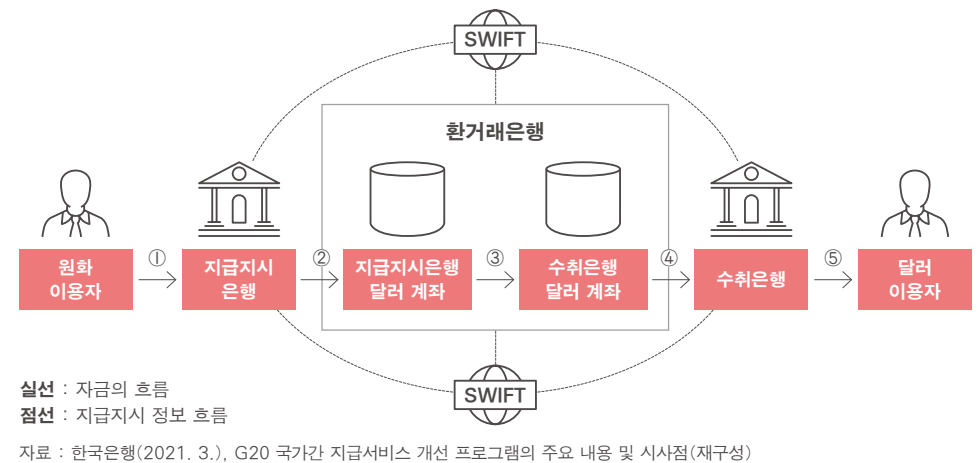
12. 중국의 지급수단별 지출 비중 조사에 따르면, 전자지갑의 지출 비중이 전자상거래 부문에서는 81%를 차지하고 오프라인 POS거래 부문에서는 56%를 차지하며, 전 세계에서 전자지갑의 이용 비중이 가장 높다. FIS(2023), The Global Payments Report 8th edition

나. 해외송금

해외송금서비스 제공기관은 ‘RSP(Remittances Service Provider)’라고 불리며 ① 은행, ② MTO(Money Transfer Operators), ③ 이동통신 사업자(Mobile Operators)¹³, 그리고 ④ 우체국으로 분류된다.¹⁴ 지금까지 해외 이주 노동자 또는 유학생과 관련된 해외송금 거래는 일반적으로 환거래은행시스템(correspondent banking)을 통해서 처리되어 왔다. 환거래은행은 국내에서 ‘대리 은행·코레스 은행·외환 결제 제휴 은행’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환거래은행에는 해외 은행을 포함한 여러 은행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송금인과 수취인이 서로 다른 국가의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환거래은행을 통한 지급거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송금인 측 ‘지급지시 은행’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환거래은행’에게 지급지시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때 지급지시 관련 메시지는 전 세계 은행을 연결하는 금융통신망인 SWIFT를 통해 전송된다. 다음으로 ‘지급지시 은행’이 ‘환거래은행’에 개설한 계좌 내에 송금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하다면 ‘환거래은행’은 ‘지급지시 은행’을 대리하여 ‘수취은행’에 자금을 이체한다. 만약 아래 그림과 같이 ‘지급지시 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한 ‘환거래은행’과 환거래 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곧바로 이체가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취은행’과 환거래 계약을 맺은 또 다른 ‘환거래은행’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에는 거래에 관여하는 중개기관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자에 비하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¹⁵

〈그림3-6〉 환거래은행 모델



13. 케냐 이동통신 사업자 사파리콤(Safaricom)이 2007년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한 모바일 송금서비스 엠페사(M-Pesa)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14. WB(2023. 9.), Remittance Prices Worldwide. 해당 지표는 글로벌 해외송금 비용 절감 목표 진행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된다.

15. 고트프리트 라이브란트·나타샤 드 테란(2023), 결제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이때 은행 간 지급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SWIFT망은 전 세계 은행들의 합의 하에 구축된 국제 금융통신망이다. 200여개 국가와 약 1만 1,500개의 은행을 연결하여 국가간 거래를 처리하는 개방형 시스템이다. SWIFT는 지급지시 방식을 표준화하고 각 은행에게 고유한 식별코드(BIC 코드¹⁶)를 부여하고 있다. 덕분에 각 은행들은 국가별 상이한 규제(AML·CFT), 통신 양식, 수수료 등의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다.

다른 유형의 RSP인 MTO는 ‘비은행 송금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송금서비스에 특화된 핀테크 기업들을 포함한다. 핀테크로 분류되지 않는 전통적인 송금서비스 기관 Western Union과 MoneyGram은 대면 채널인 영업점을 운영하므로 인터넷 없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핀테크 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에는 비교적 최근 등장하여 디지털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Wise(구TransferWise), Xoom 등이 있다. MTO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체 폐쇄형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 이용자끼리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용자는 은행 계좌나 카드를 보유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하고 환거래은행 방식에 비하여 소요시간이 짧다. 예를 들어, Western Union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국가에 로컬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자체 네트워크를 통하여 몇 분 안에 송금을 완료한다.

새롭게 등장한 핀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서비스에 적용시켰다. 예를 들어, 풀링(pooling)¹⁷이나 프리펀딩(pre-funding)¹⁸ 등 송금기술을 활용하여 환거래은행 방식에 비해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가능하였다. 은행이 제공하는 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SWIFT망을 이용함에 따른 외국환은행 중개수수료, 전신료, 수취수수료 등을 지불해야하지만 핀테크서비스의 경우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으면 해당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영국의 유니콘 핀테크 기업 Wise는 모든 서비스 대상 국가에 로컬 계좌를 개설하고 국가별로 송금인과 수취인을 매칭(페어링)시킨다. 이를 통해 국가간 거래를 국가 내 거래로 바꾸어 처리함으로써 송금 절차를 단축시키고 있다.

Wise 사례와 같은 핀테크 중심 서비스들이 성장함에 따라 해외송금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혁신이 촉진되었다. 2017년 전 세계은행들은 SWIFT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여 ‘SWIFT GPI(Global Payment Innovations)’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GPI는 UETR(Unique End-to-End Transaction Reference)을 사용하는데, 이는 지급결제에 관여하는 모든 당사자가 언제든지 자금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하고 변경 불가

16. BIC 코드 : Bank identifier Code에서 Business Identifier Code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8자리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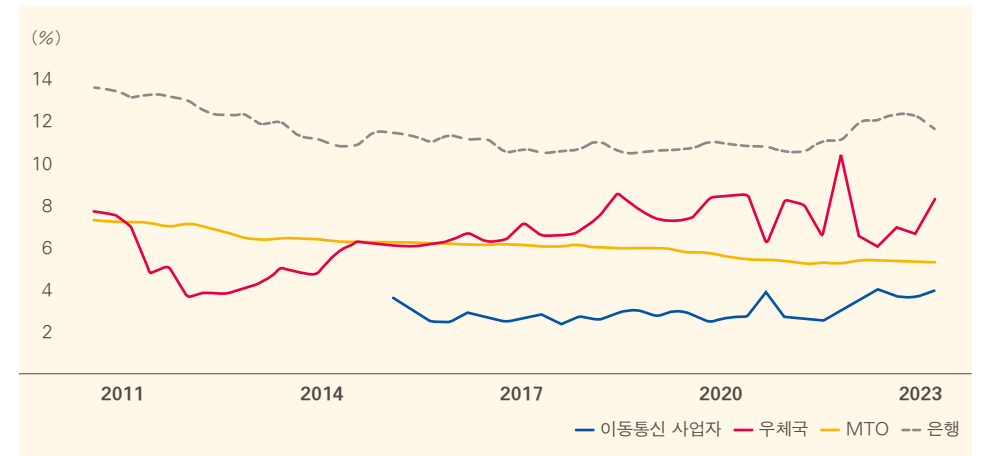
17. 소액의 여러 건을 한 번에 묶어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건수를 감소시켜 중개 수수료 및 전신료 절감이 가능하다.

18. 해외 제휴은행에 사전에 큰 규모의 금액을 예치하는 방식이다.

능한 참조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송금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거래 자금 추적이 가능해지고 수취인의 수취 또는 수취거절 여부 등도 알 수 있어 모니터링 및 송금처리 효율성이 제고되었다.¹⁹

2023년 3분기 기준 \$200 송금에 소요되는 평균 비용을 조사한 결과, 은행이 11.48%로 가장 높고, 우체국이 8.52%, MTO가 5.33%, 이동통신 사업자²⁰가 4.47%로 가장 낮았다. 이처럼 전통적인 은행들이 새로운 비은행 지급결제 사업자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비용 효율성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3-7〉 \$200 송금에 소요되는 RSP별 평균비용 변화 추이



자료 : WB(2023), Remittance Prices Worldwide-Issue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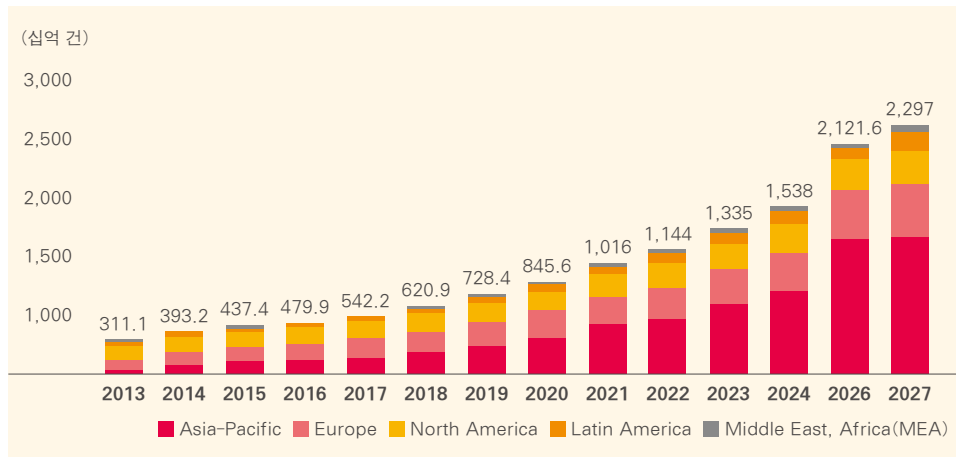
3. 캐시리스(cashless) 증가 현상

코로나19 유행 이후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것을 피하고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의 증가는 지급결제 시장에도 영향을 주었다. 인터넷·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비현금 지급거래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해왔고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켰다. 글로벌 통계조사기관에 따르면 비현금 지급거래건수는 2019년 7,284억 건, 2020년 8,456억 건, 그리고 2021년 1조 160억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나아가 2027년에는 2021년에 비하여 두 배 이상 증가한 2조 2,970억 건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19. FSB(2023. 10. 9.), Annual Progress Report on Meeting the Targets for Cross-Border Payments Methodology document, p.3.

20. 이동통신 사업자로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전체 RSP 중 1% 미만이다.

〈그림3-8〉 전 세계 비현금 지급거래건수 추이



자료 : Statista(2024), Number of cashless transactions worldwide from 2013 to 2021, with forecasts from 2022 to 2027, by region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는 해외여행객들의 결제 방식도 캐시리스 형태로 변화시켰다. 과거에는 해외로 여행을 갈 때 여행하는 국가의 화폐로 바꾸어 가는 것이 관례였다. 여행객들은 자국 은행에서 미리 환전을 하거나 외국 ATM 기기나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고 여행하는 내내 현금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은 현금 없이 하는 해외여행, 즉 캐시리스 여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관광객이 번거로운 환전 없이도 모바일 디바이스나 앱 기반 간편결제 방식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손쉽게 자국 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현금 지급수단을 활용하면 외국 화폐 사용을 위한 환전 거래 비용, 환전 수수료, 보관비용 등 여러 비용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고 도난이나 범죄 노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현금에 익숙하지 않은 알파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성장하게 될 경우 캐시리스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²¹ 알파세대는 어릴 때부터 빠르고 편리한 기능을 가진 모바일과 핀테크 플랫폼이 제공하는 간편결제·간편송금서비스에 노출되어 있고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알파세대의 이러한 특성을 인지한 서비스 제공자들이 그들의 수요에 맞는 디지털서비스를 개발·제공한다면 국가간 지급거래는 더욱 편리하고 신속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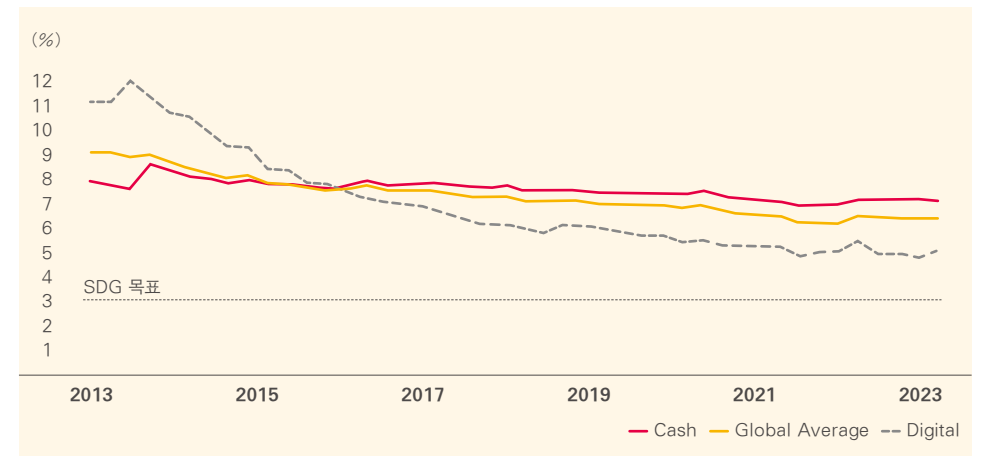
21. 남상현(2023. 12.), 알파세대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 현황 및 시사점, 금융결제원

2절 국가간 지급결제 현황

1. 국가간 지급거래 프로세스 개선 추진 : G20, BIS, FSB

\$200를 송금하는 데에 드는 전 세계 평균 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9년 1분기 기준 7% 미만으로 낮아졌고 2023년 3분기에는 6.18%를 기록하였다. 예를 들어,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200를 송금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12.36의 수수료를 송금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지불하게 되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187.64만큼 가족에게 전달된다. 특히 해외송금은 해외 이주 노동자와 본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금융포용 관점에서 송금 비용 및 소요시간을 줄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림3-9〉 \$200 송금에 소요되는 지급수단별 평균비용 추이



자료 : WB(2023), Remittance Prices Worldwide-Issue 47

이러한 배경하에 2020년 2월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해외송금을 중심으로 국가간 지급거래의 전반적인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G20의 요청에 따라 FSB와 BIS(CPMI²²) 등 관련 국제기구들은 기존 국가간 지급거래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가간 지급거래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최종 로드맵을 도출하기까지 2020년 한 해 동안 3단계 작업을 거쳐 결과물을 발표하였다.

22. BIS 내 지급결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구성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인 CPSS(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지급결제분야의 국제적 원칙을 수립하고 회원 중앙은행들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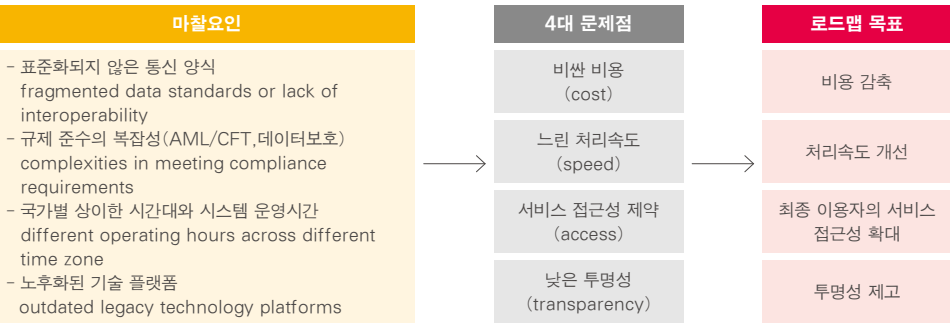
FSB 또는 BIS가 작성한 1단계 보고서는 기존 프로세스의 4가지 문제점을, 2단계 보고서는 개선방안을, 그리고 3단계는 개선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문제점으로 ① 비싼 비용(수수료), ② 느린 처리속도, ③ 서비스 접근성 제약, ④ 낮은 투명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유발하는 마찰요인으로 다양한 중개기관 개입에 따른 길고 복잡한 거래 과정, 국가별 규제가 상이함에 따른 표준화되지 않은 통신양식, 높은 규제 준수 비용, 각국의 상이한 시간대와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제한된 운영 시간, 그리고 노후화된 기술 플랫폼 등이 지목되었다. 마찰요인은 다양한 중개기관으로 하여금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해 여러 통화로 된 자금을 사전에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은 국가간 지급거래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시장의 원활한 경쟁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²³

최종 로드맵은 최종 이용자의 관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며 몇 가지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 감축 목표이다. 현재 \$200의 금액을 해외송금 하는 데 드는 글로벌 평균비용이 6.18%인데, 이를 3%로 줄이고 개별 송금 경로는 5%로 줄이기로 하였다.²⁴ 둘째, 지급거래의 처리속도 개선 목표이다. 구체적으로는 지급거래 개시 후 1시간 이내에 수취인에게 자금이 전달되는 거래의 비율이 전체의 7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최종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확대 목표이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여 해외송금을 원하는 자의 90%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최종 이용자 관점으로 범위를 한정하므로 은행·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자의 지급결제시스템 접근성 측면은 다루지 않고 있다. 넷째, 투명성 제고 목표이다. 2027년 말까지 모든 지급거래 시장 부문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지급인과 수취인에게 최소한의 정보 목록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 정보 목록에는 각종 중개자 수수료, 환전 관련 수수료 등 총 거래비용, 수취인에게 자금이 전달될 때까지 예상되는 시간, 자금 상태 추적, 그리고 서비스 약관 등이 포함된다.²⁵

로드맵 발표 이후 FSB는 목표 달성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핵심성과 지표(KPI)를 개발하는 등 후속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3년 9월 처음으로 통합 진행 상황을 G20에 보고하였다.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이 협력하는 가운데, 2023년 8월 SWIFT는 전체 거래의 89%가 1시간 이내에 수취은행에 도달함으로써 자체 네트워크 처리 속도 측면에서 G20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²⁶

23. FSB(2020. 4. 9.), Enhancing Cross-border Payments: report to the G20
24. 해외송금 비용 감축의 목표 달성 기한은 2030년으로 설정되었고, 이는 UN SDG 10.C.1의 목표치를 G20이 승인한 내용이다.
25. FSB(2021. 10. 13.), Targets for Addressing the Four Challenges of Cross-Border Payments-Final Report
26. SWIFT 홈페이지

〈표3-2〉 기존 국가간 지급거래 프로세스의 마찰요인·문제점·로드맵 목표



〈표3-3〉 국가간 지급거래 인프라 개선 프로그램 추진 경과

시기	구분	주요 내용
2020년 2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²⁷	국가간 지급거래 개선을 우선 과제로 논의
2020년 4월	FSB	(1단계 보고서) - Enhancing Cross-border Payments: report to the G20 - 국가간 지급거래의 문제점 및 현황 분석 - 4대 문제점, 7대 주요 마찰요인
2020년 7월	BIS(CPMI)	(2단계 보고서) - Enhancing cross-border payments: building blocks of a global roadmap - 1단계 보고서에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5대 중점 추진 분야 및 19개 세부 방안
2020년 10월	FSB, BIS(CPMI)	(3단계 보고서) - Enhancing cross-border payments: roadmap - 구체적인 추진 시기 및 추진 주체를 포함한 로드맵 도출
2020년 11월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 내용 발채	“우리는 FSB가 국제기구 및 표준 제정 기구와 협력하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로드맵을 검토하여 매년 G20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2021년 10월	FSB	- Targets for Addressing the Four Challenges of Cross-Border Payments - 국가간 지급거래의 4가지 과제 해결을 위한 목표
2022년 11월	FSB	- Developing the Implementation Approach for the Cross-Border Payments Targets - 국가간 지급 거래 목표 구현을 위한 접근방식 개발 - 목표달성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KPI (핵심성과지표)를 설정
2023년 9월	FSB	- G20 Roadmap for Enhancing Cross-border Payments Consolidated progress report for 2023 - (G20국 보고용) 2023 진행 상황 통합 보고서
2023년 10월	FSB	- Annual Progress Report on Meeting the Targets for Cross-Border Payments: 2023 Report on Key Performance Indicators - Annual Progress Report on Meeting the Targets for Cross-Border Payments: Methodology document

자료 : FSB 보고서 ; BIS 보고서 ; 한국은행(2021), G20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7.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FMCBGs) meeting

2. 국가간 지급거래 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

2017년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면서 PG 사업자와 핀테크 등 비금융회사도 외국환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외국환은행(금융회사)만이 외국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국내 비금융회사들의 국가간 지급거래 시장 진입이 제한적이었다. 반면, 페이팔, 알리페이와 같은 해외 비금융사업자들은 글로벌 시장의 국가간 결제 및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점유율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① 소액해외송금업과 ② 기타전문외국환업의 도입은 국내 비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표3-4〉「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의 도입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2017. 1. 17. 개정, 2017. 7. 18.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환전업무”라 한다)만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2.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3.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

가. 소액해외송금업

국내 비금융회사들도 「외국환거래법」상 소액해외송금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기만 하면 외국환은행과 협약 없이 국내에서 외국 화폐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환은행의 업무위탁 없이도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업무위탁이 필요한 기존의 ‘소액외화이체업’과는 구분된다.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회사가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반면, 비은행금융회사가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 외국환업무 등록(변경)신고를 하면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비금융회사에 비해 비은행금융회사의 진입이 유리하다.

〈표3-5〉소액외화이체업과 소액해외송금업의 비교

구분	소액외화이체업	소액해외송금업
도입 시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2016. 3. 22.)	외국환거래법 개정(2017. 7. 18.)
현행 근거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0조의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0조의3 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제2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3·4
내용	외국환은행, 기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국가간 지급(해외송금) 등과 관련된 사무 수행 가능	비금융회사가 일정한 법상 요건을 갖추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면 위탁 없이 독자적으로 해외송금업무 수행 가능
자본금 요건	3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인적·물적 요건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지급·수령 범위	건당 미화 \$5,000 한도 연간 미화 \$50,000 한도	건당 미화 \$5,000 한도 연간 미화 \$50,000 한도

소액해외송금업의 자본금 요건은 10억 원 이상이며 취급 가능한 지급 및 수령 금액의 범위는 건당 5천 달러 및 연간 5만 달러로 제한된다. 또한, 이행보증금 예탁, 고객 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2024년 4월 기준 총 31개의 기업이 소액해외송금업에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 중이다.

대표적인 소액해외송금업자 사례인 트래블월렛(Travel Wallet)은 해외송금서비스 제공기관인 웨스턴유니온(Western Union)과 제휴를 통해 해외은행 계좌로의 P2P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한다. 트래블월렛에 연결된 은행 계좌로부터 송금을 하는 방식이며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유한 금액은 송금할 수 없다. 송금 소요 시간은 영업일 기준 1~3일이 소요되며 건당 수수료는 5천 원으로 고정한 점이 특징이다. 트래블월렛은 송금 수취 방법으로 은행 계좌이체 옵션만을 제공하지만 다른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수취 방법으로 은행 계좌이체, 캐쉬픽업, 홈딜리버리, 모바일월렛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기도 한다.

국내 한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해외송금서비스 최다 이용고객의 국적은 베트남(41%), 필리핀(38%), 한국(11%)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⁸ 이처럼 해외송금서비스 주요 고객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액한도 측면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핀테크 기업의 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거의 없는 것도 서비스 이용 유인이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2023년 기준 1년 간 월평균 총소득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외국인은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의 3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²⁹ 월 단위로 송금을 한다고 가정

28. SBI코스머니 해외송금 5주년 서비스 통계

29. 조사 대상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3만 명이다. 통계청(2023. 12. 18.),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하면 이들이 해외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할 때 건당 미화 5천 달러 송금 한도는 충분하기 때문에 핀테크가 제공하는 소액 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다. 연 단위로 환산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을 주요 타킷으로 하는 일부 핀테크 사업자들은 오프라인 점포를 확대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모바일 앱 활용에 익숙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센트비·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한패스 등의 핀테크들은 특히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거주 밀집 지역인 김해시와 안산시 등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대면 영업을 늘리고 있다.

나. 기타전문외국환업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국내 PG사와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의 국가간 지급결제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간편결제 분야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2017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타전문외국환업’이 도입됨에 따라 비금융회사인 국내 PG사들이 직구·역직구 시장의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2019년 시행령이 한 차례 더 개정이 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까지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표3-6〉 기타전문외국환업 등록 대상 확대 과정

기타전문외국환업 도입 이전	기타전문외국환업 도입	기타전문외국환업 등록 대상 확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5 ①	
	2017. 6. 27. 일부개정	2019. 5. 28. 개정(현행)
은행 등 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국가간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음	국내 PG사의 국가간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	국내 PG사에 더해 전자금융업자의 국가간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이하 “기타전문 외국환업무”라 한다)를 말한다.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관리업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무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이하 “기타전문 외국환업무”라 한다)를 말한다.

기타전문외국환업의 도입 이전에는 온라인 채널의 지급결제를 대행하는 국내 PG사들이 해외 지급결제 사업자 또는 해외 가맹점과 연결된 국가간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들은 온라인상에서 해외의 제품·서비스를 구매할 때 해외 결제가 가능한 글로벌카드만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역직구 거래의 경우 해외 지급결제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국내 대형 쇼핑몰만이 해외 소비자

들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한 구조였다.

도입 이후에는 국내 PG사들이 국가간 전자상거래의 지급프로세스에 관여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전용 신용카드로도 해외 제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해졌다. 또한, 국내 PG사들이 해외 지급결제사업자들과 계약하는 대표가맹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 중소형 쇼핑몰들도 해외 소비자들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3-10〉 국내 PG사의 외국환업무 허용 전후 비교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5. 6. 25.), 2015. 7. 1.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재구성)

2019년에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타전문외국환업 등록 대상이 확대되면서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서 해외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 선불기간 간편결제를 제공하던 사업자들은 국내 이용자들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그대로 해외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다. 금융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이용

금융회사들은 기존에 외환거래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제도적 공백이 있는 경우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하나카드의 트래블로그(Travlog) 서비스이다. 하나카드는 은행 계좌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만을 기반으로 체크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9년 10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트래블로그’ 서비스를 출시하였다.³⁰

트래블로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하나머니’와 체크카드를 연결하고 하나머니 범위 내에서 현지결제 및 현지 ATM 인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구조로 트래블월렛의 트래블페이서비스와 유사하다. 해외 서비스는 해외 사업자인 마스터카드 및 유니온페이(중국·마카오·홍콩·대만 지역 한정)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된다. 소비자들은 새롭게 은행 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하나머니를 충전하면 바로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환전·결제 수수료 및 현지 ATM 인출 수수료가 무료이므로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트래블로그는 2022년 7월 출시된 이후 2024년 2월 가입자 수 400만 명을 확보하고 있다.

3. 사업자 간 제휴

가. 직접 제휴

해외결제를 할 때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국내외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들 간 직접 제휴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외 사업자들 간 제휴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 해외여행지에서 오프라인 결제를 하거나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할 때 별도의 환전이나 서비스 가입 없이 국내에서 사용하던 간편결제 앱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편리함이 있다.

대표적인 예시는 국내 ‘카카오페이’서비스와 일본 ‘페이페이(Paypay)³¹’서비스의 제휴이다. 국내 이용자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페이페이와 제휴를 맺어 일본 현지의 다수 가맹점을 간접적으로 확보한 사례이다. 국내 이용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일본 현지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페이페이용 QR코드를 스캔한 후 엔화표시 금액을 입력하면 환전 과정 없이 바로 결제할 수 있어 간편

30.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체크카드의 결제는 카드 회원과 가맹점 간 금융거래 계좌이체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31. 일본 내 1위 QR결제 사업자이다. 2021년 3월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라인페이 서비스)과 소프트뱅크그룹 산하의 야후재팬(페이페이 서비스)의 경영통합이 이루어졌다.

하다. 카카오페이는 이용자에게 높은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고객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잠금효과(lock-in)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간편결제 사업자 간 직접 제휴 형태는 소비자 입장에서 신용카드에 비하여 비용 측면에서도 이점을 가진다. 해외결제를 할 때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신용카드 네트워크를 거치기 때문에 결제대금의 1% 내외인 네트워크 이용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에 반해 사업자 간 직접 제휴가 이루어져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는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 중개 네트워크 이용수료로 소요되는 비용만큼을 절감할 수 있다.

나. 신유형 중개사업자의 등장

최근 국가간 지급거래 시장의 주요 지급수단이 신용카드에서 간편결제로 옮겨가면서 NBSP 사이에서 중개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사업자 유형이 등장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신유형 중개사업자의 서비스 구조는 글로벌 각국의 지급결제 사업자들에게 네트워크를 제공하면서 국가간 지급거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글로벌 신용카드 네트워크 사업자인 비자·마스터카드와 유사하게 여러 지급결제 사업자들과 제휴를 맺고 중개 역할을 하는 구조이다. 국내 간편결제 사업자들과 제휴를 맺고 중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사례는 알리페이플러스와 GLN 인터내셔널이다.

알리페이플러스는 엔트그룹 알리페이와 구분하여 설립한 별도 법인으로서 주로 간편결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크로스보더 결제 및 마케팅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알리페이플러스는 2020년 최초로 서비스를 출시하였고 동남아시아, 중국, 국내 사업자인 카카오페이 등 14개사와 제휴를 맺고 있으며 이 중 간편결제 사업자는 12개이다. 알리페이플러스와의 제휴 덕분에 카카오페이는 해외 각국의 간편결제사업자들과 각각 제휴할 필요 없이 이용자들의 해외 가맹점 결제를 가능하게 하여 거래비용이 절감된다.

GLN 인터내셔널은 2021년 설립된 하나은행의 자회사로 국내외 간편결제 사업자를 포함한 다양한 지급결제 사업자들과 제휴하고 이들에게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중개 사업자이다. 주요 서비스 모델은 해외 현지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이용자가 직접 환전할 필요 없이 곧바로 국내 계좌로부터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GLN 인터내셔널은 2021년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2022년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에 등록하고 2023년에는 소액해외송금업에 등록하여 사업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가고 있다. 약 1%의 해외결제 수수료를 받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비하여 0.3% 정도의 낮은 수수료를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플랫폼 구조의 특성상 제휴 간편결제사의 수가 늘어날수록 연계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중개사업자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를 통한 제휴 국가와 기업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절 향후 전망

글로벌 관점에서 지급결제 사업자 간 제휴가 증가하고 있고 법·제도 환경도 시장 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가간 지급거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가간 지급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개사업자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들이 활용하는 네트워크 효과의 특성을 고려하면 향후 NBSP 중심의 글로벌 수준 네트워크 구축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네트워크 효과’란 참여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다른 참여자들이 얻는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이다. 다시 말해 특정 결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효용은 그 결제 수단을 활용하는 사용자 수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빅테크 기업을 보유한 미국에서 아직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결제수단이 수표이고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수표의 75%가 미국에서 발행된다는 사실은 수표라는 결제수단에 네트워크 효과가 적용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알리페이를 제공하는 사업자(엔트그룹)가 2017년 MTO 업계 2위인 머니그램을 인수하려고 시도하였던 것도 머니그램이 기존에 보유한 네트워크와 고객기반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³²

국가간 지급결제 생태계에서도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지급결제 네트워크를 일단 선점하면 막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자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오랫동안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급서비스 시장에서 이전에 존재하던 익숙한 결제수단과 방식들의 영향력의 크기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존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기구축된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라면 국가간 지급결제 사업자에게는 네트워크를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유효한 전략일 것이다.³³

32. 고트프리트 라이브란트·나타샤 드 테란(2023), *결제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33. 고트프리트 라이브란트 외(2023)

전자지급서비스의 접근성 이슈 대응



전자지급결제는 경제주체들이 전자지급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경제 활동으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해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지급서비스에는 결제 시 고객 자신의 예금 계좌 잔액을 이용하는 계좌기반 전자지급서비스, 선불카드, 전자지갑 등에 미리 충전해 둔 자금을 이용한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신용카드사 등이 사용자에게 대해 일정기간 신용(credit)을 제공하는 후불전자지급서비스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은 전자지급결제를 급격하게 증가시켰다. 전자상거래 규모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금융 대부분의 서비스가 전자적으로 제공되면서 디지털금융의 고도화가 이루어졌다.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전자지급서비스 분야에 참가하면서 다양한 전자지급서비스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규제 완화 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디지털금융의 고도화는 전자지급서비스의 접근성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이 가능해지면서 계좌기반 전자지급서비스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 선불전자지급서비스는 청소년 등 계좌개설이 어려운 계층에게 서비스를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후불전자지급서비스는 신용거래가 어려운 쉼파 일러(thin filer, 금융 이력 부족자)를 대상으로 소액후불결제서비스(BNPL)를 제공하며 접근성을 높이기 시작하였다.

한편, 전자지급결제 규모 증가로 인한 현금 사용의 감소는 현금 접근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현금 통용력 보장과 대표적인 현금사용 인프라인 현금자동입출금기(Automated Teller Machine, ATM)의 축소 대응이 주요 골자다. 현금은 지급결제시스템의 보완적 요소이자 현금사용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중요한 지급수단이므로, 현금 통용력 및 현금 사용 인프라 보장을 위한 사회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1절 금융환경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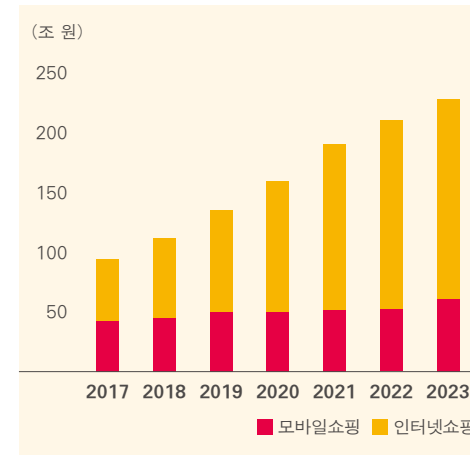
1. 디지털금융의 일상화

코로나19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다.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었고, 소비자의 결제 수단 이용 패턴도 간편결제를 중심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실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7년 94.2조 원에서 2023년 228.8조 원으로 연평균 15.9%씩 성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 시 결제 수단으로 간편결제를 선택하는 비율도 2019년 39.6%에서 2022년 56.1%로 16.5%p 상승하였다. 비대면 거래의 확대가 전자지급거래의 발전을 가져왔고, 다시 전자지급거래의 편의성 개선이 비대면 거래 이용자들을 늘리는 등 양의 되먹임(feedback)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금융회사도 고객 편의성 증가와 업무처리 비용 감소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디지털금융을 도입하였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2022년 국내은행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뱅킹 등록고객 수는 2억 704만 명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영향 등으로 모바일뱅킹 등록고객 수는 매년 10%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사 및 보험사들도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금융산업은 서비스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자적으로 제공 및 처리되기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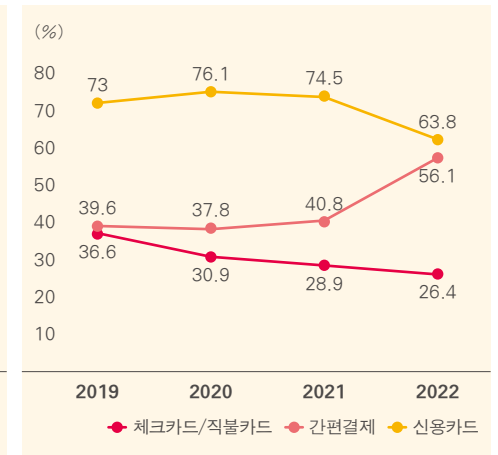
플랫폼 경제의 활성화, 언택트(untact) 소비문화 일상화 등은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미리 등록한 지급수단을 통해 자동으로 계산되는 무인 편의점의 등장이나 실물 신용카드 대신 모바일카드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간편결제, 각종 인터넷 쇼핑 플랫폼에서 쓰이는 선불전자지급서비스 등 지급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금융이 더욱 익숙한 세대가 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될수록 새로운 세대를 위한 지급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출시될 것이다.

〈그림4-1〉 온라인 쇼핑 거래액 추이



자료 : 국가통계포털

〈그림4-2〉 인터넷 쇼핑 결제수단 추이



자료 : 2022년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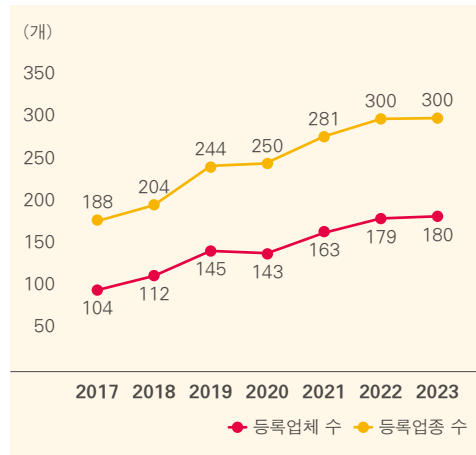
2. 전자지급결제서비스 분야의 경쟁 심화

2015년 5월 전자금융업 등록에 필요한 심사 기간이 단축되고 심사항목도 간소화되면서, 핀테크를 포함한 많은 비금융회사들이 전자금융업으로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 2023년 3월 기준 전자금융업 등록업체 수는 180개로, 2015년 대비 117% 증가하였다. 등록 유형별로는 PG업(47%),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26%)이 가장 많았다.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서비스는 소비자가 실질적인 구매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이다.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이 원활하게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타사와 차별화된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시 카드결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을 비롯해 다양한 간편결제가 생겨나는 등 전자지급결제서비스 분야를 두고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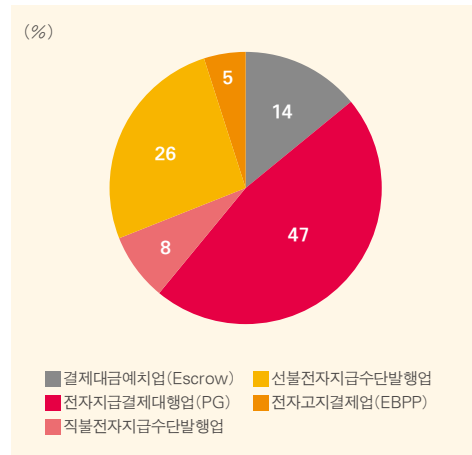
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커지는 것도 전자지급결제서비스 분야 경쟁이 치열해지는 원인이다. 과거 전자지급결제서비스는 단순히 편리한 결제 방법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였다면, 지금은 전자지급결제서비스를 통해 얻은 결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 신용평가, 맞춤 상품 추천 등 개인화된 서비스가 다양하게 시도되거나 제공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락인(lock-in)하고 결제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전자지급결제서비스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

〈그림4-3〉전자금융업 등록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그림4-4〉전자금융업자 등록 유형 분포



자료 :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3. 현금사용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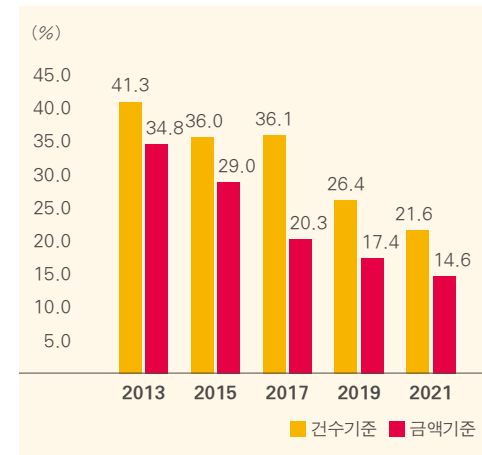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급수단별 이용 비중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7.4%에서 2021년 14.6%로 감소하였다. 반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지급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지급카드 결제금액 중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결제 비중은 50.2%로 2020년에 비해 6.1%p 증가하였다.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2023년 상반기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서도 간편결제를 중심으로 한 비현금지급결제의 높은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다. 2023년의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실적은 일평균 2,875만 건(9,6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 기준 8.6%, 금액 기준으로는 20.8%나 증가하였다. 삼성페이를 시작으로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등과 같은 간편결제서비스가 우리 사회의 일상생활 속에 자리잡으면서 ‘탈 현금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의 발달과 함께 카드를 사용하는 비중도 높은 편이어서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현금 결제가 불가능하거나, 현금 외 결제수단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현금 없는 매장’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키오스크 등 카드 결제만 가능한 무인 편의점 수는 2020년 3,200여 곳을 넘겼으며 지난 2년 동안 6배나 늘어났다. ‘현금 없는 버스’도 도입되고 있다. 대전에서는 2개월의 시범 기간을 거쳐 2019년 9월부터 시내버스 전 노선에서 현금을 받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 10월 8개 노선에 처음 도입했던 ‘현금 없는 버스’가 2023년 3월 108개 노선 1,876대로 대폭 확대되었다. 전체 서울 버스에서 ‘현금 없는 버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25%로 늘어났다.¹ 한국

1. 일간 국세신문(2023. 6. 30.), 국세 칼럼, 현금 없는 사회와 현금사용 선택권의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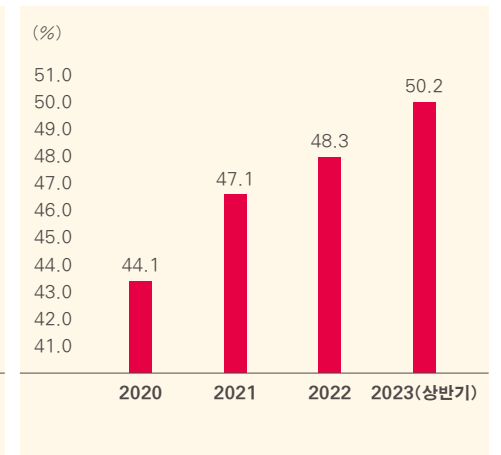
은행도 2017년 4월부터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다. 백화점, 편의점, 마트 등 매장에서 현금거래 후 생긴 거스름돈을 교통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소비자의 은행 계좌로 적립해 주는 서비스이다. 동전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불편해 발생하는 화폐 유통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동전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그림4-5〉현금 이용 비중 추이



자료 : 한국은행(2021. 3. 13.),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그림4-6〉모바일기기를 통한 결제 비중 추이 (일평균)



자료 : 한국은행(2023. 9. 21.), 2023년 상반기 중 국내 지급결제 동향

한편,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어 갈수록 현금이 지급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지위를 상실하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은 현금 이용 및 관련 인프라가 축소됨으로써 현금 접근성이 제약되는 상황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은행 부문의 역할 축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소매 결제에서 중앙은행 화폐가 결제 자산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소액 결제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하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하기도 한다. 영국 중앙은행, 캐나다 중앙은행, 스웨덴 중앙은행 등 해외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준비 중이다. 한국은행과 정부도 2023년 10월에 CBDC를 실제 금융거래에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험에 착수하였다. 2024년 4분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실거래 테스트 실시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4. 금융정책의 변화

소비자들의 전자지급결제 선호와 더불어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금융업 관련 규제 완화 등이 맞물리며 디지털금융 생태계 기반이 확대되었다. 주요 금융정책을 살펴보면, 2014년 8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통해 간편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온라인상에서 고액 결제 시 인증서 외에 휴대폰 인증 등 대체인증수단을 사용해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15년 1월에는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나 환급을 활용하여 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지급결제분야에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진입하게 되었다.² 2015년 6월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비대면 신원확인 방식이 허용되었다. 2019년 4월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³를 도입하였으며, 2019년 12월에는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되는 등 금융혁신 인프라가 구축·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혁신성과 편리성을 지닌 다양한 핀테크·빅테크 금융서비스가 등장하였다.

이렇듯 결제·송금서비스 간편화, 비대면 신원 확인 제도의 도입 등으로 전자지급결제 규모는 급격히 성장하였다. 금융 소비자들은 점점 더 빠르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으며, 기업과 소비자의 접점 채널은 플랫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금융의 최전선에 있는 전자지급결제산업은 결제 방식 다양화 및 기술 발전, 신규 경쟁자 출현, 국내외 규제 마련 등으로 산업이 꾸준하게 재편되고 있다.

2.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금융위원회에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비회원 은행 계좌로 환급해 주는 것이 전자자금이체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자금이체업무 수행자는 금융회사이며 토스가 자금이체업무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3.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 장소, 규모 제한)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임시허가’, 규제유무를 부처가 확인하여 기업에게 알려주는 ‘신속확인’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2절 전자지급서비스의 접근성 변화

1. 계좌기반 전자지급서비스 접근성 변화

가. 계좌기반 전자지급서비스의 개념

계좌기반 전자지급서비스는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시 결제금액을 실시간으로 고객의 예금 계좌에서 판매자의 예금 계좌로 이체한다. 예금 계좌 내 잔고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이용 대금이 예금 계좌에서 실시간 인출된다는 점에서 신용 한도 내에서 이용 후 일정 기간 뒤에 이용 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하는 후불 전자지급서비스와 구별된다.

계좌기반 전자지급서비스에는 계좌이체, 체크카드, 현금IC카드, 은행 계좌 연결 간편결제가 있다.⁴ 계좌이체는 고객의 은행 계좌에서 수취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의 인출 없이 전자적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이다. 체크카드는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지급수단으로 고객이 물품 및 서비스 이용과 동시에 고객의 은행 계좌에서 대금이 즉시 출금되어 판매자의 계좌로 이체되는 서비스이다. 해당 카드사가 발급하는 신용카드와 사용 가능 가맹점이 동일하다. 한편, 현금IC카드는 은행이 발급하는 지급수단으로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지급거래 시 이용할 수 있으나 별도로 모집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발급주체가 다르다 보니 현금IC카드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은행 공동의 현금카드공동망을,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전산망을 이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은행 계좌 연결 간편결제는 미리 저장해 둔 은행 계좌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 시 별도의 앱에서 결제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이다.

계좌기반 전자지급서비스는 예금 계좌가 필수적이므로 은행 계좌의 개설 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의 도입은 은행 계좌의 개설 접근성뿐만 아니라 계좌기반 전자지급서비스의 접근성도 크게 높였다. 국내의 경우 해외에 비해 계좌개설 및 계좌기반 전자지급서비스의 유지가 수월한 편이었으나,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의 도입으로 그 이용이 더욱 손쉬워졌다.

4. 2018년에 구축한 제로페이플랫폼의 QR코드 기반 앱to앱 방식의 계좌이체서비스도 금융회사 앱을 통해 구매자의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바로 결제대금을 이체하는 계좌기반 전자지급서비스 중 하나이다.

나.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을 통한 계좌기반 전자지급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계좌 발급 등 필수 금융서비스의 비대면 처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종전에는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금융회사 직원은 실명확인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상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고 확인하는 실명확인절차⁵를 준수해야만 했다.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면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방안’⁶이 도입되었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비대면 확인 방식을 허용한 것이다.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은 한층 제고되었다. 계좌 개설부터 계좌 해지까지 금융거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의 평균 비대면 계좌개설 비중은 2021년 37.7%에서 2022년 45.0%로 크게 상승하였다. 금융회사들이 좀 더 쉬운 사용자 경험(UX)의 모바일 뱅킹 앱을 선보이면서 중장년층 고객의 증가세도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더욱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가 생소하고 복잡함에 따라 계좌개설 과정에서 고객의 입력 오류 또는 중도 포기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제 비대면 계좌개설을 시도한 고객 대비 최종 계좌개설 고객은 약 60~6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비대면 확인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신분증 사본 온라인 제출, 영상통화 등은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노출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담겨있는 신분증을 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금융범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비대면 계좌 개설 문턱이 낮아지면서 도용한 신분증 사본을 활용한 타인 명의의 계좌 개설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⁷ 도용한 신분증 사본 하나만 있으면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통해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2024년 2월 금융감독원은 신분증 도용 등을 통한 비대면 금융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본인확인 제도의 종합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금융위원회도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며, 가급적 영상통화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권고하였다.

5. 금융실명제 도입(1993. 8.) 당시부터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의 실명을 대면(face-to-face)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지속되었다.

6.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에 따라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 시 5가지 방법(① 실명확인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⑤ 기타(①~④에 준하는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7. 머니투데이(2024. 2. 27.), “신분증 도용되면 끝장”, ‘구멍뚫린’ 비대면 금융 본인확인제 개선 검토

〈표4-1〉 5대 은행의 평균 비대면 계좌개설 현황

(%)

구분	2021년	2022년
하나은행	31.1	52.7
우리은행	39.6	53.5
신한은행	40.3	49.7
국민은행	18.1	33.3
농협은행	44.6	36.0 ^{*)}

주) 2021년도 비대면 계좌개설 캠페인 실시 등에 따른 변동 요인에 기인

자료 : 전자신문(2023. 1. 17.) 계좌개설, 온라인 > 오프라인...우리·하나銀, 비중 절반 넘어

2023년 4월부터는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의 적용이 미성년자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여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은행, 증권사 등 금융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게 하였다. 금융사들은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 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실명확인인증표의 사진과 촬영된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실지 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영상통화 대신 실명확인인증표의 사진과 얼굴 촬영 화면을 대조하는 안면인식 기술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적용한 것이다.

〈표4-2〉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 확대 현황

시기	조치 사항
2015. 12.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 관련 유권해석 변경
2016. 2.	제2금융권(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 시작
2016. 8.	비대면 실명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실명확인인증표로 여권 추가
2017. 1.	비대면 실명확인 시 이용할 수 있는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 도입
2020. 1.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시행
2023. 4.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금융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개편

〈Box3-7〉〈해외 사례〉계좌기반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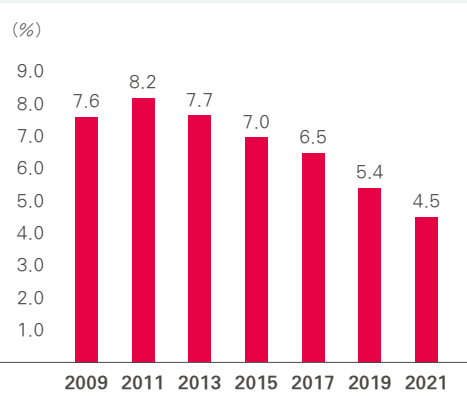
국내은행은 계좌를 개설하고 유지하는 데 고객에게 특별한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계좌 유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최소 예치금 등을 유지하는 조건이 일반적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계좌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계좌를 보유하지 않는 금융소외계층도 생겨났다.^{주1)}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는 주된 이유에 “계좌 유지를 위한 최소 잔고 부족”, “높은 은행 계좌 수수료”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비용·수수가 금융 소외문제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에 해외 각국에서는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자체를 포기하거나 접근 자체가 차단된 금융소외자들이 부담 없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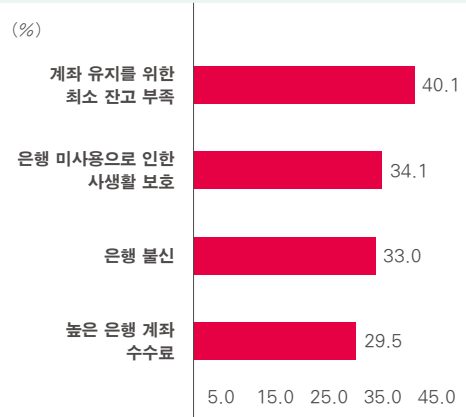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의 민간 은행은 저소득계층을 위한 단순하고 저렴한 기초계좌(basic account)를 제공하고 있다. 당좌대월약정(overdraft facility)^{주2)}이 없어 개설 시 신용조회가 필요 없고, 신용상 곤란에 처할 위험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의 경우 기초계좌가 도입된 이후 약 1천 6백만 명이 새롭게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벨기에는 기초계좌보다 좀 더 발전된 사회적 은행 계좌(social bank account)를 도입하였다. 이 계좌는 모든 거래 서비스 기능을 가지고 있고 20유로 한도 내에서 당좌대월약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주3)}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순·저비용 구조의 안심계좌 시험프로그램(safe account pilot program)을 발표하였다. 최저 1달러의 잔액 유지만이 요구되고 당좌대월은 금지되며 부족잔액 등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정부들도 지역 소재 금융회사들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당좌대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낮은 월 수수료만 부과되거나 면제되는 생애최초계좌(starter account)의 개설 확대를 장려하고 있다. 뉴욕시는 2010년 실시된 하계 청년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에서 은행 계좌가 없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생애최초통장(NYC First Account)을 개설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주4)}

미국의 금융소외가구 비율



금융소외가구가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자료 : 정민지(2023. 7.), 해외 비은행 계좌-계정 기반 지급서비스 제도 현황 및 시사점, 금융결제원

주1) 정민지(2023. 7.), 해외 비은행 계좌-계정 기반 지급서비스 제도 현황 및 시사점, 금융결제원

주2) 당좌대월은 은행이 당좌예금 거래처에 대하여 예금 잔고 이상으로 발행된 수표나 어음에 대해서도 일정 한도까지 지불함으로써 대부하는 형태이다.

주3) 김문길(2010. 2.), 유럽의 금융소외 관련 논의와 대응 방식, 보건복지포럼

주4) 금융연구원(2010. 8.), 미국의 금융소외자에 대한 은행 계좌 개설 지원 강화

2.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접근성 변화

가.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의 개념

선불전자지급서비스는 예금 계좌 대신 선불카드, 전자지갑 등에 결제 대금을 미리 충전해 두고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충전된 금액 한도 내에서 사용한다는 점은 예금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 계좌기반 전자지급서비스와 유사하다. 다만, 정해진 가맹점에 대한 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충전금의 용도가 한정되어 범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계좌기반 전자지급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선불전자지급서비스는 2022년 중 일평균 8,289억 원, 2,708만 건 이용되며 최근 빠른 속도로 이용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의 빠른 성장은 선불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선불업자에게는 소비자들을 자사 플랫폼에 자연스럽게 락인(lock-in)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점을 제공한다. 소비자들이 선불충전 후 이용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른 새로운 선불서비스를 사용하기보다는 기존 선불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고객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간편결제를 경쟁적으로 출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아가 선불업자는 축적된 간편결제 데이터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예측하여 타겟광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 확장성도 갖는다.

이용자 측면에서도 선불충전금을 이용함으로써 포인트 및 적립금 혜택, 할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는 선불 충전을 통해 결제할 시 결제금액의 2% 내외 수준의 포인트 등을 제공하는데, 체크카드 등 계좌기반 전자지급서비스가 제공하는 1% 내외의 혜택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더욱이 선불전자지급서비스는 계좌기반 전자지급서비스와 동일하게 소득공제도 30%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실물카드가 없어도 결제나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도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의 이점이다.

최근에는 여러 핀테크 업체에서 선불전자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요 핀테크 업체들의 자체 쇼핑 생태계 확장, 간편결제 시장 성장 등으로 이용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불충전금 시장은 간편함에 안정성⁸까지 더해지며 성장세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7,595억 원 수준이었던 주요 핀테크 업체의 선불충전금 잔액은 2025년에는 1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⁹

한편, 2022년 3월에는 비씨카드의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서비스’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금융거래 계좌 없이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하고, 포인트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형태의 서비스이다.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포인트 잔액 내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표4-3〉 주요 핀테크 업체의 선불충전금 잔액 추이 (억 원)

구분	2022년	2023년
카카오페이	4,413	5,216
네이버페이	1,009	1,160
토스	922	1,069
NHN페이코	128	150

자료 : 각 사 홈페이지

나. 청소년 대상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의 접근성 확대

금융권에서는 계좌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불전자지급서비스를 활발하게 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 mini, 리브 Next, 토스 유스카드, 밌, 아이부자, 퍼핀 등이 있다. 자금을 자유롭게 송금 및 출금할 수 있으며, 자녀의 결제 명세가 부모에게 통보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발급 카드 형태는 선불 기반이며 한도¹⁰는 50만 원이다.

8. 2023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024년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등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 방안이 강화된다.

9. 전자신문(2024. 1. 11.), 핀테크 선불충전금 7,595억 원…편리함·안정성으로 성장세 이어간다.

10.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의 현재 충전한도(이용한도)는 무기명 50만 원, 기명식은 200만 원이며 신용카드, 예금 계좌, 타사 포인트 등 다양한 충전수단으로 충전이 가능하다. 청소년 대상 선불전자지급서비스는 무기명으로 발행되어 충전한도(이용한도)는 50만 원이 적용된다.

〈표4-4〉 국내 청소년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 현황

구분	제공	대상	자금보유형태	송금	출금
아이부자	하나은행	0~18세	선불	△	○
mini	카카오뱅크	7~18세	선불	○	○
아이서비스 유스카드	토스뱅크 토스	7~16세	직불 선불	○ ○	○ ○
리브 Next	KB국민은행	14~18세	선불	○	○
밌 카드	신한카드	15~18세	선불	○	×
우리 틴틴	우리은행	14~18세	선불	○	○
하이틴	케이뱅크	14~17세	선불	○	○
퍼핀	레몬트리	7세 이상	선불	×	×

자료 : 각 사 홈페이지

글로벌 시장에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급서비스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다만, 글로벌 앱 대다수는 송금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으며 출금서비스를 제한하기도 한다. 자녀의 지출 명세도 부모에게 실시간으로 통보된다. 발급 카드 형태는 선불로 단일화된 국내와 다르게 국가별 규제 상황에 따라 직불과 선불이 고루 나타난다. 유럽연합(EU)와 영국에서는 전자화폐기관 인가를 받은 핀테크기업들이 지급계좌(payment account) 발급을 할 수 있어 직불카드서비스가 가능하다. 반면, 미국은 자금이체업자(money transmitter) 인가를 받더라도 은행 계좌와 연계하지 않고서는 독립적으로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선불카드서비스만 가능하다.^{11 12}

〈표4-5〉 해외 청소년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 현황

구분	국가	대상	자금보유형태	송금	출금
GreenLight	미국	제한 없음	선불	×	○
Current	미국	13~17세	직불 ^{주)}	×	○
Fidelity Youth	미국	13~17세	직불 ^{주)}	○	○
S is for Savings	미국	제한 없음	직불 ^{주)}	○	○
Chase first banking	미국	6~17세	직불 ^{주)}	×	○
GoHenry	영국	6~18세	선불	×	×
Mydoh	캐나다	6~14세	선불	×	×
Kit	호주	8~13세	선불	×	○
Spriggy	호주	6~17세	선불	△	△
ZAAP	호주	6~18세	선불	×	×

주) 핀테크와 제휴한 은행이 청소년 대상으로 계좌발급을 제공하고 있음

자료 : 각 사 홈페이지

11. 자본시장연구원(2023. 10. 25),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쟁점과 시사점

12. 대표적인 자금이체업자인 Paypal이 서비스하고 있는 Venmo는 Venmo 계정을 이용한 송금 및 물품 구매를 위해서는 은행 계좌,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연결이 필요하다. 한국은행(2023. 9. 1.), 미국 간편결제송금서비스의 특징 및 규제체계

3. 후불전자지급서비스 접근성 변화

가. 후불전자지급서비스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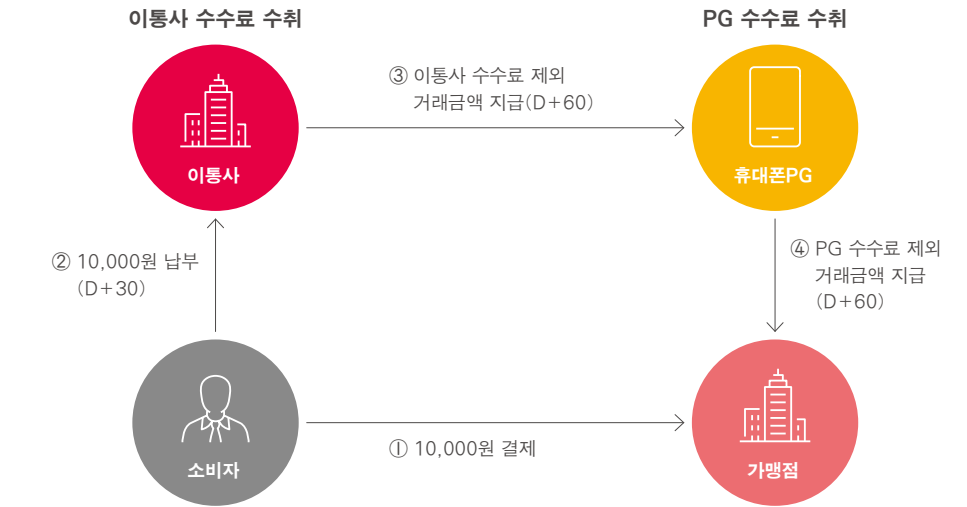
주요 후불전자지급서비스에는 신용카드와 휴대폰 소액결제가 있다. 우선, 신용카드서비스는 이용자가 신용으로 물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게 하고, 가맹점은 카드 이용자의 카드대금 납부 전에 신용카드사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 물품 대금을 선지급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 카드 이용자 부실화에 따른 대손 및 위험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신용카드업을 전업으로 하는 전업카드사 8개와 은행으로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에서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겸업은행계 카드사 11개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맹점이 모든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특정 신용카드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큰 불편 없이 거의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은 민간최종소비지출의 86.6%에 달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용 범위가 넓은 보편적인 지급결제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란 휴대폰 가입자가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받아 신용결제를 한 후 구매 비용은 구매한 다음 달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에 포함되어서 나오는 형식의 결제를 말한다. 휴대폰을 소유한 만 19세 이상인 이용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결제서비스이다. 결제방법은 온라인에서 결제 요청 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결제가 진행된다.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구조는 소비자가 이동통신 요금을 납부하면 이동통신사, 휴대폰PG사, 가맹점으로 정산 흐름이 이루어진다. 이때 휴대폰PG사는 PG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며, 이동통신사가 수취하는 수수료는 판매관리비로 기록된다. 신용카드와의 차이점은 휴대폰PG사가 신용카드사가 하는 여신(Loan) 처리를 담당하진 않는다는 점이다. 신용카드사와 달리 결제이용자가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휴대폰PG사가 결제 가맹점에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결제액 미납·연체 리스크를 지지 않는다.

〈그림4-7〉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구조



자료 : 교보증권(2020), 휴대폰 결제도 연택트 수혜 기대

나. 금융 이력 부족자 대상 후불전자지급서비스의 접근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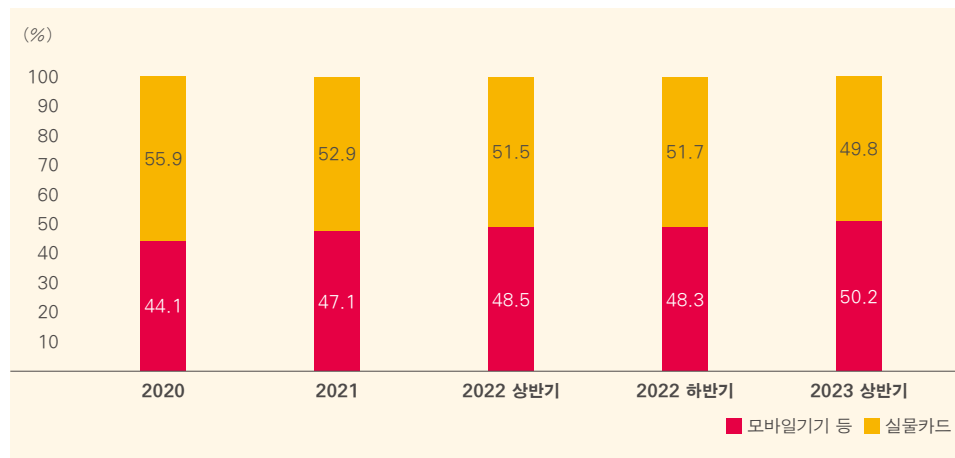
신용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득, 신용점수, 납부능력 등 금융 이력이 필수적이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프리랜서, 주부 등 썬파일러(thin filer, 금융 이력 부족자)는 신용카드 이용이 어려웠다.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의 일환으로 소액후불결제(BNPL)가 도입되면서 신용카드가 아닌 후불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소액후불결제는 학생, 주부, 사회초년생 등에게 최대 30만 원의 소액 신용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소액후불결제는 기존 개인신용평가 회사와 같이 신용거래 시 연체 유무, 금액, 기간, 다중채무 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이용한다. 가스요금 납부 이력, 쇼핑 이력, 모바일 데이터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한 평가 기준으로 신용을 제공한다. 2023년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2024년 9월부터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비정형 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 소외계층에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소액후불결제는 최근에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였다. 2023년 6월 기준 소액후불결제의 평균 연체율은 5.8%로 나타났다. 지난 분기 대비 1.2%p 증가하였다. 카드사의 연체율이 1%대인 것에 비하면 높은 연체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소액후불결제업자들 간 연체 정보 공유 등을 포함한 연체율 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 기타

한편, 모바일 간편결제¹³의 등장은 금융소비자들이 실물 카드 대신 모바일 간편결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후불전자지급서비스의 이용행태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중 국내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 규모는 실물 카드를 이용한 결제 규모를 넘어섰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⁴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 비중도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림4-8〉 접근기기별 결제 비중 추이



자료 : 한국은행(2023. 9.), 2023년 상반기 중 국내 지급결제동향

3절 현금 접근성 변화

1. 현금 통용력 논의

전술한 바와 같이 ‘현금 없는 매장’이나 ‘현금 없는 버스’의 등장은 현금 사용 감소와 현금 접근성을 낮추며 현금 통용력 보장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소비자가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권리이지만, 사용하지 ‘못하게’ 막

13. 간편결제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2015. 3.)된 이후 비밀번호, 지문·얼굴 등 생체 정보 등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한 결제서비스이다. 특히 카드 정보 입력, 본인 인증 등의 과정을 획기적으로 간소화했다.

14. 2023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규모는 11.9% 증가한 반면, 실물카드를 이용한 결제규모는 4.7% 증가하였다.

는 것은 권리 침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법」 제48조¹⁵에서도 현금은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를 보면 최근 1년간 상점 및 음식점 등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전체 가구의 6.9%로 2018년(0.5%)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12.6%)가 현금 결제 거부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70대 이상 고령층(2.3%)도 이전에 없었던 현금 결제 거부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2019년 5월에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¹⁶이 발의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가맹점이 거래 과정에 있어 이용자에게 특정한 지급수단을 강요하거나, 전자화폐 등을 사용해 거래하는 이용자를 달리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¹⁷ 2022년 9월에는 현금선택사용권을 명문화한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현금 등 결제 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와 특정 결제 수단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현금선택사용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2. 현금 접근성 보장의 필요성

가. 현금사용의 선호 가능성

현금은 거래의 익명성(anonymity)이 보장되는 특성이 있다. 반면, 전자지급거래는 타인에게 관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데이터 분석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신의 결제 이력, 앱 사용 이력 등 개인의 행태정보가 수집·분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금융 등 대부분의 산업군에서 행태정보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행태정보는 자신의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도 있다. 따라서 익명성을 중시하는 사용자일수록 편리함보다는 현금을 사용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을 큰 가치로 여길 수 있다.

현금은 은행 계좌나 스마트폰 등 별도의 전자적인 접근 채널 없이도 이용 가능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포용성이 높은 지급수단이라는 특성도 있다. 카드나 계좌이체 등 비현금화에 익숙하지 않는 고연령층이나, 카드 발급에 제약이 있는 청소년층 등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지급수단으로 적합하다. 현금 사용 인프라 축소는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의 지급수단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

15.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1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김두관 의원 발의, 2019. 5.)

17. 월간중앙(2020. 3. 2.), 현금 없는 매장 ‘불법’ 논란, 소비자 결제권 침해 VS 시대 흐름 거스르는 규제

지급수단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설문조사¹⁸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3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현금을 사용하고, 응답자 대부분(91%)이 현금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결제가 주를 이루지만 지난 1주일간 현금 결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60%에 달했다. 현금은 언제 어디서 필요할지 모른다는 인식하에 보조 결제수단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10대를 중심으로 편의점 결제가 새로운 쇼핑 수단으로 떠오르는 것도 현금이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에게 중요한 지급수단임을 보여준다. 편의점 결제¹⁹는 현금을 기반으로 하는 결제 시스템으로 신용카드를 자유롭게 개설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간편하게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실제로 10대들의 활발한 이용으로 2022년 12월 편의점 결제액은 도입 당시(2020. 10.)보다 80% 가량 성장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나. 지급결제시스템의 보완성

현금은 사용처²⁰가 줄어들고 있지만 전자지급수단에는 없는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다. 현금은 전자지급수단과 달리 강건성(robustness)이 우수한 실물형(token-based) 지급수단이라는 점이다. 정전, 자연재해 등 전자지급수단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²¹

실제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전자금융 관련 사고 발생 시 그 영향도 커지고 있다. 2011년 11월에는 한 통신사의 인터넷망 연결 장애로 특정 지역의 인터넷뱅킹, 카드 결제 등의 서비스가 마비된 사고가 있었다. 2022년 5월에는 한 카드사의 전산센터 장애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가 3시간 이상 중단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022년 10월에는 한 빅테크 기업의 전산장애로 간편결제·간편송금

18. 데이터융복합·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소비자의 오프라인 결제수단 이용 행태와 CBDC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만 20~69세 금융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오프라인에서 주로 이용하는 결제수단은 신용·체크카드 79%, 휴대폰 간편결제 15%, 현금·수표 및 계좌이체 6% 순이었다. 소지하고 다니는 현금 금액은 10만 원 이상이 14%, 5만~10만 원 20%, 3만~5만 원 18%로 전체의 52%가 3만 원 이상을 갖고 있었다. 이밖에 1만~3만 원이 19%, 1만 원 미만이 20%였고 현금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경우는 9%에 불과했다. Digital Today(2021. 8. 31.), 열에 아홉은 현금 소지...CBDC는 긍정적
19. 편의점 결제 방식은 먼저 온라인 쇼핑에서 편의점 결제로 주문하면 바코드가 나온다. 편의점에 가서 점원에게 해당 바코드를 스캔하고 고객이 금액에 맞게 현금을 지불한다.
20. 대표적인 예로 전통소싸움(전통소힘겨루기)의 경우 온라인 우권(牛券) 발행을 금지하고 있어 카지노와 함께 현금만을 사용해야 하는 곳으로 남아 있으며, 지하철 일회용 교통카드 구입을 위해서도 현금만을 사용해야 하는 등 현금만을 사용해야 하는 특수거래는 여전히 존재한다.
21. 행정환(2020), 현금결제선택권 보장 입법 추진 국가의 관련 제도 도입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되는 사태도 있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중 전자금융사고 발생 건수는 356건으로 전년 대비 28건 증가하였다. 특히, 전자금융 장애사고의 경우 전년 대비 37건 증가하고, 시스템 부하, 전산설비 장애 등 금융투자, 전자금융 등 업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3. 현금자동입출금기(Automated teller machine, ATM)²² 축소에 따른 현금 접근성 감소

가. 원인

은행은 예대마진 대비 비이자이익 다각화 정책²³ 및 여·수신 금리 경쟁촉진 정책²⁴ 실시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경쟁 심화로 비용 효율화 경영전략을 점차 강조하고 있다. 지점을 비롯한 현금자동입출금기²⁵ 운영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디지털 뱅킹의 확대 영향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는 고객 수가 줄어들고 있어 현금자동입출금기의 효율성은 저하되고 있다. 카드, 간편결제 등이 확산하면서 현금 사용이 줄어든 데다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자동입출금기의 감소 경향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캐시리스 결제가 확산하면서 2018년 이래로 전 세계 현금자동입출금기 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현금자동입출금기 대수가 가장 많은 중국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캐시리스 결제 확산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2위인 미국은 은행 지점 통폐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현금자동입출금기 대수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이 현금자동입출금기의 역할에 대한 전환기를 불러온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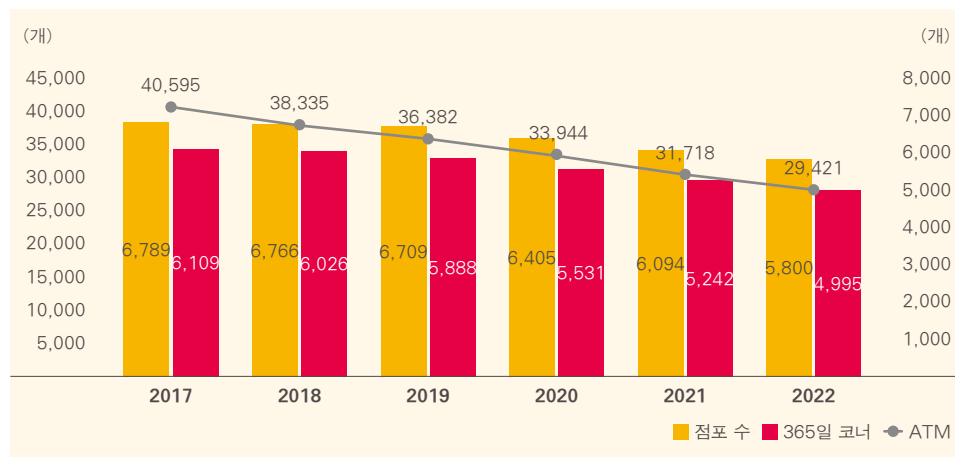
22. 현금자동지급기(Cash Dispenser, CD)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23.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은행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4. 금융위원회는 2022년 8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 운영 방안'을 발표하여 예금중개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2023년 7월에는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개선하여 공시 범위를 확대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2023년 6월에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서비스를 실시하여 금융회사 간 대출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실시하였다.
25. 은행을 대신해 입출금이나 송금, 기타 은행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한 기기이다. 은행이 열지 않는 시간대, 해당 은행 점포가 없는 곳에서 은행 역할을 대신해 고객들은 물론 많은 은행 고객들에게 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축소 현황

현금 사용 비중이 줄어들면서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기 위한 현금자동 입출금기도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17개 시·중·지방·특수은행의 국내 현금자동입출금기는 총 2만 9,451곳으로 1년 전보다 2,267개 줄었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수는 2017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5년 동안 1만 1,144개의 현금자동입출금기가 감소하였다. 은행 지점 수도 줄어들면서 오프라인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로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비대면업무가 점점 더 보편화됨에 따라 증가하는 임대료를 계속 부담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이다. 은행의 점포 및 현금자동입출금기의 감소는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일수록 지점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정책당국 및 은행들은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0년 8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주요 은행이 공동ATM 시범 운영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공동ATM은 4대 은행의 입출금, 계좌이체 등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이용고객들은 공동ATM을 이용할 때 각자 거래하는 은행의 수수료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비대면 거래 증가로 현금자동입출금기가 줄어들에 따라 고객의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해 등장한 대안이다.

〈그림4-9〉 줄어드는 은행 오프라인 서비스 추이



자료 : 중앙일보(2023. 4. 19.), "지점 대신 ATM"이라던 은행...알고보니 ATM 더 많이 없었다

다. 디지털금융 소외계층 관련 논의

최근 들어 ICT기술 발달로 인터넷, 모바일뱅킹을 비롯한 각종 금융플랫폼들이 생겨남에 따라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이 확대되고 있다. 60대 이상 노년층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함에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 중에서 60대 이상은 5% 전후에 불과한 수준이다.²⁶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은 입출금 등 간단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점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방문한다.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은행이 지점을 비롯해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어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도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은 배제되고 있다. 비대면 채널에 원천적으로 접근이 어려워 각종 금융 우대서비스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이다.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은 금융 디지털화의 혜택에서 배제됨에 따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와 금융회사는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등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은행들은 금융 취약계층의 원활한 금융업무 지원을 위해 점자형 보안카드, 음성 OTP, 전용 상담 창구와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차별적 영업 관행을 시정하고 자 금융서비스의 불합리한 차별금지 방지 법안²⁷이 발의되기도 했었다.

26. 백종호(2017. 4.), 디지털 금융시대의 금융 소외 심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7. 2017년 1월 민병두 의원은 금융서비스 제공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금지하도록 하는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성전문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Box3-8〉 은행공동점포 및 은행대리업 논의

은행은 수익성 개선과 지점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력 및 지점 축소 등 비용 감축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비대면 거래 확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빅테크 등 비금융기업의 시장진입으로 시중은행 점포 수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은행권의 지점 축소 경향은 전 세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비용 절감과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모두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점포 및 은행 대리업 검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은행공동점포란 서로 다른 은행이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를 말하며,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은행공동점포를 통해 오프라인 점포 유지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

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2022년 4월에 용인시에 공동점포를 개설하였으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2022년 9월 경북 영주에 공동점포를 개점한 바 있다.

은행공동점포와 함께 은행대리업도 최근 그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 이외의 자가 대리 또는 중개하는 제도이다. 소비자 생활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우체국, 편의점, 약국 등에서 은행 예금 계좌 개설, 송금,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대리업이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를 대리하므로 인가제로 운영하되, 복수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를 배제하고, 영업 채널 범위로 은행권 공동 대리점, 우체국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은행대리업 논의와 더불어 2022년 11월부터는 전국 우체국 지점을 이용한 은행권 공동창구 서비스가 실시되었다. 4대 시중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고객은 우체국 지점 어디에서나 입·출금, 조회 및 자동화기기(ATM) 서비스를 별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정사업 본부는 이들 은행과 창구망 공동이용 업무협약을 맺고 우체국 통장과 은행 통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리더기를 개발·보급하고 거래 정보 공유·정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의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은행대리업은 각 국가의 금융환경에 따라 제도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고령 금융소비자가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은행대리업 제도를 활용한다. 우체국 지점, 유통·통신대리점에서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예적금 수입, 대출·어음할인, 외환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체결 또는 중개를 업무범위로 한다.

각국의 은행업무 대리·위탁제도 비교^{주)}

구분	일본	미국	호주
유형	은행대리점	제휴·위탁	제휴·위탁
대리인 유형	법인, 개인	제한없음	우체국
대리인 업무	은행의 본질 업무(계좌개설, 대출, 외환)를 포함, 제한 없음	위탁받은 업무만 수행 가능	계좌입금, 현금인출, 공과금 납부
특징	은행이 대리업자 지도·감독 의무(업무지도, 적절한 여신심사, 고객정보보호 등)	법적 책임은 은행에 있으며 위탁계약 체결시 실사 및 지속관리 감독 의무	개인/기업 고객은 카드나 통장 등을 가지고 우체국 방문 시 기본적인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주)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3. 7.), 은행대리점이 변화시킬 금융산업의 모습은?

전자지급서비스의 안전성 이슈 대응



앞서 살펴본 지급서비스의 경쟁가속(제1장), 간편결제/송금서비스의 활성화(제2장), 국가간 지급거래 확산(제3장)의 트렌드는 모두 전자지급서비스의 효율성과 혁신성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지급결제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기본 전제로 하는 사회적 합의이자 약속의 일환임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받고 차별 없이, 그리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지급서비스의 접근성과 안전성 역시 신뢰 확보에 있어 중요한 가치임은 명확하다. 앞서 제4장에서 전자지급서비스 이용의 기회를 보장하는 접근성 이슈를 살펴보았다면, 이 장에서는 전자지급서비스 안전성을 위협하는 이슈와 이에 대한 대응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절 사이버 복원력(Cyber resilience) 확보

2022년 10월에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가 중단된 사고¹와 2023년 11월에 발생한 행정망 전산 마비 사태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고 발생 시의 사이버 복원력(Cyber resilience)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킨 사례였다. 특히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되고 복합화된 플랫폼 비즈니스의 중단은 나비효과를 일으켜 메신저, 인증, 송금, 결제, 택시 호출 등 계열사의 서비스 장애로까지 이어져 우리의 일상을 마비시켰다.

디지털 전환의 확대로 인해 IT 복잡성이 증가하고, 사이버공격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IT 인프라 장애나 사이버 사고를 사전에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얼마나 신속하게 위기에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보안상의 위협이나 공격, 각종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IT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핵심 업무를 신속하게 복구하여 필수 기능을 재개할 수 있는 능력을 사이버 복원력(cyber resilience)이라 한다. 재난 발생 등 비상 시에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립해 두는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BCP)’, 전산센터 장애 시 전환처리를 위해 별도의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DR)’ 센터를 운영하는 것 등이 이러한 사이버 복원력 확보의 대표적 사례다.

사이버 복원력 확보는 국내외 금융정책의 주요 아젠다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2023년 국제결제은행(BIS)은 금융보안 정책기조가 기존의 리스크 관리·통제라는 1세대 규제에서 점차 복원력 확보를 우선시하는 2세대 규제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² 또한, 2022년 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 전반을 아울러 금융 부문의 IT 리스크에 대응하는 단일 규정(Regulation)³으로 「디지털 운영 복원력 법」(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Act, DORA)이 채택되어 2025년 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⁴ 이 규정은 유럽연합의 전반적인 디지털금융 전략 강화를 위하여 유럽집행위원

1. 당시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하여 서버 전원공급이 끊기면서 해당 데이터센터에 전산시스템을 둔 상당수의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백업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장애 시간이 길어졌다.
2. BIS(2023. 6. 12.), Banks’ cyber security – a second generation of regulatory approaches
3. EU의 법률체계에서 규정(Regulation)은 모든 내용에 구속력이 있고 전체 회원국 내에서 직접적인 효력을 가진다. 반면, 지침(Directive)은 전반적인 정책 목표와 제정 기한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개별 회원국에 위임하여 개별 국가가 별도의 국내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따른다.
4. 유럽집행위원회(EC)의 초안 발표·제안 후 의견수렴을 거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에서 2022년 11월 공식 채택되었다. 2024년 1월 현재 동 규정을 따르는 세부적인 규제기술표준안(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이 발간되었으며, DORA의 적용대상인 금융회사, 제3자 IT서비스 제공업체 등은 2025년 1월 17일 시행 전까지 필요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회(European Commission, EC)가 2020년 9월 발표한 대규모 ‘디지털금융 패키지(Digital Finance Package)’ 중 하나로, 유럽연합 내에서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복잡한 금융 IT 규제를 통합하여 일관성 있는 디지털 운영 복원력 규율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⁵ 이를 위해 이 규정은 업무연속성계획 및 재해복구계획 확립 의무, 중요 IT 사고 보고체계 마련, 운영 복원력 테스트 수행, 제3자 리스크 관리 및 감독체계 준수 등의 의무사항을 포함한다. 적용대상은 은행 외에도 전자화폐사업자(E-Money Institution, EMI)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 PI) 투자회사, 보험회사,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 증권예탁원, 증권청산소, 증권거래소, 신용평가회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이 규정의 주요한 특징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제공업체, 일명 제3자 IT서비스 제공업체까지 적용된다는 점이다. 금융회사는 제3자와 IT 아웃소싱·이용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무결성 등 기술·보안 준수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는 관할 당국이 계약을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주요 제3자 IT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당국이 직접 감독한다.⁶

〈표5-1〉EU의 「디지털 운영 복원력 법」(DORA) 주요 내용

구분	규율사항	비고
IT 위험관리 (ICT risk-management)	• 이사회·경영진 등의 관리책임 강화 등 내부 거버넌스 통제체계 마련 • 위험평가·관리 프레임워크 개발 및 문서화 • 위험 시나리오에 대비한 업무연속성계획, 재해복구계획 수립	의무 사항
사고 보고 및 관리 (Incident reporting)	• IT 사고 모니터링·관리·기록·분류·보고 시스템 구축 • 사고 관련 단계별 보고서 제출 의무	의무 사항
운영 복원력 테스트 (Operational resilience testing)	• 연 1회 취약성 평가 및 시나리오 기반 테스트 수행 • 3년 주기 위험 기반 침투 테스트(TLPT) 수행	의무 사항
제3자 위험관리 (ICT third-party risk monitoring)	• 금융회사와 IT 제공업체 간 계약 관리 강화 • 중요 기능의 IT 제공업체 집중리스크 방지 • 주요 IT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직접 감독	의무 사항
정보공유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sharing)	• 대내외 IT 관련 사고로부터의 학습 프로세스 수립	권장 사항

5. ‘디지털 금융 패키지’는 이 외에도 ① 디지털 금융전략, ②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규제법안(MiCA, 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 Assets), ③ 분산원장 기술의 금융시장인프라 시범 적용방안(proposed DLT pilot regime for FMI)을 포함한다.
6. 유럽집행위원회(EC)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IT 제공업체는 유럽감독당국(ESA)의 책임감독관이 직접 감독한다. DORA 미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전년도 글로벌 일일 평균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규정 준수 시까지 최대 6개월 동안 매일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한편, 국내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일반법인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 안전성 확보의무라는 포괄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행정규칙인 「전자금융감독규정」⁷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 이 중 사이버 복원력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4조, 제23조 및 제24조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최근에는 기존에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가 부여되지 않았던 중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재해복구센터(DR)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⁸ 이를 통해 일정 기준⁹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 리스·할부금융·신기술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의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표5-2〉 전자금융감독규정 중 사이버 복원력 관련 주요 규율사항

구분	규율사항	대상
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3조)	- 고객정보 등 중요정보 파괴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자료백업 관리 등의 대책 수립 - 사고 발생 시 추적 가능한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제14조)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정상 가동되기 위한 대책 수립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비상대책 등의 수립·운영 (제23조)	-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 대비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수립 - 전산장비 및 통신회선 이중화 - 별도의 재해복구센터(DR) 구축·운영 - 핵심 업무 복구목표시간(Recovery Time Objective, RTO) 준수(3시간 이내 등) - 정기적인 재해복구 전환훈련 실시	금융회사(일부), 전자금융업자(일부)
비상대응훈련 실시 (제24조)	- 연 1회의 비상대응훈련 실시 - 필요 시 금융분야 합동비상대응훈련 실시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사이버 복원력 확보 이슈는 비단 지급서비스 제공사업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소액결제시스템 등의 금융시장인프라(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FMI)¹⁰ 또한 사이버공격이나 재난·재해 발생 시 그 파급효과가 막대한 만큼, 국제결제은행(BIS)의

7.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장(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의 내용이 안전성 확보의무 관련사항에 해당한다.

8.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가 진행(2. 1. ~ 3. 12.)되었으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재해복구센터 구축의무 등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9. 전자금융업자는 연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직전년도 총자산이 2조 원 이상인 시설대여업자·할부금융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경우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10. 시스템 운영자를 포함한 참가기관 간의 다자간 금융시스템으로, 지급거래·증권거래 등을 청산·결제 또는 기록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 금융결제원이 운영 중인 소액결제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한다.

CPMI-IOSCO는 PFMI¹¹ 중 운영리스크 항목(원칙§17)으로 사이버 복원력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PFMI의 추가 지침 성격으로 「FMI 사이버 복원력 지침」(Guidance on cyber resilience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을 2016년 별도로 제정한 바 있다. 동 지침은 FMI 운영기관의 대응이나 감독당국의 업무수행 등에 관한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PFMI 및 「FMI 사이버 복원력 평가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의 FMI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절 착오송금 대응

전자자금이체가 점점 더 편리해지면서, 사용자들은 때때로 금액, 수취은행,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착오송금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좌이체 시 수취인의 이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착오송금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실수로 이체를 한 경우에도, 송금인은 해당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대신,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별도로 자금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¹² 이는 송금이 완료되면 그 자금은 수취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송금인의 실수 등으로 발생한 계좌기반 착오송금 반환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들은 자금청구반환 실시간 처리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¹³ 이를 위해 송금인은 먼저 자신의 거래은행에 자금반환을 신청하여야 하며, 송금인 거래은행이 수취인의 계좌 개설은행으로 자금반환을 요청하면 수취인 거래은행이 수취인에게 따로 연락하여 오송금된 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반환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수취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하며, 수취인 거래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반환이 불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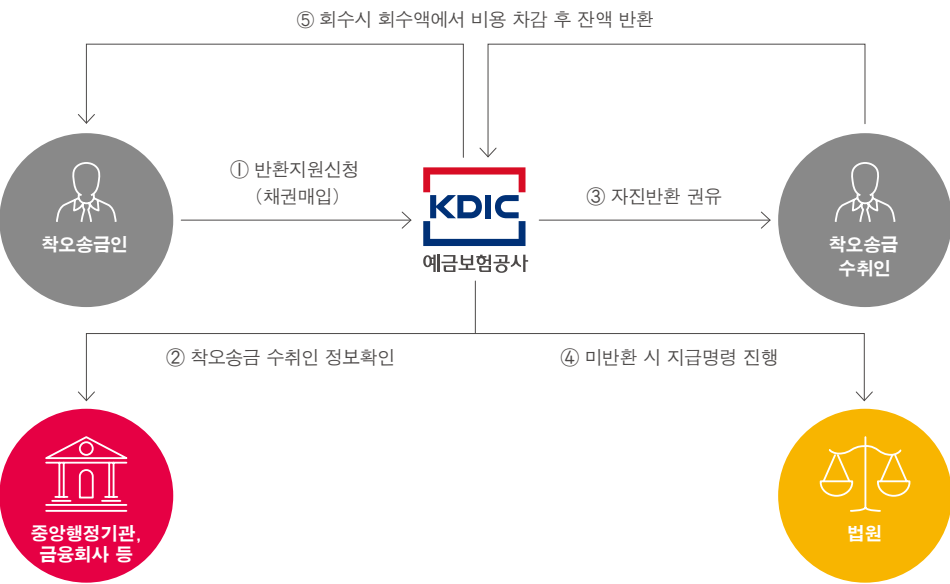
1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인프라(FMI)의 위기대응능력과 리스크관리 기준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2년 제정된 국제기준이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FMI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서 지배구조, 종합적 리스크관리 체계, 결제원결성, 운영리스크 등 총 24개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원칙은 FMI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12.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자금이체는 수취인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날 때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며 거래지시 철회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지급지시와 거의 동시에 입금기록이 이루어지는 국내의 상당수 지급거래에 있어 착오송금에 따른 송금인의 거래지시 철회는 쉽지 않으며, 별도의 반환절차가 요구된다.

13. CD공동망, 타행한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오픈뱅킹을 통한 타행 입금이체형 거래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이 운영 중인 자금청구반환시스템에는 2023년 8월 기준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 65개 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오입금받은 수취인이 해당 자금을 돌려준다면야 문제될 일이 없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수취금액은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송금인은 수취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의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금융회사를 통한 수취인의 자진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착오송금에 대하여 별도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직접 매입한 후 유관 기관을 통해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받아 반환절차¹⁴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제도 도입 이후 2023년 말까지 누적 총 8,390건(112억 원), 월평균 약 308건(3.8억 원)이 송금인에게 반환되었다. 이 중 93.6%의 수취인이 예금보험공사의 권유에 따라 자진반환하였고, 나머지 6.4%는 자진반환을 거부하여 법원 지급명령 신청 및 계좌 압류 절차를 거쳐 회수되었다.¹⁵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는 자진반환 기준 평균 41.5일, 지급명령 기준 평균 133.3일 소요되었다.¹⁶

〈그림5-1〉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절차



자료 : 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시스템(K-MRS) 홈페이지

14.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안내·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예금보험공사로 자진반환하거나, 미반환에 따른 법원의 지급명령 등 법적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반환 또는 법적절차를 통해 회수한 금액 중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처리한다.
15.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2024. 1. 25.), 2023년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이용 현황
1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22609호, 2023. 6. 13. 입법발의)에 대한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표5-3〉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주요 내용

구분	내역
법적근거	• 예금자보호법(제18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대상거래	•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 거래 • 금융회사 계좌 ^{주1)} 또는 간편송금업자 계정 ^{주2)} 을 통한 착오송금 거래
지원신청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온라인 ^{주3)} 또는 예금보험공사 방문 신청
자금반환	• 예금보험공사가 실제 회수한 경우에 한하여 회수 관련비용 ^{주4)} 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송금인에게 사후정산

주1) 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탁,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주2) 단, 송금인이 수취인 계좌번호로 간편송금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연락처 등 계좌번호가 아닌 방식으로 간편송금한 경우는 수취인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주3)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kmrs.kdic.or.kr)
주4) 수취인 앞 우편 안내비용, SMS 발송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3절 보이스피싱 및 신원도용 등의 금융사기 대응

비대면 기반의 전자지급서비스가 활성화되는 만큼 일종의 반작용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싱(phishing),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스미싱(smishing), 파밍(pharming), 메모리해킹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가 그 대표적 사례다.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송금하는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은 물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기범이 피해자 본인으로 가장하여 송금하거나, 사기범에게 속은 피해자가 사기범 또는 현금수거책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형태의 신유형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가 직접 현금을 건네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발생건수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¹⁷하고 있으며, 오픈뱅킹, 간편송금, 악성앱 등을 복합적으로 악용한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도 등장하고 있다.

17.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건수 및 비중은 2019년 3,244건(8.6%) → 2020년 15,111건(47.7%) → 2021년 22,752건(73.4%) → 2022년 14,053건(64.4%)으로 빠르게 증가해왔다.

〈표5-4〉 주요 보이스피싱 유형

구분	내역
계좌이체형	• 피해자가 사기범의 계좌로 직접 송금·이체하는 경우
개인정보취득 송금·이체형	• 정부기관 사칭, 범죄 연루설 등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대면편취형	• 사기범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편취하는 경우
출금형	• 사기범이 피해자로부터 통장, 카드 등을 전달받아 자금을 출금하는 경우
절도형	• 피해자가 자금을 특정 장소에 두도록 한 후 사기범이 절도하는 경우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23. 7. 28.),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최근 개정내용 및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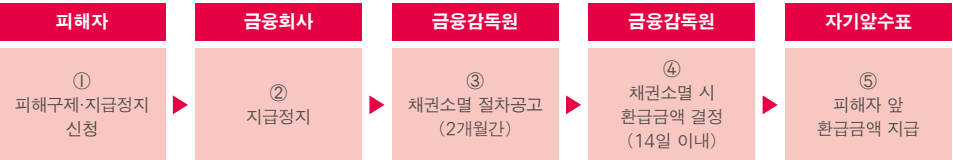
2006년 첫 피해 신고 이후로, 보이스피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지급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2011년 제정된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구제와 보호를 위한 법률이다. 또한, ATM 지연 인출제도, 지연이체제도,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제한 정책 등도 이러한 예로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그 범위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¹⁸이 이어지는 등 창과 방패의 싸움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1.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한 지급정지제도는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 등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금이 입금된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해당 자금이 현금화되는 것을 막는 제도다. 금전적 피해를 사후적으로 방지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구제신청·지급정지 요청이 있거나 수사기관·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 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등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해당사항을 통지·공시하여야 한다. 공시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해당 채권은 소멸되며 이후 피해자에게 환급·반환이 이루어진다.

18. 일례로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을 개시하고 일원화된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부처별로 운영한 신고창구가 112(전화) 및 보이스피싱지킴이(인터넷)로 통합되어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간소화되었다.

〈표5-5〉 지급정지제도에 따른 피해금 환급 절차



- ① 피해자는 지급·수취 금융회사 또는 수사기관에 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를 신청
- ②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요청 등에 따라 입금내역 등을 확인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
- ③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요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
- ④ 공고 이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이익제기 없이 2개월 경과 시 해당 채권은 소멸되며,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결정
- ⑤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처리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법의 사각지대 해소¹⁹를 위하여 대면편취형 등 신유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23년 11월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전체 보이스피싱 중 64.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가 가능해졌다.

〈표5-6〉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2023. 11. 17. 시행) 주요 내용

구분	내역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 확대(법 제2조)	• [기존]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기기를 이용한 금융사기 한정 (예) 계좌이체형, 개인정보취득 송금·이체형 • [추가]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포함 (예) 대면편취형, 출금형, 절도형
신유형 사기 피해구제 절차개선(법 제3조)	• [기존] 피해자가 금융회사로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 • [개선]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사기이용계좌를 특정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금융회사로 지급정지 요청
처벌 강화 (법 제15조의2)	• 모든 유형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처벌대상으로 포함하고, 범죄수익 박탈 및 형량 등의 처벌을 강화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23. 7. 28.),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최근 개정내용 및 향후 과제

19.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 동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구제대책으로 도입된 지급정지제도를 역으로 악용하는 신종사기 수법이 성행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통장묶기 사기가 그 대표적 사례다. 통장묶기란 사기범이 타인 계좌에 임의로 돈을 입금하고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를 통해 해당 입금계좌를 지급정지시킨 후, 지급정지 해제를 대가로 계좌주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범죄다. 특히 영업장에 계좌번호, 연락처를 공개해 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주된 대상이다. 일단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완료될 때까지 2~3개월간 입출금 등의 전자금융거래가 막히다 보니 피해자는 사기범의 요구대로 합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2024년 2월 통장협박 사기에 대한 대응책을 포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8월부터 시행된다. 동법에 따라 통장협박 피해자는 협박문자 등의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금융회사에 소명하면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다.

2.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피해자가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²⁰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27일 도입되었다. 고객은 별도의 온라인 채널²¹이나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내역을 일괄조회한 후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하여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²² 이후 지급정지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해제할 수 있다.

3.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 의무화

우리에게 “○○페이” 등으로 익숙한 간편송금은 구조상 해당 사업자의 내부 시스템에서 이용자 계정 간에 충전금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상대방의 계정, ID,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간편송금이 이루어지다 보니 계좌이체와 같은 자금의 이동추적이 어려워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간편송금을 통해 피해금이 사기범 계좌로 송금된 경우, 선불업자만 해당 계좌 정보를 알 수 있고 금융거래정보 공유 역시 제한되어 있어, 해당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4년 2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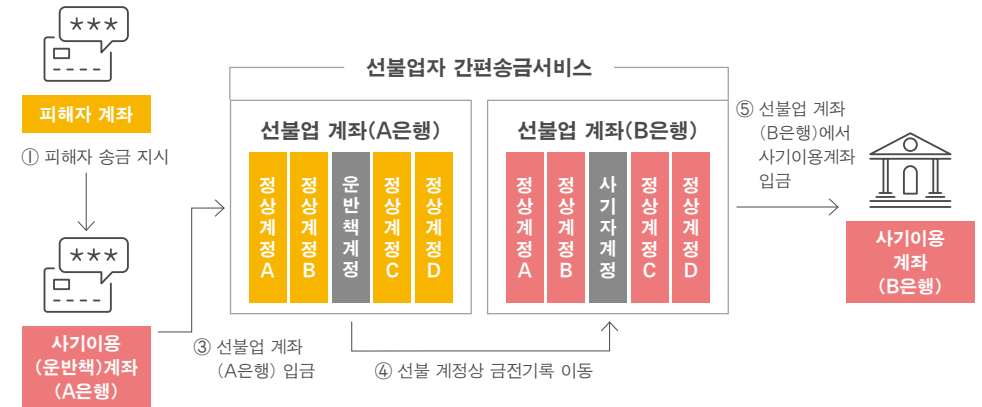
20.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21.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payinfo.or.kr) 및 모바일 앱

22.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계좌에 대해서는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에 따라 별도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에 사기이용계좌 및 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를 공유하도록 법제화하였다.

〈그림5-2〉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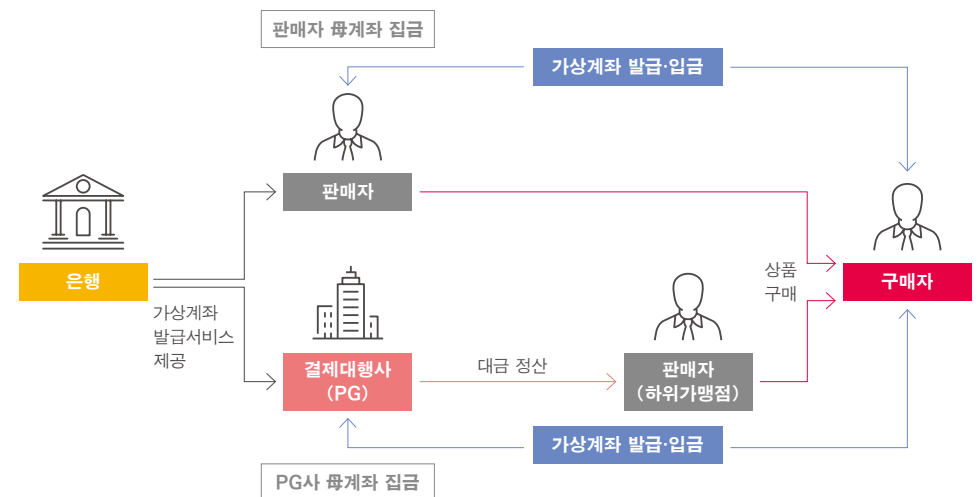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4. 2.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4. 가상계좌 관련 제도 정비

가상계좌(virtual account)²³란 계좌주인 수취인이 입금인 식별 등을 위하여 계좌번호 형태로 입금인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입금전용 전산코드다.

〈그림5-3〉 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 흐름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3. 19.), 은행 계좌를 악용하는 청소년 대상 범죄를 차단하겠습니다.

23. 실제로 통장이 없다는 점에서 무통장입금이라고도 불린다.

가상계좌는 은행이 직접 발급하거나 은행과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한 결제대행사(PG)를 통하여 발급·제공된다.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실명확인된 연결계좌, 일명 모(母)계좌로 입금처리되므로 가상계좌 자체는 잔액을 보유하지 않으며 가상계좌 이용기관은 입금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다.²⁴ 이처럼 가상계좌는 이용기관의 입금확인이 간편하다 보니 다양한 온라인 거래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²⁵

이처럼 기업이 입금자와 입금내역을 효율적으로 식별·확인할 수 있는 가상계좌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에 가상계좌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사기범이 탈취한 회원계정으로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 결제방식으로 가상계좌 입금을 선택하고 피해자를 속여 입금을 유도한 후 거래취소를 통해 자신의 다른 계좌로 환불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 등이다. 더욱이 특정 하위가맹점의 가상계좌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복수 하위가맹점의 가상계좌가 연결된 결제대행사(PG)의 모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어려운 점도 소비자 피해를 키운다. 이처럼 가상계좌를 악용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최근 금융감독원은 전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제대행사(PG)의 하위가맹점 관리 강화 등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 발표하였다.²⁶

5. 기타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 제도

앞선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데, ATM 지연인출제도, 지연이체제도,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제한,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단말기 지정서비스 등이 그 예다.

24. 다만, 결제대행사(PG)는 자신의 모계좌로 일괄 집금된 자금을 대해 일정한 수수료를 제한 후 하위가맹점과의 계약된 주기에 따라 별도로 정산·입금처리한다.

25. 가상계좌 발급 횟수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보니 2022년 기준 은행 모계좌에 연결된 가상계좌의 수가 약 90억 개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2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3. 19.), 은행 계좌를 악용하는 청소년 대상 범죄를 차단하겠습니다.

〈표5-7〉보이스피싱 예방 관련 제도

구분	내역
ATM 지연인출제도	1회 100만 원 이상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 또는 이체 발생 시 30분간 거래를 지연(단, 창구 인출 및 이체는 가능)
지연이체제도	이체 시 입금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처리되고, 입금 30분 전 취소 가능(별도 신청 필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제한	최근 20영업일 내 계좌개설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입출금계좌 개설을 제한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사전 신청 시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하나,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 송금(1일 100만 원 이내)만 가능
단말기 지정서비스	사전 신청 시 미리 지정한 기기(스마트폰, PC 등)에서만 주요 금융거래가 가능(미지정 기기에서는 추가 인증 요구)
해외IP 차단서비스	사전 신청시 해외 접속 IP로 확인되는 경우 자금이체 차단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	만 65세 이상 개인 중 희망고객에 한하여 본인의 카드대출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하여 부정대출 방지

자료 :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게시내역 등

6.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금융사기 대응

본래 실명확인이란 금융거래 계약의 당사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명의인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²⁷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금융회사는 고객의 실지명의를 대면(face-to-face)으로 확인하여야 했다. 하지만, 온라인 금융거래 증가, IT 발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2015년 5월 금융당국은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관련 유권해석을 변경함으로써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 허용되었다. 비대면 실명확인이란 온라인 채널 등 대면 이외의 방식으로 명의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일명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이라는 법령해석의 형태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은 〈표5-8〉에서와 같이 총 7가지가 있는데, 이 중 ①~⑤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며 동 의무사항을 이행하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실명확인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외에 ⑥~⑦ 방식은 추가 확인 차원에서 권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2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표5-8〉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구분	내역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²⁸⁾ 를 사진촬영이나 스캔 후 컴퓨터·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메일, 파일 업로드 등의 방식으로 제출
② 영상통화 등	•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영상통화 등을 통해 상대방의 영상과 그 사람이 제출한 실명확인증표상 사진을 비교·대조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 본인만 수취가능한 우편 등을 통해 고객에게 현금카드, 통장,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고객의 기존 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이체를 받는 방식 등으로 고객이 동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지 확인(예 : 1원 계좌인증)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 금융회사가 고객동의 및 실명확인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등록한 바이오정보와 고객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제시하는 바이오정보를 비교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 바이오정보뿐 아니라 향후 다양한 방안 추가 가능
⑥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과 같이 인증기관 등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파일, 아이디·비밀번호, 전화번호 활용
⑦ 다수의 고객정보 검증	•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예: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직장정보 등)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

주)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을 인정

이 중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과 관련하여, 위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금융사기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2년 9월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방안’을 통해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시 금융회사의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였다. 본래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은 정부3.0 정책에 따른 행정정보 공유확대의 일환으로써,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의 등록정보와 실시간 비교하는 시스템으로 2014년 시작되었다.²⁸⁾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은 제출받은 신분증 내의 문자와 사진정보를 발급기관인 행정안전부, 경찰청, 외교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을 따른다. 최근 금융업권은 비대면 실명확인 시 기존의 신분증 진위(위·변조)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 제출인의 동일인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권 공동의 신분증 안면인식시스템을 2024년 1월 새로이 도입하였다.²⁹⁾ 즉,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신분증 사진과 본인의 얼굴사진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권 공동의

28. 당시 금융회사는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시 「금융실명법」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발급기관이 제공하는 개별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성명 등 단순 문자정보로만 확인하여야 했다. 하지만,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도입을 통해 다양한 신분증을 통합 확인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사진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진위확인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다.

29. 금융결제원이 구축·운영 중인 금융권 공동의 신분증 안면인식시스템 이외에도, 일부 금융회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자체적인 안면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사 뱅킹 시스템에 활용 중이다.

신분증 안면인식공동시스템을 통해 사진특징점이 추출·비교되는 방식이다.³⁰⁾ 신분증 안면인식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타인의 신분증 도용 여부까지 검증이 가능한 만큼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5-4〉신분증 제출 시 안면인식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프로세스 예



자료 : 금융결제원 보도자료(2024. 1. 3.), 금융결제원은 비대면 실명확인 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권 공동의 신분증 안면인식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 외에 일명 1원 계좌인증의 허점을 노린 금융사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1원 계좌 인증 시 인증번호 유효시간 내에 대포통장을 개설한다거나,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원 이체를 다회차 발생시켜 자금을 취득하는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인증번호 입력시간을 최대 15분 이내로 단축하거나, 1원 계좌 인증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이 같은 금융사기에 대응하고 있다.

30. 단,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본인의 얼굴사진에 대한 라이브니스 체크(실제 살아있는 사람을 촬영하는지 여부)는 각 금융회사에서 검증한다.

〈Box3-9〉개방·혁신의 허점을 파고드는 신원도용과 금융사기

금융·통신 분야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한 그간의 개방·혁신정책은 분명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와 효율적인 경제활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2012년 도입된 알뜰폰은 이통 3사의 독과점 견제와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끌었고, 2017년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고 비대면 계좌개설의 저변을 넓혔다. 또한, 2019년 실시된 오픈뱅킹은 금융결제인프라를 개방함으로써 고객이 단일 앱에서 계좌정보 일괄조회 등의 통합된 금융경험을 누릴 수 있게 하였고, 사업자도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개방·혁신이 가져온 긍정적 효과의 또 다른 이면에는 취약점을 노린 사기범으로 인한 신원도용 및 금융사기 이슈도 있다. 예를 들어 도용한 신분증 정보로 알뜰폰을 개통한 후 비대면으로 계좌개설 또는 대출실행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전체 은행권 계좌내역을 조회한 후 여타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도용 개통한 알뜰폰이 있기에 금융거래 시 은행의 본인확인 문자 역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이처럼 사기범에게 신분증이 도용된 피해자는 알뜰폰 개설을 시작으로 각종 복합 금융사기에 일괄 노출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신분증 스캐너 도입 의무화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신분증 스캐너 미사용 시 알뜰폰 개통이 금지된다. 또한, 금융권에 서도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안면인식시스템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 및 도용방지를 강화하는 가 하면, 오픈뱅킹 범죄 예방을 위하여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신규 가입 시 3일간 자금이체를 차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4절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강화 노력

범죄행위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을 합법적인 재산인 것으로 위장하거나 가장하는 자금세탁행위(money laundering)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복되어 온 인간의 욕망과도 맞닿은 이슈다. 자금세탁이란 용어는 1920년대 알 카포네 등 미국의 조직범죄 단체가 도박, 불법 주류판매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자신들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고 현금거래가 많은 이탈리아인의 세탁소 수입으로 가장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당시 일부 상인의 세곡 관련 자금세탁이나 역관의 인삼 밀거래 이슈 등 자금세탁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가 하면, 현대사회에서도 비자금 사건 등 다양한 자금세탁 사례를 종종 접하곤 한다.

최근에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국가간 상거래 활성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증가, 가상자산 이슈, 마약, 도박, 불법사금융 등과 맞물려 금융시스템이 불법적인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금융 산업의 주요 아젠다로 자리잡았다. 1989년 글로벌 차원에서 UN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³¹가 설립된 이래, 1990년대부터 각 국가는 자금세탁으로 인한 사회적

31. 자금세탁·공중합박자금조달 방지(AML/CFT) 관련 국제규범 제정, 국가별 이행현황 평가·감독 및 제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7~8년 주기마다 FATF 상호평가가 시행되며, 상호평가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쳐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엄격한 후속점검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2009년 FATF에 가입하였다.

비용을 줄이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제도, 일명 AML(Anti-Money Laundering) 제도를 도입하였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제도뿐 아니라 제재를 위한 사법제도 및 국가간 협력까지 연계되는 종합관리시스템이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는 2001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공포되고, 자금세탁방지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³²이 설립됨으로써 본격 도입되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수집·분석하고 필요 시 해당 금융거래 정보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법 집행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해외 FIU와의 협조 등을 담당한다.

1. 주요 자금세탁방지제도

가.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

의심거래보고제도(STR)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보고책임자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자금이라고 의심되거나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해당 거래를 보고하여야 한다.³³ 불법자금 또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금융회사 등이 판단한다.

나.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는 금융회사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 시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³⁴로, 2006년 1월 처음 도입되었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 거래사실 보고가 이루어지는 만큼 금융회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TR)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회사 등은 1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의 금융거래로서 입금 또는 출금한 금액이 총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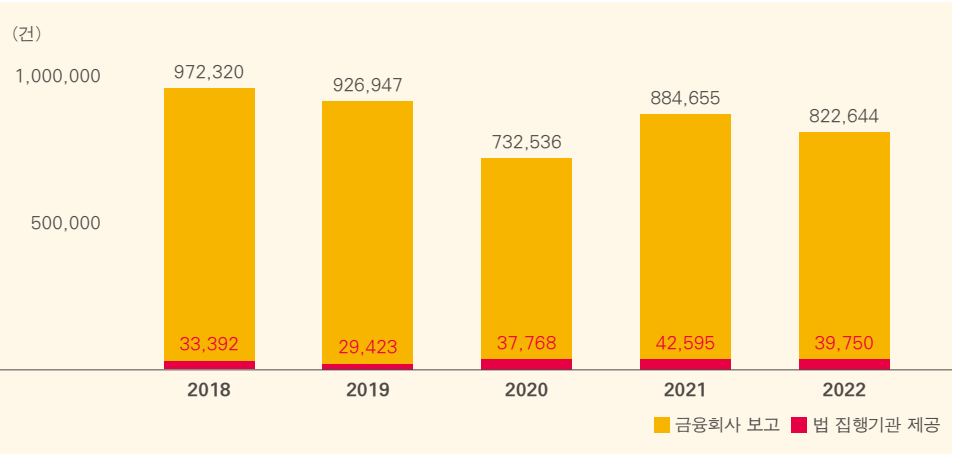
32.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의심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중앙국가기관이다. 2001년 설립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독립기관으로서 자금세탁방지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년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이관되며 수행업무도 공중합박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자금조달 방지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33.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 제29조 및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에 근거하며, 2001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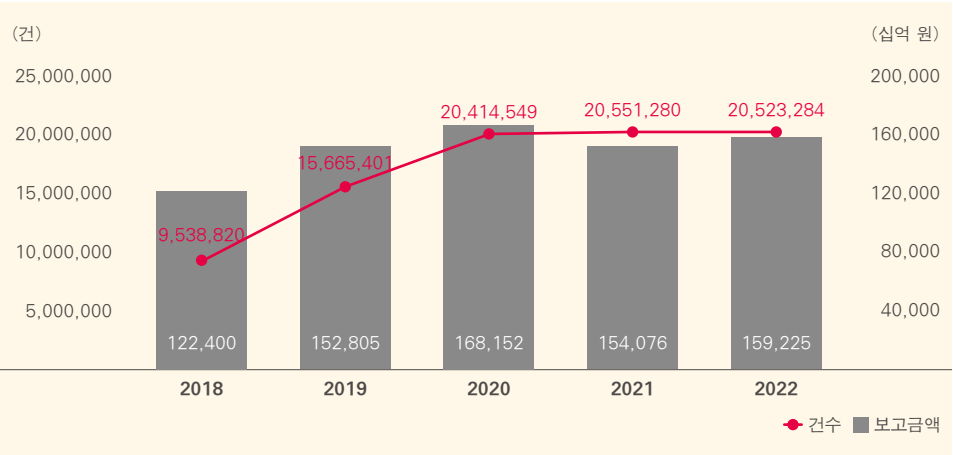
34.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현금거래보고)에서 관련 의무를 정하고 있다.

〈그림5-5〉 최근 5년간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현황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자료 : 금융정보분석원(2023. 11. 8.), 자금세탁방지 2022 연차보고서

다.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

고객확인제도(CDD)란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의 금융거래 시 거래 당사자의 신원, 실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의무화한 제도로써, 2006년 1월 도입되었다.³⁵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고객을 정확히 인지하고 범죄자 등에게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Policy)’이라고도 부른다. 동 제도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신규 계좌개설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³⁶시 고객확인이 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거절하여야 한다.

35.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에서 관련 의무를 정하고 있다.

36. 금융회사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를 의미한다. 무통장입금, 외화송금,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지급, 선불카드 매매 등이 포함된다.

라.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nhanced Due Diligence, EDD)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는 고객별·상품별로 자금세탁 위험도를 분류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큰 경우 기존 고객확인제도(CDD)에 추가적으로 금융거래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즉,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에 따라 고객의 위험을 평가하여 차등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함으로써,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 확인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고위험고객 또는 고위험거래에 대하여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표5-9〉 실명확인제도와 고객확인제도 비교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제도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제도(CDD)	
		고위험고객 : 강화된 고객확인(EDD)
성명, 주민번호	성명, 주민번호 + 주소, 연락처 +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거래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자료 : 금융정보분석원(2023. 11. 8.), 자금세탁방지 2022 연차보고서

마. 내부통제체계 구축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 금융회사 등은 이를 적정하게 이행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³⁷ 구체적으로는 AML업무 관련 조치사항과 독립적인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를 총괄할 보고책임자를 임명하고 내부 보고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보와 지식 습득을 위하여 업무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 및 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7.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에서 관련 의무를 정하고 있다.

2. 자금세탁방지의무 적용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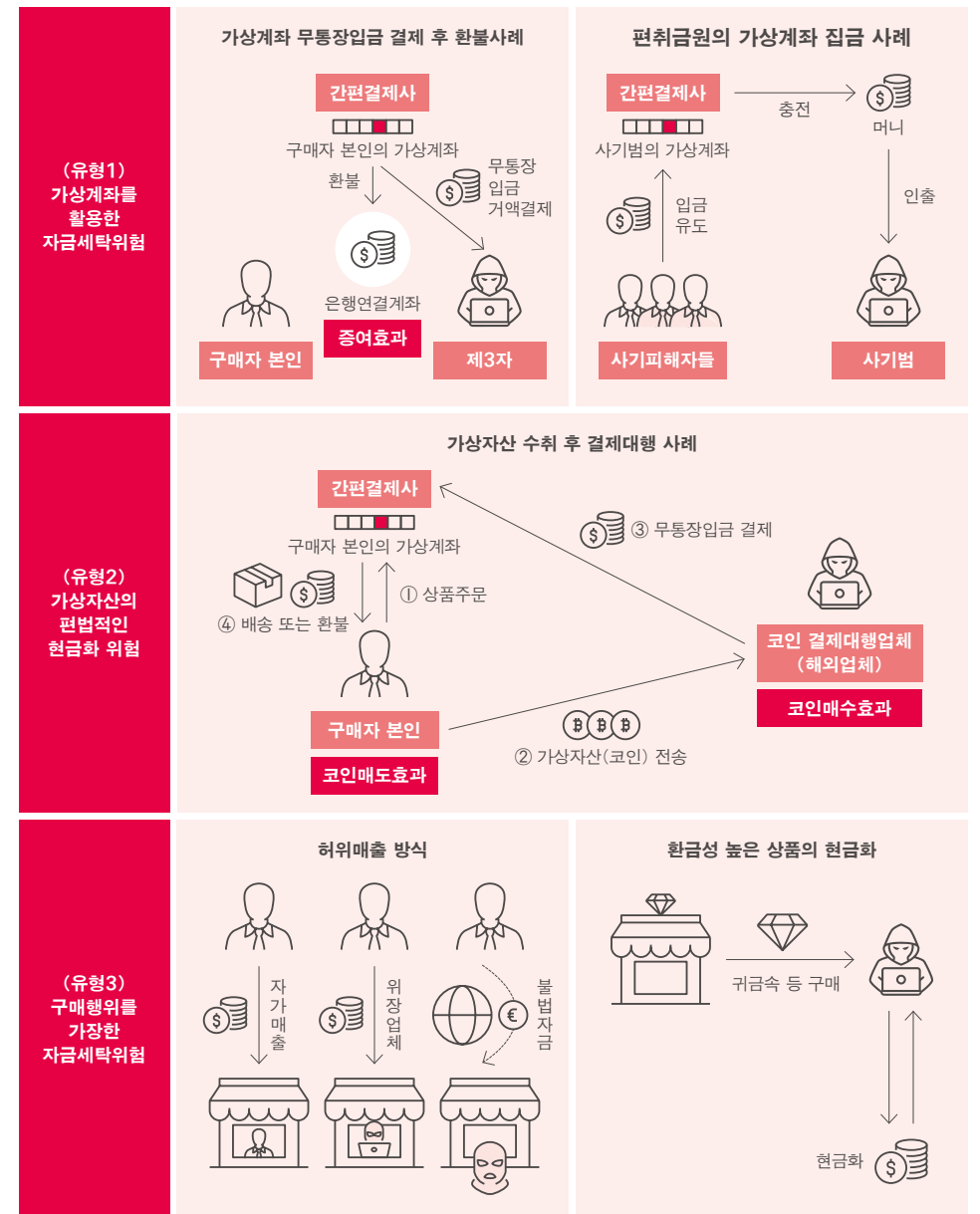
「특정금융정보법」은 STR, CTR, CDD, 내부통제체계 등의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을 ‘금융회사 등’으로 폭넓게 정하고 있다. 시중은행, 특수은행, 서민금융기관, 증권사, 신탁업자, 보험사 등의 전통적인 금융회사는 물론 전자금융업자, 온라인연계금융투자업자(P2P업자), 대부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이르기까지 자금세탁방지의무 적용대상은 지속 확대되어 왔다.³⁸

가. 전자금융업자 관련 자금세탁 이슈

최근에는 선불업자, 결제대행사(PG) 등 전자금융업권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들 사업자를 통한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관련 불법적 자금세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는 2019년 7월 부과되었다. 그런데 선불업자의 경우 내부 시스템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양도(이전)·환급·취소 거래처리가 이루어지는 구조적 특성상, 개별 자금의 이동 경로 추적이 어렵다. 특히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그 보유한도가 2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충전 및 양도를 반복함으로써 상당 규모의 자금이체가 가능한 구조다. 지급수단 발행자와 가맹점 간의 지급거래·정산을 대행하는 결제대행사(PG)의 경우도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무통장입금 후 환불받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시도하거나, 구매행위를 가장하여 자가매출 또는 허위매출을 일으키거나, 귀금속 등의 현금성 높은 상품을 구매 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38. 전자금융업자(2019. 7.), 대부업자(2019. 7.), 가상자산사업자(2021. 3.), 온라인연계금융투자업자(2021. 5.) 순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림5-6〉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9. 6.),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의 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는 특정 전자금융업자의 AML 의무 미이행 이슈라기보다는 해당 전자금융업의 속성을 악용한 자금세탁 위협요인에 해당한다. 더욱이 전자금융업은 비대면 고객을 위주로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CI(Connecting Information, 연계정보)를 사용하며, 계좌가 아닌 계정 기반으로 거래를 처리할 뿐 아니라 전자금융업자 간의 공동망이 없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금융업권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위협에 노출되기 쉽다. 그런 만큼 전자금융업의 신유형 자금세탁위험을 사전탐지하고 거래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화³⁹⁾하는 등 전자금융업 고유의 AML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2023년 9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자금융업권의 자금세탁 위협요인 및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현황 점검결과’에 따르면, 전자금융업권은 AML업무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나 전담조직의 전문성·규모가 부족하고, CDD, EDD, STR 관련한 체계·기준·이행수준 등이 금융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⁴⁰⁾ 향후 전자금융업권에 대한 AML 인식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금세탁 이슈

가상자산은 익명성, 초국경성, 비가역성이라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고⁴¹⁾, 그 파급범위도 넓어 국제 규율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자금세탁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그렇기에 정책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2021년 3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⁴²⁾ 신고제를 도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였다.⁴³⁾ 또한, 2022년 3월 25일부터는 자금이동추적 규제체계로서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

39. 예를 들어 비대면 고객확인이 대부분인 전자금융업에서 OCR(광학문자인식) 및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확인업무를 강화하거나, AI 머신러닝 및 자연어처리(NLP) 등을 활용하여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고도화한 사례가 있다.

40.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9. 6.),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의 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1. 예를 들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가상자산을 구입한 후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체하여 보관하다가 개인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

42.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상자산 거래업자(거래소),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커스터디),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대표적 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의 자격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3. 최근에는 자금세탁방지에 이어 가상자산 투자자보호와 피해처벌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제정(2024. 7. 19. 시행)되었으며, 향후 업권법에 해당하는 2단계 입법화 논의도 진행되는 등 가상자산 관련 규율체계가 정비되어가는 상황이다.

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트래블룰(Travel Rule)이 전면 시행되었다.⁴⁴⁾ 이에 따라 송신 가상자산사업자는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거래 발생 시 송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및 지갑주소 정보를 수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들은 가상자산 의심거래를 보고·접수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다만, 「특정금융정보법」 상의 트래블룰 의무의 수범대상은 국내 사업자로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투자자들이 자금을 송수신하는 주요 채널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인 점을 고려할 때, 트래블룰 도입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44. 트래블룰(Travel Rule)은 자금세탁방지과 테러자금조달금지를 목적으로 금융회사 간의 자금 이전 시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게 한 미국 「은행 보안법」(Bank Secrecy Act, BSA)에서 유래되었다. 이에 착안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9년 6월 가상자산 트래블룰(Travel Rule)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이를 입법화한 것이다.

〈Box3-10〉 국내 트래블룰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트래블룰 - 유럽 MICA의 송금 규제(TFR) 비교

유럽연합(EU)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최초 법률인 「MICA(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Directive)」에는 트래블룰에 대응되는 송금규제(Transfer of Funds Regulation, TFR)가 포함되어 있다. 국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유럽 MICA 규제안을 각각 비교해보면 MICA의 규제안이 기준금액, 개인지갑 적용여부 등에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수준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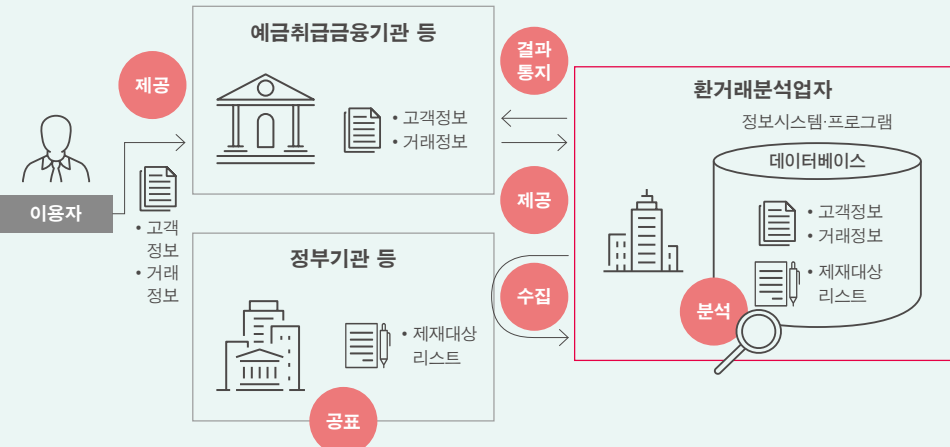
항목		국내(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FATF의 트래블룰	MICA의 송금규제(TFR)
가상자산 사업자		1. 매매 2. 교환 3. 이전 4. 보관·관리 5.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을 수행하는 자	고객을 대신하여,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자	1. 커스터디 2. 거래플랫폼 운영 3. 가상자산 환전 및 교환 4. 투자자문 등 가상자산 관련 일체의 서비스 및 활동 등
적용금액		1,000,000원 이상	1,000USD 또는 1,000EUR 이상	모든 거래 적용(금액 무관)
교환 정보	송신인	이름, 지갑주소, 주민등록번호(요청 시)	이름, 지갑주소, 주소, 개인식별번호, 고객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이름, 지갑주소, 주소, 개인식별번호, 고객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수신인	이름, 지갑주소, 주민등록번호(요청 시)	이름, 지갑주소	이름, 지갑주소 (단, 1,000EUR 미만은 송·수신인의 이름 및 지갑주소만 전송 가능)
개인지갑 적용여부		미적용	미적용	적용

자료 : Code(2023. 3. 28.), 가상자산 트래블룰 시행 1년, 현재와 미래

〈Box3-11〉 일본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환거래분석업 도입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심화되고 국제적인 대응요구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본은 2022년 6월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하여 복수 금융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환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분석을 수행하는 환거래분석업을 도입하였다. 동 제도에 따라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환거래분석업자는 예금취급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환거래에 대한 거래 모니터링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집·분석한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한다.

환거래분석업 개념도 및 관련 규율 세부사항



구분	규율 세부사항
대상행위	- 거래 필터링 - 고객 등이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위탁받은 예금취급금융기관 등에 통지 - 거래 모니터링 - 거래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금취급금융기관 등에 통지
진입요건	- 일정한 재산적 기반 - 환거래분석업에 대한 적절한 거버넌스 체제의 확보 - 자금조달 용이성 등의 관점에서 주식회사 형태가 기본 -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의 확보 등
겸업규제	거래 필터링 및 거래 모니터링업무가 기본으로, 겸업 관련해서는 적절한 개인정보 취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이 필요
개인정보의 취급	- 예금취급금융기관 등과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추가규제 - 각각 수취한 개인정보는 예금취급금융기관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일부 정보만 공유하여 관리 - 개인정보가 아닌 형태(머신러닝을 통한 학습완료 파라미터 등)로 공유
검사·감독	업무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당국의 검사·감독

〈Box3-12〉 가상자산 관련 규율체계 정비 동향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도입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에 이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가상자산 생태계 마련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한 1단계 입법으로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감독·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동 법은 가상자산시장 규제 중 이용자의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금지를 우선적으로 다룬 입법으로, 정책당국은 현재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 관련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2단계 입법^{주)}을 준비 중에 있다.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

구분	세부내역
가상자산·가상자산 사업자 정의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단,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전자등록주식·CBDC 등 제외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으로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하는 자
이용자의 자산 보호	(예치금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의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이용자 우선변제권) 예치 또는 신탁된 이용자 예치금은 압류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상자산사업자 파산선고 등 유사 시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 (가상자산 보관) 자기 소유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의 분리 보관, 동일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단, 일정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일명 콜드월렛)) (보험가입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금지행위)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자기·특 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임의적 입출금 차단 (이상거래 감시) 가격 또는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이상거래의 상시 감시 및 의심 시 즉시 보고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감독·검사)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조치 권한 명시 (제재 강화) 과징금, 형사처벌, 과태료 등

주) 2단계 가상자산 입법의 주요 내용은 지난 2023년 6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의결 당시 국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국회는 연구용역 등의 방법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① 가상자산거래소의 발행·유통과정상 이해상충 문제 해소
- ②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확립
- ③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규율체계 마련
- ④ 통합시세 및 공시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운영방안 마련
- ⑤ 사고발생시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한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 마련
- ⑥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 ⑦ 은행 자율의 실명계정 발급 개선방안
- ⑧ 사업자 자율 협의기구 운영방안 등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고영미(2017), 「금융시장인프라 안정을 위한 중앙청산소의 리스크 관리, 복구 및 정리 방안-장외파생상품 청산소를 중심으로」,경영법률, vol.28, no.1
- 고재종(2022),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의 도입과 활성화 방안」, 법과 기업 연구, 제12권 제2호
- 김서영(2011), 「지급결제제도의 거시적 트렌드 및 발전전망」,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43호
- 김서영(2014), 「주요국 지급결제기관의 특징 및 전망」,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6호
- 김소이(2009),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부문 진출 현황과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37호
- 김소이(2011), 「국의 지급결제 부문의 주요 네트워크 이해 및 이슈」,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46호
- 김시흥(2023. 12.), 「전자금융거래법의 최근 개정 동향과 향후 개편 과제」, Legal Foresight, 1호
- 서정호(2020), 「종합지급결제업 도입과 향후 과제」, 금융브리프, 29권 23호
- 서정호-김자봉(2019), 「최근 핀테크의 지급결제시장 참여 확대와 시사점」, KIF VIP 리포트, 2019-06
- 안예홍(2021), 「지급결제의 주역들」, 한울
- 양준모(2009), 「우리나라의 결제리스크 관리제도 현황 및 향후 과제」,지급결제학회지, 3권 2호
- 오상승-정경찬-조근태(2023. 6.), 「한국형 오픈뱅킹 API 플랫폼의 활성화 요인에 대한 고찰」, 지급결제학회지, 15권 1호
- 이성복(2021),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 양상과 시사점」, 연구보고서, 21-03, 자본시장연구원
- 이종건(2018), 금융혁신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 이지은(2017),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법적 규율 체계와 그 개선방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이현균(2019. 7.), 「싱가포르 「결제서비스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최신외국법제정보, Vol.4
- 장강봉·최강욱(2009),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 분석」, 지급결제학회지, 3권 2호
- 정경영(2010), 「일본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소고」, 법과 기업 연구, 제12권 제2호
- 정대현(2019. 8. 23.), 「글로벌 소액결제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 조선대학교
- 정민지(2023. 7.), 「해외 비은행 계좌-계정 기반 지급서비스 제도 현황 및 시사점」, 금융결제 Trend&Issue 연구보고서, 제2023-07호
- 정주봉(2013), 「소액결제시스템의 금융경제적 효과」,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4호
- 최규선(2023. 7.), 「EU 지급서비스 정책 현황 및 시사점」, 금융결제 Trend&Issue 연구보고서, 제2023-07호
- 최규선-이지영(2018), 「유럽연합의 PSD2 시행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69호
- 한정미(2009),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제 연구」, 법제연구, 제36호
- 현정환(2019), 「오픈뱅킹 성공을 위한 핀테크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접근성 향상방안」, 지급결제학회지, 11권 2호
- 현정환(2022), 「화폐제도 및 지급결제제도 관점에서 살펴본 바람직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방안」, 지급결제학회지, 14권 1호

- 황선철(2008), 「소액지급결제서비스 참가자 확대에 따른 지급결제리스크 이해 및 관리」,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32호
- 황선철(2009),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참가 확대에 따른 변화 및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35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 「2022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9), 「2018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 교보증권(2020), 「휴대폰 결제도 언택트 수혜 기대 II」
- 금융감독원(2018),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 거래현황 및 시사점」
- 금융감독원(2024. 4. 29.), 「전자금융업 등록 및 말소현황」
- 금융결제원(2018), 「Cashless Society를 향한 현금 규제 동향」, KFTC 지급결제동향, 제284호
- 금융결제원(2020), 「차액결제 업무 참가기준」
- 금융결제원(2021), 「최근 지급결제 동향과 향후 주요이슈 : 소액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 금융결제원(2021. 7.), 「오픈뱅킹공동업무 설명자료」
- 금융보안원(2015), 「결제토큰 기술현황 및 적용사례 분석」
- 금융보안원(2018), 「PSD2 규제 기술 표준 내용 및 시사점」
- 법무법인(유)세종(2020. 11. 14.), 「CPRA의 주요 내용 및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Legal Update
- 삼성KPMG(2019. 5.), 「오픈뱅킹, 금융산업 지형 변화의 서막」, ISSUE MONITOR, 제108호
- 삼성KPMG(2023), 「간편결제 무한경쟁 시대, 왕관을 거머쥔 승자는?」, 삼성KPMG경제연구원
- 여신금융연구소(2020), 「간편결제 서비스의 등장과 카드업 영향분석」, CFRI Insight, 2020-1
- 여신금융협회(2022), 신용카드 업계 현황
- 예금보험공사(2018),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과 예금보험제도」, KDIC 조사분석정보
- 우리은행(2022), 모티즌(Motizen)인 MZ세대의 금융플랫폼 이용행태 분석
- 자본시장연구원(2020), 「일본의 새로운 금융서비스중개업 도입」, 자본시장포커스, 2020-26호
-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2), 「간편결제 시장 동향과 애플페이 영향 점검」, 하나Knowledge+, 제40호
-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3), 「은행대리점이 변화시킬 금융산업의 모습은?」, 하나Knowledge+, 제23-26호
- 한국거래소(2019), 「KRX 청산결제의 이해」
- 한국거래소(2019. 7.), 주식시장 매매제도의 이해
- 한국은행(2003. 12. 19.), 지급결제시스템과 중앙은행 화폐(예금)의 역할
- 한국은행(2008),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 상호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지급결제조사자료, 2008-1
- 한국은행(2008), 「지급서비스의 기본개념과 취급요건」, 지급결제조사자료, 2008-8
- 한국은행(2014),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 한국은행(2016), 「신중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지급결제조사자료, 제2016-4호
- 한국은행(2020),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지급결제조사자료, 제2020-3호
- 한국은행(2020), 「최근 현금 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 한국은행(2020. 9. 20.), 「소액결제시스템에 자금이동업자(핀테크 기업) 참여 허용」, 현지정보
- 한국은행(2021), 「G20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지급결제조사자료, 제2021-1호
- 한국은행(2022), 「PFMI에 따른 한은금융망 운영상황 공개서」
- 한국은행(2022. 5.),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지급결제조사자료, 제2022-1호
- 한국은행(2023. 1. 30.), 「일본, 소액결제시스템 개방형 전환 예정」, 현지정보
- 한국은행(2023. 12.), 「금융안정보고서」
- 한국은행(2023. 12.), 「영란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개편 특징 및 시사점」, 지급결제조사자료, 제2023-1호
- 한국은행(2023. 9. 1.), 「미국 간편결제·송금서비스의 특징 및 규제체계」, 금융결제 업무정보
- 한국은행(2024. 4.), 「2023년도 지급결제보고서」
-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 외(2020), 「2019 핀테크 기업편람」
- 한국핀테크지원센터(2024), 「헬로, 핀테크 개정판」
- KDB산업은행(2018), 「국내 지급결제 서비스의 변천 및 시사점- 전자방식 지급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산은조사월보, 제755호

보도자료 및 보도참고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 8. 12.), 「전자금융거래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집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 3. 20.), 「‘금융시장인프라 업무기준’ 마련」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 8. 18.), 「한국거래소를 거래정보저장소(TR)로 선정」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 10. 21.),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 12. 21.), 「오픈뱅킹 시행 2년이 만든 디지털 금융혁신 성과」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3. 8. 24.), 「선불업자 관리 강화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고, 소액후불결제 허용으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5. 6. 25.), 「15. 7. 1.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 한국은행 보도자료(2006. 8. 17.),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제도 지정」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 9. 21.), 「2023년 상반기중 국내 지급결제동향」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4. 3. 18.), 「2023년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
- 한국은행 보도참고자료(2020. 6. 4.),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 한국은행 보도참고자료(2020. 6. 24.),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관련 Q&A」

신문기사

- 전자신문(2023. 1. 17.), 「계좌개설, 온라인 > 오프라인…우리·하나銀, 비중 절반 넘어」
- 중앙일보(2023. 4. 19.), 「"지점 대신 ATM"이라던 은행…알고보니 ATM 더 많이 없었다」

영문자료

- Allianz(2021. 5.), 「financial services risk trends」
- Australian Government(2023. 6.), 「A Strategic Plan for Australia’s Payments System」
- BBVA(2019. 10. 17.),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PSD2」
- Bech, M and Hancock, J.(2020), 「Innovations in payments」, BIS Quarterly Review
- Benson, C.(2020), 「Global Payments」, First Edition, Glenbrook Press
- BIS CPMI and World Bank Group(2016), 「Payment aspects of financial inclusion」
- BIS CPSS(2012), 「Innovations in retail payments」
- BIS(2012), 「Assessment methodology for the principles for FMI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authorities」
- BIS(2012),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 BIS(2016),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 BIS(2023. 3.), 「Project Nexus : Enabling instant cross-border payments」
- BIS(2024. 2.), 「Tap, click and pay : how digital payments seize the day」
- Capgemini(2023), 「World Payments Report 2023」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2. 1. 21.), 「An Analysis of Bank Charters and Selected Policy Issues」
- Dattana, Vishal , Rao, Srihari Rajesh , Sharma, Nisha(2024). 「Introduction to FinTech」
- eMarketer(2022. 1.), 「Global Ecommerce Forecast」

- Europe Banking Authority(2022. 4. 5.), 「Final reptert on draft RTS amending the RTS on SCA&CSC」
- European Commission(2021) 「A study on the application and impact of Directive(EU) 2015/2366 on Payment Services(PSD2)」
- European Parliament(2024. 4.), 「New EU rules to combat money-laundering adopted」
- FCA(2017. 12. 8.), 「account information and payment initiation services」
- Financial Stability Board(2021. 5.), 「Targets for Addressing the Four Challenges of Cross-Border Payments」
- FIS(2023), 「The Global Payments Report」
- FIS, Worldpay(2023), 「The Global Payments Report 8th edition」
- Goldberg, Sophia(2022) 「The Field Guide to Global Payments」
- Infosys(2019), 「Future of Digital Payments」
-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2019), 「Guide to the Payment Service Act(A guide to the essential aspects of the Payment Services Act 2019)」
-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2020. 11. 30.),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to have Access to FAST and PayNow」
-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2022. 8.), 「Open Banking in the UK and Singapore : Open Possibilities for Enhancing Financial Inclusion」
- Neira Jones(2024), 「Understanding Payments」
- OECD(2023. 10.),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3」
- PCI(2011. 8.), 「Information Supplement : PCI DSS Tokenization Guidelines」
- Statista(2024), 「Number of cashless transaction worldwide from 2013 to 2021 , with forecasts from 2022 to 2027, by region」
- Tesmanian(2021. 6. 2.), 「Tesla Taxi Aschaffenburg is first taxi company in Germany to accept doge coin & other crypto as payment」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8. 7. 3.), 「A Financial System That Creates Economic Opportunities Nonbank Financials, Fintech, and Innovation」
- World Bank Group(2021), 「COVID- 19 Drives Global Surge in use of Dgiital Payments」
- World Bank Group(2021), 「The Global Findex Database7」
- World Bank Group(2021. 9.), 「Considerations and Lessons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FAST PAYMENT SYSTEMS」
- World Bank Group(2021. 9.), 「Interoperability in Fast Payment Systems」
- World Bank Group(2022. 5.), 「Implications of the Ukraine crisis and COVID-19 on global governance of migration and remittance flows」
- World Bank Group(2023. 10.), 「The Future of Fast Payments」
- World Bank Group(2023. 4.), 「Settlement Models in Fast Payment Systems and Implications for Participant Access」

웹사이트

- <https://www.amazon.com>
- <https://www.bis.org/cpmi/publ/d00b.htm?m>
- https://www.bis.org/statistics/payment_stats.htm?m
- <https://www.crefia.or.kr>
- <https://www.bok.or.kr>
- <https://data.krx.co.kr>
- <https://www.frbServices.org>
- <https://www.kftc.or.kr>
- <https://www.korea.kr>
- <https://www.fsc.go.kr>
- <https://www.fss.or.kr>
- <https://www.krx.co.kr>
- <https://www.ksd.or.kr>
- <https://www.fisglobal.com>
- <https://www.kats.go.kr>
- <https://www.fcsc.kr>
- <https://www.kosis.kr>
- <https://www.fxintel.com>
- <https://www.swift.com>
- <https://www.mofa.go.kr>
- <https://www.leeko.com>
- <https://www.law.go.kr>
- <https://remittanceprices.worldbank.org/resources>
- <https://www.apple.com/kr/apple-pay>
- <https://www.kakaopay.com>
- <https://www.naverfincorp.com>
- <https://www.samsung.com>
- <https://toss.im>
- <https://www.ebaclearing.eu>
- <https://www.wearepay.uk>
- <https://www.theclearinghouse.org>
- <https://www.frbServices.org/financial-services/fednow>
- <https://docs.bis.org/nexus>
- <https://www.bis.org/bisih/topics/fmis/nexus.htm>

기타

- 금융결제원 통계시스템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개정이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제정·개정이유」
-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색인

	결제대행은행	89
	결제리스크	109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107
	결제불이행	25
	결제완결성	111, 129
	결제완결성 지침	258
	결제은행	16
	결제이행용 담보증권예치제	106
	결제자산	97
	결제전환율	265
	결제회원	81
	계좌 보유율	39
	계좌납부	200
	계좌대체	25, 77
	계좌이체	12, 50, 158
	계좌이체PG	217
	계좌정보서비스 제공자	237
	계좌조회	148
	고객알기정책	354
	고객확인제도	354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	349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353
	고지납부	200
	공동QR코드	161
	공동창구	156
	공적개발원조	295
	관리리스크	103
	구매기업	182
	국가간 ATM서비스	165, 168
	국가간 공동망	164
	국가간 송금	166, 169
	국가간 실시간 이체서비스	261
	국가간 지급거래	293
	국가표준	140
	국제결제은행	22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359
	국제증권감독기구	21
	국제표준	140
	국제표준화기구	139
	규모의 경제	75
	규제기술표준	140
	규제기술표준안	239
	금융 이력 부족자	329
	금융공동망	146
	금융규제 샌드박스	38, 320
	금융데이터거래소	245
	금융맵	159
	금융상품 추천·중개	36
	금융서비스 보안	140
2요소 인증	239	
3당사자	59	
4당사자	59	
ATM 지연인출제도	349	
ATM출금서비스	277	
B2B 결제시스템	182	
B2C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중계시스템	217	
CD공동망	157	
CLS시스템	80, 110	
FMI 사이버 복원력 평가지침	341	
GLN 인터내셔널	313	
P2P 대출	36	
ㄱ		
가계수표	47	
가맹점	55	
가상계좌	347	
가상자산사업자	358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361	
간접참가	91	
간접참가 서비스 제공기관	241	
간편결제	264, 296	
간편송금	274	
감시지침서	33	
강력한 고객인증	137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355	
개방형 통신표준	137, 239	
개방형시스템	84	
개설거래	166	
개인금융관리	36	
개인정보이동권	240	
거래정보저장소	23, 28	
거래정지처분	190	
거래확인조회	148	
거액결제시스템	68	
결제	15	
결제계좌	242	
결제기관	97	
결제대금예치	95	

금융서비스 정보교환	140
금융서비스 참조데이터	140
금융소외계층	324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	10
금융시장인프라	23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29
금융안정지수	101
금융정보조회	148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57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57
금융취약성지수	101
금융포용	38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31, 233
기관 간 Repo결제시스템	110
기술변화리스크	103
기업구매자금융	184
기프트카드	58

L

납부자자동이체	195
네이버페이	271
네트워크 효과	75

ㄷ

다자간 상계	173
다자간 차감방식	27
다자간 차액결제방식	14, 73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제한	349
단말기 지정서비스	349
당좌수표	47
대고객서비스	148
대량지급	195
대사	13
대안신용평가	280
대체수표	48
대출이동서비스	151
동적요소 인증	239
동전 없는 사회	45, 319
디지털 운영 복원력 법	338

ㄹ

로보어드바이저	36
---------	----

ㅁ

매매체결	78
매입사	52, 55
머지포인트 사태	63
면책적 채무인수	26
모바일현금카드	161
무기명 선불카드	58
무인 증권성	173
문언 증권성	173
미결제 및 제재	183
민간결제시스템	76

ㅂ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142
발행	179
배서	179
백지어음	179
뱅크라인	162
뱅크페이	217
범위의 경제	75
범죄리스크	103
법률리스크	103
보이스피싱	343
보증	179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	152, 346
부도	189
부도관리	189
부도제재	179
비대면 실명확인	322
비대면 실명확인	349
비대면 실명확인조회	148
비대칭적 가격설정	59
비현금 지급수단	19, 41
빌링원플러스	222

ㅅ

사고수표신고	148
사기이용계좌	344
사용자 경험	286
사원	91
사이버 복원력	338
사전담보제도	104
삼성월렛	296
삼성페이	266, 271

상환 증권성	173	애플캐시	272
생체인증	290	애플페이	271
서민금융기관 중앙조직 지급결제시스템	111	애플페이레이터	272
선불식지급수단발행업	246	약속어음	46, 115
선불전자지급서비스	95, 325	약정등록	183
선불전자지급수단	61, 117, 274	약정체결	183
선불충전금	132, 251, 325	양도통지	183
선불카드	58, 61	양면 시장	59
설권 증권성	173	양자 간 차감방식	14, 27
소액결제시스템	72, 75	어음	46
소액해외송금업	308	어음 정보교환	174
소액후불결제	132	어음교환	171
수납장표 전자정보교환	48	어음교환소	171
수납장표정보화	204	어음교환시스템	110, 171
수취계좌 잔액조회	148	어음교환제도	172
수취인 확인서비스	256	어음법	114, 172
수표	46, 115	업무지속성계획	107, 338
수표법	114, 172	여신전문금융업법	92, 120, 227, 235
수표전환	48	역직구	297
수표조회	148	영란은행	241
순이체한도제	105	예금자보호법	63, 343
스마트디지털정부그룹	244	오픈뱅킹	208, 252
스마트스토어	271	오픈지로서비스	199
스몰뱅킹라이선스	249	오픈핀테크 얼라이언스	38
시스템리스크	103	와이어카드	63
신분증 안면인식공동시스템	350	완전어음	179
신용기관	236	외국인직접투자	295
신용리스크	100	외국환거래법	308
신용카드	56	외화자금이체시스템	80, 111
신용카드VAN사업자	95	외환결제시스템	80
신용카드결제시스템	74	외환동시결제시스템	81
신용카드납부	200	요식 증권성	173
실명확인제도	354	운영리스크	102
실물어음	177	원거래방식	14
실물형 지급수단	18	위안화 청산시스템	111
실시간	254	위택스	201
실시간 계좌조회/등록(해지)	222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68, 110
실시간 이체서비스	254	유니버설 뱅크	234
실시간 총액결제	82, 254	유니패스	201
솔림현상	76	유동성리스크	102
썬파일러	329	유럽은행감독청	236
		유스앱서비스	277
		은행공동점포	335
		은행대리업	335
		은행법	88
		은행서비스 소외자	39
		의무발행제도	172
		의심거래보고제도	353
		이미지 정보교환	174

○

아마존 고	289
아태지역 지급결제기구	164
알리페이	290
알리페이플러스	313

이연 차액결제	83, 254	전자기반형	19
이용자 등록	179	전자납부전용 장표	205
이택스	201	전자등록기관	25
인증 기술	269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185
인터넷전문은행	36	전자수납	204
인터넷지로	199	전자어음	115, 177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	240	전자어음관리기관	116
일반OCR	205	전자어음법	114
일중 유동성 제공	72	전자자금이체	117
일중 환매조건부 채권	72	전자지급결제대행(PG)서비스	95
일중당좌대출	69	전자지급수단	117
입금거래 업무	163	전자지로	194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349	전자채권	117, 182
입금이체	50, 221	전자채권관리기관	183
입력납부	200	전자화폐	61, 117

ㄸ

자금결제시스템	24	전자화폐규정	240
자금관리서비스	220	전자화폐기관	236
자금세탁방지	352	전자화폐기관 대리업	240
자금이동업	246	전환비용	256
자금조정	125	점외CD/ATM사업자	95
자금중개 및 자산거래	36	접근매체	42
자기앞수표	47	접근성	315
자기앞수표 정보교환	174	접근채널	42
자기앞수표조회	148, 156	정보시스템리스크	103
자동이체	194	정액OCR	205
자동차 결제서비스	291	제3자지급서비스 제공자	237
자산거래 플랫폼	36	제시 증권성	173
잔돈적립서비스	45	조회납부	200
잔액조회	158	종합자산관리계좌	90
장표기반형	19	종합지급결제사업자	253
장표지로	204	주식기관결제시스템	68
재구매율	265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111
재해리스크	103	준사원	91
재해복구센터	338	중앙거래당사자	23, 26
전국은행자금결제네트워크	248	중앙예탁기관	23, 25
전업계 신용카드사	93	중앙청산	26
전은넷	248	증권결제시스템	23, 25, 77
전은시스템	247	증권대금동시결제	26, 78
전자결제등대행업	248	지급	12
전자고지결제서비스	95	지급결제	10
전자금융 사고	120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	21
전자금융거래법	94, 117, 131, 251	지급결제리스크	99
전자금융공동망	147	지급결제시스템	20, 23, 67
전자금융보조업자	95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20
전자금융업자	94	지급결제제도	10
		지급기관	236
		지급기관 대리업	240
		지급서비스	227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20

지급서비스규정	239, 240
지급서비스에 관한 법률	243
지급서비스지침	236
지급수단	41
지급정지제도	344
지급제시	179, 183
지급준비금	68
지급지시 은행	301
지급지시서비스 제공자	237
지급카드	52
지로	193
지로시스템	193
지방은행공동망	162
자연이체제도	349
직불전자지급서비스	95
직불전자지급수단	64, 117
직불카드	56
직불카드공동망	110
직접참가	91

ㄸ

차액결제	127
차액결제리스크	105
착오송금	341
채권기관결제시스템	68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1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26
천송이 코드	231
청산	13
청산기관	14, 97
체크카드	57
최소 필요시장 규모	76
추심이체	50
출금거래 업무	163
출금이체	50, 221
취급거래	166

ㅋ

카드 네트워크 운영사	17, 52, 55
카드 회원	55
카드발급사	52, 55
카카오페이	271, 278, 312
커넥티드카	291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68, 110
클라우드펀딩	36

ㄴ

타행이체	148
타행환공동망	154
타행환송금	155
토스	278
토큰 기술	267
토큰화	268
통신 기술	270
통신사기피해환급법	345
통장(증서)관련 업무	163
통장류기	346
트래블로그	312
트래블룰	359
트래블렛	309
특별참가기관	91
특수목적은행	249
특정금융정보법	353

ㄷ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	110
판매기업	182
핀VAN사업자	95
평판리스크	103
폐쇄형시스템	84
표준OCR	205
표준개발협력기관	140
표준화	139
폴링	302
프리펀딩	302
피싱	343
핀테크	35
핀테크 랩	234

ㄹ

한국산업표준	140
한국은행법	126
한은금융망	15, 70, 71, 110
해외IP 차단서비스	349
해외송금	36, 295, 301
혁신금융서비스	38
현금	18, 41, 43
현금 없는 매장	318
현금 없는 사회	45
현금 통용력	330

현금IC카드	58
현금사용선택권	331
현금서비스	158
현금인출	158
현금입금	158
현금카드	57
현금카드공동망	321
혼합형 결제시스템	84
홈·편뱅킹 중계서비스	148
홈택스	201
환거래분석업	360
환거래은행	301
환어음	46, 115
환업무	228
후불결제	280
후불전자지급서비스	328
후불카드	56
휴대폰 소액결제	328

A

ABS(The Association of Banks in Singapore)	244
Account-based	18
ACH(Automated Clearing House)	21, 76
ACSS(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	76
Affirm	64
Afterpay	64, 281
AISP(Accou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135
Alipay	290
Amazon Go	289
Amazon One	290
AMEX	59
AML(Anti-Money Laundering)	352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209
APN(Asian Payment Network)	164
ARS1369	148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222
ASPSP(Account Servicing Payment Service Provider)	242
ATM(Automated Teller Machine)	316

B

Bacs(Bankers' Automated Clearing System)	21, 76, 256
--	-------------

BANCNET	166
Bankpay	217
BCP(Business Continuity Plan)	107
Bilateral Netting	83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22
BNPL(Buy Now Pay Later)	64, 263, 280
BOJ-NET	69
BOK-Wire+	15

C

C&CC(Cheque&Credit Clearing)	76
CBDC	319
CCP(Central Counterparty)	23
CDD(Customer Due Deligence)	354
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250
CHAPS	21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s System)	76
Clearing	13
Closed loop system	59
CLS	80
CMA(Cash Management Account)	90
CMA(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242
CMA9	242
CMS(Cash Management Service)	220
Confirmation of Payee	256
CPMI(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22
CPRA(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251
CSC(Common and Secure open standards of Communication)	137
CSD(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23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	353

D

DFWG(Direct Fast Working Group)	244
Discover	59
DNS(Deferred Net Settlement)	254
DORA(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Act)	338
DuitNow	42
DVP(Delivery Versus Payment)	26

E

EBA Clearing	257
EBPP(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	95
EDD(Enhanced Due Diligence)	355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40
EMDE(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cs)	294
EMV(Europay Mastercard Visa)	52
EPC(European Payments Council)	258
EPN(Electronic Payments Network)	76
Escrow	95
EURO1	76

F

FAST(Fast and Secure Transfer)	261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242
FDS(Fraud Detection System)	210
FedNow	259
Fedwire	21
Fintech	35
FMI(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22
FPS(Faster Payment System)	76, 256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293
FS-ISAC(Financial Services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	250

G

GDPR(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136
GPFI(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38
GSMA	39

H

HVCS(High Value Clearing System)	76
----------------------------------	----

I

IAP(Indirect Access Provider)	241
Iberpay	257

IC	52
ICS(Image Clearing System)	256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22
ISO 18960	141
ISO 19092	142
ISO 20022	140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139
ISO/IED 27002 Information security controls	142
ISO/TC68	139
ITMX	166

K

Klarna	64, 281
KYC(Know Your Customer)	354

L

LMICs(Low-and Middle-Income Countries)	294
LVSS(Low Value Settlement System)	76
Lynx(Large Value Transfer System)	76

M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243
MICR	48, 205
MS(Magnetic Stripe)	52
MST(Magnetic Secure Transmission)	270
Multilateral Netting	83

N

NAPAS	166
NBPSP(Non-Bank Payment Service Provider)	235
Net Settlement	83
Nexus	261
NFC(Near Field Communication)	270
NFI(Non-Financial Institution)	244
NPA(New Payments Architecture)	256
NPCI(National Payments Corporation of India)	260

NYCE	166
------	-----

O

OBIE(Open Banking Implementation Entity)	242
OBWG(Open Banking Working Group)	242
Open loop system	60
OTP	274

P

Pay.UK	256
Paym	76
Payment	12
Payment Gateway	217
PAYNET	166
PayNow	260
PayPal	86, 311
PFMI(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22
PISP(Paym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	135
PromptPay	260
PSA(Payment Service Act)	243
PSD(Payment Services Directive)	133
PSD2(revised Payment Services Directive)	134, 237
PSD3	137, 239
PSP(Payment Service Provider)	133
PSR(Payment Services Regulation)	137, 239
PSR(Payment Systems Regulator)	241
PVP(Payment Versus Payment)	67

R

Request to Pay	256
RINTIS	166
RITS	69
RPP(Real-Time Retail Payments Platform)	261
RT1(Real-Time 1)	76, 257
RTGS(Real-Time Gross Settlement)	82, 254
RTP(Real-Time Payments)	76, 258
RTS(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136

S

SC9	140
SCA(Strong Customer Authentication)	137
SCT Inst(SEPA Credit Transfer Instant)	257
SEPA(Single Euro Payments Area)	236
Settlement	15
SFD(Settlement Finality Directive)	258
SGFinDex(Singapore financial Data Exchange)	245
SHA(Singapore Clearing House Association)	244
SIA	257
SRTP(SEPA Request-to-Pay Scheme)	257
SSS(Securities Settlement System)	23
STEP1-2(Straight Through Euro Payment 1-2)	21, 76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353
SWIFT GPI	302

T

TARGET2	21
TC68/SC2	141
TCH(The Clearing House)	258
TIPS(TARGET Instant Payment Settlement)	261
Token-based	18
TPPSP(Third Party Payment Service Providers)	135
TR(Trade Repository)	23
Travle Rule	359
TSP(Technical Service Provider)	242

U

Unbanked	39
UPI(Unified Payment Interface)	260

V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358
--------------------------------------	-----

W

Wise	302
------	-----

집필

1편 지급결제제도의 이해

금융결제연구소 전문연구역 정하나

금융결제연구소 연구역 정민지

2편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결제연구소 전문연구역 정하나

금융결제연구소 연구역 정민지

3편 지급결제 트렌드와 미래

금융결제연구소 팀장 김성중, 이한욱

금융결제연구소 전문연구역 김소이, 조혜숙, 남상현

금융결제연구소 연구역 황유경, 김기언, 정민지

감수

정순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지원

기획 원장 박종석

편집자문 전무이사 류재수

본부장 차병주

교정자문 감사 천경득

편집 금융결제연구소 소장 고원상

편집지원

금융결제연구소 팀장 이한욱

금융결제연구소 전문연구역 정하나

금융결제연구소 연구역 정민지

교정

금융결제연구소 팀장 황선철

금융결제연구소 전문연구역 김소이

고객금융부 부부장 이창진

기업금융부 계장 김시온

디지털금융단 과장 최규돈

해외협력센터 차장 김지혜

카드인프라사업부 과장 정현수

카드인프라사업부 계장 최명원

금융정보업무부 과장 이준규

지급결제 A to Z

발행처 금융결제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32

발행인 박종석

편집인 고원상

펴낸곳 금융결제연구소

디자인 디자인퍼플

발행일 2024년 7월 17일

ISBN 979-11-976567-5-0

발간번호 2024-3-03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연구소

문의전화 02-531-3212~3214

홈페이지 kftc.or.kr

본 도서는 인터넷 홈페이지(kftc.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도서는 무상배포(한정수량) 저작물이므로 유상 판매할 수 없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도서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ISBN 979-11-976567-5-0